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연구책임자 : 윤지현
공동연구자 : 조혜영



제 출 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공동연구원 : 연구원 조혜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참여연구원 : 석사과정 김소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배아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양민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학교급식이 처음 시작된 1953년부터 약 63년간의 학교급식관련 자료를 발굴, 정리하여 학교급식 발전사를 집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발전과정을 총 다섯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학교 구호급식기’는 1953년부터 20년 동안의 시기로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원조식품을 이용한 분유급식, 옥수수죽 급식, 빵급식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73년부터 8년간의 ‘학교 자립급식 실험기’는 외국의 원조가 중단된 후 우리 정부의 재원으로 우리 식문화에 맞는 학교급식을 실험,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학자들과 관계 공무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시기이다. ‘학교급식 제도화기’는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의 10년간으로 학교급식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나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국가경제의 어려움, 학교급식 업무의 이원화 등으로 학교급식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이다. 1991년부터의 ‘학교급식 확대기’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학교급식 확대가 채택·실현되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된 12년 동안의 시기이다.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학교급식 선진화기’로 명명하였다.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현황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보고서’는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논의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학교 구호급식기(1953~1972)	7
1. 개요	7
2. 원조기관	9
3. 급식내용	14
가. 탈지분유 급식(1953~1960)	14
나. 옥수수죽, 옥수수빵 급식(1961~1965)	17
다. 밀가루빵, 수제비 및 건빵 급식(1966~1972)	21
라. 시범급식(1968~1972)	23
마. 급식내용별 영양 비교	24
4. 학교급식 관리	25
가. 외원 양곡관리	25
나. 학교급식 관리조직 및 업무	27
다. 재정부담	30
라. 학교급식 관리를 위한 지침	31
마. 학교급식 대상아동 선정의 실제	38
5. 구호급식으로부터의 자립을 위한 노력	39
가.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	39
나.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41
다. 농촌형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	44
라. 학교급식비의 수익자 부담	45



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47
가. 실적	47
나.평가	48
Ⅲ. 학교 자립급식 실험기(1973~1980)	51
1. 개요	51
2. 급식운영 형태	53
가. 1973년~1975년	53
나. 1976년	56
다. 1977년~1980년	57
3. 학교급식 제도화	65
가. 학교급식규칙 제정	65
나. 학교급식규칙 개정	67
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	71
4. 학교급식 관리	73
가. 제빵 급식	73
나. 도시형 시범급식	74
다. 농어촌 자활급식	76
5. 자립급식 실험을 위한 노력	87
가. UN의 지원	87
나. 교육 및 연수회 개최	89
다. 학교급식 운영평가	92
라. 급식 개선을 위한 연구	92
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98
가. 실적	98
나.평가	99

목 차

IV. 학교급식 제도화기(1981~1990)	101
1. 개요	101
2. 학교급식법 제정	103
가. 학교급식법 제정 배경	103
나.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골자	103
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주요 골자	105
라. 학교급식법령 주요 개정내용	106
3. 농림부의 협조	108
가. 우유급식 실시	108
나. 정부양곡의 저가 지원	112
4. 학교급식 관리	115
가. 중앙정부의 학교급식 담당 부처	115
나. 학교급식 관리지침	116
다. 급식실 운영	121
라. 학교급식 현황	130
5. 학교급식 제도화를 위한 노력	132
가. 학교급식 운영평가	132
나. 학교급식 지도편람 발간	134
다. 학교급식 효과평가	135
라. 연구협회의, 연수회 개최 및 시범 연구학교 운영	135
마. 전체급식 정착을 위한 학교의 노력	137
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139
가. 실적	139
나. 평가	141



V. 학교급식 확대기(1991~2002)	143
1. 개요	143
2. 학교급식 확대	146
가. 학교급식 확대 경과	146
나. 특수학교 급식확대	147
다. 초등학교 급식확대	148
라.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152
마. 학교급식 확대 우수 사례	156
3. 중식지원 제도화	157
가. 학교에서의 중식지원	157
나. 방학, 토·공휴일의 급식지원	158
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 법제화	159
라. 중식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력	160
마. 연도별 중식지원 현황	162
4. 학교급식 관리	163
가. 학교급식 관리지침	163
나. 학교급식 운영의 실제	168
다. 위생관리	174
5.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노력	180
가.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	180
나. 학교 자체조리급식 형태의 다양화	181
다. 위탁급식	186
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189
마. 학교급식법령 주요 개정 내용	193
바. WFP의 학교급식 실태조사	196

목 차

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198
가. 실적	198
나.평가	200
VI. 학교급식 선진화기(2003년~)	203
1. 개요	203
2.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205
가. 학교급식법 개정 배경 및 경과	205
나. 개정법률 주요내용	208
다. 하위법령 정비	208
라. 2003년 이후의 학교급식법 주요 개정 내용	210
3. 무상급식 확대	215
가. 확대 배경	215
나. 확대 실적	216
4. 학교급식 관리	220
가. 2003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20
나. 2007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24
다. 학교급식 관리지침	225
5. 학교급식 선진화를 위한 노력	231
가. 우수식재료 지원제도 도입	231
나. 영양교사제도 도입	241
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243
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245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247



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253
가. 실적	253
나. 평가	256

VII. 현재의 학교급식 257

1. 학교급식 제도	257
2. 학교급식 실시현황	258
가.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258
나. 운영형태	259
다. 급식경비	260
라. 급식인력	265
마. 급식시설	266
3. 학교급식 관리	270
가. 영양관리	270
나. 식재료관리	275
다. 위생관리	278
라. 사무관리	279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281
4. 영양·식생활 교육	282
가. 급식연구 시범학교 및 영양·식생활 교육	282
나.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283

목 차

VIII. 결론 및 제언	289
1. 요약 및 결론	289
2. 제언	296
참고문헌	299
부 록	303

표목차



〈표 Ⅰ-1〉 인터뷰 대상자	3
〈표 Ⅰ-2〉 인터뷰 대상자별 질문 요지	4
〈표 Ⅰ-3〉 연구협의회 위원	5
〈표 Ⅱ-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53~1972)	8
〈표 Ⅱ-2〉 학교급식 외국원조 현황(1953~1972)	12
〈표 Ⅱ-3〉 서울시내 학교급식 실시현황(1959~1966)	20
〈표 Ⅱ-4〉 학교급식 제빵소 현황(1969)	21
〈표 Ⅱ-5〉 급식내용별 영양가 비교	24
〈표 Ⅱ-6〉 학교 급식비 예산과 내역(1962~1972)	31
〈표 Ⅱ-7〉 학교급식 연구학교 명단(1962)	39
〈표 Ⅱ-8〉 외국 원조에 의한 학교급식 실적(1953~1972)	47
〈표 Ⅱ-9〉 학교급식 학교·학생수 및 예산(1954~1972)	48
〈표 Ⅲ-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73~1980)	52
〈표 Ⅲ-2〉 학교급식의 구분	53
〈표 Ⅲ-3〉 1972년~1975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54
〈표 Ⅲ-4〉 1976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56
〈표 Ⅲ-5〉 1977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58
〈표 Ⅲ-6〉 1978년~1980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59
〈표 Ⅲ-7〉 학교급식방 식중독 사고 현황	60
〈표 Ⅲ-8〉 학교급식비 국고지원 기준	64
〈표 Ⅲ-9〉 학교급식규칙 주요 개정 내용 비교	70
〈표 Ⅲ-10〉 학교급식실시상의 위생관리 지침 주요 내용	72
〈표 Ⅲ-11〉 공동 조달되는 가공식품의 명세와 가격기준(1977.9.6.개정)	74
〈표 Ⅲ-12〉 도시 급식 시범학교(도시 자체조리 급식학교)의 현황	75
〈표 Ⅲ-13〉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급식현황	77
〈표 Ⅲ-14〉 자활급식 실험학교 지정현황(1972~1976)	78
〈표 Ⅲ-15〉 과릉초등학교 자활급식활동 연혁	82

표목차

〈표 Ⅲ-16〉 UNICEF의 학교 영양사업 지원 현황(1975~1978)	89
〈표 Ⅲ-17〉 학교급식 관계연수 및 협의회(1973~1980)	91
〈표 Ⅲ-18〉 학교급식관련 정책연구 현황(1973~1980)	93
〈표 Ⅲ-19〉 학교급식 표준식단	95
〈표 Ⅲ-20〉 초등학교 급식 실시현황(1973~1980)	98
〈표 Ⅲ-21〉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1973~1980)	98
〈표 Ⅳ-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81~1990)	102
〈표 Ⅳ-2〉 1981년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	104
〈표 Ⅳ-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	105
〈표 Ⅳ-4〉 2014년도 학교 우유급식 학교수 현황	110
〈표 Ⅳ-5〉 2014년도 학교 우유급식 학생수 현황	110
〈표 Ⅳ-6〉 학교 우유급식 실적(1980~2015)	111
〈표 Ⅳ-7〉 학교급식용 정부미 공급기준	113
〈표 Ⅳ-8〉 학교급식용 양곡의 저가공급 실적(1990~2016)	114
〈표 Ⅳ-9〉 표준식단(상품초등학교의 예, 1982)	126
〈표 Ⅳ-10〉 주간 기본 식단표(개포초등학교의 예, 1988)	127
〈표 Ⅳ-11〉 계절별 표준식단표(1986)	128
〈표 Ⅳ-12〉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1981, 1985, 1990)	130
〈표 Ⅳ-13〉 급식유형별 식품비 및 연료비 지원기준(1981~1990)	131
〈표 Ⅳ-14〉 1983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2
〈표 Ⅳ-15〉 학교급식 지도편람의 목차	134
〈표 Ⅳ-16〉 급식 유형별 초등학교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1981~1990)	140
〈표 Ⅳ-17〉 초등학교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1981~1990)	140
〈표 Ⅴ-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91~2002)	144
〈표 Ⅴ-2〉 1996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148
〈표 Ⅴ-3〉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산출 기초	149
〈표 Ⅴ-4〉 초등학교 급식 시설·설비 내역	149



〈표 V-5〉	고등학교 급식확대 유형 및 소요예산	154
〈표 V-6〉	저소득층 급식지원 사업 분담내역	161
〈표 V-7〉	학생 중식지원사업 현황(1988~2004)	162
〈표 V-8〉	영양기준량 산정표(산본초등학교의 예)	169
〈표 V-9〉	월 식단표(산본초등학교의 예)	170
〈표 V-10〉	공동조리에 의한 급식과정	184
〈표 V-11〉	초등학교의 공동조리 현황(1996)	185
〈표 V-12〉	초등학교 급식확대 실적(1991~2002)	198
〈표 V-13〉	중학교 급식확대 실적(1995~2002)	199
〈표 V-14〉	고등학교 급식확대 실적(1995~2002)	199
〈표 V-15〉	1991년~2002년 학교급식 시설비 재원별 현황	200
〈표 VI-1〉	학교급식 주요 연혁(2003~2015)	204
〈표 VI-2〉	2003년 국회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05
〈표 VI-3〉	2004년 정부발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207
〈표 VI-4〉	무상급식 확대 현황(2011~2016)	216
〈표 VI-5〉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대상(2016)	217
〈표 VI-6〉	시·도별 무상급식 학생수 및 재원부담 현황(2016)	218
〈표 VI-7〉	시·도별 학교급별 무상급식 단가 및 지원 예산(2015)	219
〈표 VI-8〉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세부 추진실적	223
〈표 VI-9〉	2007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24
〈표 VI-10〉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2006~2010)	235
〈표 VI-11〉	2012년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 및 학교 사용 현황	236
〈표 VI-12〉	2012년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사용 실적	237
〈표 VI-13〉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현황(2005~2016)	238
〈표 VI-1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240
〈표 VI-15〉	영양교사 정원확보 현황(국·공립학교)	243
〈표 VI-16〉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실적(2003~2006)	243

표목차

〈표 VI-17〉 학교급식 운영형태 비교(2003, 2015)	244
〈표 VI-18〉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2014)	246
〈표 VI-19〉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248
〈표 VI-20〉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	249
〈표 VI-21〉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 항목	251
〈표 VI-22〉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시 현황(2003, 2010, 2015)	253
〈표 VI-23〉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별 현황(2003~2015)	254
〈표 VI-24〉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 및 예산 현황(2010~2015)	255
〈표 VI-25〉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현황(2006~2010)	255
〈표 VII-1〉 2015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258
〈표 VII-2〉 2015년도 시·도별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259
〈표 VII-3〉 2015년도 지출항목별 학교급식 경비	260
〈표 VII-4〉 2015년도 부담주체별 학교급식 경비	261
〈표 VII-5〉 2015년도 시·도별, 부담주체별 급식비 부담현황	262
〈표 VII-6〉 2015년도 1식당 학교급식 평균 비용	263
〈표 VII-7〉 2015년도 1식당 무상급식 지원 단가	264
〈표 VII-8〉 2015년도 직종별 급식인력 배치 현황	265
〈표 VII-9〉 급식기기 일람표(효성초등학교의 예)	268
〈표 VII-10〉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270
〈표 VII-11〉 레인보우 7가지 테마 영양식단(상일초등학교의 예)	272
〈표 VII-12〉 아토피, 식품 알레르기 질환 학생 중식 관리 방안(서촌초등학교의 예)	274
〈표 VII-13〉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2012~2015)	276
〈표 VII-14〉 직영급식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2014)	277
〈표 VII-15〉 학교 영양교육 실적 현황(2014)	282
〈표 VII-16〉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운영현황(2014)	282
〈표 VIII-1〉 학교급식 발전 과정 요약표	290

그림목차



[그림 II-1] 연도별 외국원조 내용(1953~1972)	13
[그림 II-2] 학교급식 외원 양곡 관리 및 조작 체계도(보건사회부 중심)	25
[그림 II-3] 학교급식 외원 양곡 관리 및 조작 체계도(문교부 중심)	27
[그림 IV-1] 급식시설 배치도(개포초등학교의 예, 1984)	128
[그림 V-1] 조리실 평면도(산본초등학교의 예)	171
[그림 V-2] 학교급식 위생관리 특별대책	176
[그림 V-3] 학교급식의 HACCP 제도 도입 및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의 틀	177
[그림 V-4] 운영위탁급식 시행 절차	188
[그림 VI-1] 2003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21
[그림 VI-2] 연도별 학교급식 만족도(2007~2015)	252
[그림 VII-1] 연도별 급식예산 및 보호자 부담 비율(2007~2015)	263
[그림 VII-2] 2016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지원학생 비	264
[그림 VII-3] NEIS에서의 급식과 타 업무의 연계	279
[그림 VII-4] NEIS에서의 학교급식업무 시스템	280
[그림 VII-5] NEIS과 eaT와의 연계	280
[그림 VIII-1] 연도별 학교급별 학교급식 실시율(1978~2016)	292
[그림 VIII-2] 연도별 학교급식 위탁률(1998~2015)	293
[그림 VIII-3] 연도별 부담주체별 급식비(2000~2015)	293
[그림 VIII-4] 연도별 부담주체별 급식비 부담률(2000~2015)	294
[그림 VIII-5] 연도별 항목별 급식비(2000~2015)	295
[그림 VIII-6] 연도별 급식비 구성(2000~2015)	295

사진목차

[사진 II-1] 분유급식 관련기사<조선일보 1956.6.1.>	15
[사진 II-2] 서울시 우유급식관련 기사<조선일보 1959.7.11>	16
[사진 II-3] 옥수수죽 급식 사진	17
[사진 II-4] 옥수수죽 급식관련 기사<조선일보 1962.11.1>	18
[사진 II-5] 빵급식 중단관련 기사<조선일보 1968.6.29>	22
[사진 II-6] 문교부의 급식비 예산 책정관련 기사<조선일보 1967.11.11>	28
[사진 II-7] 미국 원고기관의 학교급식용 양곡 출고 중지관련 기사 <조선일보 1967.11.11>	42
[사진 II-8] 유상 학교급식 실시	46
[사진 III-1] 어린이 급식중단관련 기사<조선일보 1974.2.20>	55
[사진 III-2] 학교급식빵 식중독 기사<조선일보 1977.9.21>	61
[사진 III-3] 남곡초등학교 자활급식 및 생산활동 사진	81
[사진 III-4] 패릉초등학교의 현재 모습	82
[사진 III-5] 패릉초등학교 자활급식의 모습	83
[사진 III-6] 어도초등학교 학교급식 모습	84
[사진 III-7] 어도초등학교 학교급식품 사진(2016.11.25, 11.28)	84
[사진 III-8] 연수회 자료집	90
[사진 IV-1] 1980년대의 학교급식 사진	129
[사진 IV-2] 서울시교육청의 급식효과관련 기사<동아일보 1990.11.21.>	136
[사진 V-1] 조리시설(산본초등학교의 예)	171
[사진 V-2] 배식 및 식사	172
[사진 V-3] 급식관련 행사	173
[사진 V-4] 교실의 급식코너	173
[사진 V-5] 초등학교 급식활동(교동초등학교의 예)	174
[사진 V-6] 공동조리 운반차	182
[사진 V-7] 지자체 급식시설비 지원관련 기사<조선일보 1995.10.5>	189
[사진 VI-1]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시설개선 자료집 표지와 목차	246



[사진 VII-1] 급식실 사진(효성초등학교의 예)	266
[사진 VII-2] 조리실 평면도(효성초등학교의 예)	267
[사진 VII-3] 쌀사랑 농촌사랑 프로젝트 수업	283
[사진 VII-4] 교과와 연계한 영양교육	284
[사진 VII-5] 전통식생활문화부 활동	284
[사진 VII-6] 푸드아트 활용 영양교육	285
[사진 VII-7] 다문화가정 학부모 요리교실	285
[사진 VII-8] 튼튼이캠프 행사	286
[사진 VII-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 영양체험 행사	287
[사진 VII-10]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사회 영양체험 행사	288

부록목차

부록 1. 학교급식관련 주요 문서	303
가. 1952년 제95회 국무회의 보고안건	303
나. 1956년 UNICEF 문건	306
다. 1978년 문교부예규 제2호	308
라. 1979년 문교부예규 제3호	310
마. 1979년 문교부예규 제4호	315
부록 2. 학교급식법령	316
가. 1981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	316
나. 2006년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	321
다. 학교급식법령 제·개정 주요사항(1981~2015)	332
부록 3. 학교급식 주요 연혁(1953~2015)	344
부록 4. 연도별 학교급별 급식 실시현황	355
가. 초등학교 급식 실시현황	355
나. 중학교 급식 실시현황	357
다. 고등학교 급식 실시현황	358
라. 학교급식 운영형태별 현황	359
마. 연도별 학교급식 확대 현황(1992~2006)	360



부록 5. 연도별 외국원조 및 급식비지원 현황	361
가. 연도별 학교급식 외국원조 및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	361
나. 연도별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	363
다. 부담주체별 지출항목별 학교급식 예산 집행 현황	364
부록 6. 연도별 학교급식 형태 및 정부의 지원	366
가. 연도별 학교급식 형태 및 정부의 지원(1972~1983)	366
나. 정부의 급식비 지원(1984 ~2004)	371
부록 7. 연도별 학교급식 연수 및 시범·연구학교 현황	373
가. 학교급식 관계연수 및 협의회 개최	373
나. 연도별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현황	377
부록 8. 연도별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	378
가. 직종별 현황	378
나. 신분별 현황	379
부록 9. 연도별 학교급식 운영평가 우수 급식학교 명단	380
부록 10. 교육부 정책용역연구 과제 목록	381
부록 11. 중앙정부의 학교급식정책 담당부서 및 담당자	382



I 연구의 개요

01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2월 기준,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11,698개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614만 명에 이르고, 이에 5조 6천3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학교급식에 투입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양적인 규모에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학교급식 확대가 완료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 목표 수립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과거에 학교급식의 제도 도입과 확대를 위한 선임자들의 노력과 고민이 후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학교급식이 초 단기간에 정책적으로 확대되어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의 잦은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 청사 이전 등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과거 자료들이 담당부서에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보건(급식) 50년사와 60년사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학교급식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였으나, 이러한 과제에서 학교급식은 보건사업 중 한 사업으로서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해당 보고서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이 누락된 경우도 있고 일부 잘못된 해석도 존재한다.

역사라고 하면 현재와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 연구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에 일어난 특정사건이 현재나 미래에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에 닥치게 될 유사한 사건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선임자들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노력과 노하우를 포함한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에 관한 자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학교급식이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63년간의 학교급식관련 자료를 발굴, 정리하여 학교급식 발전사를 집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보고서’는 앞으로의 학교급식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학자들에게는 학교급식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02 연구방법

학교급식의 발전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조사, 인터뷰, 현장방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연구협의회를 운영하였다.

■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학술지, 단행본, 정부간행물 및 내부자료,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 자료는 도서관을 통한 도서대출, 온라인 학술정보시스템 이용, 국가기록원의 자료 열람 및 복사, 학교급식 원로의 자료기증, 교육청 소장자료 대여, 교육부의 내부자료 제공 등을 통해 얻었다.

그 중 서울대학교수원보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1978년 문교부 학교급식편찬위원회 발간의 ‘학교급식백서’는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처음 시작된 1953년부터 1978년 초까지의 학교급식 역사를 매우 잘 기록하고 있어 본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연구진에게 대여한 1970년대 초 농어촌 자활급식 시작시의 학교급식관련 정책연구보고서, 급식연수회 교재, 현장 사진 등과 이원모 선생님이 기증한 단행본 ‘학교급식 요람’, ‘사랑과 진실의 현장’은 당시 학교급식 실상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였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1950년대 초 외국원조에 의한 분유급식에 대한 외국기관 발행의 자료와 1970년대와 1980년대 학교급식 관리지침도 유용하게 활용하



였다. 일부 급식통계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 1977년까지는 학교급식백서를 우선으로, 1978년부터의 학교급식 실시현황 통계는 문교통계연보 자료와 교육부 내부자료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통계를 우선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같은 자료에서도 서로 다르게 기술된 경우 다른 자료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 인터뷰

문헌자료에만 의존하여 학교급식역사를 기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과거 중앙정부에서 학교급식 정책을 담당하였던 공무원, 학교현장에서 급식실무를 담당하였던 영양(교)사, 학교급식정책에 자문을 하였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 자료를 보충, 검증하였다. 인터뷰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단은 <표 1-1>과 같다.

<표 1-1> 인터뷰 대상자

성명	퇴직 전 또는 현 근무처 및 직위	면접 이유	면접 방법
김기철	(전)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과장	문교부 학교급식정책담당	대면 면접
김상욱	(전) 교육부 학교보건체육과장	문교부 학교급식정책담당	
변화봉	(전) 대전시교육청 학교보건계장	체육부 학교급식정책담당	
모수미	(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학교급식 정책 연구자	
양일선	(전)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학교급식 정책 연구자	
이원묘	(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계장	도시 급식시범학교 (서울 미동초등학교) 근무	
황순녀	(전) 서울 과학고등학교 영양교사	도시 급식시범학교 (서울 동명초등학교) 근무	
박란	(전) 경기 군포 산본초등학교 영양교사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경기도 가평군 운악초등학교) 근무	전화 면접
이혜인	(전) 경북 경주 경희초등학교 영양교사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 (경북 월성군 쾌릉초등학교) 근무	
장미숙	(현) 전남 진도초등학교 영양교사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전남 목포시 고화도 충무초등학교) 근무	

가능한 한 대면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은 두 명의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82년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문교부에서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했던 학교급식의 산 증인이며 개척자인 박준교 선생님도



인터뷰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학교급식업무 수행 중 ① 보람 있었던 일과 같았던 일, ② 힘들었던 일, ③ 아쉬움이 남는 일과 ④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⑤ 학교급식의 발전방향 ⑥ 학교급식 발전사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추가적으로 각 대상자별 특수성에 따른 고유의 질문을 준비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별 질문의 요지를 <표 I-2>에 정리하였다.

<표 I-2> 인터뷰 대상자별 질문 요지

대상자	질문
김기철	1. 초창기 학교급식 내용, 급식학교 선정기준, 학교 내에서의 조리, 배식활동 2. 빵급식 업체의 선정 등 3. 1977년 식중독 사고이후의 대처 4. 공동조리, 공동관리 도입 시기 및 배경 5. 영양사 및 조리사의 학교급식 배치
김상욱	1. 1992년 교육부 심포지엄 계획, 개최배경 2. 학교급식 후원회제도 도입 배경 및 과정 3. 농협급식 시범사업, 위탁급식제도 도입 등의 배경 4. 1995년 위생지도감독의 위임위탁 배경
변화봉	1. 체육부의 급식확대 및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2. 표준식단, 연수회, 해외연수 등의 배경 3. 문교부와의 업무 분담 및 업무수행의 어려움 4. 학교급식현황 책자 발간
모수미 양일선	1. 학교급식 제도화 및 정착관련 역할 및 연구 2.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 3. 학교급식의 개선점 및 나아갈 바
황순녀 이원모 박란 이혜인 장미숙	1. 초창기 급식실태는 - 급식내용, 급식시설, 종사자, 위생관리,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등 2. 급식에 대한 교사들의 협조 3. 급식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반응 4. 체육부, 문교부 체제하에서의 급식관리 5. 영양교사화

인터뷰는 본 연구의 공동 연구원인 조혜영 박사가 서울대학교 교내 회의실이나 외부의 레스토랑, 대상자의 자택 등에서 수행하였다. 면접 내용은 리코더에 녹음하였고 이후 리코더의 녹음을 재생하며 주요 내용을 확인, 요약했다.



■ 현장방문조사

1960년대, 1970년대 학교급식 현장실태를 알 수 있는 급식관련 사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도시지역 급식시범학교였던 교동초등학교와 농어촌자활급식 학교였던 쾌릉초등학교를 방문, 조사하였다. 또한 정부의 학교급식정책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과 대전기록관을 방문하여 문헌자료와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 연구협의회 운영

연구의 방향설정, 자료수집 협조와 보고서 기술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연구협의회 회의를 연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각각 1회씩 총 2회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는 연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교육청, 대한영양사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2차 회의는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하였는데 위원들 모두가 연구의 결과보고서 초안을 정독한 후 수정, 보완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구협의회의 위원 명단은 <표 I-3>와 같다.

<표 I-3> 연구협의회 위원

구분	성명/직위	근무처	비고
교육부	김동로 사무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연구협력관
교육청	이연숙 사무관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	
	김정순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지과	
대한영양사협회	김송이 사무총장	대한영양사회	
학교	김진숙 영양교사	서울 양목초등학교	



II 학교 구호급식기(1953~1972)

이 개요

이 시기는 외국의 원조에 의해 전국 초등학교의 결식아동과 영양실조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졌다. 원조는 캐나다 정부, UNICEF, CARE, USAID에 의해 총 40만여 톤의 탈지분유, 옥수수가루, 밀가루와 식용유가 학교에 지원되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분유급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옥수수가루가 지원되며 1965년까지 옥수수죽, 옥수수빵 급식이 이루어졌다. 밀가루가 지원되면서 1966년부터는 도시지역은 빵급식, 빵이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제비 급식과, 건빵급식 등이 이루어졌다.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외국 양곡원조에 의한 급식은 무상으로 이루어졌으나 1968년부터는 급식 희망자에 한하여 수익자 부담 급식이 병행되었다. 이 기간중 전국 초등학생의 약 1/3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 1970년에는 무상급식이 186만 명, 자담급식이 30만 명 총 216만 명에게 급식이 제공되었다.

한편 1968년, 외국 원조에 의한 구호급식을 영양급식으로 전환하고 자립급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지역 초등학교에 제빵기, 솥 등의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빵, 수프, 우유를 급식하는 시범학교를 17개교 운영하였다. 또한 1972년에 농촌형 자활급식 실험학교를 2개교 지정·운영하였다.

외국원조양곡의 조작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급식운영 관리업무는 문교부가 맡았다. 1970년 3월 이들 업무가 문교부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던 중 외국양곡원조는 종료되었다. 약 20년간의 외국 원조에 의한 빵급식이 우리 식문화에 맞지 않는 한계가



있었으나 학교급식 실시로 결식아동이 줄어들고 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학교급식관련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53~1972)

1953.	3	캐나다정부 원조의 탈지분유를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용으로 배정
	6	UNICEF에서 전재아동의 구호를 위해 탈지분유 지원 시작
	12	정부는 외국원조기관과 제휴하여 장기 학교급식계획 수립
1955.	2	문교부 의무교육비 예산에 급식비 책정 (급식 운영개선은 교육부, 외원양곡 관리 및 조작용은 사회부에서 담당)
1957.	7	UNICEF 사업 종료 및 CARE가 학교급식 지원시작
1961.	7	CARE에서 옥분 지원 시작
	10	급식연구학교 10개교 지정(시·도별 1개교)
1962.	2	서울시 우유조합에서 일부학교대상 우유급식 시작
1963.	5	부산에서 일괄 제빵(옥수수빵) 급식 실시
1964.		국고보조 중단으로 우유급식 중단
1965.	7	CARE에서 학교급식용 소맥분 지원 시작
1966.	7	CARE 지원 종료 및 USAID에 의한 지원시작(정부 사업), 식용유 지원시작
1967.	3	학교보건법 제정·공포(법률 1928호) (제12조에 국민학교 아동에게 급식실시 규정)
1968.	4	각 시·도에 17개 시범학교(급식) 설치
	10	서울에서 수익자부담의 급식실시
1969.	7	학교급식과 신설(대통령령 3990호)
1970.	2	학교급식담당관실로 개편(대통령령 4535호)
	3	급식양곡 관리 및 조작용무를 보건사회부로부터 문교부가 인수
	9	국고보조없이 자부담으로 우유급식 재개
1971.	3	학교급식시범학교 증설(4개교) ⇒ 총 21개교
1972.	7	외원급식양곡 지원종료(승인된 급식기간 : 1973.6.30.)
	10	자활급식실험학교(2개교) 설치(경기, 전남)



02 원조기관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외국의 원조에 의한 구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1953.3.29., 캐나다 정부에서 보내온 탈지분유 14만 파운드(63.5톤)를 초등학교 결식아동들의 급식용으로 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2년까지 20년간 UNICEF, CARE, USAID에서 약 40만여 톤의 탈지분유, 옥수수가루, 밀가루, 식용유를 학교급식에 지원하였다. 이렇게 외국 원조에 의한 급식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우리 정부의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952년 경상남도청 내의 임시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95회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결식아동 617,614명의 급식대책으로 양곡 61,762석, 부식비와 연료비 총 37억 원에 대한 예산을 조치해줄 것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부록 1의 가 참조).

■ UNICEF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정부가 서울로 복귀되자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구호물자 배정업무를 외국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정부(사회부)가 관리하고, 외국 원조기관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1953년 말 장기학교급식계획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1957년 6월까지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에 의한 전쟁재해 학교 아동의 구호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2만4천 톤의 탈지분유가 공급되어 학생 125만 명과 임산부 2만 5천 명이 혜택을 입었다. 탈지분유 공급량의 75%인 1만 8천 톤이 학교로 공급되었다.

당시 문교부에서는 탈지분유를 더운 물에 풀어 급식하도록 하였으나 탈지분유 조리에 대한 상식이 없었고, 물을 끓이는 가마솥 등 조리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리 소요되는 연료비, 인건비 등의 예산도 없어 일선학교에서는 아동에게 현물을 분배하는 등 원조물자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분유 원조기관인 UNICEF는 한국 국민의 식생활을 고려할 때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에 적합하지 않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1957년 6월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UNICEF는 지원을 종료하면서도 UNICEF가 지원한 탈지분유는 USDA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미국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에 미공법(美公法) 480호



제2관에 따라 우리나라에 매년 1만 8천 톤의 탈지분유를 지원하여 우유급식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부록 1의 나 참조).

■ CARE

다행히도 UNICEF의 뒤를 이어 CARE (Cooperative for Assistance and Relief Everywhere, 미국 세계민간구호협회)가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사업을 육성하고자 미공법 480호에 의해 구호 식품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요구호아동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영양실조인 초등학생들이었다.

CARE는 1957년 7월부터 1966년 6월까지 지원을 이어나갔다. 시작 당시에는 탈지분유만 지원하였으나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에는 마시는 우유보다는 먹는 식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1961년에는 분유 대신 옥수수가루를 공급하였다. 이후 1962년부터는 분유와 옥수수가루를 함께 공급해 주었다. 이것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옥수수죽 급식을 하거나 옥수수가루를 원료로 찌빵을 찌서 급식하였다. 1965년에는 밀가루도 지원하여 빵급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CARE가 지원하는 동안 지원 물자도 다양화되고 지원양도 증가되어 급식인원이 1957년 110만 명에서 1965년에는 186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급식의 질과 양도 개선되었다.

■ USAID

CARE의 뒤를 이어 미공법 480호 제2관에 따라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가 1966년 7월부터 1972년 6월까지 학교급식용 물자를 지원해 주었다. 1966년부터는 식용유도 지원하였으며 밀가루의 지원양도 크게 늘어났다. 대신 1969년부터 옥수수가루 지원은 중단되었다. 이 시기의 급식은 빵급식, 건빵급식, 수제비급식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급식인원도 20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USAID의 지원은 미공법 480호 제2관 202조에 의한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위해 한·미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 아래 2년간의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적 책임 아래 학교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자 USAID는 1967년 11월 우리 정부에 학교급식 양곡지원 동결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후 1968년 3월, 미공법



480호 제2관에 의한 한국에서의 학교급식 사업연장 신청 수정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1972년까지 미국의 원조는 계속되었다.

동 사업연장 신청 수정 계획서에서 한국정부는 학교급식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매년 수혜자수를 확대하여 1978년까지 급식대상을 초등학교 전체아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원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① 문교부에 학교급식 전담과를 설치할 것 ② 보건사회부로부터 급식물자 관리 및 배분업무를 문교부가 인수받아 직접 주관할 것 ③ 급식물자 국내 수송에 필요한 경비조달, 보충 자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사항들을 전제로 지원연장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사정으로 계획대로 부담하지 못했고 자립급식도 하지 못했다. 외국의 지원이 중단된 후 1973년 한해는 수익자 부담급식과 함께 잔여 외원 양곡으로 급식을 계속하면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면 외국 원조 없이도 학교급식을 자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UN 산하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에 1974~1976년의 3년간 양곡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73년 7월 30일 WFP 본부는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무상 원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미국의 의견이 있어 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20년간 학교급식에 지원되었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은 종료되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연도별, 지원기관별 학교급식 외국원조 현황은 <표 II-2>와 같다. 1957년부터 1972년까지 지원된 식품의 종류와 양의 변화는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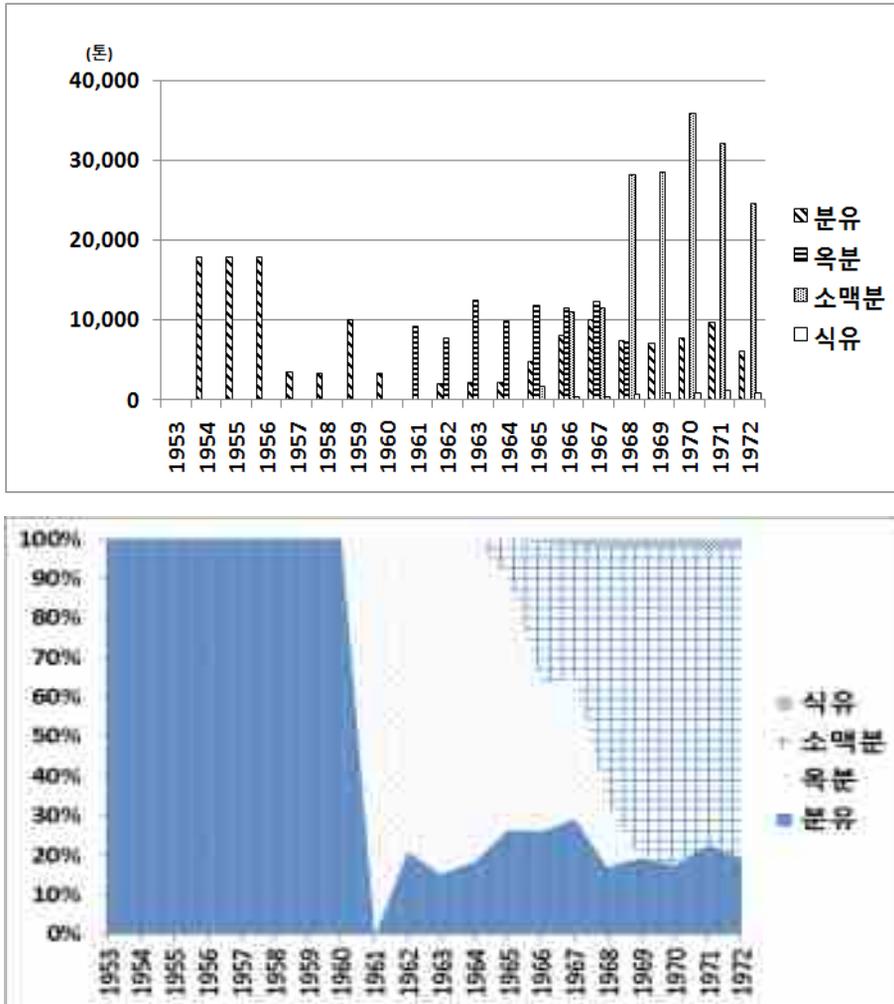
〈표 II-2〉 학교급식 외국원조 현황(1953~1972)

(단위: 톤)

연도	지원단체	분유 (탈지분유)	옥분 (옥수수가루)	소맥분 (밀가루)	식유 (식용유)	계
1953	캐나다 정부	63.5	-	-	-	63.5
1954	UNICEF	18,000	-	-	-	18,000
1955	UNICEF	18,000	-	-	-	18,000
1956	UNICEF	18,000	-	-	-	18,000
1957	UNICEF, CARE	3,552	-	-	-	3,552
1958	CARE	3,502	-	-	-	3,502
1959	CARE	10,194	-	-	-	10,194
1960	CARE	3,409	-	-	-	3,409
1961	CARE	-	9,374	-	-	9,374
1962	CARE	2,071	7,882	-	-	9,953
1963	CARE	2,257	12,607	-	-	14,864
1964	CARE	2,260	9,971	-	-	12,231
1965	CARE	4,957	11,952	1,804	-	18,713
1966	CARE, USAID	8,139	11,608	11,043	331	31,121
1967	USAID	10,081	12,417	11,662	474	34,634
1968	USAID	7,479	7,319	28,219	808	43,825
1969	USAID	7,128	-	28,614	933	36,675
1970	USAID	7,837	-	35,906	945	44,688
1971	USAID	9,812	-	32,121	1,295	43,228
1972	USAID	6,156	-	24,624	820	31,600
총계		142,897.5	83,130	173,993	5,606	405,626.5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UNICEF 자료(1956), 박준교(1986) 자료로부터 가공

II. 학교 구호급식기(1953 ~ 1972)



[그림 II-1] 연도별 외국원조 내용(1953~1972)



03 급식내용

가. 탈지분유 급식(1953~1960)

1953년에서 1960년까지는 학교급식용으로 탈지분유가 지원되었다. 원조기관에서는 점심시간에 1인당 35g씩 급식하도록 요청하였다. 1956년 6월 5일 문교부는 전국학사 행정담당과장회의에서 UNICEF의 영양부족 및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학교내에 급식 시설을 설치하고 급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비사정으로 시설이 없는 학교는 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부득이하게 분유를 분배하여 가정에서 적절히 급식하도록 하며, 각 학교장 책임하에 조속히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구호급식을 효과적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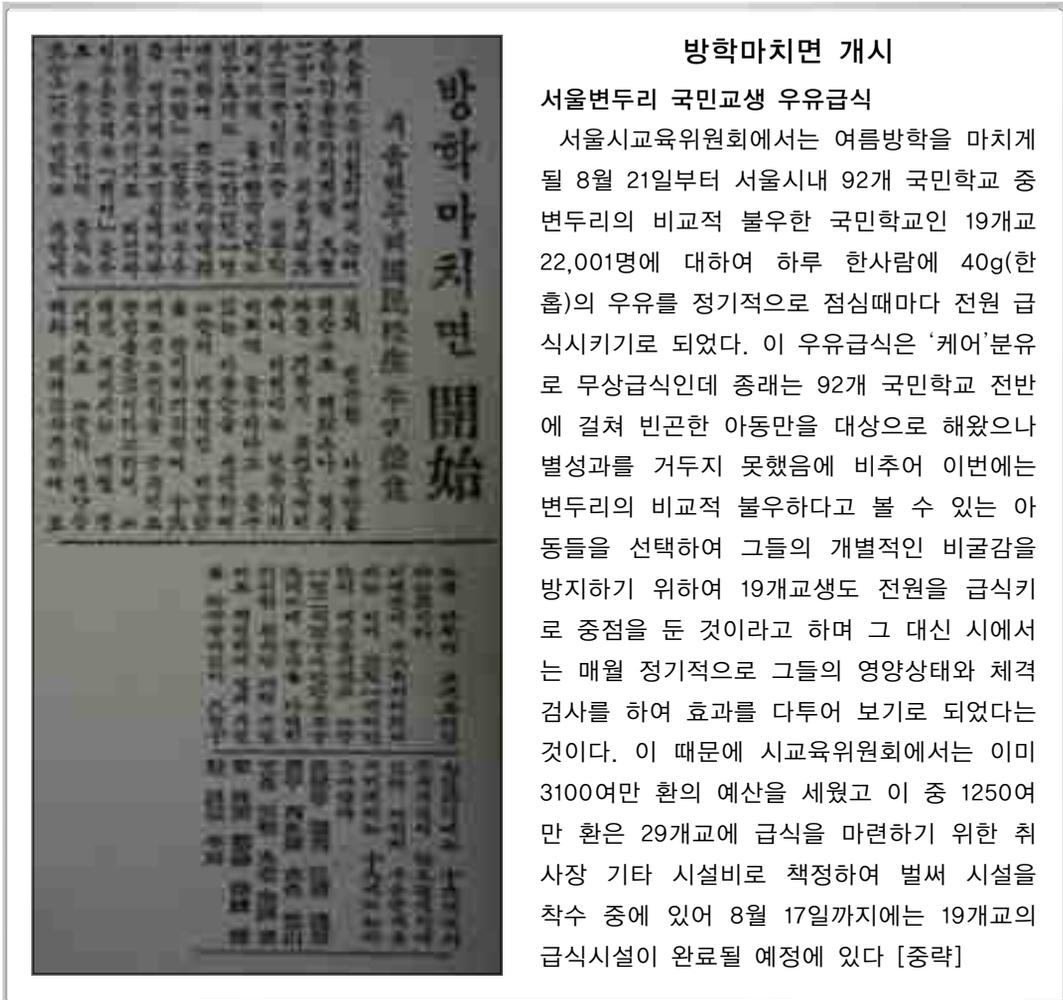
문교부는 1955년부터 급식시설비를 지원하였으나, 대다수의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한 보관시설, 급식시설 및 물을 끓이는 조리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급식을 위한 예산도 인력도 없어 사실상 학교급식과 영양보충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현물로 아동에게 분배하고 집에서 더운 물에 풀어 먹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분유를 몇일분을 한꺼번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동이 분유를 집에 돌아가는 중 잃어버리거나 가루로 그대로 먹고 설사를 하기도 하였다. 분유를 지급 받은 아동의 가정에서는 분유 활용방법을 몰라 분유를 돼지 사료로 주거나 풀을 썬어 벽지에 바르는 등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분유급식의 어려운 점이 [사진 II-1]의 당시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운동장 구석에 가마솥을 설치하고 선생님 또는 학교 직원이 물을 끓여 탈지분유를 풀어 물우유를 만들어 급식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이러한 우유는 반별로 한 양동이씩 배분하여 교실에서 마시도록 하였다. 일부 아동은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 우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장에서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설사를 하기도 하였다. 우유는 아동들의 발육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와 음료가 식사의 대용이 될 수 없다는 고정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급식용 식품으로의 효용성이 떨어졌다.



[사진 II-1] 분유급식 관련기사(조선일보 1956.6.1.)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959년 7월, 서울시내 92개 초등학교 전체의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변두리의 경제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초등학교 19개교 22,000명에게 1인당 40g씩 분유를 더운물에 풀어 만든 우유를 점심때마다 전원 급식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낙인감 방지를 위해 전교생에게 급식을 하고 시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영양상태와 체격검사를 실시하여 효과를 파악하도록 하였다[사진 II-2].



[사진 II-2] 서울시 우유급식관련 기사(조선일보 1959.7.11)



나. 옥수수죽, 옥수수빵 급식(1961~1965)

1) 옥수수죽 급식

1961년부터는 CARE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입맛에는 우유보다 곡류 급식이 맞을 것이 판단하고 옥수수가루를 공급해 주었다. 학교에서는 옥수수가루를 우유 끓이는데 넣거나 죽을 끓이거나 찌뽕을 찌서 급식하였다. 우유에 옥수수가루를 첨가함에 따라 유당불내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옥수수죽은 옥수수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약간의 분유와 조미료를 첨가하여 죽으로 조리한 것으로 환원우유(탈지분유를 물에 푼 것)에 비하여 아동들의 기호에 맞고 영양면에서도 우수하였다[사진 II-3][사진 II-4].



[사진 II-3] 옥수수죽 급식 사진

* 국가기록원 제공

그러나 죽을 끓이는데 필요한 연료, 시설, 인력 등이 문제였다. 연료구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기로 하였지만 국가 예산 형편상 연료비를 모두 부담할 수 없어 결국 아동들이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였다. 죽을 끓이는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교사들이 노력봉사를 하게 되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당번제로 옥수수죽을 끓이기도 하였다.

죽을 끓이는 시설로는 큰 솥을 설치하여 이용했다. 교실 부족으로 노천 수업,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실정에서 수백 수천 명용의 급식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사택의 부엌이나 학교근처 학부형의 집 부엌을 임차하기도 하고 노천급식소를 설치하거나 학교숙직실 부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급식 용기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가져오는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급식

성과 좋으나 양 모자라

「케아」 물자 필요량의 겨우 3할

대상은 재학생의 반

아침도 우유죽 먹는 아동 70명

시내 3십6만여 명의 국민학교 어린이 중에서 20개교 2만5천 명의 어린이들이 「케아」에서 원조해 준 가루우유와 옥수수가루로 만든 죽을 점심으로 먹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로 2,460 푸대의 옥수수가루와 1,960 푸대의 가루우유를 먹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주는 우유죽을 먹는 어린이의 태반이 결식아동이다.

금호국민학교서 연구발표회

시교육국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급식아동의 체위 비교표를 작성 중에 있어 그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급식지정교에서는 성과가 좋다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학교에서 국비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불비한 시설과 부족한 자료로 미국의 원조를 얻어 극소수 어린이들의 배고픈 것을 덜어주는 정도의 실정이다.

31일 오전 11시 반에 문교부 지정급식연구학교인 성동구 금호국민학교에서 각 학교 양호교사와 급식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효과적인 급식을 실시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가 있었다.

금호국민학교는 6,229명의 재적생 가운데 「식생활이 힘든 정도」의 가정환경인 3천2백여 명에게 매일 급식하고 있는데 3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거의 모두가 한양재기의 노오란죽을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있었다. 4학년 이상은 모두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점심을 집에서 가져오는 어린이와 빈 도시락만 가져와서 죽을 받아먹는 어린이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 두 끼를 굶는 약 70명의 어린이는 아침식사도 학교에서 한다고 했다.

「케아」에서 배정하는 급식물자는 실제 필요한 양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급식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며 사탕과 같은 조미료가 없는 것이 흠이어서 좀 더 많은 분량의 물자배정을 바란다고 지적됐다. 학부모들의 8할이 학교급식에 찬동한다고 설문에 답했으며 급식으로 미치는 영향은 18%가 「가끔 배탈이 난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급식에 따른 아동습성을 연구한 결과 일정한 시간에 한정된 양의 식사를 즐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나 양치질 또는 식사 전후의 인사 등 버릇이 좋아졌으나 일부 극빈아동에게는 열등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의리심을 기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사진 II-4] 옥수수죽 급식관련 기사(조선일보 1962.11.1)



2) 옥수수빵 급식

섬마을이나 산간오지에 있는 벽지학교는 연료비, 시설비, 인건비 외에도 양곡운반비도 큰 문제였다. 원래 학교급식용 양곡은 대한통운에서 수혜지까지 수송하되 대한통운에서 화물 최소단위를 5톤(자동차 적재량)으로 약정하고 자동차가 운행되는 장소까지만 수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서나 오지에 있는 학교는 수송량도 5톤 미만이고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하여 인근의 자동차 하치장(대체로 시·군교육청)에서 인력으로 학교까지 양곡을 운반해야 했다.

그러나 책정된 운반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간혹 운반비를 지불하기 위해 급식 양곡 일부를 시중에 판매하려다 학교급식양곡 부정 유출이라 하여 학교장이 징계 등 책임을 져야하는 일도 있었다. 섬에 위치한 한 학교는 배정된 양곡을 다 팔아도 운반비가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예산, 시설,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이 제빵급식이었다.

제빵급식은 1963년, 옥수수빵을 일괄 제조 공급하는 급식으로 부산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당시는 교육자치제가 폐지되어 시장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였던 시기로 김현옥 부산시장은 초등학교 급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소의 급식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량산출의 법칙을 인용하여 제빵급식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때 급식되었던 빵은 옥수수가루 105g, 분유 30g에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물로 반죽하여 찌서 만든 옥수수떡과 같은 것이었다. 이 식품은 아동들이 좋아했고 급식에 간편하며 공동 위탁조리 방식이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리하던 종래의 번잡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 인력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이러한 제빵 급식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아 2, 3년 내에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1963년 부산시 66개교 9만 5천 명의 아동에게 실시된 제빵급식은 1964년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천안, 전주, 군산, 광주, 목포, 여수, 원주, 대구 등 18개 시지역 359개교에서 475,914명의 아동에게 실시되었으며, 1966년 6월에는 군지역까지 보급되어 1,465개교 1,252,053명에게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제빵급식이 확대되었던 것은 1962년부터 문교부에서 제빵 가공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일괄 제빵 공급에 의한 급식방법은 일부 중도시 이상의 학교에서는 가능했지만 농·어촌, 도서·벽지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빵 자체의 질에 있어서 입자가 큰 옥수수는 수분의 흡수율이 클 뿐 아니라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만든 후 얼마 되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 버리거나 쉽게 쉬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돌과 같은 학교급식 빵”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분유급식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빈곤가정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완전한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하는 학교를 1959년에 19개교, 1961년에 20개교, 1963년에 52개로 늘려 나갔으나 인구급증에 따른 급식시설비를 감당할 만한 예산이 여의치 못하여 1964년부터 제빵급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표 II-3>.

<표 II-3> 서울시내 학교급식 실시현황(1959~1966)

연도별	급식학교수 (교)	예산현황(천 원)		급식인원 (명)	급식형태
		예산액	결산액		
1959	19	3,193	2,479	22,243	학교내 급식시설 활용
1960	19	2,176	1,728	22,243	
1961	20	2,196	2,076	31,272	
1962	20	1,514	1,444	31,272	
1963	52	6,082	5,418	65,874	
1964	136	9,108	7,730	178,196	제빵급식
1965	139	14,292	13,453	211,000	
1966	140	18,838	18,275	225,000	

* 출처 : 성기향, 지난날의 학교급식과 오늘의 자세, 한국영양학회지, 1972



다. 밀가루빵, 수제비 및 건빵 급식(1966~1972)

1) 밀가루빵 급식

옥수수빵 급식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학교급식은 가능한 한 제빵에 의한 빵 급식을 위주로 하되 빵의 질을 높이고 공급지역 확대에 노력이 집중되었다. 외국의 원조기관이었던 CARE에서도 옥수수빵의 단점을 알게 되면서 1965년부터는 밀가루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7월부터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미국 민간단체사업(CARE 지원)에서 미 정부사업(USAID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밀가루 이외에 제빵에 소요되는 식용유까지 원조하여 주어 제빵 원료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1968년부터는 밀가루 지원이 크게 증가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1967년 전체 초등학생 63만 명 중 약 절반인 30만 3천 명에게 빵급식이 제공되었다. 1968년에는 전국 대다수의 학교가 위탁 제빵급식을 하였다. 시·군단위의 교육청이 개인기업체인 제빵공장과 계약하여 각급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도록 하였다. 빵을 만드는 원료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은 제빵 가공수수료만을 지급하였다. 1969년의 학교급식 제빵소 현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학교급식 제빵소 현황(1969)

생산량	1,000	3,000	5,000	10,000	20,000	30,000	50,000	10만 이상	계	시군 총수
	3,000	5,000	10,000	20,000	30,000	50,000	100,000			
제빵소	8	14	63	47	9	2	1	1	145	170

* 출처 : 성기항 편저, 학교급식요람(1970)

그러나 제빵 지식과 공장시설 문제, 제빵가공 공급 수수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제빵업자는 1968년도 제조비가 적다며 결식아동 14만 명의 학교급식용 빵을 만들 밀가루를 6개월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급식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968년 7월부터는 급식빵 제조비를 개당 97전5리에서 3전5리 인상하여 1원 1전으로 하였으며, 제과업자에게는 맡기지 않고 있던 방침을 바꾸어 제과업자에게도 제조승인을 하기도 하였다[사진 II-5].



14만 결식아동에게 줄 「국민교생 빵」 밀가루만 목힌 채 급식중단

**제조비 적어 제빵외면
시교위의 재조종 건의를 문교부선 묵살**

서울시내 초등 14만 명의 급식대상 어린이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빵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적인 차질과 문교부의 무성의로 금년 들어 6개월째 밀가루 등 원료만 창고에 쌓여 있을 뿐, 6월 말까지 한 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시교위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교위는 해마다 결식아동에게 주어오던 빵 급식을

을 위해 금년에는 14만 명분의 원조를 책정, 유솜(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으로부터 1차적으로 지난 1월과 4월에 6개월분의 밀가루 8백 톤과 곡분, 분유, 식용유등을 배정받고, 문교부에선 2천 4백만 원의 제빵비까지 배정받았으나 업자와의 제조비 문제로 아직까지 빵1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교위는 문교부에서 1개당 97전5리로 책정한 제빵 수수료 예산에 따라 두 번이나 입찰공고를 냈으나 수수료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유찰, 빵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시교위는 5월 말에야 이 사실을 문교부에 알리고 제빵 수수료의 재조정을 의뢰했으나 문교부는 자세한 검토도 없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교위의 건의를 묵살, 14만 어린이들은 2년 동안 점심으로 대용해오던 빵을 반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점심을 굶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II-5] 빵급식 중단관련 기사(조선일보 1968.6.29)

제빵급식은 관리에 편리하고 학교별 조리라는 번잡을 피할 수 있다하여 우후죽순으로 각 시·군에서 실시하였지만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위탁받은 업자 모두 제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대부분의 담당공무원이 제빵의 합리적인 배합비율, 제조과정, 적절한 기본 시설·설비를 몰랐기 때문에 주도적 입장에서 지도·감독이 불가능했다. 또한 제빵 가공 공급 예산단가는 원가에 훨씬 못미쳐 기업의 이윤보장이 없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통해 제빵을 공장규모로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식품공업 육성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2) 수제비 급식 및 건빵 급식

제빵 급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제비 급식이 이루어졌다. 수제비 급식은 종래의 옥수수죽 급식시설을 그대로 사용했고 인건비나 연료비 부족 등의 옥수수죽 급식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1968년부터는 제빵 공장에서 건빵을 제조하여 공급하게 되었다. 결국 학교급식에서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빵·건빵 등의 식품을 일괄 공급하게 된 것이다.

라. 시범급식(1968~1972)

문교부는 학교급식방법의 개선 모색, 구호급식을 영양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 및 준비,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자립급식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1968년 전국 시·도에 17개의 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는 당시 양곡을 원조하고 있던 USAID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였다.

시범학교의 솔·오븐(제빵기)·보일러 등 조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문교부에서 지원하였다. 시범학교는 교육감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양곡 외에 자체에서 다른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학교로 학생 1인당 급식 부담금으로 1식에 10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급식의 기준 영양가는 1962년에 한국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식량농업기구)에서 정한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1/3인 1식당 권장량을 충족하며, 빵, 우유, 수프로 구성된 기본메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빵은 밀가루 120g, 분유 7g, 식유 4g을 주원료로 만들고, 우유는 23g의 분유를 더운물에 푼 것이며, 계절에 따라 변화 있게 조리한 각종 수프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급식대상자와 인원은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정하며, 식사지도는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식사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위생관념 배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마. 급식내용별 영양 비교

탈지분유를 이용한 분유급식은 당시 식생활에서 부족했던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보충해 주는데 공헌하였으나 우리나라 아동들의 식문화에 맞지 않았고 영양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었을 뿐 완전 영양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의 분유급식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유를 즐겨 마시는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옥수수가루를 이용한 옥수수죽 급식은 당시의 조리시설과 운영 관리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옥수수가루 105g과 탈지분유 30g을 섞어 죽을 만들었기에 영양면에서 분유급식보다는 우수했다. 옥수수죽 급식의 1회 제공량에는 분유급식과 비교하여 칼슘과 비타민 B2는 적었지만 기타 영양소는 훨씬 많았고 지방과 비타민 B1, 비타민 B2는 한 끼 권장량보다 많았다.

밀가루빵 급식은 한 끼의 권장량에는 못 미치는 열량과 영양소를 제공했지만 분유급식이나 옥수수죽 급식에 비하여 영양적인 측면에서 우수했다. 밀가루빵의 경우 주재료인 밀가루의 양(100g 또는 120g)과 부재료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제공하는 영양소가 달라졌다.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빵의 열량은 386~514 kcal로 다양하였다.

학교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주식으로 식빵을 부식으로 국이나 수프를 제공하고 영양음료로 탈지분유를 끓인 물에 타서 만든 우유를 주는 시범급식의 경우 칼로리면에서나 영양소의 균형면에서 한 끼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급식이 되었다<표 II-5>.

<표 II-5> 급식내용별 영양가 비교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비타민 A(I.U)	비타민 B1(mg)	비타민 B2(mg)	비타민 C(mg)	
탈지분유 35g (물우유)	125.7	12.5	0.35	455.0	14.0	0.123	0.686	2.5	
옥수수죽	215.0	17.6	12.32	69.8	451.5	0.405	0.543	0.2	
식빵	514.2	16.4	8.90	142.8	115.1	1.004	0.216	0.5	
시범급식	식빵	523.3	16.3	7.96	159.6	99.2	0.350	0.231	0.6
	수프	75.0	3.0	1.89	21.4	4273.4	0.198	0.215	19.6
	계	598.3	19.3	9.85	181.0	4372.6	0.548	0.446	20.1
도시락	619	16	3.2	55	658	0.56	0.29	9.7	
권장량	830	25	11	330	660	0.4	0.5	2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자료를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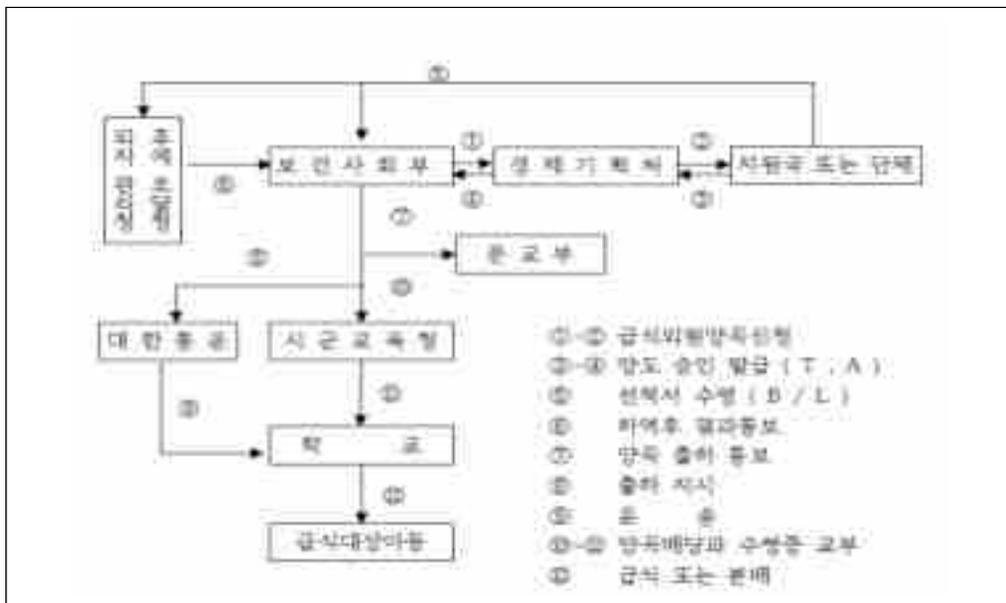


04 학교급식 관리

가. 외원 양곡관리

학교급식은 외원 양곡지원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학교급식용 양곡관리는 외원 양곡을 관리하는 사회부가 담당하였다. 1957년까지는 사회부에서 신청한 급식용 외원 양곡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되면 외자관리청에서 하역하고 그 결과를 사회부에 통보하였다. 사회부는 학교에 배부되기까지의 양곡관리 및 국내 조작 업무를 전담하였다. 1957년 9월 9일,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됨에 따라 동 업무는 보건사회부 소관이 되었다.

문교부는 외원 양곡이 시·도교육청에 도착된 이후 학교나 제빵업자에게 분배하여 급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고 감독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용 외원 양곡의 관리와 학교급식의 관리는 보건사회부와 문교부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외원 양곡의 관리 및 조작 체계는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학교급식 외원 양곡 관리 및 조작 체계도(보건사회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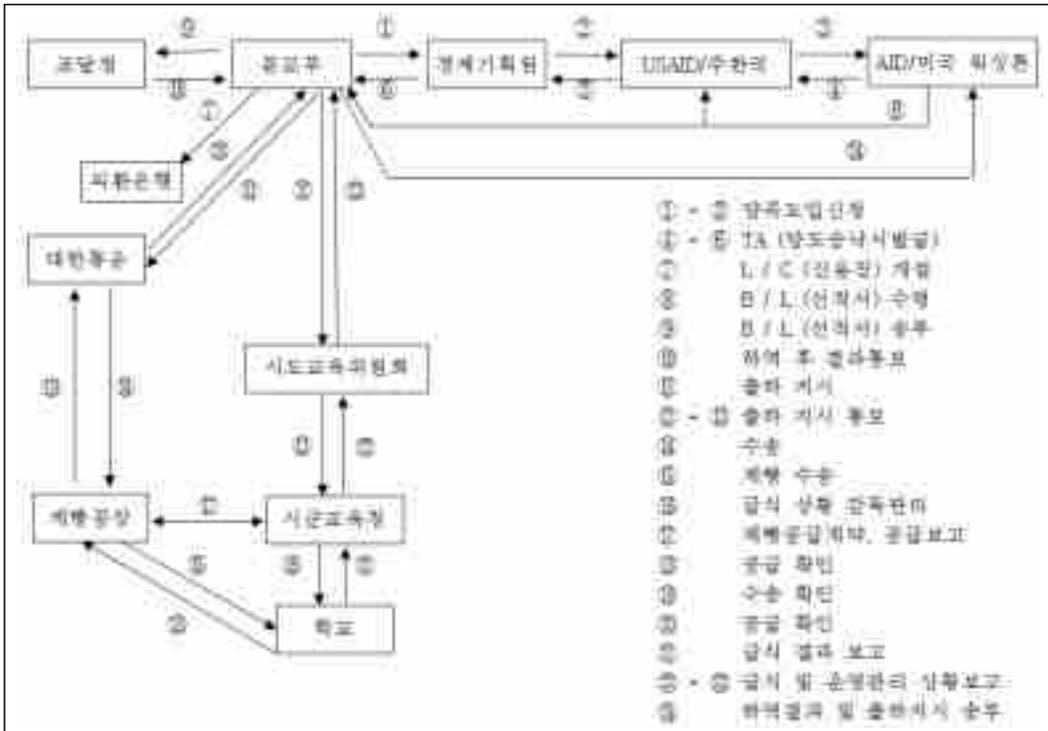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이와 같은 양곡관리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① 학교급식은 외원 양곡의 소비로 그치고 진정한 교육적 의미에서 운영되거나 관리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② 외원 양곡의 분배에 있어 물자가 도착되지 않거나 손실, 수송이 지연된 경우 문교부는 보건사회부를 통하지 않고는 대한통운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한 간접적인 책임추궁은 대한통운의 빈번한 과실을 강력히 응징할 수가 없었다.
- ③ 외원 양곡이 학교에 분배되기까지 조작과정 또는 그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 ④ 문교부 학교급식비에 대한 예산 지원과 보건사회부의 학교급식 양곡 조작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두 부처에서 각기 이원적으로 집행하여 운영상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 ⑤ 양곡조작이나 분배가 문교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교급식 업무수행이 원활치 못하였으며 문교부의 학교급식 수혜자 수와 보건사회부가 배정한 양곡 수량 사이에 사무착오로 인한 격차가 생기곤 하여 지역에 따라 배달 과잉과 부족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점에 대해 우리 정부와 지원기관의 개선 요구가 있어 1970년 3월을 기해 학교급식용 외원양곡의 관리 및 조작 업무가 문교부로 이관되었다[그림 II-3]. 때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관리조작·운영의 제반업무를 일원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으며 이후부터는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학교급식을 계획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외원양곡의 조작 관리 업무가 문교부를 통해 본 궤도에 오를 즈음 외원은 종결되어 새로운 학교급식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II-3] 학교급식 외원 양곡 관리 및 조작 체계도(문교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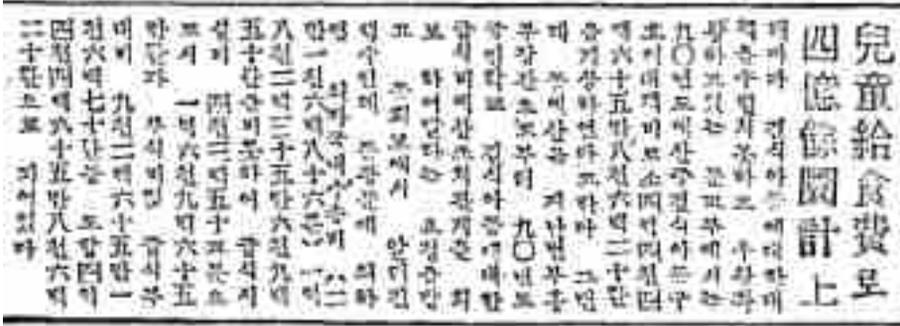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나. 학교급식 관리조직 및 업무

1) 문교부

학교급식 운영은 각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를 위한 급식행정은 중앙부처에서는 문교부가, 지방조직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청이 담당하였다. 학교급식을 시작한 처음 2년 동안은 운영관리와 행정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5년 문교부 의무교육비 예산에 급식비(급식시설비, 부식비 및 급식부대비)를 책정한 후부터 학교급식 운영개선에 문교부가 주무부처로서 행정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사진 II-6].



아동급식비로 4억여 원 계상 <1956.9.24. 조선일보>

해마다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치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문교부에서는 90년(1957년)도 예산 중 결식아동 구호대책비로 4억 4465만 8620환을 계상하였다고 한다. 동 예산은 부흥부장관이 요청한 금액으로 외자국대수송비(21,686톤) 1억 8235만 6959환을 비롯하여 급식시설비 4,250교분으로서 1억 6965만 환과 부식비 및 급식부대비 9265만 1670 환 등 도합 4억 4465만 8620환으로 되어있다.

[사진 II-6] 문교부의 급식비 예산 책정관련 기사<조선일보 1967.11.11>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00호에 따른 문교부 직제 전면개편으로 문화국 체육과 학교보건계에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학교급식관련 주요 업무는 ① 학교 급식비 예산의 지원과 관리 ② 학교급식 운영의 합리화 지도와 감독 ③ 국민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통계와 대책 수립 ④ 기타 급식 후생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었다.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180호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학교급식업무는 체육국 소관이 되었다. 이시기에 급식관리 행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문교부의 업무중 학교급식 업무를 중요 사업으로 정하고 급식비 예산의 증액을 꾀했다. 1962년에는 외원양곡을 학교급식용 빵으로 가공하는 수수료 34,086천 원을 문교부 의무교육비예산에 학교급식비로 편성하였다. 또한 전국에 10개 급식연구학교를 지정하여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1963년 5월에 부산시를 중심으로 일괄 제빵급식이라는 급식관리상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교육계의 인식이 새로워졌고 학교급식을 교육적인 각도에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게 되었다.



1963년 12월 16일 각령 제1737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학교급식업무는 문예체육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1967년 3월 30일에는 법률 제1928호로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제12조에 “학교의 장은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에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위한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12조에 대한 문교부령은 오랫동안 마련되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1977년 1월 1일, 문교부령 제401호로 학교급식 규칙이 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문교부는 시행규칙에 가름하여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지침과 세부방침을 시달하였다.

■ 학교급식과 신설

196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3512호에 따른 문교부 직제개편으로 학교급식업무는 문교부 문화체육국에서 사회체육국 소관이 되었다. 1969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3990호로 문교부 사회체육국 소속으로 학교급식과를 신설하여 처음으로 독립된 전담과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1968년 3월, USAID에 제출한 학교급식 사업연장 신청 수정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학교급식과는 급식계획 수립, 급식에 관한 자료수집, 급식 사무에 관한 지도와 감독, 급식 물자의 관리와 수송, 급식시설의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 급식과에 관리계와 급식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하였다. 그러나 반년 만인 1970년 1월 대통령령 제4535호로 사회체육국내 학교급식과가 보통교육국의 학교급식 담당관실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급식양곡의 관리 및 국내조작 업무를 문교부가 보건사회부로부터 완전히 인수하였다. 이는 미공법 480호 제2관 사업의 수정계획에 따른 학교급식 계획 합의 서명의뢰 조문(1969.3.17.일자)에 따라 “학교급식 물자는 문교부가 직접 조작하거나 물자 조작비 지불을 담당하도록” USAID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요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문교부와 보건사회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1970년 3월을 기해 급식 양곡의 조작 업무를 문교부가 완전 이양 받았다. 이로써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리 및 조작 업무가 모두 문교부 보통교육국내 학교급식 담당관실의 주관업무로 일원화된 것이다.



2) 지방교육 행정기관

급식현장과 직접 관계를 갖는 곳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1972년 개정된 시·도교육위원회 직제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학무국의 체육과에서, 부산직할시와 도(제주도 제외)는 학무국의 사회체육과에서, 제주도는 학무국의 초등교육과에서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부산의 교육구청과 시·군교육청에서는 학무과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 기관이 담당한 급식업무에는 ① 학교급식용 식빵 제조·공급·계약 체결, ② 양곡인수, ③ 양곡 배합 ④ 양곡 보관현황 확인, ⑤ 급식관리, ⑥ 제조 운반 수수료 지불, ⑦ 공포대 처리, ⑧ 학교급식 시범학교 지도, ⑨ 수익자 부담 급식의 부담 한도액 승인, ⑩ 급식 시설 관리 지도 감독, ⑪ 학교급식 제 보고 및 통계 자료 수집 보고, ⑫ 학교급식 개선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재정부담

1953년부터 1969년까지는 외원 양곡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양곡의 국내 조작, 수송과 보관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1970년부터는 해상운임의 10%에 이르는 항만사용료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고, 협정 최종 연도인 1972년도에는 항만사용료 이외 해상 운임의 50%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급식 재료인 외원 양곡의 하역과 조작업무는 사회부가 주관하면서 전액 국고로 집행되었지만, 시·군 교육청에 양곡이 운반된 후에는 그 관리와 급식 운영경비 등은 문교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1955년부터 문교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문교부의 급식비 예산은 실제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에 훨씬 미달하였다.

당시 사정으로는 급식 시설이나 연료비, 조리 인건비 등 소요재원을 아동들에게 수익자 부담으로 기대할 수도 없어서 배정된 양곡을 현물로 분배해 주는 사태도 일어났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62년엔 학교급식을 문교부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매년 학교급식비를 증액하였다<표 II-6>.



〈표 II-6〉 학교 급식비 예산과 내역(1962~1972)

연도	급식 학교수	무상급식 아동수	학교급식비 예산(천 원)				1인당 연 평균 지원액	
			계	양곡 조작비	제빵 수수료	국고 양곡대		
1962	4,648	1,357,896	34,855	-	0.25	34,855	-	25원
1963	4,762	1,778,546	44,424	-	0.25	44,424	-	25원
1964	4,897	1,812,259	47,095	-	0.25	47,095	-	26원
1965	5,125	1,860,581	126,671	-	0.375	126,671	-	69원
1966	5,552	1,912,290	161,554	-	0.50	161,554	-	84원
1967	5,892	2,000,000	343,170	-	0.76	343,170	-	172원
1968	5,495	2,000,000	365,300	-	0.978	365,300	-	183원
1969	5,705	2,000,000	506,343	58,343	1.12	448,000	-	253원
1970	5,717	1,860,000	859,127	245,527	1.50	613,600	-	462원
1971	5,983	1,650,000	778,812	197,816	2.00	580,996	-	472원
1972	6,097	1,200,000	1,901,568	387,568	2.50	500,000	1,014,000	1,585원

* 양곡조작비 : 향만사용료, 해운비, 국내조작비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또한, 1968년 10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수립된 「급식 개선 계획」에 따라 일반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자부담의 학교급식이 시작되었다.

라. 학교급식 관리를 위한 지침

이 시기의 학교급식 관리 실태는 문교부에서 학교급식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고 이 끌어왔던 성기항 사무관 편저로 1970년에 발간된 “학교급식요람”에 잘 나타나 있다. 학교급식 관리지침은 1970년도 학교급식사업의 목적과 방침을 규정한 ‘1970년도 학교급식 사업지침’, 외국원조에 의한 제빵급식, 자부담급식, 시범학교 급식 등에 대한 관리방법을 제시한 ‘19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제빵 공급관련 지역의 설정 및 관할, 학교급식용 식품공장 설비기준 등을 규정한 ‘1970년도 학교급식용 식품 제조 공급계약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동 지침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1970년도 학교급식 사업지침

1. 목적

학교급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FY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과 학교급식 제품공급 계약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급식사업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성장기 아동의 체위향상과 영양관리 등 급식운영의 목표 달성을 도모코자 한다.

2. 기본 방침

- (1) 급식용 식품(식빵, 건빵)의 품질향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한다.
- (2) 도서벽지의 국민학교에 대하여는 건빵을 제조공급하여 적기 급식을 실시한다.
- (3) 식품(식빵, 건빵) 제조 공급에 소요되는 최소의 절대시설을 완비하여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토록 한다.
- (4) 위생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5) 외원물자에 의한 급식일 경우 급식대상 아동은 도서, 벽지, 농어촌 중심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자립급식일 경우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성기항 편저, 학교급식요람(1970)

19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I. 외원물자에 의한 급식

1. 급식 실시기준

- 대상자 :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에 배정된 급식인원의 지역별 배정에 있어 도서벽지는 재적학생 전원, 기타지역은 농어촌, 중소도시(시, 읍), 대도시(6대 도시) 순으로 체감하면서 배정한다. 학교별 급식 대상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아동에게는 연간 계속적으로 급식한다.
- 급식 회수 : 학교급식은 수업일에 한하며,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여, 월 평균 20회, 연간 평균 200회를 기준으로 한다.
- 1970년도 학교급식비 배정내역
1인당 1회, 1,534원, 연간(306원 80전)으로, 제품(식빵, 건빵) 제조공급 수수료 및 자체조리 급식, 학교급식의 경비로 사용한다. 지역적으로 식빵품질 향상과 합리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식빵의 제조단가를 수익자부담으로 인상코자 할 때는 당해 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2. 물자공급

- 1970년도 학교급식 물자도입 예정
전·후반기 합계 54,701톤(밀가루 42,624톤, 분유 10,656톤, 식용유 1,421톤)



19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계속)

- 물자수송 : 학교급식 물자의 적기 수송 및 관리를 위해 1970년도부터 급식물자의 조작업무를 문교부가 직접 담당한다. 문교부가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물자배정 내역과 출하지시를 동시에 통지한다. 물자수송이 지연될 경우는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즉시 수송을 요청하고 문교부에 보고한다. 자체조리 급식학교의 물자수송은 시·군교육청에서 일괄 수송교를 정하여 수송토록 하고 당해 급식학교까지의 수송비는 공포대 처리대금으로 충당한다.
- 인수 : 물자의 인수시에는 당해 교육청(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의 급식담당 책임자가 입회토록 한다. 제품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교육청에서는 급식용 물자를 지정된 창고에 일괄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며, 제품급식을 새로 시작할 때 각 학교에 보유중인 물자 재고량은 회수하여 제품 공급토록 한다.
- 출고 : 급식물자는 1일 사용량만을 당해 시군교육청 급식담당 책임자가 출고하여 사용토록 한다. 물자는 오랫동안 보관된 물자를 출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식품의 제조

■ 제조사양

제조사양중 관급자재 변경은 엄격히 금하며 만약 물자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시도교육위원회 관하 시군교육청 재고양곡을 조정하여 물자의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식빵 제조사양〉

(단위 : g)

관급 자재			기타 자재		물
밀가루	분유	식용유	이스트	소금	
120	15	4	2	2.4	70

* 소맥분 중에는 마른가루 포함. 식용유 중에는 기구 도장용을 포함

〈건빵 제조사양〉

(단위 : g)

관급 자재			기타 자재				물
밀가루	분유	식용유	식염	암모니아	설탕	발효제	
120	15	4	2	0.5		1	45%

* 소맥분 중에는 마른가루 포함. 식용유 중에는 기구 도장용을 포함

■ 공장관리

- 제빵공장은 관급자재와 동종의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업을 금한다.
- 제빵공장에 책임있는 급식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물자보관상태를 항상 파악하며, 출고, 제조 과정 식빵 포장상태를 입회토록 한다.
- 제빵공장 위치를 환경위생이 좋은 장소에 설치, 종업원 보건상태를 철저히 감독한다.
- 제빵공장의 시설은 계약지침에 따라 완비토록할 것이며 특히 배합, 정형과정의 조업은 수제를 금한다.

■ 검수중량

- 식빵의 검수중량은 식빵 제조후 17시간을 기준으로 개당 175g으로 한다.
- 건빵 1인분 검수중량은 154g으로 한다.



19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계속)

- 배달
 - 당일 급식에 사용될 식빵 1개를 임의 추출하여 당해 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제품의 질, 중량 등을 확인케 한다.
 - 식빵은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비닐로 밀봉하여 배달상자에 상자별로 덮개를 씌우도록 한다. 건빵은 배달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고 장시일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10인분씩 비닐 포장하도록 한다.
 - 식빵 배달시간은 급식 당일의 오전 11시 30분까지 학교에 도착하도록 한다. 건빵은 15일분 이상을 급식대상 학교에 일괄 공급토록 한다.

4. 학교 단위 급식운영

- 식품의 검수
학교에 배달된 식품(식빵, 건빵)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교사가 식품의 질, 중량, 위생적인 배달, 상태 등을 검사하여 검수토록 한다.
- 식품의 보관
학교에 배달된 식품을 급식시간까지 보관하기 위해 식품보관실(장소)을 설치하여 방습,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먼지, 세균의 오염 및 충서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식품의 배정
학교급식용 식품(식빵, 건빵)은 1인당 1회분씩 한하며,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분할 배정하거나 수일분을 한 번에 배정하여서는 안된다.
- 학교 단위 급식 운영 조직 편성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대해 계획, 관리하고 지휘감독한다. 학교급식 담당 책임교사를 선정한다(양호교사를 학교급식 담당 책임교사로 선정하되, 양호교사 미 배치 학교는 직무담당 교사를 선정한다). 급식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배식 등 급식과정에 참여토록 한다.
- 학교급식 지도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적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식사태도, 예절, 영양, 보건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전개토록 한다.
- 학교급식의 P,R
학교급식의 목적, 성과 등에 관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팜플렛, 매스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계몽한다.
- 평가
학교급식에 대한 아동의 반응도 측정, 급식식품에 대한 기호성 및 요망사항 파악, 급식실시가 아동의 성장 발육에 미친 영향을 관찰, 아동의 수익자 부담 능력의 한계를 지역별로 측정하여 문교부에 보고하는 등 학교급식의 성과를 측정하여 향후의 방향을 제시토록 한다.
- 공포대 처리
공포대 및 공상자는 시군교육청 창고에 일괄 보관하였다 “공포대 처리 요강”에 따라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급식만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19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계속)

II. 자립급식

1. 자립급식 실시 원칙

- (1) 자립급식 대상자는 적어도 1969년도 급식대상자 수를 유지할 것.
- (2) 급식 회수는 연 200회 이상을 기준할 것.
- (3) 급식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에 제한하지 말고 급식 본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할 것.
- (4) 자립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부담은 국고 보조 수수료로서 경감토록 할 것.
- (5) 1인당 1회 급식의 열량과 영양가를 강화하여 제조공급토록 강구할 것이며, 식빵의 품질은 시판의 것과 동질로 유지할 것.
- (6) 자립급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여 건전한 급식발전을 도모할 것

2. 제조공급 방침

- (1)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괄 제조공급토록 조치한다.
- (2) 식빵 사양은 다음 기준에 준한다.

〈식빵 제조사양〉

(단위 : g)

구분	밀가루	이스트	식용유	소금	설탕	강화물	물
비율	100	2	4	2	4	적량	60~65%

- (3) 물자는 제조 공급자가 조달케 한다.
- (4) 제품관리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 실시한다.
- (5) 급식비
 - ① 수혜자 부담액은 지역사회 실정과 식품의 품질, 공장의 시설 등을 감안하여 엄밀한 원가계산에 의해 책정하고 문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② 급식비 관리는 계약 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장한다.

3. 대상지역 및 인원

(단위 : 명)

연도	기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인천	계
1970	상반기	140,000							
	하반기		67,800	49,480	21,380	24,680	14,780	31,880	210,000
	계	140,000	67,800	49,480	21,380	24,680	14,780	31,880	350,000



19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계속)

Ⅲ. 완전 영양급식 지침(시범학교)

1. 목표

균형된 영양식으로 부족되는 영양소를 섭취시켜 아동의 성장발육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으로 분식 장려에 기여코자 한다.

2. 방침

(1) 기준 영양가는 한국인 영양권장량(국제연합 식량기구 한국협회 발행)에 의하여 10~12세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영양소 구분열량	열량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				나이 아신 (mg)
						A (I.U)	B1 (mg)	B2 (mg)	C (mg)	
1일 권장량	2,500	75	33	900	10	2,000 (6,000)	1.3	1.5	70	1.5
1식 권장량	830	25	11	300	0.3	660 (2,000)	0.4	0.5	23	0.5

* 비타민 A의 () 안의 수치는 카로틴일 때를 표시한 것임

* 카로틴이란 황녹색 야채에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식물로써, 섭취한 카로틴이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활성화하여 체 내에서 이용된다.

- (2) 급식 대상자와 인원은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할 것
- (3) 식사지도는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식사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위생관념 배양에 노력 할 것.
- (4) 수익자 부담액은 관내 실정을 감안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한도액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당부에 보고할 것.

3. 형태

■ 급식 식단

요일 식단	월	화	수	목	금	비고
주식	빵	빵	빵	빵	빵	요일에 따라 변경 실시
부식	국	국	국	국	국	
영양음료	물우유 (M,P,F)	물우유 (M,P,F)	물우유 (M,P,F)	물우유 (M,P,F)	물우유 (M,P,F)	



1970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계속)

■ 아동 1회당 평균 소요 영양량의 식품 구성표

구분		중량	열량	단백질	칼슘	비타민
식빵	밀가루	120	425	13.4	55.2	0.08
	분유	7	25	2.5	91	2.8
	식용유	4	35	-	-	-
	이스트	2	2	0.3	-	-
	식염	2	-	-	-	-
	설탕	4	16	-	-	-
수프	곡류 및 감자류	115	53	1.7	6.9	-
	육류, 콩류	10	13	2.5	0.4	1.0
	생선, 우유, 유제품	10	38	6.5	186	9.0
	유지류	10	90	-	-	-
	채소, 과일류	170	90	3.4	46.3	3,162
영양음료	물우유	23	83.2	8.1	299	9.2
계		477	870	38.4	684.8	3,184

4. 조리방법

(1) 물우유 조리법(물우유 180g)

구분	탈지분유	식염	물
중량	23g	0.1~0.2g	160g

- ① 소요량의 물(160g×급식인원)을 솥에 붓고 끓인다.
 - ② ① 중에서 1/5~1/7 정도의 끓인물을 용기에 따라 50℃ 정도로 식혀서 분유를 충분히 개면서(끓은 물과 같이 될 때까지) 식염을 첨가한다.
 - ③ 이 원유를 솥의 끓인 물에 넣고 즉시 화기를 끈다.
 - ④ 그리고 김이 나지 않도록 솥뚜껑을 덮어 더워진 물우유를 배식케 한다.
 - ⑤ 물우유에 각 첨가물을 첨가할 경우의 첨가 비율 적량(포도당 1~2g, 설탕 1g 정도, 유산음료 또는 코코아는 극소량, 유산음료는 물우유의 온도(적절한) 50~60℃) 일 것.
 - ⑥ 물우유의 첨가 분유량을 점점 증가하도록 유의할 것
- (2) 조리시 각종 비타민의 손실을 감안하여 조리 할 것
 - (3) 수프의 재료는 신선한 것으로 선택하고 조리에 있어 각 영양소가 필요이상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며 자연미는 가급적 보유하도록 할 것
 - (4) 산성식품에만 치우치지 말고 알칼리성 식품을 같이 섭취하도록 한다.
 - (5) 식사의 구성은 어린이의 기호에 따라 조리하며 잔식이 없도록 노력할 것
 - (6) 학교급식의 식단은 학습장의 자료로서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가정에서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지도할 것

출처: 성기향 편저, 학교급식요람(1970)



‘1970년도 학교급식용 식품제조공급계약 지침’은 I. 지역의 설정, 관할 및 계약준칙, II. 학교급식용 식빵제조업자 서약서 작성의 유의사항, III. 학교급식용 식품공장 설비 기준, IV. 식빵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질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일괄 위탁 제빵 계약에 의해 식빵급식이 가능한 지역은 당해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군 교육청 단위로 집단적으로 제빵하여 관내학교에 공급하도록 하며, 일괄 위탁 제빵공장은 시·군 단위로 당해 교육장의 감독 책임이 미치는 범위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일괄 위탁 건빵급식 지역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으로서 교통수단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되 해당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군 교육청 단위에 구매 없이 집단적으로 건빵을 제조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제빵공장의 위치는 보건소 소재지로 하여 시설 및 설치에 대한 위생검사, 종업원에 대한 검진, 기타 보건위생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용 식품제조공급 계약은 각 시·군교육청(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는 교육위원회) 단위로 교육장 책임하에 예산회계법에 의거 체결하도록 하였다.

일부 학교급식용 빵 제조공장은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및 제조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청과 계약에 의해 학교급식용 식품공장을 설치하고 빵을 공급하여 보건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1972년 3월,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용 제조업의 업종은 식품위생법상의 과자류제조업으로 할 것이며 급식아동의 건강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시설과 표시 및 포장 등 제품관리를 철저히 지도단속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마. 학교급식 대상아동 선정의 실제

양곡지원에 의한 학교급식은 가정에서 하루에 한 끼 이상 결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을 조사,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은 가정방문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도시락 조사 등을 하였다. 학교별로 외원양곡의 지원량 상한선을 학교별로 배정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였다.

학교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고충이 적지 않았다. 어떤 학교에서는 대상 아동으로 정해지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갖게 되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서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윤번제로 급식을 하기도 했다.



당시 전쟁재해로 인해서 각 학교에 배정되는 급식 상한선보다 실제 필요로 하는 아동이 더 많아 고충을 겪는 학교가 많았다.

1972년 5월 1일, 문교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만으로 점심을 대체하는 아동이 전체의 32.2%이었다. 이러한 아동의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산간지역은 57.1%, 어촌지역은 42.5%, 평야지역은 14.1%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36%가 급식품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27%는 무상급식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05 구호급식으로부터의 자립을 위한 노력

가.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

1962년, 문교부는 학교급식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여 빈곤아동 구호사업에서 시작한 학교급식을 교육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급식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발견되면 이를 전체적으로 권장, 실시하자는 뜻에서 시·도에 1개교씩 학교급식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였다<표 II-7>.

<표 II-7> 학교급식 연구학교 명단(1962)

도별	학교명	도별	학교명
서울	구로초등학교	충남	가수원초등학교
부산	부산진초등학교	전북	송학초등학교
경기	용인초등학교	전남	배양초등학교
강원	도계초등학교	경남	소토초등학교
충북	북일초등학교	제주	추자초등학교

이들 학교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① 급식물자의 보관 관리에 관한 연구
- ② 취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연구
- ③ 급식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 전체 아동을 급식대상으로 하되 결식아동 및 허약아동을 우선적으로 급식



- ④ 급식 시기와 급식 시간의 선택에 관한 연구
 - 연간 계속 급식 또는 춘궁·한랭·혹서·강우·강설기의 급식 운영
 - 2부제, 3부제 수업 학교의 급식 운영 연구
- ⑤ 급식 방법에 관한 연구
 - 공급 식품에 관한 내용 : 죽, 떡(빵), 부식 및 가미할 영양소
 - 조작성에 관한 내용 : 인력 절약, 시간 절약, 위험 제거 방법
- ⑥ 급식비 염출에 관한 연구
 - 연료비 : 아동 부담 월 5원 한도 내에서, 폐품처리 기타 방법
 - 식기 : 학교 비품, 각자 지참
 - 인건비의 조달 방법
- ⑦ 급식 아동의 체위 비교에 관한 연구
 - 체위와 급식량의 안배
 - 급식 아동의 건강 발전과 전망 : 체격, 체질, 체력 면에서
 - 급식과 건강 조절 : 주의 사항 등
- ⑧ 급식과 아동 식습성에 관한 연구
- ⑨ 급식과 학습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
- ⑩ 급식 물자 배정상의 고려점에 관한 연구
 - 건의 사항과 제언을 위한 내용

한편, 연구학교의 운영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보조학교를 설치하고 자료의 교환 연구, 결과의 비교, 의견 교환 등 연구학교를 측면에서 돕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보조학교들이 연구학교의 운영에 많은 자료와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거듭되면서 학교급식은 구호급식이라는 종전의 잘못된 개념에서 교육적인 급식 개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급식대상을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1963년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생활경험을 중요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은 실생활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문교부는 학교급식 교과학습을 위한 지도목표를 ① 식사에 대한 바람직한 습관을 기른다. ② 영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시킨다. ③ 식사에 대한 예절과 바른 인간관계를 함양한다. ④ 식량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한다로 정의하였다.



나.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1) 시범학교 운영의 배경

우리 정부는 1966년 8월부터 1968년 7월까지 미공법 480호 제2관 제202조에 의한 “평화를 위한 식량”을 주 자원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 하에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미국과 하였다.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체중 및 신장에 현저한 향상을 기하여 아동의 건강관리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전국 초등학교 급식사업의 필요성과 중대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도를 높여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뿐 아니라 지방정부나 학부모의 자발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빈곤에 관계없이 확대 실시하는 것이었다. 1968년 7월 사업종료 시에는 전국 초등학생 550만 명에게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시지역 200만 명에게는 제빵급식을, 농촌지역 350만 명에게는 국수나 수제비 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학교급식에 관한 법을 제정하며, 중앙정부의 재정보조와 지방정부나 사친회를 통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재정동원을 활발히 권장함과 아울러 농촌지역에는 학교 단위 원예계획을 확장하여 학교 자체의 보충적인 식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지원 양곡의 관리마저도 부조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1967년 11월, 유솜(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은 이러한 부조리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양곡지원을 동결 시키겠다는 통첩을 하기까지 했다[사진 II-7].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급식 행정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① 양곡관리의 적정 및 운영 관리의 개선 ② 학교급식 시범학교의 설치 ③ 구호급식 범위 축소 ④ 급식시설의 개선 ⑤ 학교급식 사업의 홍보 개선 ⑥ 급식에 관한 법령 제정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2백만 어린이 급식빵
갑자기 끊어진 그 까닭은

〈주요 내용〉

유솜은 급식용 양곡을 결식아동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전학생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는 자립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정부는 이행하지 않음.

또한, 아동급식용 지원양곡 등이 시장에 유출된 사례가 적발되어 유솜이 양곡출고 중지 조치함.

문교부는 빵외에 국과 우유를 함께주는 영양식을 공급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함.

[사진 11-7] 미국 원고기관의 학교급식용 양곡 출고 중지관련 기사(조선일보 1967.11.11)

또한 문교부는 1967년 11월 23일 유솜에 미공법 480호 제2관 양곡 유출 방지책 및 시범학교 설치계획을 담은 공한을 보냈다. 그 주요내용은 ①에 대한 방안으로 시·군 교육청 및 학교에 수송된 후부터의 양곡 부정 방지책으로 양곡 검량 검수 철저, 제빵소 창고를 봉인하여 공급량을 매일 출고하고 관계 직원이 현장에서 제조과정을 감독, 제빵 공장은 시판 제과 겸업 금지, 빈 포대는 시·군 교육청에 반드시 반납, 학교에서 부정 유출되면 학교장과 관계직원 처벌, 제빵소에서 부정 유출되면 감시 담당자 및 시·군 교육청 담당자를 처벌하고 제빵업소와 공급계약 취소 및 의법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②에 대한 내용은 1968년 3월부터 전국 각 도시에 17개 시범학교를 개설하여 12,677명의 국민학교 아동에게 영양급식을 실시하고 아동 1인당 1회 10원~15원을 지원하며 급식 시설비를 1교당 250만 원~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보장이 있는 후 1967년 11월 28일 유솜은 양 출고 동결조치를 철회하였다.

2) 시범학교 설치

■ 설치 목적

시범학교 설치 목적은 급식방법의 개선 모색, 구호급식을 영양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 및 준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급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 대상 학교

시범학교는 각 시·도별로 1~3개교씩 전국에 17개교(서울, 전북에 3교씩, 강원, 충북에 2교씩, 부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교씩)를 설치했다. 시범학교는 “일정한 급식시설비를 제외한 자체 부담이 가능한 학교, 무상으로 지급되는 물자 외에 자체에서 다른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학교, 학생 1인당 급식 부담금으로 1식에 10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 시설

학교별로 건평 30평의 건물 1동을 짓고, 솥·오븐(제빵기)·보일러·배합통·조리대·야채절단기·식기장·식품보관장·자동저울·조리용 온도계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시설비로 시범학교 1교당 건축비로 90만 원, 내부 시설비로 16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서울과 부산의 학교는 1교당 50만 원을 추가하여 300만 원씩 보조하였다. 급식시설은 1967년 말까지 완성하도록 하였다.

3) 시범학교 운영지침

시범학교 급식은 1968년도부터 실시하되, 처음에는 일정 아동수에 한하여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전체 아동에게 급식을 하며, 영양사·조리사를 배치하여 식품위생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급식의 영양기준으로는 한국인 영양권장량(국제연합 식량기구 한국협회의 10~12세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의 1/3을 1식당 권장량으로 제시하였다.

식단은 빵, 우유, 수프로 구성된 기본메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빵은 밀가루 120g, 분유 7g, 식용유 4g을 주원료로 하고, 우유는 23g의 분유를 더운물에 푼 것이고 계절에 따라 변화 있게 조리한 각종 수프를 제공하는 것이다.

급식대상자와 인원은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의하며, 식사지도는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식사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위생관념 배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시범급식의 수익자 부담액은 제빵급식의 수익자 부담액에 준하여 부담하도록 했다.



4) 시범학교 운영사례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서울 종로구 소재 교동초등학교는 196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받았다. 교동초등학교는 1968년 4월 15일, 학교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숙직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본관 뒷편에 79.2㎡의 급식실을 마련하였다. 이때 시설비는 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하고 문교부는 제빵용 밀가루와 분유를 무료로 공급하여 아동은 월 380원의 부식비만 납부하면 되었다.

학교에서는 제빵기술자 1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원을 두고 따뜻한 빵과 우유 및 수프를 제공하였다. 1968년의 급식인원은 4학년 800명이었으나, 1969학년도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70학년도에는 4,5,6학년으로 점차 확대했다. 1982학년도부터는 3학년까지, 1986학년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다가 1989학년도부터는 재적생수의 감소로 1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했다.

5) 시범학교 운영결과

시범학교는 1968년 17개교(총 학생수 8,752명), 1970년에는 21개교(총 학생수 13,377명)로 증가했다가 1972년에는 21개교(총 학생수 10,566명)로 줄어들었다. 일부 학교는 시범학교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초 문교부는 시범학교 급식을 점차로 보급시켜 종래의 구호급식으로부터 영양급식으로 개선하여 학교급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시범학교 급식은 계속 발전하지는 못했다. 1977년까지 21개교만 운영되었다.

학교급식백서에는 학교급식 시범학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이유로 급식담당 행정기관의 지도력이 미약했던 것과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이 부족했던 점 및 지역사회의 협력이 미흡했던 점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시범학교의 운영은 학교급식이 구호급식의 형태에서 영양을 고려한 영양보충급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농촌형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

농촌형 자활급식 실험학교는 도시지역 시범 급식학교 운영에 이어 농촌지역의 시범 급식학교로, 양곡지원 종료 이후 학교급식 실천과 향후 우리에게 맞는 급식학교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72년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는 쌀이 부족한 국내 현황을 고려하여 혼·분식을 장려하였다. 일반인보다 자라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함을 깨닫고 농촌진흥청이 연계하여 경기도 용인군의 남곡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우유와 빵을 지원해 주었다.

UNDP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자 학교는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아야했다. 이때 학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의 계사신축, 병아리 구입대금 등 지원 받아 양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남곡초등학교의 조규항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에 급식 학교 지정을 요청하여 1972년 전남 고흥군의 운대초등학교와 함께 농촌자활급식학교로 지정받았다.

문교부는 급식시설·설비와 생산활동 시설을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현 경기도교육청)는 농작물경작을 위한 땅을 구입해 주었고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여 땅을 구입 하는데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3월부터 농촌형 자활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라. 학교급식비의 수익자 부담

우리나라에서 수익자부담의 학교급식은 1968년 10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급식 개선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학교급식용 빵의 낮은 품질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부족한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시켜 품질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외원 양곡의 중단 이후를 대비하여 유상급식의 길을 만들어 놓으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수익자 부담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급식 계획」을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문교부는 1968년 4월 30일, 제빵기계 구입과 공장의 직영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빵시설이 완비된 업자나 시설을 완비할 능력을 가진 업자를 선정하여 빵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과 수익자 부담에 의한 최소한의 급식비는 징수해도 좋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회신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 회신에 의거 1968년 6월 “학교급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해 7월 22일, 문교부 승인을 받아 10월 관내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수익자 부담에 의한 유상 급식을 실시하였다[사진 II-8].

서울의 학교급식 개선계획은 1969년 10월에는 경북으로 파급되어 전국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문교부는 수익자부담 급식이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급식 개선 방안의 하나로 수익자부담 급식을 권장하여 자체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문교부가 제시한 수익자부담 급식 권장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급식 개선방향은 학교급식이 식품의 질을 향상시켜 수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하도록 노력할 것
- ② 개선할 학교급식(일반급식) 수수료는 공인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하여 제빵 급식은 1인당 1회 3.20원, 물우유 제조급식 수수료는 1인당 1회 0.80원 이내로 책정 실시할 것
- ③ 급식은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할 것
- ④ 급식용 물자 관리에 각별 유의하여 실시할 것



국민학교급식 11월부터 실시

한달 50원 받고

19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유료급식을 1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월급식비는 1인당 50원이며, 개당 144g~148g의 제빵과 물우유 1컵 반을 준다.

〈조선일보 1968.10.20〉



학교급식 올부터 유상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해온 학교급식을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유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결식아동을 위주로 한 급식을 국민의 식생활개선과 아동의 체위향상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무상급식을 유상으로 하는 것은 미평화식량법 제2관에 의한 식량무상원조가 72년 7월부터 중단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유상으로 해도 농촌학교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 무상급식으로 하고 서울을 비롯한 도시학교 아동에 대해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형이 부담케 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969.1.16〉

[사진 II-8] 유상 학교급식 실시



0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가. 실적

이 시기의 학교급식의 양적 성과를 <표 II-8>과 <표 II-9>에 정리하였다.

<표 II-8> 외국 원조에 의한 학교급식 실적(1953~1972)

연도	지원 기관	지원량(톤)					급식 비율	급식내용	비고
		계	소맥분	옥분	분유	식유			
1953	캐나다 정부	63.5			63.5				
1954	UNICEF	18,000			18,000	44	분유분배 일부학교는 끓여줌	분유는 생소한 식품으로 환영 받지 못함	
1955	UNICEF	18,000			18,000	43			
1956	UNICEF	18,000			18,000	39			
1957	UNICEF, CARE	3,552			3,552	34			
1958	CARE	3,502			3,502	32			
1959	CARE	10,194			10,194	33	물우유 급식		
1960	CARE	3,409			3,409	32			
1961	CARE	9,374		9,374		33	옥수수죽 또는 옥수수빵과 물우유 급식(부산, 빵급식 시도)	최초 국고지원 (시설설비 및 전국10개 실험 학교지정)	
1962	CARE	9,953		7,882	2,071	33			
1963	CARE	14,864		12,607	2,257	40	옥수수죽, 제빵급식 병행	20개 시지역 제빵급식확대, 기타지역도 옥수수죽 급식	
1964	CARE	12,221		9,961	2,260	38			
1965	CARE	18,713	1,804	11,952	4,957	38			
1966	CARE, USAID	31,121	11,043	11,608	8,139	331	제빵·수제비 급식	17개 시범급식 학교 지정운영	
1967	USAID	34,634	11,662	12,417	10,081	474			37
1968	USAID	43,948	28,219	7,319	7,479	808	제빵·건빵급식	4개 시범급식 학교 증설	
1969	USAID	43,992	35,931	-	7,128	933			36
1970	USAID	44,688	35,906		7,837	945	38		
1971	USAID	43,228	32,121		9,812	1,295	31		
1972	USAID	31,600	24,624		6,156	820	38	2개 농촌형 실험학교 지정	
계		405,626.5	173,993	83,130	142,897.5	5,606			

* 출처 : 박준교(1986),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자료를 일부 수정



〈표 II-9〉 학교급식 학교·학생수 및 예산(1954~1972)

연도	학교수	재적아동수	급식인원수	비율 ¹⁾	국고지원 예산(천 원)	학부모부담 급식비(천 원)
1954	4,024	2,870,992	1,250,000	44		
1955	4,171	2,920,748	1,250,000	43		
1956	4,334	3,188,188	1,250,000	39		
1957	4,350	3,261,680	1,100,000	34		
1958	4,425	3,295,599	1,200,000	36		
1959	4,500	3,708,468	1,236,468	33		
1960	4,509	3,824,586	1,238,904	32		
1961	4,552	3,854,779	1,276,496	33		
1962	4,648	4,069,734	1,357,896	33	34,855	
1963	4,762	4,184,285	1,778,546	40	44,424	
1964	4,897	4,398,390	1,812,259	38	47,095	
1965	5,215	4,772,619	1,860,581	38	126,671	
1966	5,552	5,115,000	1,912,290	37	161,554	
1967	5,892	5,341,700	2,000,000	37	343,170	
1968	5,495	5,494,000	2,000,000	36	365,300	
1969	5,705	5,552,700	2,000,000	36	506,343	
1970	5,717	5,671,200	2,164,000 (1,860천 명+304천 명) ²⁾	38	859,127	91,200
1971	5,983	5,726,800	1,771,000 (1,650천 명+121천 명)	31	778,812	48,400
1972	6,097	5,733,200	2,184,000 (1,200천 명+984천 명)	38	1,901,568	650,000

¹⁾ 급식인원수를 재적아동수로 나눈 비율

²⁾ (무상급식 인원 + 자부담 인원)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나. 평가

한국전쟁 직후부터 약 20년간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체 아동의 약 1/3에 해당하는 가난하고 굶주린 아동들에게 외국의 지원에 의한 구호급식은 전쟁 재해아동의 구호와 결석생수를 줄이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50대, 60대 성인의 대다수는 학교에서 구호급식을 직접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급우들이 급식을 받던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학교급식은 어려운 환경 속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이들이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은 구호급식에서 시작되었으나 1962년 문교부는 학교급식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고 제빵수수료 예산편성 등 학교급식비를 크게 증액하였으며, 급식연구학교 운영, 1963년에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교급식 교과학습을 위한 지도목표 설정 등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탈지분유급식은 완전 영양식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보충해 주는 영양 보충식이었으며, 오늘날 우유를 즐겨 마시는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옥수수가루와 탈지분유를 함께 조리한 옥수수죽 급식은 분유급식보다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제공했지만 조리시설과 운영관리비 확보의 문제 등으로 급식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다.

시설비와 관리비 일부를 학부모회에 부담시킨 것은 구호급식에 대한 고마움을 상쇄시키기도 했다. 옥수수가루 제빵급식은 급식과정이 간소화되어 일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었지만 빵의 질이 좋지 못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밀가루를 주원료로 한 일괄 제빵급식의 결과 급식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1968년부터 한미 정부간 협정하에 이루어진 시범급식사업, 즉 학교에서 자체조리한 식빵, 부식, 우유를 제공하는 완전영양급식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시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규정한 것과, 1969년 문교부에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학교급식과를 설치한 것은 학교급식법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의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학교급식을 구호급식에만 의존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학교급식에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학교급식은 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도록 오도된 점도 있다. 급식시설 미비, 예산부족, 기술부족 등으로 인한 조잡한 급식 식품은 학교급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관계자에게 끼친 신분상 불이익의 영향은 학교급식의 업무관장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년간의 외국양곡 지원이라는 좋은 조건을 우리나라에 알맞은 학교급식제도로 정착시키는데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시기이기도 했다.



III 학교 자립급식 실험기(1973~1980)

이 개요

이 시기는 우리 정부의 재원으로 우리 식문화에 맞는 학교급식제도를 개발하고 정착 시켜 나간 시기이다. 1972년 외국 양곡 지원이 종료된 이후 우리 정부는 종전과 같이 빵급식을 위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되, 국고부담의 무상급식은 줄이고 자부담 급식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으로 학교 자립급식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자활급식을 확대하여 1977년에는 55개교를 운영하였고, 1968년부터 시작된 도시지역 시범급식을 21개교에서 운영하였다.

안타깝게도 1977년에 서울 시내 53개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빵에 의해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여 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빵 공장에서 공급하는 빵급식제도는 폐지되고 학교급식은 자체조리형태로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부터는 학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학교장 주관으로 자체조리급식을 하도록 되었다. 정부의 급식비 지원은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의 유형별로 달랐다. 도서벽지형은 학부모 부담 없이 무상급식을, 농어촌형은 학교의 생산 활동과 학부모 급식비 일부 부담으로, 도시형은 급식비 자부담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급식학교 교장 및 담당자 연수회를 실시하고, 급식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차후 1981년의 학교급식법 제정의 기틀이 되었다. 이 시기 급식형태의 기본 틀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학교급식관련 주요 연혁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73~1980)

1973	5	자활급식 실험학교 9교 증설, 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 개최
1974.	3	자활급식 실험학교 11교 증설, 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 개최
1975.	4	자활급식 실험학교 11교 증설 ⇒ 총 33교
	7	학교급식 양곡관급제도 폐지
1976.	3	자활급식 실험학교 22교 증설(시설비 교당 330만 원 지원) ⇒ 총 55교
	9	도서벽지학교 조리급식 시작(700개분교-시설비 30만 원 지원)
1977.	1	학교급식규칙 공포(문교부령 제401호)
	1	도서벽지 자체조리급식교 증설(212개교-시설비 100만 원)
	9	서울시교육위원회 식중독사고 발생 및 일반급식제도 폐지
	9	자활급식 실험학교장 협의회 개최, 자활실험학교(송산) 연구발표
	11	도서벽지 자체조리급식학교장 연수회, 자활실험학교(남곡) 연구발표
1978.	3	학교급식제도 개선(자체조리원칙), 자체조리급식학교 실무자 연수회
	6	학교급식백서 발간
	8	급식학교의 영양사를 상용잡급으로 책정(3종)
	8	학교급식관리(문교부예규 제2호) : 밥 급식 방안 강구
	11	학교급식규칙개정 공포(문교부령 제432호)
1979.	3	학교급식 실시상의 식중독사고 예방 강화(문교예규 제3호) - 학교급식 실시상의 위생관리지침 시달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냉장고 설치비 배정(교당 36만 원)
	5	시범급식학교 근무교원 가산점 부과(문교부예규 제4호)
	12	우수시범급식학교, 학교급식유공교직원 표창
1980.	1	교대 및 국립사대부국 시범급식학교 증설(16교)
	2~8	시범급식학교 증설(15교)
	7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축산진흥기금 보조지원 결정
	12	우수시범급식학교 및 학교급식유공자 표창



01 급식운영 형태

가. 1973년~1975년

1) 급식 운영

이 시기는 외국의 양곡 지원 없이 우리 정부의 재원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한 시기였다. 1969년 3월 미국과 학교급식 양곡지원사업 수정계획을 체결할 때, 1973년부터는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972년까지 미국정부의 양곡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5년까지는 외국원조 종료 이전과 같이 제빵급식을 위주로 하되 <표 III-2>의 학교급식 운영의 틀을 유지하였다.

<표 III-2> 학교급식의 구분

(1) 국고급식

- (가) 무상급식 :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령에 규정된 지역학교)의 전 아동에 대하여 국고예산으로 실시한다
- (나) 보호급식(극빈아) : 일반지역의 농어촌, 소도시의 저소득층의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국고예산으로 양곡과 제빵수수료를 보조하여 주 2회 무상으로 실시하고, 학우 돕기, 어머니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장이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2) 자담급식

- (가) 자담급식(식빵) : 자립급식의 확립과 정부 혼분식시책 이행의 일환으로 일반지역(농·어촌, 도시)을 대상으로 권장실시(도서벽지, 보호급식 제외)하되, 주 2회 이상을 수익자 부담으로 교육감 책임하에 실시한다.
- (나) 우유급식 :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의 희망자에게 수익자 부담으로 권장 실시한다.

(3) 시범급식

- (가) 도시형 시범급식 : 이미 시설된 시범급식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분유를 지원하고 주식과 부식은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실시한다.
- (나) 농어촌형 시범급식 :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생산활동을 통한 영양적인 자립급식체제의 모색을 위한 것으로써 자활능력을 돕기 위하여 주식용 양곡과 분유를 당분간 보조하고 국 또는 부식은 학교의 생산과 학부모의 부담에 의한다.

* 출처 : 문교부체육국, 1975년도 학교급식시행지침, 1974.12.24. (국가기록원 제공)



이 시기에는 국고지원 급식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부)담급식도 감소하였다. 도시형 시범급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어촌 시범급식을 확대해 나갔다. 1973년의 무상급식 지원규모는 1972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1974년에는 도시 및 농어촌의 저소득층 아동(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아동)의 급식지원이 30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나 급식횟수는 자담급식과 같이 주 2회로 축소되었다. 또한 자담급식의 경우 1975년의 급식 학생의 수가 1972년 대비 2/3 수준으로 줄었다<표 III-3>.

<표 III-3> 1972년~1975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년도		1972	1973	1974	1975
국고급식	무상급식	1,200,000명 도서벽지 및 농어촌 주 5회(식빵·건빵)	589,941명 도서벽지 및 재해지 주 5회(식빵·건빵)	552,016명 좌동 좌동	528,200명 좌동 좌동(국고 31원)
	보호급식	- -	- -	300,000명(농어촌, 도시) 식량보조, 6원자담 주 2회(식빵)	170,000명(좌동) 국고 33원, 좌동
자담급식	식빵	19만명(도시) 65만명(농어촌) 12~15월 자담, 주 5회 식량보조, 5원 자담, 주 5회	740,444명 식량보조, 12월 자담, 주 5회	438,203명 25월 자담, 주 2회 이상	554,600명 33원 자담, 주 2회 이상
	우유	130,000명 5월 보조, 15월 자담, 주 5회	125,051명 좌동	84,749명 30원 자담, 주 5회	97,500명 32~40원 자담, 주 5회
시범급식	도시형	21교 13,000명 분유보조, 35~40원 자담 주 5회(주식, 부식, 물우유),	21교 13,856명 좌동 좌동	21교 14,721명 분유보조, 50원 자담, 좌동	21교 16,600명 좌동 좌동
	농어촌형	2교 1,250명 식량(양곡)보조, 5원 자담 주 5회(주식, 물우유) 급식시설비 1,055천 원 생산시설비 2,713천 원	11교 6,961명 식량보조, 학교생산품, 5원 자담 주 5회 (주식, 부식, 물우유) 급식시설비 10,329천 원 생산시설비 14,130천 원	22교 12,353명 식량보조, 학교생산품, 10원 자담 좌동 급식시설비 19,161천 원 생산시설비 10,634천 원	33교 17,200명 식량보조, 학교생산품, 학부모부담 주 5회 (주식, 부식, 기타) 급식비 43,236천 원 시설비 34,870천 원
급식인원 합계		2,184,250명	1,476,253명	1,402,042명	1,384,100명
비고		1972-1974년까지 급식 식재료는 정부가 조달함. 1975.7월 양곡 관급제 폐지 1인당 기준 : 밀가루 120g, 분유 24g, 식용유 5g 을 조달함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학교급식현황(문교부, 1980)



2) 제빵급식 계약

학교 급식용 식품제조 공급계약은 각 시·군 교육장이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체결 하되,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1970년 4월 1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회계예규가 개정되어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의 급식용 식빵·건빵·생과자빵”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1971년 1월 5일 재무부가 문교부로 통보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1974년에는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이 제빵 가격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개학 후 20일이 넘도록 계약을 하지 않아 급식이 중단 되기도 하였다[사진 III-1].



제빵업자 황포에 어린이 급식중단

100% 올렸는데 “채산 안 맞다”

결식20일째 보리혼합 등 조건 ...재계약요구

전국 국민학교 급식을 맡고 있는 제빵급식업자들의 가격인상 요구로 개학 20일이 지난 19일까지 빵 공급이 되지 않아 도서벽지의 무상급식대상인 약 50만 명의 극빈아동과 10여만 명의 보호급식대상 아동들에게 급식이 안되고 있다. 문교부는 올해 국고급식비로 17억 원을 책정, 시군교육청단위로 제빵업자와의 납품계약을 맺도록 했으나 1백50여 군소 제빵업자단체인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측은 납품 재계약 체결에 앞서 가격재조정을 요구, 급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교부는 지난달 74학년도 학교급식 시행지침을 각 시도교육위에 시달, 1인 1식 용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 밀가루 120g (빵으로는 179g)으로 하고 값도 지난해보다 78~100% 올려 24원으로 결정, 납품계약을 맺도록 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문교부의 새 지침 대로하면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 ①급식 일을 종래 주 5회에서 2~4회로 줄이는 대신 빵의 중량을 늘리고 값도 올리며 ②공급수수료 6원을 7원50전으로 올릴 것과 ③수입밀가루 대신 보리옥수수, 감자 등을 혼합토록 허용할 것 등을 요구, 재계약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교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해진 아동에 급식을 하려면 74년도 급식지침 이상으로 양이나 가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지방에서는 재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앞으로 한 달 내에 재계약이 모두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III-1] 어린이 급식중단관련 기사(조선일보 1974.2.20)



나. 1976년

1975년 7월 정부예산으로 양곡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양곡관급제도가 폐지된 후 1976년부터는 급식운영형태를 종전의 국고급식, 자담급식, 시범급식에서 자활급식(생산+조리+급식), 준자활급식(조리+급식), 일반급식(급식)으로 분류하여 자활을 강조하였다 <표 III-4>.

<표 III-4> 1976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급식형태		년도	1976
자활급식 (생산+조리+급식)	급식학생수	55교 31,000명	
	급식 대상 횟수(내용)	농어촌 초등 전학년 주 5회(주·부식)	
준자활급식 (조리+급식)	급식단가/부담	70~85원 / 학부모 및 생산품	
	국고지원	시설비: 교당 3,300,000원, 급식비: 급식학생당 25원(기설 180회, 신설 75회)	
	급식방법	학교자체조리	
	급식학생수	700교 159,000명(도서벽지, 전교의 반)	21교 21,000명(도시)
일반급식 (급식)	급식 대상 횟수(내용)	3학년이상 주 3회(주·부식)	3학년이상 희망자 주 3회(주·부식)
	급식단가/부담	55원 / 국고 지원	70~85원 / 학부모 부담
	국고지원	시설비: 교당 300,000원 급식비: 55원 110회, 운영비: 교당 100,000원	시설비: 교당 400,000원 운영비: 교당 600,000원
	급식방법	학교자체조리(단, 주식은 공동조달 가능)	학교자체조리
일반급식 (급식)	급식학생수	159,000명(도서벽지비준자활교)	650,000명(농촌, 도시 전교) + 152,400명(극빈아)
	급식 대상 횟수(내용)	3학년이상 주 5회, 주식(식빵, 건빵),	3학년이상 희망자 주 2회(주·부식)
	급식단가/부담	35원, 국고지원(180회)	35~60원(주식 35원, 부식 25원)/ 학부모 극빈아 152,400명, 60원씩 국고 지원
	급식방법	공동조달	공동조달 또는 각자지참
급식인원 합계		1,172,400명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학교급식현황(문교부, 1980)



종전의 도서벽지 및 재해지역의 무상급식을 준자활급식과 일반급식으로 나누었다. 준자활급식은 도서벽지지역의 절반인 700개교에 자체조리를 할 수 있도록(빵은 공동조달 가능) 급식시설을 갖추도록 시설비를 지원하고, 급식대상은 3학년 이상 학생으로 축소하고 주·부식을 주 3회 급식할 수 있도록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나머지 700개교는 일반급식으로 제빵급식으로 식빵 또는 건빵을 급식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였다.

도시 시범급식학교를 준자활급식에 포함하였다. 종전의 농촌 자활급식은 그대로 자활급식으로 분류하되 식량보조가 없이 학교 생산품과 학부모 부담으로 급식을 하도록 되었다. 1976년에는 농촌자활급식학교를 22개교 증설하여 총 55개교가 운영되었다.

종전의 도시 및 농어촌의 자부담급식은 일반급식으로 분류하였다. 도시와 농어촌의 극빈아동은 주 2회 무상급식을 제공하였다. 일반급식의 주식인 빵 등은 공동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1977년~1980년

1) 급식운영

1977년 1월 14일 문교부령 제410호로 「학교급식규칙」을 제정하였다. 동 규칙에서 학교급식의 종류를 “보호급식, 일반급식, 실험학교급식”으로, 급식내용은 “완전급식, 보조급식”으로 분류하였다.

보호급식은 무상급식이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급식으로 도서벽지형 급식과 일반지역 극빈아 급식이 이에 해당되었다. 일반급식은 비용 자부담 아동을, 실험학교급식은 실험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완전급식은 주식과 부식을, 보조급식은 주식과 보조식 또는 주식과 보조식 중 하나만 제공하는 급식형태였다.

도시·벽지학교의 건빵급식으로 인한 간식개념에서 탈피하고 영양급식으로 체위향상을 꾀하기 위해 도서·벽지 본교 212개교에 조리시설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여 주식과 부식을 학교에서 자체조리를 하도록 하였다. 대상은 3학년이상 학생으로 하였으며 주 2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1978년 10월 31일 문교부는 학교급식실시학교 관계자 회의에서 도서벽지형의 보호급식 학교의 운영을 국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실습지 및 공지를 활용하는 등 자체 생산활동으로 자급자족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학부모를 계도하여 급식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자활급식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급식 내용면에서 명실상부한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급식학교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극빈아급식은 1976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농어촌 자활급식과 도시 시범급식을 실험학교급식으로 분류하였다. 일반급식은 자부담급식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주 2회 실시하였다<표 III-5>.

<표 III-5> 1977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급식종류	보호급식		실험학교급식		일반급식
	도서벽지형	일반지역극빈아	농어촌형	도시형	
급식학생수	212교, 318,000명	152,400명	55교, 28,000명	21교, 15,000명	786,600명
급식 대상 횟수	3학년이상 주 2회 (연 75회)	3학년이상 주 2회 (연 75회)	초등 전교생 주 5회 (연 180회)	초등 희망자 주 5회 (연 180회)	희망자 주 2회 (연 75회)
식비 부담 급식 방법	국고지원 학교 자체조리	국고지원 공동조달	학부모, 생산품 학교 자체조리	학부모전액부담 학교 자체조리	학부모전액부담 공동조달
국고 지원 시설비 급식비	교당 100만 원 학생당 90원	- 학생당 90원	30원		
국고지원액	2,358,647천 원	1,028,700천 원	145,800천 원	-	-
비고	급식인원 합계 : 1,300,000명국고지원액 합계 : 3,533,147천 원 일반급식은 1977.9.16. 식중독 사고이후 폐지				

그러나 1977년 9월 16일 서울시내 학교에서 급식빵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자부담으로 일괄 제빵급식을 하던 일반급식제도는 1977년 9월 22일자로 폐지되고, 도시와 농어촌의 실험학교와 도서벽지형의 자체조리 급식학교만 급식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급식제도 폐지에 따라 극빈아동급식을 위한 보호급식제도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각 시·군 교육장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되 아동의 영양섭취를 고려하여 식품을 선정하여 급식시킬 것이며 교내에 식품의 보관·배식과정에서 위생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일반급식제도의 폐지로 1978년부터는 학교 자체조리시설을 갖춘 학교에서만 학교급식을 실시하였다. 전국 382개교에서 전체학생의 2.5%인 141,611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1979년 문교부는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급식학교에 냉장고(영업용 400리터 이상)를 갖추도록 교당 36만 원씩 지원하였다<표 III-6>.

Ⅲ. 학교 자립급식 실험기(1973 ~ 1980)

〈표 Ⅲ-6〉 1978년~1980년 학교급식 운영형태

급식형태		년도	1978	1979	1980
도시 벽지형	급식학생수		273교, 71,743명	277교 70,770명	285교 68,300명
	급식 대상		전교생	전교생	전교생
	국고지원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140원 20원	냉장고 교당 360천 원 교당 1,294천 원 150원 8원	식품비 160원 12원
	국고지원액		2,197,919천 원	2,528,743천 원 (시설비 134,891천 원)	2,930,359천 원 (시설비 101,700천 원)
농어촌형	급식학생수		56교, 27,277명	66교 33,500명	67교 32,700명
	급식 대상		전교생	전교생	전교생
	국고지원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45원 15원	기설 냉장고 교당 360천 원 신설 교당 490만 원 교당 1,294천 원 기설 50원, 신설 100원 5원	기설 60원, 신설 100원 10원
	국고지원액		300,627천 원 (시설비 7,150천 원)	509,942천 원 (시설비 69,160천 원)	599,493천 원 (시설비 20,478천 원)
도시형	급식학생수		31교 29,631명	39교 38,400명	60교 54,000명
	급식 대상		희망자	희망자	희망자
	국고지원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15원	기설 냉장고 교당(360천 원) 신설 교당 676만 9천 원 교당 1,294천 원 2원	운영비: 7원
	국고지원액		62,584천 원	106,119천 원 (시설비 51,054천 원)	474,004천 원 (시설비 324,566원)
급식인원 합계			360교, 128,651명	382교, 142,670명	412교, 155,000명
국고지원액			2,561,400천 원	3,144,804천 원	4,003,896천 원 (320,566천 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횟수 : 주 5회(연 180회) * 급식내용: 주식과 부식(가능하면 우유급식 포함) * 식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벽지형 : 국고 - 농어촌형 : 학부모 및 생산품 - 도시형 : 학부모 전액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횟수, 내용, 식비 부담 : 좌동 * 도시형 국고지원 시설비중 320,566천 원은 1980년 신설하는 교육대학 및 국립사대부속초등학교예산으로 포함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급식지도, 식생활지도 등이 소홀함이 없도록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초등학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학교급식 실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1980년에는 전국 14개 교육대학·서울대사대·경북대사대 부속초등학교 총 16개교에 국고 320,566천 원을 지원하여 급식시설을 갖추게 하였다.

2) 학교급식빵 식중독 발생

1977년 9월 16일 학교급식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크림제조과정에서 포도상구균 오염)가 서울 시내 53개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여, 5,575명이 발병하고 이 중 1,167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 중 초등학교 3학년 아동 한 명이 숨졌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3개 교육구청은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보통빵, 곰보빵, 크림빵을 공급받고 있었다. 식중독을 일으킨 빵을 공급한 업체는 한국식품공업주식회사로 당일 오전 11시경 학교에 운반된 크림빵을 먹은 아동들이 귀가 후 구토,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킨 것이었다<표 III-7> [사진 III-2].

<표 III-7> 학교급식빵 식중독 사고 현황

교육청	급식 학교수	급식 인원	사고 학교수	중독환자			비고
				자가 치료	병원 치료	계	
동부	63	34,773	12	1,537	253	1,790	사망 1명 삼양국교 3년, 정주현 1977.9.19. 18:20 사망 (우석병원) 사인 : 급성대장염
서부	58	24,212	19	524	143	667	
북부	52	26,223	22	2,347	771	3,118	
계	173	84,908	53	4,408	1,167	5,575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식품 범법자는 엄단토록

최총리, 급식빵중독 관련 “서정쇄신차원서 일벌백계”

최규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불량급식으로 집단중독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우선 이 사건과 관련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여 범법자는 법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고, 또한 행정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감독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서정쇄신차원에서 다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중략).

중독에 놀란 서울 교위 무작정 급식중단 점심 굶는 “무상” 어린이들

고아·생보대상 등 만2천여 명 눈치 보며 아예 결석도

학교 급식빵 집단 식중독 사고로 빵공급이 전면 중단되자 그 동안 무료급식을 받아오던 많은 어린이들이 빵을 공급받지 못해 점심끼니를 거르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우들이 도시락을 나눠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눈치를 보면서 교실 밖으로 슬며시 빠져나가는 등 우울한 모습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밤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빵급식을 전면중단토록 조치한데 따른 것인데 일선학교에서는 시교위가 당초 결식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무분별한 처사라고 지적, 적어도 이 결정을 내릴 땐 국고보조비의 일부나 시교위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공급업자를 바꾸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계속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 III-2] 학교급식빵 식중독 기사(조선일보 1977.9.21)



일부 학교선 도시락 나눠먹기 운동

20일 현재 서울시내의 무료급식 학생대상자수는 전체 국민학교 264개교 중 248개교 12,562명에 이르고 있다.

H국교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 어린이가 36명으로 좀 전까지 학교무료급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급식이 중단되자 이 사실을 몰랐던 일부 어린이들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빵이 오지 않자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C교사는 이들 몰래 학급회의를 열어 이튿날부터 윤번제로 도시락을 하나씩 더 싸와 가난한 급우들을 돕기로 했지만 결식아동은 미안한 마음에 점심시간만 되면 아예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또 60명의 무료급식아동이 있는 C국민교는 상당수가 인근 고아원 출신 어린이들인데 점심시간이 되면 고아원으로 가서 보모를 조르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결석까지 하고 있다는 것.

결식아 인 J국교 5년 L군은 담임교사가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주어 점심을 때우기도 했는데 담임교사는 “많은 생활보호대상 어린이들이 당국의 대책 없는 급식중단으로 인해 밥을 굶고 있는 것을 보면 나 자신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이럴 때 과자류 등 간단한 어린이 간식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또 S국교는 19일 그동안 중단되어왔던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재개. 결식학우를 돕기로 했는데 이 역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교장 K씨는 말했다.

무료급식 대상인 Y모군(11. 4년)은 “전에 학교급식빵을 받으면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에 가서 동생을 주었다”면서 “동생도 왜 빵을 안가져 오느냐고 조른다”고 말했다.

H국교 교장은 “당국은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종전과 같이 명량한 수업분위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급식아동에 대한 시교위의 보조금은 연 1억 5천9백만 원이다.

급식제폐지 검토

문교부 오늘 학교보건위 열어 결정

문교부는 21일 오후 2시 자문기관인 학교 보건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문교부 당국자는 “서울시 교위에서 학교급식 중 일반급식(유상급식)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향간에서는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학교보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인사 15명으로 구성된 학교보건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나 급식존폐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답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점생 서울시 교육감은 19일 문교부에 유상급식이 요즘에는 별의미가 없고, 가격 등에 문제가 많다고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사진 Ⅲ-2] 학교급식빵 식중독 기사(조선일보 1977.9.21.)(계속)



“어른들 잘못에 친구 잃어”

숨진 정군 급우들... 교실서 추도식

식중독사고로 숨진 정주현군의 추도식이 20일 오전 9시30분 정군이 공부하던 서울삼양국민교 3학년6반 교실에서 급우 77명의 슬픔속에 베풀어졌다.

반장 김봉민양(10)이 “친구에게 보내는 글”에서 “부정식품을 몰아내자, 불량식품을 사먹지 말자고 우리들이 그토록 외쳤는데도 어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내는 우리 어린이들을 슬프게 만들었다”고 읽어내려 가자 교실안은 흐느낌으로 가득찼다.

주현군의 짝이었던 이유성군(10)은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게 놀던 주현이가 죽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친구를 빼앗아간 어른들이 너무 밉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주현군의 책상 위에는 급우들이 마련한 노란, 하얀 국화가 외롭게 놓여 주인의 넋을 위로하고 있었다. 삼양국민교는 21일 동교 교정에서 주현군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사진 Ⅲ-2] 학교급식빵 식중독 기사(조선일보 1977.9.21.)(계속)

정부는 식중독 사고 이후, 1977년 9월 21일 급식대책을 위해 학교보건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체조리급식은 학교단위로 계속하되 일괄 제빵급식형태로 운영되던 일반급식은 폐지하였다. 일반급식은 당초의 취지인 영양급식을 실시하지도 못하고 학교자체의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위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도시 및 농어촌 일반급식 학교의 극빈아동 지원사업도 함께 폐지되었다. 식중독 사고 발생은 당국이 업자들의 제빵 제조과정과 공급과정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와 같이 학교단위가 아닌 업자들에 의존한 대규모 학교급식 체제 아래서는 안전과 위생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3) 학교급식 제도 개선

1977년 식중독 사고 이후 1978년부터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갖추고 자체 조리급식을 하도록 학교급식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1978년 11월 23일 문교부령 제432호로 학교급식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실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었다. 학교급식소는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므로 동 법령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급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었다. 또한 학교



급식 실시지침 마련과 보조금 보조여부 결정권한을 교육감에서 문교부장관으로 변경하여 학교급식이 국가의 책임과 지원 아래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1979년도 학교급식비 국고지원 기준을 <표 III-8>과 같이 구체화 되었다.

한편, 1978년 8월 31일 문교부예규 제2호를 통해 학교급식은 학교의 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되 바람직한 영양관리를 위해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빵보다는 제조에 간편하고 아동들의 기호도가 높은 밥으로 급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신선한 우유공급이 불가능하여 분유 또는 두유를 급식할 경우의 제조요령을 시달하였다(부록 1의 다 참조).

<표 III-8> 학교급식비 국고지원 기준

구 분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
시설·설비비	조리용시설·설비, 개인배식 기구, 생산활동 기구	전액 국고지원	전액 국고지원	전액 국고지원
운영비	인건비, 연료비, 관리비	전액 국고지원	전액 국고지원	전액 국고지원
식품비	주식, 부식, 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기간(3년) : 전액 국고지원 • 기반조성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국고지원, - 잔여 1/3은 공한지를 이용한 생산물과 학부모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기간(1년) : 2/3 국고지원 • 기반조성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국고지원, - 잔여 2/3는 공한지를 이용한 생산활동과 학부모 부담 	전액 수익자 부담

* 출처 : 학교급식현황(문교부, 1979)

1979년 3월 10일 문교부예규 제3호로 “학교급식실시상의 위생관리 지침”을 시달하며, 식중독예방을 위해 영양사 임용을 촉구하며, 영양사가 급식 제반사항을 책임 점검토록 하였다(부록 1의 라 참조).

1979년 5월 11일 문교부예규 제4호로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교급식의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급식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과제도를 마련하였다(부록 1의 마 참조). 그러나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동 제도는 1982년 2월 12일 폐지되었다.

1979년도에는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급식운영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급식운영 우수교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시상금 지급), 우수 교직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03 학교급식 제도화

가. 학교급식규칙 제정

1977년 1월 14일 문교부령 제410호 [학교급식규칙]이 제정되었다. 1967년 3월 30일 제정된 [학교보건법] 제12조에서 국민학교 아동에 대해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는 학교급식의 실시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 만에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이었다. 학교급식규칙의 모법인 학교보건법의 학교급식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시행 1967.6.29.] [법률 제1928호, 1967.3.30., 제정]

제1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질병의 치료와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학생의 보건관리)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

제13조 내지 17조 (생략)

제18조 (경비보조) 정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생략)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제19조 (생략)



1977년에 제정된 학교급식규칙은 총 9개 조항으로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규칙[1977.1.14. 제정, 문교부령 제41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이하 “학교급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되,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식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급식의 종류와 내용) (1) 학교급식의 종류는 보호급식, 일반급식, 실험학교 급식으로 하되 보호급식은 요보호 아동을 일반급식은 비용자담아동을 실험학교 급식은 실험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의 학교급식은 지역실정과 급식대상 아동의 학년에 따라 완전급식과 보조급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완전급식은 주식과 부식을 보조급식은 주식과 보조식 또는 주식 보조식중 하나만을 제공하는 급식으로 하며 완전급식은 영양권장량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계획서의 제출) 각급 학교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익년도의 학교급식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품의 명세 및 실시기준) 교육감은 매년도 말까지 익년도에 실시할 학교급식품중 공동조달할 가공식품의 명세가격 및 학교급식 실시기준을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지한다.

제6조 (급식 실시기관) (1) 교육장은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수집한 학교 급식 실시지침 및 급식 종류별 대상인원수(학교급식비 예산과 당해 지역 실정을 감안한 인원수)를 매년 1월 말까지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2) 교육장은 제1항의 지침과 배정된 대상인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학교급식 실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급식위원회) (1) 교육장은 학교급식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의 내용
2. 급식대상자의 선정 방법
3.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 방법
4. 기타 학교 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보조금신청) (1)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9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매년도 말까지 결정 통지한다.

제9조 (보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실시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분기초 5일까지 당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교육장은 그 사항을 다음 분기초 1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기록원 제공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교급식규칙은 시행 1년여 만인 1978년 11월 23일 문교부령 제432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학교급식규칙[1978.11.23. 개정 문교부령 제43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이하 “학교급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운영원칙)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되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식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급식의 방법과 내용) ①학교급식은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실시하되,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도서·벽지형과 농어촌 및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형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중에서 도시형은 시(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중에서, 농촌형은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의 실정에 비추어 이에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학교급식은 토요일을 제외한 수업일의 주시 시간에 실시하되, 급식예산에 따라 토요일의 주시 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급식의 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별표의 영양기준을 목표로 하여 연차에 따라 이에 도달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실시기준) 문교부장관은 익년도에 실시할 학교급식의 유형별 예산과 학교급식 실시기준을 정하여 당해 연도말까지 교육감에게 시달한다.

제5조 (학교급식 실시지침) ①교육감은 제4조의 예산과 실시기준에 따라 학교급식 실시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교육장(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부산시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달한다.

②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학교급식실시지침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시달하고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급식실시지침에 따라 그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사의 임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영양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식단작성, 식품의 선정, 검수 및 조리, 배식방법 등 급식관리업무
2. 학생 및 학부모등에 대한 영양 상담
3.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한 검식 및 간식의 관리
4.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수립과 개선에 관한 건의



학교급식규칙(계속)

제7조 (학교급식위원회) 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규칙을 말한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의 내용
2. 급식대상자의 선정방법
3.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4.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 (국고보조신청) ① 학교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립국민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비, 운영비, 식품비 등의 경비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국고보조여부를 매년도말까지 결정 통지한다.

제9조 (보고) 시·군교육장은 학교급식 실시사항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분기초 10일까지 당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교육감은 그 사항을 다음 분기초 20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영양기준 제시(저학년, 고학년별로 열량,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치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아스코르빈산, 비타민D 등 10개 항목 제시)

* 출처 : 학교급식 현황(문교부, 1980)

개정된 학교급식규칙에서는 학교급식의 종류 중 보호급식과 일반급식을 폐지하고 실험학교급식 형태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도서벽지형,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의 내용도 보조급식을 폐지하고 영양기준에 맞는 완전급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이 정하던 학교급식실시기준을 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급식실시 절차도 기존에는 학교장이 학교급식 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이 실시지침 및 인원수를 학교장에게 통지하던 것을 교육감이 문교부의 예산과 실시기준에 따라 학교급식 실시지침을 작성하여 시·군 교육장에게 시달하고, 시·군교육장은 학교급식실시지침을 학교에 시달,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 운영 지도 감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변경하였다.

학교급식규칙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표 III-9>와 같다. 제2조 학교급식운영의 원칙과 제7조 학교급식위원회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되었다.



〈표 III-9〉 학교급식규칙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분	개정전 (1977.1.14. 문교부령 제410호)	개정후 (1978.11.23. 개정 문교부령 제432호)
학교급식의 종류와 내용	<p>학교급식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급식 : 요보호 아동 - 일반급식 : 비용자담아동 - 실험학교급식 : 실험학교 재적생 <p>학교급식 : 완전급식, 보조급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급식 : 주식과 부식을 영양권장량에 맞게 공급 - 보조급식 : 주식과 보조식 또는 주식 보조식 중 하나 제공 	<p>학교급식은 시범학교를 지정 실시</p> <p>학교급식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형 : 도서·벽지 소재 학교 - 도시형 : 시 지역 소재 학교 - 농촌형 : 기타 지역 소재 학교 <p>학교급식은 토요일을 제외한 수업일의 주시시간에 실시, 급식예산에 따라 토요일의 주시시간도 가능</p> <p>급식내용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별표 영양기준을 준수.</p>
급식품 명세 및 실시기준	<p>교육감은 다음해 공동조달할 가공품의 명세가격 및 학교급식 실시기준을 교육장에게 통지(매년 말까지)</p>	<p>문교부장관은 다음해의 학교급식의 유형별 예산과 실시기준을 교육감에게 시달(매년 말까지)</p>
급식실시 절차	<p>학교장은 다음연도 학교급식 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매 2월말까지)</p> <p>교육장은 학교급식 실시지침 및 급식종류별 대상인원수(급식비 예산과 인원수)를 학교장에게 통지(매년 1월말까지)</p>	<p>교육감은 문교부의 예산과 실시기준에 따라 학교급식 실시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교육장에게 시달(매년 1월 20일까지)</p> <p>시·군 교육장은 학교급식실시지침을 학교에 시달,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 운영 지도 감독</p> <p>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실시</p>
보조급 신청	<p>학교급식 보조금을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신청(매년 9월말까지)</p> <p>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 통지(매년 말까지)</p>	<p>사립국민학교 장은 다음 연도 학교급식 국고보조금을 교육감에게 신청(당해년도 2월말까지)</p> <p>교육감은 이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당해년도 3월말까지)</p> <p>문교부장관은 국고보조여부를 결정 통지(매년말까지)</p>
보고	<p>학교급식 실시사항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다음 분기초 5일까지)</p> <p>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다음 분기초 10일까지)</p>	<p>시·군 교육장은 학교급식 실시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다음 분기초 10일까지)</p> <p>교육감은 그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다음 분기초 20일까지)</p>
학교 영양사의 임무 <신설>		<p>식단작성, 식품의 선정, 검수 및 조리, 배식방법 등 급식관리업무</p> <p>학생 및 학부모등에 대한 영양 상담</p> <p>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한 검식 및 간식의 관리</p> <p>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수립과 개선에 관한 건의</p>
별표 영양기준 <신설>		<p>저학년, 고학년별로 10개 항목(열량,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치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아스코르빈산, 비타민D) 기준 제시</p>



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

1979년 3월 10일 문교부장관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문교예규 제3호로 “학교급식실시상의 위생관리지침”을 시·도교육위원회에 시달하며, 식중독 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업무 전반을 책임질 영양사 임용을 촉구하고, 영양사 임용이 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양호교사 또는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책임 아래 점검하도록 하였다. 위생관리지침은 식품 구매·조리·보관·급식설비의 위생관리, 조리 종사원 개인위생, 음료수 위생관리, 유관기관 및 요원의 협조강화, 식기류 살균과 소독 등에 관한 세부 주의사항을 담고 있었다(부록 1의 라 참조). 그 주요 내용은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학교급식실시상의 위생관리 지침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1. 급식용식품 구입관리상의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구입시 가격, 수량, 신선도(제조일자 확인), 품질 등 확인 ○ 당일 학교에서 가열조리 급식하되, 가공조리품(빵 등) 구입시 업자의 신용도, 제조과정 확인 후 우수 품질 구입하여 검식후 급식 ○ 보존식을 냉장시설(5℃이하)에서 48시간이상 보존
2. 급식품조리상의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온도관리 철저 ○ 신선식품, 생선, 조리식품의 칼, 도마 등 구분 사용 및 소독철저 ○ 식품조리시, 조리된 음식물 취급식 집게 등 기구 사용 ○ 야채과일류는 물로 씻고, 중성세제나 염소액으로 씻은 후 약 10분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행균
3. 급식품의 보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창고에 장기저장, 단기 또는 일시 보관식품을 구분하여 보관하되 식품 종류에 따라 통풍, 환기, 채광, 온도, 습도조절에 유의 ○ 식품창고의 시건장치·방충망 설치 및 보관물자 대장 비치 ○ 식품보관창고에 소독제, 세제, 살충제 살서제(취약)등 보관 금지
4. 급식시설·설비의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장은 채광, 환기, 통풍, 배수, 방충방서시설 설치, 하수구 덮개 등 설치 및 내수성자재로 된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조리대, 배식기구등의 청결 유지 및 살균과 소독 철저 ○ 조리 싱크대와 후처리 싱크대 구분 사용 및 살균소독 ○ 냉장고 온도계 비치 및 적정온도 유지 확인, 조리된 음식물은 뚜껑이 있는 용기, 야채류는 비닐 포장 보관하여 상호오염방지
5.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상의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조리종사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 위생교육 실시 ○ 개인위생 철저 및 만성설사병등 유질환자는 조리, 배식 참여금지 ○ 조리종사자 및 배식당번 아동 위생복 또는 작업복 착용 ○ 종업원의 건강상태, 기구와 용기의 세척 및 살균상태, 상하수도의 관리상태, 오물처리상태등 자체 정기적인 점검평가 실시
6. 음료수의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공공시험기관의 음료수의 적합 여부를 검사 받은 후 사용, 끓인 물을 음료수 공급
7. 유관기관 및 요원의 협조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관계관 및 보건요원을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케하여 학교 급식실시에 관한 자문과 협조를 얻을 것
8. 식기류 살균과 소독에 관한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기류 조리기구는 열탕소독 : 80℃정도 2분간 또는 100℃ 30초, 식기 염소제 살균 : 100ppm 염소소독액에 5분이상 침지후 세척 ○ 살균소독이 끝난 기구 및 용기는 물행주로 닦지 말고 그대로 건조시켜 깨끗한 곳에 보관



04 학교급식 관리

가. 제빵 급식

외국의 원조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빵급식은 계속되었다. 1975년 학교급식 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의 지원이 중단되어 정부예산으로 양곡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양곡관급제도가 시행되었다. 제빵 원료인 밀가루, 분유, 식유, 설탕은 관에서 공급해 주었고, 부재료인 식염과 이스트는 제빵업자가 조달하였다. 자(부)담급식용 제빵 원료는 제빵업자가 구입하되, 소맥분 및 설탕은 정부고시가격 중 도매가격으로 구입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도서벽지지역 전 아동과 농촌 및 도시지역의 극빈아 급식의 제빵 가공수수료를 1인 1식당 9원 범위 이내로 국고예산에서 부담하였다. 자담급식비는 교육감이 결정하되 1인 1식당 30원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1975년 7월 양곡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75년 6월 당해 연도 학교급식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도서벽지지역 학교의 식빵 또는 건빵 급식비는 31원 이내, 보호급식 및 자담급식의 식빵 급식비는 33원 이내로 조정하였다. 식빵과 건빵의 제조사양 및 관리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자부담 빵급식의 경우 바람직한 급식방법으로 식빵을 목장 우유와 함께 먹도록 권장하고 또한 기타 부식을 지참하여 식빵과 함께 먹도록 권장하였다. 식빵을 먹을 때 도시락 “밥”과 함께 먹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일반학교에서의 빵급식은 여전히 점심 한 끼가 아닌 간식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7년 9월 6일 학교급식용으로 공동 조달되는 가공식품의 명세와 가격기준을 <표 III-11>과 같이 개정하였다. 1975년에는 식빵의 형태가 곰보빵 또는 식빵이던 것이 1977년에는 크림빵이 추가되는 등 학교급식용 빵의 종류도 다양화되었다.



〈표 III-11〉 공동 조달되는 가공식품의 명세와 가격기준(1977.9.6.개정)

원료별	형별	식빵			건빵	비고
		A형(보통빵)	B(크림빵)	C(곰보빵)		
기본 원료 (g)	밀가루	120	110	100	120	보통 1등급 이상(준강력 1등급, 강력 1,2등급) 마른 가루 포함
	대두	4	4	4	대두분 5	
	쇼팅	7	6	5	10	철판, 도장용 포함
	설탕	10	3	3	6	정백당
	포도당(과당)	5	5	5	5	
	생이스트	2.5(1.0)	2.5(1.0)	2(0.8)	-	()은 건이스트 사용시의 량
	식염	2	2	2	2	정제염
	중조	-	-	-	0.7	
첨가 원료 (g)	암모니아	-	-	-	1.4	
	밀가루	-	3	10	-	보통 1등급 이상
	쇼딩	-	1	5	-	
	설탕	-	7	7	-	정백당
참고	계란	-	2	-	-	
	열량(Cal)	567	545	556	566	원료량에 의한 계산치임
	단백질(g)	12.7	16.7	15.8	17.7	
	검수중량(g)	171±3	168±3	159±3	124±1 (1개당 2.5~3g)	
	가격(원)	45	45	45	45	

* 출처 : 학교급식현황(문교부, 1977)

나. 도시형 시범급식

1968년에 전국 17개로 시작된 도시형 시범급식 학교(자체조리급식)는 1970년에 4개교 증설되어 1977년까지 21개교가 운영되었다. 이후 학교급식 정책방향이 자체조리급식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1978년에 10개교, 1979년에 8개교, 1980년에 21개교 증설되어 1980년에는 전국에서 60개교가 운영되었다.

이들 학교의 급식에서는 1968년 운영지침과 같이 빵, 국(수프), 우유를 제공하였다. 도시형 시범 급식학교의 급식인원, 급식품 내용, 급식비 1식당 영양량은 〈표 III-12〉와 같다.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희망하는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였다.



〈표 III-12〉 도시 급식 시범학교(도시 자체조리 급식학교)의 현황

시도	학교명	전교생	급식 인원	급식품 내용	1식당 부담액 (원)	1식당 영양량	
						열량 (Kcal)	단백질 (g)
서울	전농	6,681	1,057	빵, 우유, 국, 달걀(2)	130	753	27
	장충	4,667	1,088	빵, 우유, 달걀, 사과	130	798	23
	아현	4,445	1,032	빵(라면), 우유, 국(수프), 사과	130	829	23.5
	강남	6,299	1,043	빵, 국(수프), 우유	130	762	24.9
	교동	3,111	1,044	빵, 국(수프), 우유	130	780	23
	재동	2,417	950	빵(잼, 식빵), 국, 우유, 달걀	130	776	22.7
부산	부전	3,564	451	국수	90	720	32
	대평	2,524	1,231	어묵국	50	350	26.8
경기	부평서	3,007	650	빵, 슈크림, 수프	90	627	20
강원	남춘천	-	-	미실시	-	-	-
	서화	518	343	국(야채, 어육류등)	27	700	30
충북	청주중앙	1,721	550	빵	45	595	17.6
	남산	2,190	580	빵	45	595	17.6
충남	대전중앙	2,184	370	빵, 우유, 과일	100	632	24
전북	진북	3,683	850	빵, 국(어육류), 우유	100	741	25
	군산중앙	2,839	680	빵, 국(어육류), 우유	100	724	25
	이리	3,188	400	빵, 국(어육류), 단팔죽	100	700	30
전남	광주중앙	4,612	1,531	빵	58.34	758	35
경북	대구동덕	1,923	869	빵(국수, 짜장면), 우유, 국	125	802	27.9
경남	도천	1,885	425	빵, 우유, 국, 달걀	130	710	26
제주	삼양	1,039	113	우유	60	700	20
계	21교	62,497	25,251		27~130		

* 출처 : 학교급식현황(문교부, 1977)

한편, 1975년 학교급식 시행지침에서 시범학교의 급식관리사항으로 ①급식대상자를 확대하되 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극빈아는 학우돕기, 어머니회 등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②교직원과 학부모대표로서 구성하는 급식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③올바른 식습관을 함양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식사시간과 관련 교과 학습에 영양교육을 강화하고, ④ 급식과 영양교육에 관계되는 재배 또는 사육활동의 시범코너를 설치토록 노력하고, ⑤ 학부모가 급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운영, 영양교육 강화가 이때도 강조되었다.



다. 농어촌 자활급식

1) 개요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는 외원 양곡의 중단에 따라 자립급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실과학습을 통한 생산 활동으로 자립급식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영양급식과 영양교육, 지역사회의 식생활 개선을 하기 위함이었다.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경비는 정부에서 보조하되 지역사회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동력과 부식의 생산 공급 등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하였다. 식품생산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질 때까지 당분간 식품(소맥분 120g, 분유 24g, 식유 5g, 설탕 6g)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생산 활동은 그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결정하고 가능한 한 그 지방의 응용양양사업과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은 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활급식학교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72년 남곡초등학교와 운대초등학교가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로 최초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당시 양곡 조작비를 할애하여(교당 180만여 원) 급식시설·설비와 생산활동 시설 및 자료를 구입토록하고, 외원 잔여 식재료(밀가루, 분유, 식용유)를 배정하여 급식을 시작하도록 하고 학교실정에 적합한 식품생산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생산 활동은 가급적 아동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역사회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품을 생산하고, 생산품은 반드시 급식에 활용하며 학부모를 조리활동과 생산활동에 참여시켜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 및 참여 계몽에 중점을 두었다.

자활급식 실험학교는 학교 여건에 맞게 양계, 양돈, 양어, 양봉, 양토, 과수·채소·표고 재배, 젓소 기르기, 양잠 등의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학교급식 예산으로 충당되었으며, 이중 양계 및 과수·채소재배를 통한 생산품은 급식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자활급식 실험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급식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급식 내용은 식빵(또는 국수)과 부식 그리고 우유였다. 우유 대신 두유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부식은 학교 생산품과 학부모 부담 또는 현물 공여 등으로 충당되기도 하였다. 일부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급식 현황은 <표 III-13>과 같다.



〈표 Ⅲ-13〉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급식현황

도별	학교	급식 아동수	급식내용	1식당 징수액(원)	1식당 평균영양	
					Kcal	단백질(g)
경기	남곡	514	빵(국수, 짜장면), 두유, 달걀, 사과(딸기, 토마토)	60	700	36
강원	성산	540	빵(밥), 우유(콩죽), 국, (채소, 멸치, 콩조림)	30	703	20
충북	홍광	763	빵(국수), 국, 두유, 부식지참	25	700	20
충남	쌍용	589	빵(수제비, 국수), 국, 우유, 달걀	40	700	25
전북	광산	585	빵(국수), 국, 달걀, 사과, 야채	30	720	28
전남	운대	620	빵, 국	25	670	20
	서산	658	빵(라면, 건빵, 국수, 감자), 김치, 국	30	720	21
경북	월성	461	짬뽕(밥, 국수, 도넛), 국, 두유	30	690	20
경남	계룡	744	빵, 국, 두유, 달걀, 사과	35	680	27
제주	수산	390	국수(빵), 달걀, 우유, 김치	13	570	22

* 출처 : 학교급식백서(1978)

자활급식학교는 1973년 9개교, 1974년과 1975년에 각각 11개교 등 거의 매년 증설하여 1980년에는 전국 총 67개교가 운영되었다(표 Ⅲ-14).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지정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은 학교, 생산활동 기반을 갖춘 학교, 유관기관이 인접되어 있고 협조가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감이 선정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표 III-14〉 자활급식 실험학교 지정현황(1972~1976)

도명 (학교수)	소속 시군	학교명	지정 년도	재적생수 (급식자수)	비율 (%)	주요생산활동	국고투자 (천 원)
경기 (6)	용인군	남곡	1972	527	100	양계, 양돈, 채소	2,503.8
	강화군	하점	1973	409	100	인삼, 양어, 양토, 채소, 육모	2,357.2
	포천군	이곡	1974	313	100	양계, 양돈, 채소, 육모	2,768.0
	이천군	나래	1975	258	100	양돈, 육모, 채소	3,170.0
	양평군	용문	1976	500	100	육모, 약초, 양돈, 채소	3,300.0
	가평군	상천	1976	508	100	양토, 양계, 육모, 과실	3,300.0
강원 (6)	양구군	광덕	1973	267	100	버섯, 양봉, 짓소, 채소	2,412.2
	원주시	봉대	1974	499	100	상전, 양계, 양토, 채소	2,406.7
	정선군	정덕	1974	205	100	유산양, 표고, 양토, 채소	2,768.0
	춘천시	신남	1975	436	100	짓소, 살구, 채소	3,170.0
	명주군	성산	1976	558	100	한우, 양토, 채소, 과수	3,300.0
	횡성군	정금	1976	479	100	한우, 양돈, 닭작, 채소	3,300.0
충북 (6)	음성군	원당	1973	506	100	양토, 양계, 육모, 채소	2,651.0
	제천군	홍광	1974	797	100	양토, 과수, 육모, 채소	2,768.0
	영동군	용화	1975	371	100	표고, 양봉, 양돈, 채소	3,170.0
	증원군	오석	1976	510	100	채소, 육모	3,300.0
	청원군	유리	1976	467	100	염소, 양토, 양잠, 비	3,300.0
	괴산군	이담	1976	448	100	육묘, 양계, 채소	3,300.0
충남 (6)	보령군	광명	1973	327	100	마늘, 양계, 양토, 채소	2,650.0
	청양군	가남	1974	583	100	양토, 양봉, 양잠, 채소	2,768.0
	천원군	도하	1975	485	100	양어, 양토, 양돈, 채소	3,170.0
	예산군	대륜	1975	344	100	양토, 표고, 염소, 사육, 채소	3,170.0
	아산군	쌍룡	1976	674	100	육묘, 양모, 양돈, 과수	3,300.0
	공주군	반포	1976	612	100	과수, 약초, 채소, 양돈	3,300.0
전북 (6)	완주군	송광	1973	430	100	양토, 양계, 약모, 채소	2,581.4
	김제군	남양	1974	615	100	양어, 양계, 채소	2,741.6
	정읍군	정남	1975	495	100	양돈, 양계, 유산양, 채소	3,170.0
	남원군	남평	1975	538	100	양계, 양돈, 채소	3,170.0
	고창군	아산	1976	475	100	양계, 양돈, 채소	3,300.0
	옥구군	광산	1976	465	100	양돈, 양토	3,300.0



〈표 III-14〉 자활급식 실험학교 지정현황(1972~1976)(계속)

도명 (학교수)	소속 시군	학교명	지정 년도	재적생수 (급식자수)	비율 (%)	주요생산활동	국고투자 (천 원)
전남 (7)	고흥군	운대	1972	620	100	양어, 양토, 채소	2,503.8
	해남군	마산	1974	523	100	양압, 유자원, 육모, 채소	2,738.0
	완도군	군외동	1974	530	100	굴 재배, 양봉, 채소	2,738.0
	화순군	경북	1975	625	100	양돈, 양잠, 채소	3,170.0
	승주군	서산	1976	637	100	과수, 답작, 육모	3,300.0
	담양군	봉산남	1976	468	100	양계, 양토, 양어, 육모	3,300.0
	나주군	남평동	1976	682	100	양토, 과수	3,300.0
경북 (8)	경산군	남천	1973	520	100	포도원, 양토, 양계, 채소	2,645.0
	월성군	괘릉	1973	393	100	포도원, 양돈, 양계, 채소	2,646.0
	김천시	금릉	1974	872	100	양계, 과수원, 육모, 채소	2,761.7
	김천시	봉계	1975	457	100	양토, 유산양, 채소	3,170.0
	영일군	효자	1976	686	100	양돈, 육모, 양토, 채소	3,300.0
	의성군	산운	1976	293	100	양돈, 양토, 채소, 과수	3,300.0
	청송군	월정	1976	464	100	양돈, 과수	3,300.0
	영천군	화덕	1976	572	100	사과, 채소, 양돈, 산양	3,300.0
경남 (7)	통영군	도산	1973	640	100	한우, 과수, 채소	2,650.0
	김해군	대사	1974	836	100	양토, 채소	2,738.0
	진주시	정촌	1974	710	100	채소, 죽림, 육모	2,738.0
	합천군	송산	1975	986	100	양토, 양계, 젖소, 채소	3,170.0
	산청군	신안	1976	340	100	육모, 채소, 양계, 양돈	3,300.0
	거제군	계룡	1976	708	100	양계, 양토, 채소	3,300.0
	밀양군	명례	1976	409	100	과수, 채소, 양어, 양돈	3,300.0
	제주 (3)	북제주군	어도	1974	420	100	굴재배, 양토, 유산양, 채소
남제주군		수산	1975	397	100	굴재배, 양토, 유산양, 채소	3,170.0
북제주군		광령	1976	497	100	굴재배	3,300.0
계 (55교)				28,386	100		165,773.3

* 비율 : 재적 학생수 대비 급식학생수

* 출처 : 학교급식현황(문교부, 1977)



2) 운영사례

가) 남곡초등학교

1972년 최초로 자활급식 실험학교로 지정된 남곡초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농촌형 학교로 전교생이 500명 정도였다. 학교주변의 용지를 교육청의 지원과 학부모의 기부금 등으로 매입하여 양계(1,784두), 양돈(63두), 채소재배(9,992㎡) 등의 생산 활동을 하였다.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이러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직접 조달하기도 하고, 생산 활동의 수익금과 학생 자부담 급식비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학교인근 마을에 마침 제빵사가 거주하여 빵도 직접 만들고, 조리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였다. 생산 활동에는 교사, 아동,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였다[사진 III-3].

나) 괴릉초등학교

경상북도 월성군(현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괴릉초등학교는 1973년 자활급식 실험학교로 지정받았다. 자활급식을 위해 양계, 양돈을 위한 축사를 건립하고, 포도밭 900평과 논 500평 등을 매입하였다. 이를 통해 양계, 양돈, 양어, 양토와 함께 포도, 사과, 벼,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급식에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판매하여 급식경비로 충당하였다. 또한, 양계, 양돈 등의 배설물을 활용하여 메탄 가스를 생산하여 제빵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식물 재배와 조리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농어촌지역에 식품비의 일부가 지원되었고, 교사와 학생들의 지속적인 노작활동 참여의 어려움, 가축사육으로 인한 냄새 등 보건환경적 문제가 있어 학교에서의 자활 생산활동은 점차 줄어들었다. 1993년부터는 더 이상 학교 자체의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농장을 임대하였다. 1973년 당시에는 전교생이 400여명이었으나 43년이 지난 2016년 9월 현재 전교생이 25명으로 줄었다. 학교 앞의 일부 토지는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사진 III-4].

Ⅲ. 학교 자립급식 실험기(1973 ~ 1980)



교실에서의 급식



당근 수확



양계, 계란 생산



양돈 활동



급식용 빵 조리



어머니들의 조리활동

[사진 Ⅲ-3] 남곡초등학교 자활급식 및 생산활동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교앞 실습지



학교앞 실습지

[사진 III-4] 괴릉초등학교의 현재 모습

괴릉초등학교의 연혁지에 자활급식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및 토지매입등의 실태가 잘 나타나 있다<표 III-15>. 학교앨범에 자활급식활동관련 사진은 없어졌지만 남아 있는 사진설명에는 당시 괴릉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자활급식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다[사진 III-5].

<표 III-15> 괴릉초등학교 자활급식활동 연혁

년	월일	연혁
1973	5.4	문교부지정 자활급식 실험학교
	9.28	자활급식 포도밭 매입(887평)
	11.30	계사, 돈사, 관리실 준공
1974	4.4	돈사 1동 15평 준공(2차 확장), 포도나무 2년생 400주 이식
	9.5	급식용 물탱크 및 세수장 설치
	10.5	양어장 4.5평 준공
	11.20	왜성사과 200본 식재
	12.10	메탄가스 분출장 설치
1978	6.1	퇴비장 준공
	12.20	답(논) 500평 매입
1985	9.10	식당개축(교실 2칸 개축)
1986	3.10	포도원 품종 개선
1987	4.4	과수원에 수프링클러 설치
1991	9.10	농장계분 창고 개축
1993	2.17	학교 농장 임대

* 괴릉초등학교 연혁지에서 발췌

III. 학교 자립급식 실험기(1973 ~ 1980)



	<p>최후의 급식은 관자린의 관리실 7.8.11</p>	
<p>처음 생김이라 질말 초라했습니다</p>		
		<p>어린이들의 먹거리 될 배추를 3000주 가 구입하 이학급을 위한 먹거리 가 됩니다.</p>
	<p>닭 1000주 삼촌 데우면서 먹기만 알고 잘 날아온다 7.8.11</p>	
<p>양어장 과채 소금담 물과 양어장까지 모두가게 보아야 양어장까지 7.8.11 생선 급식실까지</p>	<p>6학년 어린이들의 공부 기쁨은 비록만사 아니다 *은근 애정을 약했다 손수 만들 었다 그제야 어린이들 수확물 였다 양어장의 결실이다</p>	
	<p>양어장까지를 양어장까지 양어장까지 양어장까지 양어장까지 양어장까지 양어장까지 양어장까지</p>	

[사진 III-5] 과릉초등학교 자활급식의 모습



다) 어도초등학교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어도초등학교는 1974년 제주도 최초의 자활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받았다. 당시 전교생 420명 모두에게 급식을 실시하였다. 주요 생산활동은 굴재배, 양토, 유산양,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학교급식으로 빵과 우유, 국수와 우유를 급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진 III-6].

2016년도에는 전교생이 89명으로 40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 III-7]은 2016년 11월 25일과 28일에 제공된 급식 사진이다.



[사진 III-6] 어도초등학교 학교급식 모습

*제주도교육청 제공



[사진 III-7] 어도초등학교 학교급식품 사진(2016.11.25, 11.28)

*제주도교육청 제공



라) 자활급식 실험학교 급식담당교사의 수기

꿈을 키우는 마음

강원도 정선 정덕초등학교 교사 김군택

나는 지금 꿈을 키우고 있다. 190여 귀여운 새싹들이 내 꿈을 먹고 자라 먼 훗날 메아리 되어 내게 돌아올 날을 생각하면 내 가슴의 고동은 뚝뚝.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 부임한 때는 산골짜기 겨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난(1979년) 3월 2일이었다. 물론 내가 희망해서 찾아든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큰 학교에서만 12년을 근무하다가 처음 벽지로 와보니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하고 많이 캄캄한 느낌이었고, 과연 벽지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실감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차차 정이 들고 재미가 있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위로에 용기를 얻어 이사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선 내게 학교급식과 생산 활동 그리고 체육을 담당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전임지에서 체육계 하나만 맡아 가지고도 짙짙매던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일을 모두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교장선생님께 구구 거절도 해 봤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여섯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남들도 다 했다는데 나라고 못하겠나」하는 생각으로 나는 「기왕 벽지에 왔으니 한번 뜻있는 일을 해보자」하고, 그 때부터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학교 실정도 급식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채, 당장 급한게 급식이었다. 전년도 선생님께 물어 가면서 뚜렷한 계획도 목표도 없이 우선 물품을 사와서 급식을 하자니 정신이 없었다.

내가 와서 급식을 처음 실시하던 그 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충분하지 못한 급식 시설 속에서도 자모님들의 봉사로 급식이 마련되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국민 체조를 마치고 아이들을 인솔하여 급식소로 갔다. 아침에 쌀을 내어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밥을 받아 가지고 보니 정부의 밥이 왜 이렇게 검은지 모르겠다. 집에서는 겨우 한 공기밖밖에 못 먹는 내게도 아이들과 같이 큰 밥그릇에 하나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나? 아이들은 저 밥을 다 먹을 수 있을까?」하는 의아심을 갖고 교실에 들어와 식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 대하는 선생님 앞이라서 그런지 조용히 먹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다 먹고 아이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저 밥들을 어떻게 다 먹었을까? 정말 시골 아이들은 배도 크구나.」 그러나 그 때 나는 내가 그 많은 밥을 -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는 - 밥을 다 먹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꺼내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그 소리에 나도 입맛이 끌려서 그렇게 먹은 모양이다. 이렇게 하여 나의 급식 학교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3월 한 달을 꼬박 야근을 해야 했다 시범 급식 학교 운영 계획서를 새로 만들고 생산활동 계획을 세우고, 20여 가지나 되는 급식 장부를 만들고...

학년 달임을 하면서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정말 벅찬 일이었다. 더구나 본교는 자활의 터전을 닦아야 할 시범급식학교이므로 치밀한 생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실습지를 둘러보고, 가축 실태를 조사하고, 짙은 농사 실력에 농업 서적을 찾아보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모든 일을 다 마친 날은 정말 가슴이 시원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앞으로 그 많은 20여 가지 장부 정리를 해 나가고 가축 사육과 실습지를 운영해 나갈 일을 생각하니 시원하던 가슴이 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이 큰 시련이 내겐 좋은 경험이 되겠지, 끝까지 참고 해내보자」하고 생각한 나는 다시 일에 매달렸다. 그레도 하루 근무 중 제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은 점심시간이었다. 내가 애써 보람이 어린이들의 활짝 핀 웃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4월이 지나고 5월에 접어들면서 이전 학교 급식이 차츰 자리 잡혀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안착되어 가는 중에도 문제점은 계속 생겨났다. 하루 3명 조로 짜놓은 급식 봉사조(학부모) 중에서 어쩌다 바쁜 농사일에 쫓겨 한 사람쯤 안 나오시면, 나온 봉사원 자모들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누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다음 차례 댐 우리도 안 나오겠으니 오늘 안 나온 사람이 나와서 혼자 다 하라고 그래요」 하고 말하는 자모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놈의 학교 급식은 뭇 때문에 해서 우리들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어. 애들한테 점심 안 해주도 다 클 데로 크는데」 하고 학교급식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학자모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면 정말 안타깝고 리로운 마음 어디에 다 호소해야 할지... 무거운 가슴을 혼자 달래야만 했다. 5월은 바쁜 달이었다. 5, 6학년 합쳐 겨우 70여 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천여 평의 밭과 20여 마리의 소·돼지·염소·토끼를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아주 동물이 되어 버렸다. 6시 수업이 끝나면 곧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실습지와 축사에 매달렸다. 가끔 일하기 싫어서 꺾을 부리는 어린이들을 달래가면서 내 스스로 흥망이지가 되어 일을 하니까 게으름장이다, 말성꾸러기도 정말 잘 따라 해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가 제일 기쁘다. 그 때는 나 자신이 힘든 것도 있고, 아이들의 순박한 웃음 속에서 피곤한 하루를 잊는다.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주는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하고, 알뜰의 꿈을 심어주며 학부모님들에게 급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채소와 가축은 무려무려 자라는 가운데 바쁜 5월이 지나갔다. 그 중에서도 어디 돼지 두 마리가 새끼 열다섯 마리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내게도 큰 기쁨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6월이 되면서 식안은 풍부해졌다. 실습지에서 나오는 채소가 급식에 이용되면서부터 부식값 남은 돈으로 라일을 사다 급식했다.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은 매일같이 실습지에 나와 보게 되었다.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나와서 풀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며 채소 가꾸기에 열을 올렸다. 「풀베는 비닐하우스와 온상을 못해서 수확시기가 늦었지만 내년엔 꼭 온상과 비닐하우스를 해야 하겠다」고 교장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교장선생님께서도 쾌히 승낙을 해 주셨다. 작년도 보다 급식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실습지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급식에 이용되는 것을 본 학부모들이 이제는 아무리 농사에 바쁜 때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조리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교육의 힘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자모님들은 그냥 학교에 나와서 밥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고추장, 된장, 간장, 감시, 감자조림, 콩조림 등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지 이상씩의 반찬거리를 가지고 나왔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행하는 마음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정성 속에서 싹트고 자라난 것이라.

하루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가꾸는 벼에 평 남짓한 약초밭에서 김을 매고 있었다. 기사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어느 사이에 왔는지 우리 반 아이들이 호미를 들고 와서 선생님 밭을 자기네들이 매어 드리겠다며 대들어서 김을 매 주었다. 나는 그 때 어린이들의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가 이 학교에 온 보람, 교육의 보람을 또 한 번 느꼈다.

이제 우리학교 급식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었다. 다른 일반 급식학교의 1인당 일 급식비 150원보다도 50원이나 적은 100원의 보조만으로도 더 훌륭한 급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매일 매일 보조식으로 주는 우유며, 주일에 달걀과 라일을 각각 2회씩 주는 것 하며, 하루 급식량의 열량, 단백질, 칼슘 모두가 영양권장량의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좋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고깃국, 우유를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모두 잘 먹었다. 1리 2리 먼 길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걸척 한 번도 없이 학교를 나와 즐겁게 뛰놀며, 튼튼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흐뭇한 마음에 피로를 잊는다. 이제 2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새로운 조리기술을 가르쳐 다양한 식안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어야겠다. 아이들이 많이 씹씹하게 자랄 때 내 꿈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 알찬 결실을 맺게 되겠지.

* 출처 : 성기항 편저, 사랑과 진실의 현장(1980)



05 자립급식 실험을 위한 노력

가. UN의 지원

1) FAO의 지원

학교급식은 빈곤한 아동들의 학교 결석율과 질병 발생율을 낮추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학교급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FAO, WFP, UNICEF 등을 통해 여러 나라에 식량과 기술 원조를 제공하였다. FAO는 급식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나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WFP는 계획과 실시 단계에서 식량과 기술자원, 필요한 설비 및 교통수단의 제공과 더불어 학교급식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963년 FAO에서는 우리나라의 응용영양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년에 1명씩 5년 동안 5명을 영국 런던대학에서 응용영양 국제과정(International Course of Applied Nutrition)을 이수하게 하였다. 첫 번째로 서울대 농대 모수미 교수가, 이후 농촌진흥청의 박준교 생활개선지도사, 서울대 의대 채범석 교수, 전남대 의대 손철 교수 등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서울대 모수미 교수는 우리나라 응용영양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 박준교 생활개선지도사는 문교부로 옮겨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72년 2월 FAO는 우리나라에 학교급식 자문관으로 이집트인 Miss. Mona. H. Doss를 파견하였다. Miss. Doss는 문교부 학교급식 자문관실에 근무하며 초등학교 급식을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와 학교조직을 통한 영양교육을 위해 농촌 실험급식사업 계획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1973년과 1974년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에서 “학교급식 개념과 국제지원”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강의 교재에는 아프리카의 토고에서 WFP의 식량과 UNICEF 기증품 이외에는 급식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지원은 없었는데 아동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밥을 경작하고 닭과 토끼를 사육하여 모든 학교에서 주 1회 정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WFP 원조를 점차적으로 국내 자원으로 대체한 결과 2년 후에는 WFP의 소맥분 지원이 필요 없게 된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의 자활급식 실험학교가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1972년 말로 외원 양곡지원이 중단된 후 1973년 한 해는 수익자 부담급식과 함께 잔여 외원 양곡으로 급식을 계속하면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년간의 양곡 지원을 WFP에 요청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끝나면 외원 없이도 학교급식을 완전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FAO 자문관이 파견된 것이었다. WFP의 지원기간 동안 학교급식이 완전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형태의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 결과 더 이상 무상원조의 대상으로는 적합지 않다는 미국의 의견이 있어 우리 정부의 양곡 지원 요청은 WFP 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비록 WFP의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운영으로 학교급식이 빵을 주는 간식형태가 아니라 한 끼의 영양급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학교급식이 확대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다.

2) UNICEF의 지원

1975년부터 1978년까지 UNICEF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영양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UNICEF는 <표 III-16>와 같이 급식조리기구, 교육훈련비 등 총 \$122,154.70을 지원하였다.



〈표 Ⅲ-16〉 UNICEF의 학교 영양사업 지원 현황(1975~1978)

사업내용	연도	지원실적(\$)				계
		1975	1976	1977	1978	
1. 초등학교 급식 및 생산활동 설치비						
가. 현물(급식조리농기구)		7,662.19	14,571.81	16,214.56	38,890.62	77,339.18
2. 훈련 및 영양교육자료 제작 경비 및 장비						
가. 물자(시청각기재)		171.65	1,913.52	3,589.16	-	5,674.33
나. 현금(훈련비)		7,001.35	12,437.13	-	-	19,438.48
3. 기초 및 진도조사비						
가. 물자(체중기등)		-	5,863.95	82.58	-	5,946.53
나. 현금(10지역)		1,308.33	9,418.75	1,250.00	-	11,977.08
소계	가. 현물	7,833.84	22,349.28	19,886.30	38,890.62	88,960.04
	나. 현금	8,309.68	21,855.88	1,250.00	-	31,415.56
4. 운송비		-	1,730.09	48.41	-	1,779.10
합계		16,143.52	45,935.85	21,184.71	38,890.62	122,154.70

* 출처 : 학교급식현황(문교부, 1979)

나. 교육 및 연수회 개최

농촌형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과정에서 급식학교 관계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3년 5월 최초로 3일 일정의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수회는 급식실험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관계자의 학교급식에 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그 성과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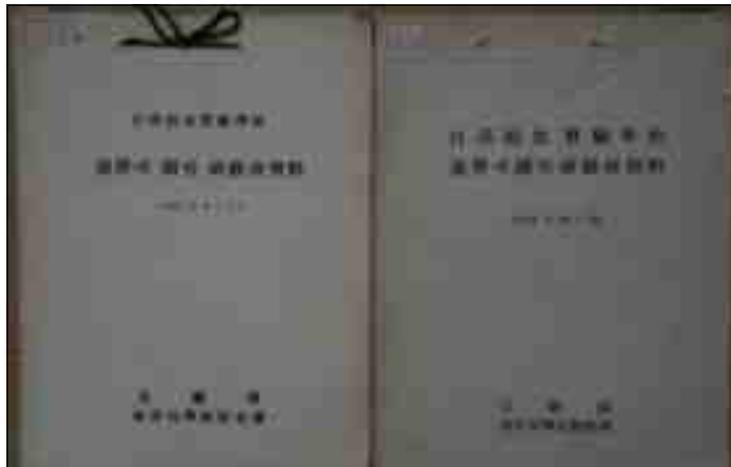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UNICEF의 자금지원으로, 1977년부터는 국고재원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신규지정 실험학교 연수회,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담당교사 연수회 등이 있었다. 신규지정 실험학교 연수회에서는 자활급식 실험학교로 신규 지정된 학교의 학교장은 물론 소속 교육청 장학사 등 관계자, 당해학교 육성회장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필요성과 개념, 영양교육, 식품위생, 학교급식시설,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지침 등 학교급식 실시전반에 관한 연수와 협의를 하여 큰 효과를 얻었다.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는 매년 신설 급식학교의 학교장이나 기존 급식학교의 새로 부임한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담당교사 연수회로 1975년과 1976년에 급식실험학교 급식 담당교사와 생산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에서 10일간 실시하였다. 1978년부터 급식 담당교사의 연수는 문교부내 교직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978년부터 학교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가 배치되면서 1979년에 영양사에 대한 연수회가 신설되어 매년 개최되었다. 학교급식관계자 연수회는 문교부와 시·도교육청주관 각종 연수회로 이어졌으며 학교급식운영에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문교부주관 연수회 등의 실적은 <표 III-17>과 같다.

자활급식 실험학교 연수회의 초창기 교재는 [사진 III-8]과 같으며 연수회를 통해 급식학교의 애로사항 파악되면서 영양사 배치 및 급식시설 확충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영양을 고려할 수 있는 급식 식단의 실천과 전반적인 급식관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영양사를 배치하고 이후 조리사, 조리원 등의 인력이 배치된 것이었다.



[사진 III-8] 연수회 자료집



〈표 Ⅲ-17〉 학교급식 관계연수 및 협의회(1973~1980)

연도	과정명	기간 / 장소	참가자
1973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40명
	•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6일간	36명
1974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5일간 1회	40명
	• 도시형 실험학교 운영 개선 협의회	3일간	56명
1975	•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6일간	48명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42명
	• 자활급식 실험학교 생산관리 담당교사 연수회	9일간	33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교사 연수회	10일간	55명
1976	•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75명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72명
	• 자활급식 실험학교 생산관리 담당교사 연수회	10일간	40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교사 연수회	10일간	60명
1977	•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116명
	• 도시형 실험학교 운영개선 연구협의회	3일간	51명
	•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137명
	• 도서벽지 자체조리 급식학교 운영연구 협의회	3일간	222명
1978	• 학교급식관계자 협의회(제빵업자, 시·도·군 관계자)	2일간	263명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2일간 1회	39명
1979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교사 연수회	4일간 2회	352명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32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교사 연수회	4일간 1회	189명(영양사)
1980	•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155명
	• 자활급식 실험학교 생산관리 담당교사 연수회	4일간 1회	61명(영양사)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교사 연수회	6일간 2회	79명(영양사)
	•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115명
	• 교육대학 관계교수 세미나	1회	20명

* 출처 : 학교급식 현황(1980)



다. 학교급식 운영평가

1979년부터 문교부는 전국 급식실시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사업의 추진 목적은 급식운영 우수교를 시상하고 우수 교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해 5월 교육감으로부터 심사대상 학교를 추천 받아 9월까지 예비조사를 하고, 10월과 11월에 위촉된 심사위원들과 문교부 직원이 현지 학교를 방문하는 등 본심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하여 12월에 시상하였다. 최우수교 5개교(교당 시상금 100만 원), 우수교 11개교(교당 시상금 50만 원)와 학교급식 유공자 45명에 대해 문교부장관 표창이 있었다.

1980년에는 최우수교와 우수교 시상 학교수는 1979년과 같되, 우수교에 대한 시상금을 교당 6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1980년부터는 학교급식에 공이 많은 학부모 등 일반인 30명에 대해 문교부장관 감사장을 수여하였다(부록 9 참조).

라. 급식 개선을 위한 연구

실험학교 연수회 및 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 현장의 애로사상이 파악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8년에 발간된 학교급식백서에 “학교급식의 발전과정에 꼭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급식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개선과 지원이다. 연구가 수반되지 않는 제도의 지속은 발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 연구는 거듭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시기에 문교부에서 수행한 주요 정책과제는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학교급식관련 정책연구 현황(1973~1980)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교수진	비고
1973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연구 :자활급식 2년간의 관찰	김명호 교수(연세대), 이원덕, 김영옥, 김문제	예방의학회지 제9권 제1호, 1976
1974	학교급식 표준식단설정에 관한 연구	박일화 교수(이화여대) 모수미 교수(서울대) 염초애 교수(숙명여대)	연구보고서
1975	문교부에서 연구되어 시행되는 식단에 준한 설비시설 및 조리공간의 넓이와 설계	지순 교수(연세대)	연구보고서
1976	학교급식의 제도화 연구	김명호 교수(연세대), 백완기, 김영옥, 진행미	최신의학 제21권 제3호, 1978
1977	학교급식의 실태조사 및 급식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덕진 교수(연세대)	연구보고서
1979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옥 교수(서울대)	보건학논집 제30호, 1980

1) 학교급식의 효과에 관한 연구

문교부는 농어촌지역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을 시작하며 학교급식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를 2년간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맡은 김명호 교수 등은 농촌자활급식 초등학교의 급식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972년 최초로 자활급식 실험학교로 지정받아 1973년 3월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활급식을 실시하는 용인군 남곡면에 위치한 남곡초등학교와 대조학교로 남사면에 위치한 비급식학교인 남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설계를 하였다.

급식실시 전인 1973년 2월 총 813명에 대해 기초조사(체위검사, 신체검사, 혈액 및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1년 9개월 후인 1974년 11월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급식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중식만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식단은 다섯 종류로 우유는 매일 급식하고 식빵과 수프는 국수와 김치를 번갈아가며 공급하였다. 1회 평균 616~827 kcal의 식단으로 도시락보다 칼로리면에서 별로 크게 보강된 식단은 아니었다. 1973년이 177회, 1974년이 190회로 평균 2일에 1번꼴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졌다.



두 학교의 사후검사의 비교 결과, 급식의 효과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으나 급식교가 비급식교보다 체위 증가폭이 우위에 있는 경향으로 급식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급식교 아동들의 체위나 영양상태가 큰 향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비급식교 수준을 넘지 않았고, 높은 질병 발생율로 보아 현재의 급식 방법이나 운영에 있어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 영양사에 의한 식단의 운영관리, 균형 있고 보다 충분한 영양공급, 급식횟수의 증가가 요망되며 아동들의 체위향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해 학부모들의 보다 높은 열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2) 학교급식 표준식단 설정에 관한 연구

박일화 교수 등의 “학교급식 표준식단 설정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이 학교현장에서 잘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활용하여 영양가가 높고 값싸며 아동의 기호에 맞는 급식용 표준식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문교부 주최 학교급식관계자 연수회와 시범학교 운영개선 연구협의회에 참여하여 그들이 당면한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학교 현지조사를 한 후 아동의 소요영양량 결정 및 완전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실험조리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표준식단을 개발하였다.

학교급식 관리자들은 급식운영을 위한 영양 등 관련지식의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자활급식학교의 급식시설·설비는 극히 미비하였다. 표준식단을 계획하기 위해 우선 급식을 위한 소요영양량을 FAO 한국협회 식품영양전문위원회에서 정한 단백질과 칼로리 권장량을 7~9세 기준, 즉 초등학교 1~3학년 기준의 1/3, 즉, 한 끼분으로 단백질 20g, 700kcal로 정하였다. 여러 가지 단백질 식품 중 가장 값싼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 상용하는 단백질식품 1교환단위(단백질 7g, 지방5g, 75kcal)당 가격을 산출 비교하였다.

표준식단은 값이 싸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며 극히 간편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완전급식용과 부분급식용으로 구분하여 <표 III-19>과 같이 14개씩 작성하여, 이들 식단에 대해 20인분의 각 식재료별 분량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부분급식용은 현재 급식하고 있는 빵과 함께 줄 수 있는 국, 수프, 찌개 등의 종류이다.



〈표 III-19〉 학교급식 표준식단

완전급식용 식단내용					부분급식용 식단내용					
음식명	kcal	단백질 (g)	단백가	가격 (원)	음식명	kcal	단백질 (g)	단백가	가격 (원)	빵포함 가격 (원)
통밀잡채국수	671	27	77	46.40	무우국	616	34	86	23.65	48.65
통밀깨국수	655	32	88	62.35	시금치국	656	22	72	22.33	47.33
고구마사과범벅	697	23	71	64.09	콩나물국	625	26	75	17.71	42.71
고구마호박범벅	685	28	73	47.35	들깨감자국	638	29	88	19.80	44.80
현미떡국	758	35	94	43.00	미역국	653	26	81	20.10	45.10
떡볶이	865	20	84	50.56	옥수수크림수프	654	22	82	11.41	36.41
카레현미떡볶이	899	22	87	50.56	콩크림수프	735	33	76	14.61	39.61
보리카레수제비	700	25	78	54.95	감자크림수프	722	25	85	13.38	38.38
보리수제비	664	27	74	34.61	땅콩수프	695	26	82	15.81	40.81
고구마보리밥	665	22	88	35.92	보리국	748	29	81	19.25	44.29
김치덮밥	738	23	79	54.23	호박찌개	683	33	73	37.26	62.20
채소밥	691	27	75	49.92	두부찌개	650	37	74	32.17	57.17
감자단자	712	31	77	67.75	콩비지찌개	639	31	72	9.37	34.37
고구마단자	833	25	75	50.50	채소찌개	658	26	78	30.78	55.78

* 출처 : 박일화·모수미·염초애, 학교급식 표준식단 설정에 관한 연구, 1975

이러한 연구 자료를 기초로 1978년 1월 문교부 체육국 학교급식과에서 “학교급식 식단작성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학교급식 식단작성에 있어 지역별, 계절적인 다양성을 가지되 원칙적으로 매 끼마다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이 골고루 배합된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하도록 제시하였다.

3) 급식 설비시설에 관한 연구

지순 교수의 “문교부에서 연구되어 시행되는 식단에 준한 설비시설 및 조리공간의 넓이와 설계에 관한 연구”는 비위생적이고 비능률적인 급식시설이 대부분인 당시 상황에서 각자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으며 최소의 예산과 자조, 자활의 투자로 마련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적정공간과 시설설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즉, 급식학생 인원수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 지역별(도시, 농어촌 등)에 따른 적합성, 위생적 관리의 적정화, 경제적인 면에서의 실용화 가능성 등의 방법으로 급식시설설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도시, 근교농촌, 일반농촌의 3개 지역 급식학교를 1개교씩 실험학교로 선정하여 직접 급식실시과정 현장관찰 및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도시학교와 농촌학교(근교농촌학교 포함)의 급식학생수에 따른 창고의 넓이, 급식인원수에 따른 급식작업 공간의 면적 계산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급식 작업과정의 순서를 분석하여 조리공간과 배선공간의 연결이 원활히 처리되고 사용성격이 다른 조리공간과 배선공간의 동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리 및 배선 작업실의 배치의 일곱 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4) 학교급식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김명호 교수 등은 “학교급식의 제도화 연구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급식전문가, 각 시·도와 시·군의 관리책임자, 시·군 학교급식담당 장학사, 학교장, 일반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학교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의 건강, 성장과 발육, 식습관의 개선, 생활교육과 같은 교육활동의 일부로서의 학교급식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으로 부분급식인 점과 교육적 및 영양적으로 충분한 급식이 아니라는 것, 급식준비과정, 시식과정, 급식재정(급식비), 급식관리 및 실무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학교급식의 개선책으로 급식관리기구와 제도의 강화, 급식의 대상 확대, 영양급식의 실시(급식의 기준량 설정, 식단의 다양화, 부식위주 급식), 급식을 정식 교육과정안에 포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교사 대상 영양교육 및 훈련, 일반국민에 대한 계몽 등과 함께 급식횟수를 수업일 또는 주 5회 로 확대하도록 제시되었다. 급식을 위한 시설설비비는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하고 식사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급식담당자로 영양사의 단계적 배치 등 또한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중요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설립자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급식의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자로 하는 것, 학교급식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것 및 학교급식의 기준과 경비부담, 국고보조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법 초안을 제안하였다.

5) 학교급식의 실태조사 및 급식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윤덕진 교수는 “학교급식의 실태조사 및 급식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 읍,



농촌, 어촌, 벽지 및 낙도 초등학교의 교장, 담임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일부 학교의 급식현장답사를 통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은 24%였으며 이중 유료급식자는 13.8%, 무료급식자는 11%이었다. 자활 및 준자활 급식학교는 여러 가지 음식을 급식하고 있었으나 일반 급식학교의 경우 빵만 급식 받은 아동이 52%, 건빵만 받은 아동이 15%, 빵과 우유를 같이 급식 받았던 경우는 12%였다.

빵에 대한 기호도는 잘 먹는다는 아동이 47%, 보통이다가 30.7%, 잘 안먹는다가 23%였다. 잘 안 먹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67%, 매일 같은 것을 주어서 싫증을 느껴서가 24.9%이었다. 급식을 시작한 동기는 아이가 먹고 싶어 했기 때문이 74%였으며, 급식을 처음에는 잘 먹다가 나중에는 잘 먹지 않았다는 경우가 64%였고 급식이 아동들 몸에 이롭다고 믿고 있던 부모들은 전체의 12%에 불과하였다. 급식을 하고 있어도 도시락을 지참시켰던 경우가 66%나 되었다.

급식을 담당했던 교장 또는 교사들은 급식과 관련해 가장 곤란한 점으로 아동들이 빵을 먹으려 하지 않아 급식대상 선정이 곤란했었다는 점(78.6%)과 급식대금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92.9%)을 들었다.

대부분의 교장과 교사(92.9%~100%)들은 한 끼의 식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학교 전체아동들을 대상으로 주 5회는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빵이나 우유 등 간식 비슷한 급식방법을 지양하고 급식시설의 설치 및 급식비 보조 등 국가 보조가 필요하며 전 국민에게 학교급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신문, 라디오, TV 등을 통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67.8%).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학교급식을 의무교육 학교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려면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가정식사에서 부족 되는 영양소를 학교급식으로 보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급식 영양량이 정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은 국가보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외의 모든 아동의 급식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되 농, 어촌 등지에서는 현물부담도 용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급식관계 영양직원 및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비 부담으로 하고 학부모들이 당번제로 조리보조원 봉사활동을 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0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가. 실적

이 시기의 학교급식 실적은 <표 III-20>과 <표 III-21>과 같다.

<표 III-20> 초등학교 급식 실시현황(1973~1980)

연도	학교수	재적아동수	급식인원수	비율 ¹⁾	비고(유·무상 급식인원수)
1973	5,820	5,692,290	1,476,000	26	국고 무상 511,000 / 자담 965,000
1974	6,208	5,618,700	1,402,100	25	552,100 / 850,000
1975	5,980	5,599,074	1,384,100	25	698,200 / 685,900
1976	6,010	5,503,737	1,216,000	22	479,100 / 736,900
1977	6,265	5,514,417	1,322,300	24	535,700 / 786,600
1978	382	5,604,365	141,611	2.5	
1979	387	5,640,712	131,004	2.3	
1980	425	5,658,002	159,619	2.8	

1) 전체학생수 대비 급식학생수 비율(%)

* 출처 : 1973~1977 통계는 학교급식백서(1978), 문교통계연보(1979~1981)

<표 III-21>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1973~1980)

(단위 : 천원)

연도별	국고 및 지방재정 급식비 합계				학부모, 기타 급식비
	식품비	운영비	시설비	계	
1973	1,139,483		27,000	1,166,483	1,366,152
1974	1,739,269		30,328	1,769,597	1,022,151
1975	2,808,704	9,712	34,870	2,853,286	1,986,022
1976	2,958,154	82,600	291,000	3,131,754	18,721
1977	3,321,147		212,000	3,533,147	2,651,720 ¹⁾
1978	1,956,288	384,253	220,859	2,561,400	934,418
1979	2,245,400	626,190	273,214	3,144,804	1,717,607
1980	2,316,783	1,240,569	446,544	4,003,896 (320,566) ²⁾	2,560,122 ¹⁾

1) 학교생산 포함

2) 1980년도 신설한 교대 및 국립대학교 부속초등학교의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국고)로 전체 예산에 포함됨

* 출처 : 문교통계연보(1972~1981)



나. 평가

1966년 USAID의 원조를 받으며 1968년 7월까지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1968년 3월, 학교급식 사업연장 수정계획 제출시 우리정부는 학교급식을 위한 국고보조를 증액하고 매년 수혜자수를 확대하여 1978년까지 급식대상을 초등학교 전체아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1972년까지 양곡지원을 받았었다. 하지만 1972년 양곡지원 종료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경제형편과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우선 기존의 일괄 제빵 급식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정부 지원의 무료급식을 줄이고 수익자 부담 급식을 늘려나갔다. 그러다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학교급식제도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도 도서벽지와 농어촌의 배고픈 어린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교장선생님들의 주장이 있어 학교급식제도는 존치되었고, 대형 식중독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자체조리급식 형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학교 자체조리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이외에도 시설비와 인건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만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의 생산활동을 통해 급식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제도가 도입,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문교부의 담당자와 일선 자활급식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열정 덕분이었다. 농어촌 자활급식은 완전 영양급식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더 어려운 도서벽지와 농어촌부터 자체조리 급식을 확대해 나간 것은 우수한 정책이었다. 이 시기는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학교급식을 개선하고 제도화하여 학교급식법 제정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



IV 학교급식 제도화기(1981~1990)

이 개요

이 시기는 외국원조 종료 후에 지속된 정부와 학교 현장 관계자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인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기간이다. 즉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아래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도 전에 문교부의 학교급식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학교급식 예산의 재원이 교육재정이고, 급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산·인력·조직관리 측면에서 체육부가 학교급식 정책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신규 학교급식의 확대보다는 문교부의 급식운영 방침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갔다. 오히려 급식정책을 맡고 있는 체육부보다는 급식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이 정착되어간 시기였다. 1978년부터 자체조리급식을 하면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영양사를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한 것이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정착하게 된 밑바탕이 되었다.

한편, 1986년부터 체육부에서 급식학교와 비급식학교 아동들의 체위, 질병발생율, 학력, 결석율 등을 비교하여 학교급식의 효과를 홍보한 것은 1990년대에 초등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 동안의 학교급식관련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81~1990)

년	월	내용
1981.	1	학교급식법 제정공포(법률 제 3356호)
	9	학교급식법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0460호)
	11	우수시범급식학교 및 학교급식유공자 표창
1982.	1	급식학교 영양사를 보건직(7급)으로 배치
	2	문교예규 제4호 폐지로 시범급식학교를 급식학교로 운영
	3	학교급식업무를 체육부 학교체육과에서 관장(우유급식 포함) 학교급식법령 관련조항 개정(법률 제3540호, 대통령령 제10767호)
	12	'82년도 학교급식운영연구협의회 개최(교장 180명, 이화여대)
1983.	2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공포, 학교급식규칙 폐지(체육부훈령 제2호)
	8	학교급식현황 발간
	11	'83년도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213명, 체육부)
	11	KBS스튜디오 830, 학교급식 방영(학교급식, 체력이 좋아졌다!)
	12	학교급식 지도편람 발간
1984.	2	학교급식확대 실시방안 수립·협약(5개년('85~'89) 추진계획)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362호)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체육부령 제7호)
1986.	12	학교급식 표준식단 책자 발행
		학교급식 확대를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
1988.	12	2000년까지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학교 70%, 도시지역학교 50%이상 실시
1989.	10	학교급식을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주요업무로 심사분석 실시
	12	체육부 폐지로 학교급식업무를 문교부로 이관
1990	1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사업 시작(농림수산물부)
	9	생활보호대상 초등생 우유급식 전액보조(일반학생 보조 존속) 극빈아동 보조인원 : (당초) 76천명→ (조정) 250천명
	12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3186호)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변경



02 학교급식법 제정

가. 학교급식법 제정 배경

1978년 학교급식백서에서 편찬위원회는 당시까지 지속된 학교급식은 급식에 관심이 있는 일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법적 제도적 보장이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기에 학교급식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급식법」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78년 6월 문교부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법 제정안으로 문교부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까지 하였으나, 그해 8월 국회상정이 보류되게 되었다. 이후 학교급식법 제정안이 1980년 12월 26일 정부입법으로 국회(국가보위입법회의)에 다시 제출되었다. 1981년 1월 14일 제16차 문교공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1년 1월 16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56호로 공포되었다.

학교급식법의 제안 이유는 1980년대 복지국가건설에 발맞추어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종래의 구호적 급식에서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은 1981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1046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도 전인 1982년 3월 20일 법률 제354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 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나.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골자

1981년 제정·공포된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표 IV-2>와 같다.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록 2의 가에 제시하였다.



〈표 IV-2〉 1981년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

학교급식법[시행 1981.1.29.] [법률 제3356호, 1981.1.29. 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시행 1981.9.8.] [대통령령 제10460호, 1981.9.8., 제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과 급식제도를 통한 식습관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3조)	1) 학교급식은 토요일을 제외한 수업일의 주식시간에 실시하되 별표의 영양기준에 맞는 급식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제3조)
2) 학교급식의 대상을 국민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함(제4조)	2)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3) 학교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이상의 학교가 인접시 공동급식시설 가능(제5조)	3) 조리실, 식품보관실, 강의실의 시설·설비기준을 제시하고, 그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문교부장관이 정함(제4조)
4) 학교급식실시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도록 함(제7조 제1항)	4) 학교급식 실시학교는 영양사 자격을 가진 전담직원을 두도록 함(제5조제1항)
5)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시설·설비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급식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국민학교 등의 급식에 관한 경비와 경비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6) 학교에서 작물재배, 동물사육 등 각종 생산활동에서 얻은 공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 및 학교급식 실시학교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종전의 학교급식규칙과 달리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학교의 자체조리급식을 명문화하였으며, 급식 경비부담 및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급식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의무교육대상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그 밖에 기타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등으로 넓혔으며, 자활급식의 생산품 처리방안에 대하여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된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하위 법령으로서의 학교급식규칙보다 학교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주요 골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1983년 2월 25일 체육부령 제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표 IV-3>과 같다. 동 규칙은 급식시설·설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기준에 미달된 학교는 1985년 말까지 기준에 맞는 급식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조리 및 급식설비·기구기준에 취반기(또는 밥솥)와 국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제빵설비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밥급식의 확대에 기여했다.

<표 IV-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

구 분	주요 내용
급식학교의 지정	교육감의 급식학교 지정 신청에 의해 체육부 장관이 지정
급식학교의 유형구분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농어촌형 급식학교, 도시형 급식학교
급식시설·설비 기준	조리실·식품보관실 면적기준, 조리실 시설·설비기준, 조리 및 급식설비·기구의 기준, 식품보관실 설비·기구의 기준을 별표로 정함
급식실시 지침	체육부 장관은 다음년도의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시달해야함. 교육감은 당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부시행지침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시달, 교육장은 1월말까지 각급 학교에 통보
학교급식위원회 조직	서울특별시·직할시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 및 학교에 두는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함. 위원장은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되며,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와 급식학교 급식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함
보고	교육감은 매년말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다음해 1월 말까지). 급식학교의 장은 당해학년도의 학부모 부담경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과 전학년도의 학부모 부담경비의 내역 및 사용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3월말까지). 급식학교장은 당해학년도의 생산활동 계획 및 생산품의 사용계획과 전학년도의 생산활동 실적 및 그 생산품의 사용실적을 감독청에 보고(3월말까지). 급식학교의 감독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급식학교 지도·감독에 적절히 활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학교급식규칙 폐지 시설·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기 지정된 급식학교로서 급식시설·설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1985.12.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함



라. 학교급식법령 주요 개정내용

198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과 그 하위법령의 1990년까지의 주요 개정배경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타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법령 개정

- 가) 1982.3.20,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되어 문교부 기능 중 체육에 관한 사항(학교급식업무 포함)이 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법령의 “문교부장관”이 “체육부장관”으로 개정됨(법률 제3540호, 대통령령 제 10767호)
- 나) 1989.12.30.,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가 문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법령의 “체육부장관”이 “문교부장관”으로 개정됨(법률 제4183호, 대통령령 제 12927호)
- 다) 1990.12.27.,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교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급식법령의 “문교부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개정됨(법률 제4268호, 대통령령 제 13282호)

2) 급식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3항 개정, 1984.2.25., 대통령령 제11362호)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지원 기준이 지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지원의 대상을 “도서벽지지역 국민학교”에서 “도서벽지지역 국민학교 및 학생전원의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같은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민학교”로 확대하였음.
- 다) “농어촌지역 국민학교”에서 “농어촌지역 국민학교 및 학생전원의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같은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민학교”로 확대하였음.



3) 권한이양 및 급식운영 합리화를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등 개정, 1990.12.22. 대통령령 제 13186호)

- 가) 학교급식 대상학교 지정권한을 문교부장관에서 시·도교육장에게 이양 함
- 나)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것을 문교부령으로 정함
- 다)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1회 급식학생수가 50인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50인 미만인 학교에는 영양사 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함. 또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급식학교의 장은 급식학생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라) 제7조 제3항 3호의 저소득층학생 급식경비 지원대상을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던 것을 시·도교육장에게 이양함



03

농림부의 협조

가. 우유급식 실시

농림부는 1962년부터 서울지역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였으나 1964년 국고보조 중단으로 우유급식 사업을 중단하였다. 1970년도 2학기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의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농협산하의 우유협동조합과 각 국민학교장이 계약에 의해 전액 학부형 부담의 우유급식이 시작되었다.

1972년, 낙농산업 활성화로 우유 공급과잉 상태가 되어, 국산 유제품 재고 증가 및 우유 처리 공장의 낙농가로부터 우유인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아동의 체위향상과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국민학교 우유급식을 권장하였다. 이를 위해 농수산부는 우유 급식비를 보조하고, 우유 생산업체의 공급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문교부는 초등학교 우유급식 확대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1977년 10월, 학교급식빵 식중독 사고로 일반급식(제빵급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빵과 함께 공급되었던 우유급식도 중단되었다.

1980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문교부와 협조하여 재추진하였다. 우유급식 대상은 도서벽지, 농어촌 및 도시의 급식학교(초등학교)로 우유를 급식품에 포함시켜 급식하도록 하였다. 우유의 종류는 시유와 전지분유였다. 매일 시유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의 학교는 전지분유를 이용한 우유급식을 하였다. 우유급식 대금은 도서벽지형은 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식비에서 납부하며, 농촌형은 학교급식비에서 납부하되 부담능력이 어려운 재적생의 20%에게는 무상급식을, 도시형은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하였다. 무상 우유급식 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1인1식당 우유급식 기준량은 전지분유는 20g, 시유는 180 cc이었다.

전지분유 급식학교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전지분유 급식학교를 신청받아 유가공업체를 지정하고(시·도와 협의지정), 전지분유 급식실시학교는 지정된 업체중에서 학교실정 및 교통편의를 감안하여 공급계약을 체결·실시하였다. 시유급식학교는 계약공급업체에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공급실적이 부실할 경우 학교장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급식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986년부터는 도시형 급식학교도 재적생의 5%에게는 무상 우유급식을 실시하였다.



1인1식당 기준량을 전지분유는 22.2g, 시유는 200cc로 늘렸다. 또한, 시유급식학교의 경우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하여 5℃이하로 유지·보관하도록 하였다. 냉장시설은 공급 유업체와 협의 설치토록 하였다.

1986년 1월부터는 가격보조 없이 중·고등학교 자율 우유급식을 권장하였다. 1990년 9월, 농림수산부는 심각한 우유 적체난을 해소하고 영세민 자녀의 학교급식 수준 향상을 위해 당시 7만 6천명인 극빈아동 우유급식 무상지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전체인 25만명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9월, 국무조정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중·고등학생에게도 보조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05년 3월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보조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였고, 2006년 3월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2008년 1월 학교우유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무상급식을 차상 위계층 및 도서벽지지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백색우유 순환 급식제를 도입하며, 중·고교 주 1회 가공유 급식 허용 등이었다. 이에따라 2010년 1월, 초등학교 차상위계층 까지 우유무상급식을 확대하였다. 2011년 1월에는 우유급식 품목 확대 및 용량 다양화를 추진하여 200ml 백색우유·강화우유 공급이외에 저지방우유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백색시유의 기타 유제품 공급제한 완화를 중·고교 주 1회에서 초·중·고 주 1회로 변경 하였다.

2011년, 보조급식 사업을 저소득층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보조급식(저소득층)은 농림 수산식품부(축산진흥기금)와 지자체 예산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실시하고, 보조급식(일반)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예산으로 점심급식에 우유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우유 무상급식 인원을 확대하였다. 2013년 1월에는 정부 재정지원형태를 변경하여 종전에 농림부와 지자체가 7:3으로 지원하던 것을 6:4로 조정하였다.

2014년, 우유급식은 전체 초·중·고의 80%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90%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우유급식 참여학생의 약 3/4이 유상급식을, 1/4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우유급식은 방학포함 연간 250일 내외로 제공되며, 백색 시유 200ml의 단가는 430원이다. 2014년도 우유급식 실시 학교수와 학생수 현황은 <표 IV-4>, <표 IV-5>과 같다.



〈표 IV-4〉 2014년도 학교 우유급식 학교수 현황 (단위 : 교, %)

구분	전체 학교수	우유급식 학교수				급식학교비율
		유무상	유상	무상	계	
초등학교	5,934	5,107	81	445	5,633	94.9
중 학교	3,186	1,828	55	362	2,245	70.5
고등학교	2,326	964	113	256	1,333	57.3
특수학교	166	83	1	71	155	93.4
계	11,612	7,982	250	1,134	9,366	80.7

* 출처 : 낙농진흥회 자료 가공

〈표 IV-5〉 2014년도 학교 우유급식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우유급식 학생수				합계	급식학생비율
		유상급식	무상급식		계		
			일반	저소득			
초등학교	2,728,509	1,555,821	427,056	249,044	676,100	2,231,921	81.8
중 학교	1,717,911	528,062	7,321	109,848	117,169	645,231	37.6
고등학교	1,839,372	350,979	3,422	103,207	106,629	457,608	24.9
특수학교	25,317	2,009	1,795	20,692	22,487	24,496	96.8
계	6,311,109	2,436,871	439,594	482,791	922,385	3,359,256	53.2

* 출처 : 낙농진흥회 자료 가공

2016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중학생까지 확대하였다. 1980년부터 최근까지의 우유급식 실적을 〈표 IV-6〉에 정리하였다.



〈표 IV-6〉 학교 우유급식 실적(1980~2015)

연도별	1일 급식인원(천명)			학교 우유급식			기금보조액 (백만원)	비고 (200ml 지원·급식단가)
	계	유상	무상	소비량 (천톤)	점유비 (%)	가격비 (%)		
1980	566			1	0.2		19	
1981	1,053			34	6.1	68	856	초등 연 180일 급식
1982	1,190			39	6.6	68	1,528	
1983	1,521			49	6.7	68	2,558	
1984	1,739			56	6.7	68	1,940	
1985	2,123			69	7.0	68	2,147	
1986	3,116			112	9.0	68	3,052	중·고 자율급식권장
1987	3,905			141	9.9	68	4,082	
1988	4,566			164	9.9	68	5,263	
1989	4,318			155	9.4	59	2,498	
1990	4,231			169	9.0	59	3,761	연 200일 급식
1991	3,498			140	7.5	59	4,892	
1992	3,568			143	7.4	59/61	5,915	
1993	3,476			139	7.0	61/58	5,938	
1994	3,368			135	6.5	58/57	6,029	
1995	3,318			133	6.2	57/55	6,110	180원
1996	3,095			124	5.0	55/59	6,230	
1997	3,276	3,086	180	131	7.7	59.7	7,215	
1998	3,299	3,129	170	132	9.4	63.5	7,043	
1999	3,293	3,108	185	132	10.2	65.3	5,907	
2000	3,278	3,071	207	131	7.7	65.3	9,520	235원 이하
2001	3,310	3,100	210			65.3	12,851	우유 고정단가제
2002	3,310	3,100	210			68.5	14,805	235원
2003						68.1	14,805	
2004			210			57.7	14,700	
2005	3,686	3,407	279			58.1	16,054	270원, 중학교보조급식
2006			374			58.1	16,600	고등학교 보조급식
2007	3,938	3,520	418			58.2	17,672	
2008	3,769	3,328	441			51.1	17,672	
2009	3,855	3,465	390			55.6	22,160	330원
2010	3,762	3,260	502	147	10.8	56.0	29,568	초 차상위계층 무상
2011	3,653	2,839	814	142	11	54.4	29,568	보조급식(일반) 도입
2012	3,538	2,547	991	138	9.8	58.5	29,568	380원
2013	3,456	2,477	979	135	9.7	56.5	29,568	
2014	3,359	2,437	922	132	9.7	59.1	33,468	430원
2015	3,208	2,239	969	123	9.1	59.1	33,468	

* 점유비 : 학교급식 우유소비량 / 전국 우유소비총량

* 가격비 : 학교 우유공급 가격 / 우유 소비자 가격

* 기금보조액 : 국고지원분만 표시

* 무상급식 학생수 : 2011년 부터는 저소득층 이외에 보조급식(일반) 학생수도 포함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낙농진흥회, 교육부



나. 정부양곡의 저가 지원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품종개량 및 영농기술 개발 등으로 쌀 생산 수준은 안정된 반면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쌀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추세에 있어 쌀 재고량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90년 1월 농림수산부는 '가공식품용 쌀 수요개발 및 소비확대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쌀 가공식품 개발 보금 지원대책, 막걸리, 약주 및 민속주 개발지원 대책, 학교급식 확대 등이었다.

그 중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분은 학교급식 확대 실시로 성장기 아동에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형성케하고 쌀소비 문화계승으로 식량용 쌀의 수요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용 정부미는 정부미 방출가격의 50%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학교급식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은 문교부의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여 급식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당시 학교급식 실시현황 : 학교수 11%, 학생수 5.4%), 농림수산부도 문교부의 급식확대 추진과 병행하여 적극 참여하여 학교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농협이 밥공장, 도시락공장 등 설치운영하여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학교급식용 정부미의 저가공급 사업은 199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공급대상은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급식학교로 지정받은 학교('89년말 현재 701개교) 및 자체급식시설이 완비된 학교(국민학교 및 유치원)였다. 공급량은 1인1일 120g 이내로 급식학교 소요량 전량이었다. 정부미의 학교 공급가격은 정부미 방출가격의 50%에 공급하였다. 나머지 차액은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하였다.

1991년 3월부터는 정부미 저가 공급대상을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급식시설이 설치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였다. 1인 1식당 공급량은 유치원 90g 이내, 초등학교는 120g이내, 중·고등학교 220g 이내, 특수학교 130g 이내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저가공급 정부양곡으로 통일미가 공급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일반미가 공급되었다.

정부양곡의 1인1식당 공급기준량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표 IV-7>과 같이 초창기에는 초등학교 120g, 중·고등학교 220g이었으나, 2000년에는 초 70g, 중 140g, 고 150g으로 조정되었다.



〈표 IV-7〉 학교급식용 정부미 공급기준

(단위 : g, 1인 1식)

적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특수)학교		
			공학	남자	여자	공학	남자	여자
~1997.2.28.	90	120	220			220 (특수학교는 200)		
1997.3.1.~	80	110	130			130		
2000.9.1.~	70		140	150	130	150	170	130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자료 제공

학교급식확대에 따라 정부양곡의 사용량은 늘어나 2005년 연 최고 7만 톤을 사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식재료비 지원으로 친환경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양곡의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WTO 협정상 ‘시가 매입, 시가 방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짐에 따라 2008년부터는 연차별로 10%씩 할인율이 축소되어 2012년부터는 할인판매가 중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서의 정부양곡 사용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 현재는 연 3천 톤만이 사용되고 있다.

1990년도부터 실시해 온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사업’은 2012년에 폐지되었지만, 외국의 양곡원조에 의해 빵급식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빵급식 등 분식이 주류를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이 지금과 같이 밥위주의 급식으로 전환 및 정착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표 IV-8〉은 농림부의 학교급식용 양곡 저가공급 실적을 보여 준다.



〈표 IV-8〉 학교급식용 양곡의 저가공급 실적(1990~2016)

연도별	공급량(톤)	40kg당 가격		비고
		일반미(원)	통일미(원)	
1990	2,718	22,500	13,880	통일미, 50% 가격, 1인1식당 초 120g 이내
1991	6,734	23,000	13,900	유 90g·초 120g·중·고 220g·특수 200g 이내
1992	9,833	23,000	13,900	"
1993	12,541	24,150	15,000	"
1994	16,250	25,250	12,380	"
1995	21,930	26,130		일반미, 50% 가격
1996	28,063	31,000		
1997	30,768	32,000		
1998	35,712	33,000		
1999	38,448	36,300		
2000	38,880	39,260		초 70g, 중 140g, 고 150g
2001	45,000	39,458		
2002	53,000	38,025		
2003	60,000	38,025		
2004	64,000	38,025		
2005	70,000	38,025		
2006	67,000	36,835		
2007	59,000	39,220		
2008	59,000	47,370		정부미 방출가격의 60% 가격
2009	56,000	57,820		" 70%
2010	41,000	61,440		" 80%
2011	34,000	66,270		" 90%
2012	26,000	80,055		" 100%
2013	17,000	85,340		" 100%
2014	10,000	91,000		" 100%
2015	5,000	88,050		" 100%
2016	3,000	80,450		" 100%

* 1990~2007 : 정부양곡의 학교 공급가격은 정부미 방출가격의 50%에 공급

* 2008년 정부미 방출가격의 60%, 2009년 70%, 2010년 80%, 2011년 90%, 2012년 이후 100%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1998년 이후 자료), 교육부(1998년 이전 자료)



04 학교급식 관리

가. 중앙정부의 학교급식 담당 부처

국민체육의 체계적인 진흥과 체육의 국민저변확대로 국민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 등 국제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2년 3월 20일 법률 제354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체육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문교부 기능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체육부로 이관되어야 했고, 당시 학교급식 업무가 문교부의 학교체육과 소관이었기에 학교급식업무도 체육부로 이관되어야 했다. 이에 문교부는 학교급식업무의 경우 그 성격상 체육부보다는 문교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학교급식업무의 문교부 존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학교급식 업무는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학교급식업무의 체육부 이관시 문교부에서 학교체육과 과장과 급식을 담당했던 행정 직원 한 명이 체육부로 부서를 옮겨 한시적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정 등 급식업무를 맡았다. 체육부는 보건직 6급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7급 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선발하여 학교급식 실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 소관이 되었어도 예산 측면에서는 독립되지 못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급식학교의 지정,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체육부에서 담당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교부결정, 학교시설계획, 인사 및 정원관리는 문교부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학교급식 운영평가, 담당자 연수 등의 소요비용은 체육부의 학교급식 사업비로 추진되었지만, 예산규모가 큰 급식시설비, 식품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예산은 문교부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형태이었다.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로 이관됨으로써 문교부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학교급식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려던 시점에서의 큰 걸림돌이었다.

1989년 경제기획원에서는 학교급식을 1989년도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는 학교급식이 성장·발육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합리적인 영양공급과 정신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학교급식확대의 필요성은 높으나 추진이 부진하므로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과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경제기획원은 학교급식 업무가 체육부와 문교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학교급식 업무를 체육부에서 문교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83호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업무는 체육부에서 문교부로 이관되어 1990년 1월부터 다시 문교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나. 학교급식 관리지침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1982년부터 1988년까지의 학교급식 관리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2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체육부는 학교급식업무가 이관되기 직전 문교부의“1982년 학교급식관리지침”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갔다. 그러므로 1982년 학교급식 관리지침은 중요사항 전반을 요약기술하고 1983년부터는 주요 변경사항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982년 학교급식 관리지침

1. 학교급식의 목표

- 학교급식의 정착
- 영양교육의 강화
- 심신의 건전한 발달

2. 기본방침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로 급식실시의 기반을 확립한다.
-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지양하고 학교 주관하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립도를 높인다.
- 학교급식의 실효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양교육을 강화한다.

3. 일반관리

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숙지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을 기한다.

나) 학교별 급식대상은 전 재적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형 급식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년단위, 학급단위의 전 아동을 대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 급식식단은 급식시설 및 예산, 지역실정, 계절을 감안하여 작성 조리하되, 최대한 다양화를 기하여 아동식성개발 및 영양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라) 급식비 부담 및 운영

- ① 급식학교 급식비는 '81.10월 내시한 예산액과 동일하다.
- ② 학교급식비는 시설비의 국고에서 지원하는 식품비, 운영비와 학부모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 ③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액은 학교여건 지역실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청 및 학교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징수에 물의가 없도록 하고 동징수금이 책정되면 당해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④ 농촌형 급식학교는 학교 공한지를 이용한 생산활동을 통한 생산품 또는 그 수익금을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도서벽지형 및 도시형 급식학교도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권장한다.
- ⑤ 학부모로부터 학교급식 시설이나 생산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급식비와 별도로 금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로부터 받은 기부채납은 예외로 한다.
- ⑥ 사립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시는 지역실정 및 학교연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재량으로 실시하되 급식운영은 도시형 급식학교에 준하여 실시한다(단, 국고지원은 불가함)



1982년 학교급식 관리지침(계속)

4. 영양교육의 강화

- ① 학년별 또는 단계별(저·중·고학년)로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재내용을 자료로 영양교육에 힘쓰는 동시에 지역적,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도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한다.
- ② 생활지도, 특별활동에 포함시켜 보다 아동들이 일상생활과 접근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시설관리

- ①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신규 설치나 보완시 학생 개인 급식기구, 학급별 기구, 전체조리 기구 등을 우선한다. 조리기구는 부식을 위주로 한 설비 및 기구에 중점을 두되, 주식시설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근학교와 공동사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설관리 및 인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한다.
- ② 시설·설비기구는 위생적 관리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고 제조업소로부터 직접 구입하되, 품질이 우수한 K·S품이나 특허품 등을 구입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③ 급식실시 폐쇄 등으로 인한 유휴시설 또는 기존학교에 설치된 설비기구가 학생규모의 과다지역 실정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이전하여 타 학교가 활용토록 한다.

6.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식품위생 관계법령과 문교예규 제3호(1979.3.10.)인 학교급식 실시상의 위생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7. 학교급식 전담요원 확보

학교급식 실시학교에는 유자격 영양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조리사(일용잡급)는 지역 실정상 도저히 유자격자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급식조리 보조원을 일용잡급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급식보조자 채용에 편리하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용잡급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급식보조자 채용에 편리하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 * 학교급식 운영관련 중요지침에 대하여는 중요사항만 발췌하였음
- * 국가기록원 제공

2) 1983년 학교급식 관리지침

영양교육의 강화 부분에 “③ 학부모에 대하여도 학교급식 참여시 또는 가정 통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이 가정의 식생활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가 추가되었다.



3) 1984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영양사는 급식학교에 한 명씩 두도록 하되, 50인 이상 급식학교에 한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급식학교의 지정, 급식운영 유형 상치교의 조정, 영세 급식학교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1984년 학교급식 관리지침

가) 급식학교의 지정

- ① 시·도별 관내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② 생활정도가 낮은 도서벽지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정토록 하며, 조리실은 여유시설을 활용하여 조리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를 가능한 절약토록 한다.
- ③ 급식학교 학생수는 최소한 50인 이상으로 급식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나) 급식학교 유형 상치교 조정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급식학교 유형을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각 시·도의 급식학교 중 유형별 구분 기준과 상치된 급식학교는 1984년 1월말까지 기준유형에 맞도록 조정하여 체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다) 영세급식학교 통합운영

50인 미만이 급식학교는 인근 급식학교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할 것이며, 통합으로 남게되는 영양사는 신설 급식학교에 우선 배정토록 한다.

4) 1985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1984년도에는 급식학교 신규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식학생수를 50인으로 하였던 것을 1985년도에는 최저 인원수를 지역별로 상향 조정(도서벽지 150명 이하, 농어촌 300명 이하, 도시형 500명 이하)하고, 학생 감소현상이 격심한(연 평균 50명이상) 학교는 지정 선정시 제외하였다.

소규모 급식학교 통합운영 기준도 1984년에는 50인 미만인 급식학교였던 것을 1985년에는 현재 또는 향후 2~3년 이내에 100명 미만이 예상되는 학교로 상향 조정하였다.



5) 1986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도서벽지지역의 급식학교 신규지정 제외 기준을 1985년 150명에서 1986년에는 20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이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입증됨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의 효과를 분석, 통계자료를 비치토록 하고, TV, 신문 등에 적극 홍보하여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 효과분석사항으로 급식학교 아동과 비급식학교 아동의 체위, 질병발생률 비율, 학력, 결석률 등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6) 1987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1983년 지침에서 영양교육의 강화 부분에서 “③ 학부모에 대하여도 학교급식 참여시 또는 가정 통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양교육을 강화” 하도록 한 것을 1987년에는 “③ 급식학교의 월별, 주별식단표, 학교신문, 가정통신문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양교육을 강화”로 변경하여 식단표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④ 영양사는 급식시간에 학교방송 등을 통하여 오늘의 식단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교실 및 복도 등에 5대 영양소 등 영양에 관한 교육자료를 게시토록 하여 아동의 영양교육에 힘쓰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7) 1988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1987년까지는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급식학교의 작물재배, 동물사육 등의 생산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도시형 급식학교도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이러한 생산활동을 권장하였으나, 1988년에는 생산활동은 학교교육운영에 지장이 없고 예산 낭비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시형 급식학교에 대한 권장내용은 삭제하였다.

또한, 학교실습지 등 각종 생산활동은 과도한 작물재배 및 동물사육을 지양하고, 특히 동물사육의 경우 사육장은 조리실에서 30 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교육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환경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과도한 생산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다. 급식실 운영

1) 도서·벽지 지역

1981년 도서벽지지역의 학교에서 자체조리 급식을 하던 도서벽지형 급식학교는 전국 301개교에서 1990년에는 392개교로 10년간 30% 증가에 그쳤다. 당시 학교에서 근무했던 영양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이 시기의 도서벽지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도서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사례

총무초등학교의 전교생은 200명 정도였다. 급식실은 10평 정도의 재래식 부엌으로 길게 일자형이었다. 탁자에 석유곤로 1개, 아궁이가 2개인데 한 군데는 가마솥이, 다른 한군데는 알루미늄 솥이 걸려 있었다. 가마솥에는 밥을 하고 알루미늄 솥에는 국을 끓였다. 아궁이의 열원은 긴 석유버너였다. 작업대는 나무탁자위에 장판을 씌워서 사용하였고 나무도마를 사용하였다.

급식인력으로는 영양사 한 명, 조리원 한 명, 순번제 학부모 두 명이 일했다. 전교생에게 급식을 하였으며 학생들이 급식비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이전에는 빵급식을 하여 빵굽는 기계가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았고 1981년경에는 밥급식과 우유급식만 하였다. 학교에서 밥과 반찬 한 가지를 만들고 김치는 당번으로 나오는 학부모가 직접 담가온 것을 사용하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김자반, 멸치무침, 시금치나물, 물김무침, 구운 김 등을 추가 반찬으로 가져와 급식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학부모들이 된장, 간장, 고추장, 마늘, 양파를 자율적으로 걷어 학교급식용으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자활급식인 셈이었다.

식재료는 목포의 상회와 거래를 하였는데, 정기여객선에 식재료를 실어 주면 학교직원이 리어카를 끌고 선착장으로 가서 받아오는 형태이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 정기여객선이 결항되면, 섬주민의 자녀 통학을 위한 개인배를 함께 타고 물의 선착장에 가서 식재료를 직접 가져오기도 해야 했다.

교실배식을 하였으며 누런색 멜라민식판을 사용하였으며 학교에서 수저도 지급하였다. 우유급식은 물을 끓여 전지분유를 타 주는 물우유 형태였다. 2교시 후 급식을 하였으며, 물우유를 반별로 주전자에 담아주었다. 컵으로는 학교가 준비한 스테인레스 컵을 사용하였다.

[1981년 전남 목포시 고화도 총무초등학교 근무 영양사 인터뷰 내용]



벽지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사례

운악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67명으로 1개 학년에 1학급씩 총 6개 학급으로 전교생이 급식을 하였다. 급식시설로는 네모반듯한 조리실 한쪽에 가마솥 2개, 중앙에 찬장 겸 작업대, 벽면에 나무찬장 등이 있었다. 찬장 겸 작업대는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나무 미닫이문을 달아 찬장으로 사용하였고 구조물 위에는 처음에는 비닐장판을 덮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밥급식과 우유급식을 하였다. 가마솥 하나에는 밥을 하고 하나에는 국을 끓였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식품비 자체가 적어 밥, 국, 반찬 두 가지는 식품비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조리·제공하였으며, 김치는 학부모 당번들이 가정에서 담근 것을 가져오게 하여 급식에 사용하였다. 당시 도서벽지학교에서는 농어촌 학교와 달리 학교실습지를 활용한 생산활동은 하지 않았다. 식재료는 가까운 면소재지 상회와 계약을 하여 전화하면 식재료를 배달해 주는 체제였다.

우유급식으로 전지분유를 매일 아침에 끓인물과 전지분유를 우유균질기에 넣어 물우유를 만들어 1교시 종료 후에 급식하였다. 이러한 물우유는 컵이 없어 급식용 국대접에 담아 나누어 주었다.

학부모들은 아침부터 나와 조리, 배식, 뒷정리까지 다 끝내고 오후 3시경에야 집에 돌아갔다. 영양사는 매일 바뀌어 나오는 학부모 당번에게 불 지피는 법, 조리법 등 급식작업과 관련하여 매번 설명해야 했으며, 당번 학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 보통은 사전에 학부모 끼리 연락하여 서로 날짜를 조정하여 나오지만 간혹 학부모 당번이 못 나오는 경우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력의 어려움으로 1980년 3월부터는 조리보조원을 채용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도서벽지형은 처음부터 밥급식을 하였다. 교통문제로 빵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요 단백질 급원은 달걀, 돼지고기, 닭고기이었으며 생선은 거의 급식에 사용하지 못했다. 용기가 없어 계란찜은 못하고 계란말이와 계란후라이를 반찬으로 많이 제공하였다. 매주 수요일은 분식의 날로 국수를 급식하였다. 소면을 삶고, 멸치국물에 각종 야채, 달걀, 김치 등이 넣은 고명을 얹어주는 형태였다.

연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료비로 장작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981년 경부터 자루가 달린 긴 석유버너를 사용하였다. 급식용수도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악지대이므로 물이 부족하여 겨울이면 개울물을 호수로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부 아이들은 집이 너무 가난해 집에서 끼니를 챙기지 못하여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경우도 꽤 있었다.

[1980년대 초 경기도 가평군 운악초등학교 근무 영양사 인터뷰 내용]



2) 농어촌 지역

1981년 농어촌지역의 학교에서 자체조리 급식을 하던 농어촌형 급식학교는 전국 69교에서 1990년에는 237교로 1981년 대비 3.4배가 되었다. 당시 학교에서 근무했던 영양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이 시기의 농어촌 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사례

괘릉초등학교는 1973년부터 자활급식 실험학교였다. 전교생이 약 300명 정도 되었고 전교생이 급식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양돈, 양계, 양토, 사과, 포도, 무, 파 등 채소를 재배하였으나 1988년에는 양계장과 사과나무 과수원만 운영하였다. 생산활동으로 얻어진 달걀을 삶아 주거나 다양한 반찬으로 만들어 거의 매 급식마다 제공하였다. 사과는 사과철에는 매일 한 개 또는 반개씩 급식하였다. 닭고기는 학교농장의 것을 이용하지 않고 부식업체를 통해 조달하였다.

급식으로는 밥, 국, 김치, 고기반찬(돼지고기, 닭고기, 건어물, 생선 등)과 나물을 제공하였다. 국수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 월 2회 정도 제공하였다. 농어촌형 급식의 경우 교육청에서 식품비를 일부만 지원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있었다.

급식실(조리실)은 교실 한칸보다는 조금 더 넓었으며, 조리실에는 다단식취사기, 가마솥 2개, 식기보관장, 양념류 보관장, 작업대, 스텐레스스틸 세척대가 있었다. 다단식취사기는 스팀으로 찌서 밥을 하는 기계였다. 열원은 손잡이기 갈게 달린 석유버너를 사용하였다.

작업대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상판은 두꺼운 비닐로 덮혀 있었다. 세척대는 자활급식학교 공개발표를 앞두고 설치한 것으로 오전에는 채소 등을 씻고, 오후에는 큰 그릇 씻는 용으로 사용하였다. 식판은 조리실바닥에 고무다라를 놓고 앉아서 씻었다. 조리실 바닥의 배수가 잘 안되어 고생하였다.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양사 한 명과 조리원 두 명, 학부모 당번 세네 명 이었다. 당시 농어촌에서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조리보조원만 배치되었다. 학부모 당번은 조리원과 함께 같은 일을 하였다. 학부모 당번들은 학교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학부모간에 당번을 서로 바꾸거나 여의치 않으면 수고비를 지불하고 다른 분이 급식조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농장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

[1988년 경북 월성군 괘릉초등학교 근무 영양사 인터뷰 내용]



3) 도시지역

1981년 학교에서 자체조리 급식을 하는 급식 시범학교는 전국 69개교에서 1990년에는 136교로 1981년 대비 2배가 되었다. 당시 학교에서 근무했던 영양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이 시기 도시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사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동명초등학교는 전교생수가 5,000명이 넘는 학교로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은 1,200명 정도였다. 희망자만 급식을 하였는데 주로 5학년과 6학년이 급식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4학년도 급식을 하였다.

조리실은 교실 크기인 약 20평 정도의 흙벽 건물로 급식시설로는 가마솥 2개, 빵반죽기, 빵굽는 터널식오븐, 빵판, 스테인레스판을 씌운 작업대, 시멘트로 마감한 싱크대가 있었다.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양사 한 명, 제빵기사 한 명, 제빵보조 한 명, 조리원 세 명으로 총 여섯 명이였다.

1968년 시범급식학교 운영지침과 같이 주 5일 동안 빵과 수프나 국, 우유, 그 외에 잼, 샐러드 등도 제공하였다. 빵의 종류는 둥근 식빵, 소보로빵이었다. 빵은 매일 새벽 3시 반부터 만들었다. 제빵용 믹스가루를 빵 반죽기에 넣고 반죽하여 1차 발효, 빵판에 한 개씩 성형하여 담아 2차 발효를 거쳐 구웠다. 빵은 플라스틱통에 담아 반별로 제공하였다. 개인용 급식기구는 멜라닌 식판과 국그릇은 학교에서 준비하고 수저는 학생 개인이 지참하도록 하였다. 급식은 교실에서 담임과 함께 빵을 손으로 뜯어 잼을 발라 먹었다. 물론 빵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빵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주 5일 매일 빵급식을 하다 보니 “빵 먹기 싫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밥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밥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다른 학교에도 있어 뜻있는 영양사를 중심으로 교육청에 밥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1980년대 초부터 담임교사의 부탁으로 실과 시간에 영양관련 수업을 하기도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침조회나 점심 먹기전에 5분~7분정도 영양 또는 급식과 관련한 방송을 하였다.

[1980년 초 서울 동명초등학교 근무 영양사 인터뷰 내용]



도시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사례

서울 서대문구의 미동초등학교는 전교생 4,000명 정도로 처음에는 5학년과 6학년만 급식을 하다가 교당 천명 이상 급식을 해야한다 하여 4학년, 3학년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1,200명에게 급식을 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주 5회 빵급식을 하였다. 조리실은 교실 한 칸 크기로, 가마솥 큰 것 두 개, 작은 것 한 개, 찜통, 빵반죽기, 회전식 빵가마, 빵성형 작업대를 갖추고 있었다. 급식종사자는 영양사, 제빵기사, 기사보조, 조리원 세 명이었다. 빵은 새벽부터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학교내에 제빵기사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다. 빵은 둥근런 모양, 길쭉한 모양 등 다양하게 만들고, 가끔 소보로 빵도 만들었다. 이러한 빵으로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1980년 새로 부임한 영양사는 빵과 같이 먹는 수프이나 국으로 크림수프, 양송이수프, 쇠고기수프, 야채수프, 된장국, 무국 등 다양한 음식을 주려고 시도하였지만 빵급식에 어울리게 구성할 식단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우리 식문화에도 맞고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여 영양기준량도 충족할 수 있는 밥급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밥을 할 수 있는 급식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았다. 밥 짓는 것은 학교 인근의 방앗간에 부탁하여 갓 지어진 밥을 급식시간에 맞추어 가져오게 하고, 국과 반찬은 조리실의 가마솥을 이용하여 끓이고 볶아 제공하였다.

또한, 국수를 급식하기 위해 면을 학교에서 삶았으나 천 명의 급식을 하기에는 국수가 너무 불어 퍼지는 등 기술상 문제가 많아, 식품가공업체를 통해 삶은 면을 납품받아 학교에서는 데워서 배식하는 형태로 했다. 그래서 주 3회는 빵급식을 하고, 밥급식과 국수류급식을 각 1회씩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밥급식을 시작한 예는 다른 학교에도 알려져, 다른 학교에서도 밥급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영양사들은 교육청에 밥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요청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신규 급식학교를 중심으로 빵급식시설과 밥급식시설이 병행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급식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청에서 밥급식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1980년 초 서울 미동초등학교 근무 영양사 인터뷰 내용]



도서지역의 학교급식 운영 사례

전농초등학교는 총 급식인원이 1,200명으로 각반 평균 15명 정도이었으며, 밥, 빵, 국수 등에 소시지, 치즈 등을 특식으로 곁들여 급식을 하였다. 급식학급은 64개 학급이나 되어 배식시간에는 밥통, 국통으로 조리실에 발디딜 틈이 없었다.

후암초등학교는 급식인원이 한 반에 30명~40명으로 총 900명~1,000명 정도 급식을 하였다.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밥은 하지 못하고 빵과 우유를 주로 제공하였고 가끔 떡국, 국수 등을 급식하였다.

[1981.4월 대한영양사회 주최 특별좌담 기사에서 발췌]

4) 급식내용

1979년 도서벽지형 시범급식학교로 지정받은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소재 상품초등학교는 본교 및 분교를 합하여 385명분의 급식을 <표 IV-9>와 같이 주식, 부식, 보조식으로 표준식단 9가지를 작성하여 번갈아가며 주 5회 연 180회를 급식하였다.

<표 IV-9> 표준식단(상품초등학교의 예, 1982)

식단번호	식단 내용
1	잡곡밥, 쇠고기국, 야채조림, 김치, 과일, 우유
2	우동국수, 야채국, 계란, 김치, 우유
3	잡곡밥, 토장국, 멸치볶음, 김치, 과일, 우유
4	도우넛츠, 계란, 과일, 우유
5	카레밥, 계란, 김치, 우유
6	수제비, 소세지볶음, 계란, 김치, 우유
7	잡채밥, 계란국, 김치, 우유
8	짜장면, 계란, 김치, 우유
9	우동국수, 맑은장국, 야채튀김, 김치, 사과, 우유

* 출처 : 학교급식 협의회 자료(1982)

1975년 농어촌형 자활급식학교로 지정받은 나래초등학교는 1982년도에 연 180회 급식 중 빵을 60회, 국수를 20회, 짜장면을 20회, 비빔밥을 20회, 밥을 60회 제공하였다.



1984년부터 급식을 시작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개포초등학교는 5, 6학년 1,489명에게 <표 IV-10>과 같이 주간단위로 작성한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였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매주 식단표를 가정에 알렸다.

<표 IV-10> 주간 기본 식단표(개포초등학교의 예, 1988)

구분 요일	주식	부식	보조식	영양가	
				열량	단백질
월	비빔밥	유부계란국, 김치, 과일	우유	815.2	27.3
화	잡곡밥	쇠고기무우국, 시금치나물, 김치, 과일	우유	809.4	24.8
수	샐러드빵	크림수프, 삶은 계란	우유	797.4	26.5
목	짜장밥	배추겉절이, 과일샐러드	우유	800.5	25.6
금	떡볶기	단무지, 닭튀김	우유	813.2	27.9

* 출처 : 학교급식(학교급식진흥회, 1988)

1985년, 체육부에서 계절별로 주 5회씩 총 20끼분의 학교급식 표준식단을 작성하여 급식학교에 배포하였다. 이어 1986년에도 계절별로 주 5회씩 총 20끼 분을 새로이 작성하고, 1985년 배포한 표준식단의 일부를 보완하여 다양한 식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에 새로이 작성된 계절별 표준식단표는 <표 IV-11>과 같다. 당시 주 5회 급식 중 밥은 3회, 빵은 1회, 국수류는 1회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육부의 1986년 ‘학교급식 표준식단’ 책자는 어린이의 성장과 영양관계, 학교급식을 위한 식단작성 지침, 표준식단 활용법, 표준식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준식단은 계절별 식단표와 함께 1인분양의 식단에 대한 식재료별 무게, 열량, 단백질 등 영양기준에 따른 영양소와 조리방법, 참고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 책자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급식의 표준화 및 운영의 내실화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을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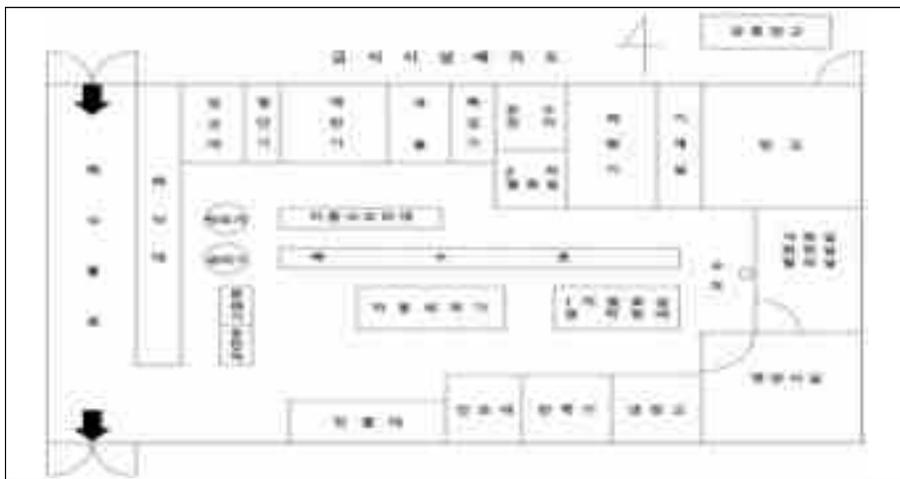
〈표 IV-11〉 계절별 표준식단표(1986)

요일	계절	월	화	수	목	금
봄		보리밥 냉이된장국 가자미구이 깍두기 과일, 우유	채소밥 햄수프 콩샐러드 우유	잡곡밥, 북어국 두부볶음 미역무침 봄배추김치, 우유	유부국수 김치 감자튀김 과일 우유	달걀덮밥 시금치나물 나박김치 우유
여름		완두콩밥 육개장 가지전 열무김치, 우유	치즈빵 옥수수수프 과일 우유	보리밥 근대된장국, 달걀, 오이소박이 과일, 우유	콩국수 달걀장조림 깨끗튀김 김치, 우유	오므라이스 오이냉국 깍두기 과일, 우유
가을		감자밥 오징어찌개 달걀말이 배추김치, 우유	보리빵 쇠고기수프 과일샐러드 우유	수수밥, 토란국 우영콩조림 무우생채 과일, 우유	스파게티 채소튀김 오이피클 우유	보리밥 콩비지찌개, 양 념장, 알타리김 치, 과일, 우유
겨울		보리밥, 생선묵 국, 김구이 콩나물무침 김치, 우유	햄버거빵 버섯수프 고구마범벅 (호박)우유	오곡밥 쇠고기무우국 취나물, 시래기 나물, 우유	수제비 김치 핫도그 우유	김치볶음밥 간전 동치미 과일, 우유

* 출처 : 학교급식 표준식단(1986)

5) 급식시설

1984년 10월 준공된 개포초등학교의 조리실(40여 평)의 급식시설 배치도는 [그림 IV-1]과 같았다. 1983년 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



[그림 IV-1] 급식시설 배치도(개포초등학교의 예, 1984)

* 출처 : 학교급식(1988), 한국학교급식진흥회



6) 1980년대의 학교급식 사진

다음은 제주도교육청관내 초등학교의 1984년과 1989년의 학교급식 사진이다[사진 IV-1].



1984년
좌 : 고학년 급식
우 : 저학년 급식



1989년
좌 : 밥짓기 준비
우 : 급식실로 향하여



좌 : 식전 손씻기
우 : 식당 급식



좌 : 급식후 정리
우 : 식후 양치질

[사진 IV-1] 1980년대의 학교급식 사진

* 제주도교육청 제공



라. 학교급식 현황

1) 급식 학교 및 학생수

1981년에는 전국 6,517개 초등학교 중 439개교(6.7%)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였으나, 1990년에는 전국 6,335개교 중 765개교(12.0%)로 10년간 326개교가 확대되었다. 급식 학생수는 1981년 총 165,401명(3.0%)에서 1990년에는 291,075명(6.0%)로 10년간 125,674명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급식확대가 저조한 이유는 학교급식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체육부이고, 학교급식 예산은 문교부를 통해 교육재정으로 마련해야 하는 급식 정책 관장부서의 이원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도까지는 도서벽지지역이나 농어촌지역 학교의 급식확대를 우선시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소규모 급식학교 통폐합 등 급식재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표 IV-12>와 같이 도서벽지지역 보다는 농어촌과 도시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확대를 하였다.

<표 IV-12>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1981, 1985, 1990)

(단위 : 교, 명)

연도	재적 아동수	계		도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학교수	급식 인원	학교수	급식 인원	학교수	급식 인원	학교수	급식 인원
1981	5,586,494	439	165,401	301	64,163	69	30,886	69	70352
1985	4,856,752	541	199,518	327	59,987	125	43,759	89	95,772
1990	4,868,713	765	291,075	392	51,379	237	83,594	136	156,102

* 출처 : 문교통계연보(1982, 1986), 교육통계연보(1991)

2) 급식경비 지원

학교급식 경비 중 시설비와 연료비 및 인건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도서벽지형의 경우는 식품비의 전액, 농어촌형의 경우 식품비의 1/3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문교부에서 지원하였다. 식품비와 연료비는 급식학교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연 180회 지원하였다.

도서벽지와 농어촌의 경우 1980년대 초에는 급식학교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 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도서벽지와 농어촌에서는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구하기



어려워 조리보조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리업무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 도시형의 경우 학부모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 조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특히 도시형은 학교내에 제빵시설을 갖추고 빵을 급식하였으므로 제빵사를 두었으며 밥급식이 확대되고 빵급식이 줄어들면서 제빵사를 배치하지 않게 되었다. 이 기간의 급식유형별로 정부가 지원한 식품비와 연료비, 종사자 1일 인건비는 <표 IV-13>과 같았다.

<표 IV-13> 급식유형별 식품비 및 연료비 지원기준(1981~1990)

(단위 : 원)

구분 \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식품비	도시벽지	210	314	336	360	367	386	407	428	448	471
	농어촌	70	110	112	122	122	129	136	143	149	157
연료비	도시벽지	17	36	37	18	20	25	26	26	20	17
	농어촌	15	36	37	20	20	25	26	26	20	17
	도시	12	12	37			25	26	26	20	17
1일 인건비	영양사			5,990	6,090	6,210	6,490	6,640	7,830	8,770	9,600
	조리사			5,120	4,880	4,990	5,230	5,510	6,250	7,010	7,910
	제빵기사			4,480	4,320	4,960	5,190	5,270	5,830	6,610	
	조리원				2,670	3,180	3,390	3,890	4,450	6,270	6,910

- * 식품비, 연료비 : 1인 1식기준 지원단가로 연 180회 지원
- * 1일 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로 연 270일지원, 제빵기사는 도시형 급식학교에 배치
- * 도시벽지형, 농촌형 : 조리, 배식 등 학부모 협조
- * 농촌형 : 식품비 1/3은 학부모부담, 생산품으로 1/3 총당
- * 도시형 : 식품비 전액 학부모 부담, 학부모 배식 협조
- * 자료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빈칸 처리

* 경기도교육청 제공



05 학교급식 제도화를 위한 노력

가. 학교급식 운영평가

체육부는 문교부가 1979년부터 실시해온 학교급식 운영평가 사업을 지속하여 매년 우수교를 선정, 시상하고, 학교급식 유공자를 표창하였다. 체육부가 1983년도 급식학교의 운영평가 후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자료를 통하여 그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알 수 있다<표 IV-14>.

<표 IV-14> 1983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사 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급식식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된 기본식단 작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실정, 계절 등을 고려 사전식단계획 수립 실시
지역사회 협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위원회 구성불합리(급식위원회 구성인원 15인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조)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하로 구성
학교급식지도, 영양교육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학교 교직원들은 급식업무를 교육의 일환으로 알고 있지 않고 개별의 과중된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식지도가 미흡한 실정임 영양교육 지도자료 부족 편식아동에 대한 식습관 교정교육 및 지도 미흡 식생활개선과 연결되는 교육미흡(학부모의 조리 참여를 식생활개선 교육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강화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지도 요망 학년별로 각반에 영양교육자료를 계첨(揭添)하도록 하여 교육에 활용(예: 5기 초식품군, 녹황색채소 등) 아동의 기호도를 조사하여 좋아하는 식품과 싫어하는 식품을 파악, 싫어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편식아동이 없도록 유도 점심시간에 영양교육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과정 등 전달 월별식단표 배부시 조리법과 영양분석 등 함께 전달 급식위원회 등 각종 회의시 식생활개선 홍보
식료품 및 급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학교에서는 냉수를 급수로 제공하고 있어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음 해당 시·도 보건연구소에 검사받지 않은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수는 반드시 끓여서 급수통에 넣어 급수로 제공한다. 1년에 2회이상 시·도보건연구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급수로 사용토록 한다.



〈표 IV-14〉 1983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계속)

심사 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급식시설 설비의 확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 저장탱크 관리개선 ○ 부엌 높이가 40~50cm인 재래식으로 조리에 힘듦 ○ 분유 급식학교에 균질기가 없어 주걱 등을 사용조작 및 교반으로 균질화가 잘 안되고 비위생적임 ○ 학생수에 비하여 물컵이 절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 저장탱크 내벽에는 타일로 시설을 하고 뚜껑을 만들어 이물 혼입의 우려 방지 ○ 싱크대 높이를 70~90cm 정도로 개선 ○ 분유를 급식하는 학교에는 반드시 균질기를 사용 균질 시켜 제공 ○ 학생수에 따른 컵 확보
위생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과 화장실 출입구 및 창구 방충망 시설 없음으로 해충의 침입 우려가 있음 ○ 식품창고 내에 세제 보관으로 비위생적임 ○ 식품창고에 옷을 보관하고 있음 ○ 조리종사원 위생복, 위생모 일부 미착용 및 시계, 반지 착용 ○ 조리실내에 석유저장탱크 및 가스저장탱크를 설치 ○ 식당 및 화장실 전면에 손씻는 시설 없음 ○ 위생관리 점검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및 화장실 출입구 창구에 방충망 시설을 하도록 하고 화장실에는 반드시 덮개를 제작 설치토록 한다. ○ 세제는 파손될 경우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상자를 제작 별도 창고에 보관토록 한다. ○ 의류는 갱의실 또는 옷장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식품창고에는 식품외 다른 것을 보관치 않도록 한다. ○ 조리종사에 참여할 때는 미생물이 잘 부착되어 있는 시계, 반지는 제거하고 반드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한후 조리에 참여토록 한다. ○ 조리실내에 석유저장 탱크 및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비위생적이므로 조리실과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한다. ○ 식사전과 용변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각 항목별로 급식품을 구입,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부터 조리급식하는 과정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상태 등을 매일 체크하도록 한다.
급식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급식행정의 처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 철저 요망 ○ 급식학교 상호간의 협의회 및 견학실시로 정보교환 등 운영방안 개선 도모

* 출처 : 경기도교육위원회, 1984년도 학교급식관리지침



나. 학교급식 지도편람 발간

체육부는 1983년 12월 30일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급식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총 118쪽의 학교급식 지도편람을 발간하였다. 그 목차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학교급식 지도편람의 목차

1. 학교급식의 의의 1-1. 학교급식의 정의 1-2. 학교급식의 실시근거 1-3. 학교급식의 목적 1-4. 학교급식의 연혁	4-3. 급식실과 그 주변의 위생 4-4. 조리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법 4-5. 식기, 기구의 위생
2. 학교급식의 운영 2-1. 학교급식 운영의 목적 2-2. 교육적인 의의 및 필요성 2-3. 지도계획 및 지도실태 2-4. 학교급식의 지도목표 2-5. 학교급식의 지도내용 2-6. 학교급식의 운영조직 2-7. 학교급식실시 책임 및 재정운영 2-8. 학교급식의 평가 2-9. 기타 학교급식 운영상 유의사항	5. 학교급식비 관리 5-1. 학교급식비 관리의의 5-2. 학교급식비의 유형 5-3. 전도자금의 수령과 집행 5-4. 도급경비 제도 5-5. 학교자체예산 5-6. 식품비의 집행과정 5-7. 물품구매절차 및 관계자 유의사항 5-8. 물품관리 5-9.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3. 영양관리 3-1. 영양관리 의의 3-2. 식단계획 3-3. 식단작성 3-4. 식품선정 및 검수 3-5. 조리지도 및 검식 3-6. 배식 3-7. 영양평가	6. 학교급식 시설관리 6-1. 시설관리의 의의 6-2. 급식소의 위치 6-3. 급식소의 구조와 조리장의 면적 6-4. 조리장의 시설, 설비 6-5. 식품보관실 6-6. 강의실 및 영양관리실 6-7. 학교급식 기계, 기구 및 집기
4.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4-1. 위생관리 의의 4-2. 조리사의 위생	참고 1. 급식시간에 지켜야할 일 2. 학교급식 평가 심사항목 3. 영양교육자료 4.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학교급식 효과평가

체육부는 1986년 학교급식 관리지침을 통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급식학교 아동과 비급식학교 아동의 체위, 질병발생률, 학력, 결석률 등의 비교를 통해 학교급식의 효과 분석 및 통계자료를 비치하고, TV, 신문 등에 적극 홍보하여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다.

1986년 체육부는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자료를 집계하여 전국 569개교 어린이 20만 명 중 9개 시·도의 급식학교 149개교 어린이 44,494명과 이들 학교 인근 비급식학교 149개교 어린이 44,494명의 신장발육 상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급식의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급식학교 학생이 비급식학교 학생보다 키는 1.17cm 더 크고(급식아동 129.48cm, 비급식아동 128.31cm), 체중은 0.88 kg 더 많이 나가고(27.04kg, 26.16kg), 결석율은 1.28%, 질병발생율은 0.7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점수도 급식학교 아동이 2.7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4.1점, 71.4점). 1990년 서울시 교육청의 급식효과 발표기사는 [사진 IV-2]와 같다.

라. 연구협회의, 연수회 개최 및 시범 연구학교 운영

체육부는 올바른 학교급식 운영방안 모색, 급식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급식학교장과 급식담당 공무원 약 200여 명씩 참가하는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989년 6월에는 학교급식관계자가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및 급식운영 실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해외연수도 실시하였다(9일간 15명). 한편 급식학교 영양사 연수회는 농촌영양개선원 주관으로 매년 40~120명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2~4주간의 전문연수가 이루어졌다.

종전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급식 시범학교로 지정하였으나,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급식대상학교가 의무교육 대상학교로 확대되고 1982년 급식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급식 시범학교 지정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체육부는 문교부에서 매년 1~2개의 급식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던 것은 이어받아, 학교급식 당면과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그 시범운영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매년 2~3개의 시범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사진 IV-2] 서울시교육청의 급식효과관련 기사<동아일보 1990.11.21.>



마. 전체급식 정착을 위한 학교의 노력

도시형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보호자 부담으로 희망자에게만 급식을 실시하였다. 즉, 같은 반에 급식을 받는 학생과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이 혼재해 있었다. 1986년 서울시 급식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 이를 통해 5학년과 6학년 전원(1,400여 명)이 급식을 하게 된 대방초등학교의 사례는 1968년부터 희망자에게만 실시하던 급식을 해당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선 학교 현장의 노력을 보여준다.

도시형 학교급식 운영사례

(1) 학교급식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① 교직원 연수

매주 1회 중회시간에 학교급식의 목표와 필요성, 변천과정, 각국 및 우리나라의 급식현황과 향후 전망, 학교급식관계법령 등에 대해 연수 실시하여 모든 교사가 급식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확고히하고 학부모들의 홍보계도에 임하도록 함

② 급식신문 발행(월 1회 30호)

학교신문(8절지)의 1/2를 할애하여 월중 학교급식 식단일람표 게시 및 시행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교급식에 대한 어린이의 글짓기, 일기,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등을 게재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부모님의 좋은 반응 또는 희망, 건의사항 등을 자주 게재해 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임. 학교급식의 필요성과 효과, 어린이들의 식습관과 태도 등 문제점을 호소력 있게 편집 게재함.

③ 학부모 급식 조리실 견학 및 홍보

학년초 학부모 또는 1학년 입학식때 시설을 공개하며, 급식교육의 필요성과 그 성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홍보함

(2) 다양한 식단 운영 및 조리

① 표준식단을 근간으로 하되, 전달의 식단운영 결과와 아동들의 기호도, 담임과 봉사반 어머님들의 의견을 들러 영양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변화있고 다양하게 운영함

② 의견함을 설치하여 교사 및 아동들의 의견을 자주 수집 분석하여 식단 및 조리방법 개선에 반영함

③ 아동이 싫어하는 식품은 조리방법을 개선하던지 유사식품으로 대체하여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는데 유효한 식단운영에 노력함.

(3)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① 학급별로 자원봉사 희망 학부모를 미리 선정하여 1일 3~5명 정도로 편성, 학급별 봉사일정을 한 달전에 배당하고 어린이 편에 가정통신함

② 활동에 필요한 위생복, 마스크 등은 매일 세탁하여 제공토록 여유있게 이용함



도시형 학교급식 운영사례(계속)

- ③ 식품제조 본 활동에는 직접 참여 시키지 않도록 하고 예비활동과 정리활동에만 참여케 하며 그 까닭을 이해시킴
- ④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반성, 대화를 나누며 소감을 간단히 기록에 남겨 급식교육 개선에 참고함
- ⑤ 활동에 참여한 어머니에게 1주일 후에 반드시 학교장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어 봉사활동의 보람을 느끼도록 함

(4) 전원급식을 위한 급식비 지원

- ① 학급당 3명씩 지원되는 무상우유를 지원대상아동중 급식비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아동에게 우선지원하여, 우유값을 제한 급식비를 납부하고 급식에 참여토록 함.
- ② 학급담임의 배려 주선으로 피지원 급식대상자와 지원희망 학부모와 결연을 통한 지원을 하되, 수혜아동이나 지원 학부모의 자녀에게는 급식비 지원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함.
- ③ 학급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급식심의위원회 또는 사회 독지가에 의한 지원으로 해결함

(5) 급식지도 활동의 실제

- ① 본교에서 제작한 판넬, 과도, 표본, 슬라이드 등 급식교육 자료 활용
- ② 급식 실시 과정안은 급식품 운반시간, 통로, 좌석꾸미기, 배식절차 및 방법, 식사과정 식사후의 정리절차 등으로 나누어 습관화되도록 반복지도함. 급식당번은 학급 전 아동이 윤번제로 1주단위로 조직하고 위생복을 꼭 착용. 배식전에 영양교육을 실시하되, 당일 식품에 대한 영양분석과 식품을 소개함. 영양분석자료는 식단계획에 의해 1주일분씩 사전에 영양사가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공함. 식사대형은 4인1조로 책상을 맞대놓고 식탁보를 깔며 배식을 받는대로 조별로 식사를 시작하게하여 음식이 식기전에 먹게함
- ③ 바른 식생활 실천 반성 등 건강생활 일기장 쓰기(본교제작)
- ④ 사랑의 대화 : 매일 1~2명의 아동씩 윤번제로 선생님 책상에서 식사를 같이하며 식사 예절, 가정이야기, 교우관계, 식생활습관 등 다양한 화제로 이끌어감
- ⑤ 영양, 위생 순회교육 : 영양사, 양호교사가 학급담임과 협의하에 체육 및 실과시간을 할애하여 영양, 위생에 대해 특강함

(6) 행정적 배려

- ① 조리종사자들과 대화를 자주하여 보수이외의 건의사항은 가급적 수용함
- ② 합법 합리적 구매이행과 식품검수는 영양사와 교감이 동시에 검수하여 엄정을 기함
- ③ 납품업자의 하자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처리하여 업자교체의 정당한 물적 사유 증거로 함
- ④ 교장, 교감은 가급적 아동 배식 10분전까지 식사를 마치고 배식현장 및 학급 급식지도를 확인함
- ⑤ 전출입시 급식비 환불 및 일할 납부로 다음날부터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출처: 김창제, 도시형 학교급식 운영사례,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권 제1호, 1988



0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가. 실적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급식학교의 지정,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체육부가 담당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교부결정, 인력배치 등은 문교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업무 구조에서 체육부가 학교급식을 확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체육부가 학교급식을 담당하기 시작한 1982년에 학교수 대비 6.8%인 441교, 학생수 대비 3.1%인 169,216명에게 실시하던 학교급식이 1987년에는 학교수 대비 9.4% 616개교에서 학생수 대비 5.0%인 236,960명에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확대가 저조하자 1987년 12월에는 “2000년까지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학교는 70%이상, 도시지역 학교는 50%이상 급식을 실시”가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 시기의 초등학교 급식실시 현황은 <표 IV-16>, <표 IV-17>과 같다. 1981년도 전체 초등학교의 6.7%인 439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였으나 10년이 지난 1990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12.1%인 765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매년 평균 33개교가 새로이 학교급식을 실시한 셈이다. 동기간 동안 급식 학생수는 전국 초등학생의 3%인 16만 5천 명에서 6%인 29만 천 명으로 늘어났다. 급식유형별로 살펴보면 1981년, 전체 급식학교 중 도서벽지형이 68.6%, 농어촌형 15.7%, 도시형이 15.7%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각각 51.2%, 31.0%, 17.8%로 이 기간중에는 농어촌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표 IV-16〉 급식 유형별 초등학교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1981~1990)

(단위 : 교, 명)

연도	재적 아동수	계		도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학교수	급식 인원	학교수	급식 인원	학교수	급식 인원	학교수	급식 인원
1981	5,586,494	439	165,401	301	64,163	69	30,886	69	70352
1982	5,465,248	441	169,216	301	61,269	69	30,154	71	77,793
1983	5,257,164	439	161,681	301	57,559	69	30,192	69	73,930
1984	5,040,958	464	171,174	299	57,461	85	32,255	80	81,458
1985	4,856,752	541	199,518	327	59,987	125	43,759	89	95,772
1986	4,798,323	569	213,101	320	53,705	153	55,854	96	103,542
1987	4,771,722	616	236,960	336	58,537	180	69,220	100	109,203
1988	4,819,857	660	253,636	357	58,934	195	71,694	108	123,008
1989	4,894,261	701	264,247	370	55,575	209	74,272	122	134,400
1990	4,868,713	765	291,075	392	51,379	237	83,594	136	156,102

* 출처 : 문교통계연보(1982~1990), 교육통계연보(1991)

〈표 IV-17〉 초등학교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1981~1990)

(단위 : 교, 명)

연도	학교수			학생수		
	전체학교	급식학교	비율 ¹⁾	재적아동	급식인원	비율 ²⁾
1981	6,517	439	6.7	5,586,494	165,401	3.0
1982	6,501	441	6.8	5,465,248	169,216	3.1
1983	6,500	439	6.8	5,257,164	161,681	3.1
1984	6,528	464	7.1	5,040,958	171,174	3.4
1985	6,519	541	8.3	4,856,752	199,518	4.1
1986	6,535	569	8.7	4,798,323	213,101	4.4
1987	6,531	616	9.4	4,771,722	236,960	5.0
1988	6,463	660	10.2	4,819,857	253,636	5.3
1989	6,396	701	11.0	4,894,261	264,247	5.4
1990	6,335	765	12.1	4,868,713	291,075	6.0

1) 전체학교수 대비 급식학교수 비율(%)

2) 전체학생수 대비 급식학생수 비율(%)

* 출처 : 문교통계연보(1982~1990), 교육통계연보(1991)



나. 평가

체육부의 주요업무는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 및 추진이었으므로,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체육부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문교부는 학교급식이 체육부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우선 순위에 두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1982년 체육부로 이관시 전국 초등학교 급식학교수가 전체 대비 6.8%인 441교에서 1990년 문교부로 재이관시 12.1%인 765교이었다. 한 해 평균 40개교씩 급식이 확대된 셈으로 급식확대가 저조하였다.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을 추진하려던 차에 체육부로 이관되어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더구나 체육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담당자도 바뀌어 외국원조 종료이후 자립급식 모델 개발, 식중독사고 발생 등을 겪으면서 학교급식법 제정까지 이루어 낸 선임자들의 열정과 희생,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전달되지 못한 것은 학교급식 확대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체육부와 문교부의 이원화된 구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급식학교수의 확대에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시기이다. 1977년 식중독 사고 이후 1978년 학교 자체조리급식 실시, 영양사 배치 등 학교급식 정책방향이 전환되었음에도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1980년대 초까지 빵급식이 일반적이었다. 1963년 외국 원조양곡에 의한 제빵급식부터 약 20년간을 빵급식을 하였고, 밥급식을 위한 취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영양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밥급식이 주 1회라도 도입되고, 점차 횟수를 늘려 밥급식으로 전환된 것은 이 시기의 큰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에는 농촌영양개선원에서 매년 신규영양사나 재직 영양사를 대상으로 2~3주간 집중교육을 시행한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범급식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이 당면한 문제를 현장의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학교장, 급식관계자들에게 공개 발표하여 전국의 급식학교와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한 것은 급식운영 내실화에 도움이 되었다. 1986년부터 급식학교 학생과 비급식학교 학생의 체위, 질병발생률, 결석률 등을 비교하여 학교급식의 효과가 있었음을 홍보하도록 한 것은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급식확대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1983년 학교급식 실무 지도서인 “학교급식 지도 편람”을 발간하였고, 문교부에서 매년 학교급식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엮어 발간하였던 “학교급식현황” 책자를 체육부에서도 계속 발간한 것은 급식담당자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만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9년까지 발간하였다고 하나 1983년 자료까지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0년 문교부로 학교급식업무가 재이관되면서부터는 “학교급식현황” 책자가 더 이상 발간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V 학교급식 확대기(1991~2002)

이 개요

이 시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초·중·고등학교의 급식확대를 이루어낸 시기이다. 1990년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의 12.1%인 765개교, 학생수 대비 6.0%인 29만 명에게 급식을 실시하던 것을 1997년까지 급식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1998년부터는 전국 초등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급식이 완료되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급식을 확대하여 1998년과 1999년에 집중적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초-중-고등학교 연계급식을 위해 중학교급식은 1999년 후반기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었다.

학교급식 확대가 이와 같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에서 문교부로 재이관된 후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환경변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학교급식확대가 채택되는 등 정치권의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학교급식 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중·고등학교 급식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학교급식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및 방학, 토공휴일의 급식지원이 제도화되었으며, 학교급식에의 HACCP 시스템 도입,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발간 등 급식 관리의 기본인 위생관리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학교급식관련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표 V-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91~2002)

1991.	2	특수학교 전면급식 실시계획 수립
	5	공동조리 급식학교를 최초로 지정(1992. 3월 급식 개시)
1992.	2	학교급식 발전방안 수립('92~'96)
	3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개선과제로 “학교급식 제도의 확대방안” 보고 학교급식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1993.	1	학교급식 확대를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 : 초등학교는 '96년까지, 농어촌 중고등학교는 '98년까지 연차적 확대
	6	신설국민 급식시설 설치 의무화(의무 81490-200)
	8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정·공포(교육부령 제637호)
	10	영중초등학교 농협급식 시범실시
	12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4593호) : 학교급식후원회제도 도입,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급식학교 병설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
1994.	5	'94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874개 교분 200억원 지원
	6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
	6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283호) : 후원회운영관련
	8	도시지역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실시방안 시달(학보 81490-259) -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한 도시지역 중고등학교 급식 시범적 실시가능
1995.	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교육부령 제658호)
	2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됨(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2조제13항 개정(대통령령 제14532호))
	4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569호)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 제5064호) : 시·군 및 자치구청장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일부 부담 가능 규정
1996.	1	도시지역 중·고등학교를 학교급식 실시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
	3	학교급식 자율화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신한국당공약으로 채택(위탁급식제도 도입)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정(대통령령 14981호) : 시·군 및 자치구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사업 보조 가능
	12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5236호) : 위탁급식 가능(의원입법)



〈표 V-1〉 학교급식 주요 연혁(1991~2002)(계속)

1997.	3	중식지원사업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까지 확대	
	4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361호) : 위탁급식 등관련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교육부령 제693호) : 위탁급식 등	
1998.	2	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전국 80개 중·고교)	
	3	초등학교급식 전면실시 신매초등학교 집단환자(세균성 이질) 발생	
	5	제21회 국무회의시 고등학교급식 확대(계획수립) 대통령지시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고등학교급식 전면실시 방안 시달	
	8	학교급식위생 전문교육 실시(2주간, 시도교육청직원 50명) 고등학교 급식 확대계획 수립(교육부장관 기본결재)	
	9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5,891호) :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가능	
	10	“운영위탁급식 시행요령 및 유의사항”시달	
	12	국회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결식아동 실태파악을 위해 난 향초등학교 방문	
	1999.	1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준칙 시달
		4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학교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감면
6		학교급식 위생관리 특별대책 수립	
8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6012호) : 중식지원 제도화	
9		중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저소득층 지역 286교분 특별교부금 618억원)	
2000.	12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발, 인쇄 및 배포(전 급식학교)	
2001.	9	WFP 학교급식 조사단 2명 내한, 학교급식 실태 파악	
	10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합동 중식지원 워크숍 개최	
2002.	5	세계아동영양포럼 참석(한국의 학교급식 소개)	



02

학교급식 확대

가. 학교급식 확대 경과

초등학교 급식확대는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에서 문교부로 재이관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문교부는 총무처, 내무부,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992년 2월 19일 「학교급식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에 학교급식 확대계획을 반영하였다.

「학교급식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199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급식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안정화” “학교급식 제도운영의 효율화” “학교급식 교육효과의 극대화” “학교급식 중요성의 홍보강화”의 4대 발전방안이었다. 같은 해 3월 17일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위원회 학교급식 행정담당자,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담당관, 급식학교 교장, 영양사, 학부모, 관계교수 등 500명이 참석하는 “학교급식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1992년 3월, 경제기획원 교육체육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학교급식 제도의 확대방안”을 예산제도 개선과제로 채택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교육부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 급증, 정치적 수요 증대 등을 이유로 1990년부터 매년 급식시설비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었으나 경제기획원은 국고보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제기획원은 학교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고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한번 지원하면 계속지원의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원은 1993년 예산편성 시에도 교육부는 급식시설비의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경제기획원은 국고보조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1992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발전방안」을 토대로 분석 평가하여 “급식시설비 재원마련”, “급식운영방법 개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급식 소요재원 분담체계 확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역사회유지, 동창회, 학부모 등의 후원금으로 급식시설 기금을 조성하고, 급식시설비 소요예산의 1/2 범위 내에서 교육교부금을 지원하며, 학교 신·개축시 급식시설 설치 의무화로 효율적인 설계시공 및 예산절감을 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학교급식



재원의 안정화방안은 급식시설비는 국고, 교육교부금, 지역사회지원금이 각 1/3씩 부담하고, 운영비는 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이었다.

둘째, 학교급식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학교급식품의 지역단위 공동구입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의 공동조리 및 관리방식을 도입하며, 초기 3년은 부분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후기 3년 동안 완전급식으로 전환하며, 민간업체와 급식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향후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대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결식아동 지원 시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당시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점심 식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점심 제공 곤란하고 결식아동 지원 업무가 비교육적이고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계층(도시영세민 수준)은 완전면제 또는 일정비율만 납부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첫째 제안과 관련하여 1992년 6월 이전에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시설기금 설치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경우, 도시영세민지역 및 도서벽지학교는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지역의 급식시설비에 한하여 일부를 국고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92년 6월, 학교급식 발전방안의 실행을 위해 “학교급식 후원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발의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하여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3호로 개정하였다.

한편, 1993년 1월 「'98년까지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 「농어촌지역 중·고 급식 전면실시」가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더욱 활발히 추진되게 되었다.

나. 특수학교 급식확대

1991년에는 장애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공동급식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습관을 형성하며, 심신장애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지 구현을 위하여 전국 102개 특수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1992년부터는 전면급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기숙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어 이미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일부 지원, 갖추지 못한 28개교는 식당을 포함한 급식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6,018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학교 전과정(고등학교 과정까지)에 대하여 무상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비 부담도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 등 급식유형에 관계 없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 초등학교 급식확대

1990년 초등학교 급식 학교수는 전국 초등학교의 12.1%인 765개교, 학생수로는 전국 초등학생의 6.0%인 291,075명이었다. 초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에 초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1993년 1월 「98년까지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가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비교적 학교 규모가 작은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였다. 급식확대에 소요되는 급식시설비, 식품비, 운영비 등은 급식유형별로 차등 지원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조리급식제도 도입,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시설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 도서벽지, 농어촌 학교 학교급식 우선 확대

초등학교의 경우 <표 V-2>와 같이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지역 학교의 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1996년 4월, 학교급식 실시 학교는 도서벽지형학교의 87.2%, 농어촌형 학교의 83.6%, 도시형 학교의 54.3%이었으며, 도서벽지형 학교의 87.7%, 농어촌형 학교의 85.3%, 도시형 학교의 44.1%의 학생들이 급식을 제공받았다.

<표 V-2> 1996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구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도서벽지형	804	701	87.2	89,642	78,654	87.7
농어촌형	2,605	2,177	83.6	615,199	524,546	85.3
도시형	2,323	1,262	54.3	3,095,672	1,364,225	44.1
계	5,732	4,140	72.2	3,800,513	1,967,425	51.8

* 교육부 내부자료



■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기준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는 시·도교육청예산과 학교급식후원금, 국고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 지원기준은 <표 V-3>과 같다.

<표 V-3>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산출 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유형	급식학생수	조리실 면적	건축비		시설·설비비	계
			m ² 당 단가	금액		
도서벽지형	101~150명	40m ²	500	20,000	20,000	40,000
농어촌형	501~600명	100m ²	500	50,000	50,000	100,000
도시형	1,001~1,500명	140m ²	500	70,000	110,000	180,000

* 교육부 내부자료

급식시설비에 포함된 급식시설·설비는 <표 V-4>와 같다.

<표 V-4> 초등학교 급식 시설·설비 내역 (단위 : 천원)

품명	유형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	
		규격	수량	규격	수량	규격	수량
취사기(밥솥)		스팀식 200인용	1	스팀식 500인용	1	가스식 500인용	1
국솥		스팀회전 150~200	1	스팀회전 500	1	스팀회전 500	3
가스렌지		1,500×750×800	1	1,500×750×800	1	1,500×750×800	1
튀김(볶음)솥		680×750×800	1	900×750×800	1	1,500×750×800	2
1조 세정대						1,500×750×800	1
2조 세정대		1,200×750×800	1	1,500×750×800	1	1,500×750×800	1
전기소독보관고		900×750×1,950	1	1,200×750×1,950	1	1,800×750×1,950	1
자동식기세척기				1탱크 렉타입	1	3탱크 콘베이어	1
선반(창고용포함)		1,200×750×1,800		1,500×750×1,800	2	1,800×750×1,800	2
냉장고		900×750×1,950		900×750×1,950	1	1,200×750×1,950	1
배기후드		1,200×750×600	2	1,200×750×600 1,800×750×600	2 1	3,000×750×600	1
작업대		1,500×750×800	1	1,500×750×800	1	1,500×750×800	1
이동작업대						1,500×750×800	1
탈피기		국산	1	국산	1	국산	1
야채절단기				국산	1	국산	1
L형 운반차		900×600×800	1	900×600×800	1	900×600×800	1
그리스트랩		900×600×800	1	900×600×800	1	900×600×800	1
기타 급식용품 (용기, 기구)			1		1		1
합계 금액		20,000,000원		50,000,000원		110,000,000원	

* 교육부 내부자료



■ 공동조리급식

1990년대 초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자하는 학교마다 조리시설·설비를 설치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조리하여 급식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1986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으로 도서벽지형은 학생수 200명 이상, 농어촌형은 300명이상, 도시형은 500명이상의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을 확대하여 남은 소규모 학교들이 급식확대의 과제였다.

1992년, 초등학교 중 전교생수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본교 기준으로는 23.6%인 1,442개교, 분교까지 포함하면 36.5%인 2,693개교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1998년까지 모든 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을 갖추고 전담인력을 두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소규모 개별학교의 급식시설을 설치에 따른 시설설비비 및 운영비 절감, 학교별 급식운영관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1992년 3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한 개의 학교에 조리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인근 2~4개 학교분의 급식을 일괄 조리하여, 인근 해당 비조리 학교에 전용 급식용 차량으로 운송하여 급식하는 형태인 공동조리제도를 도입하였다.

■ 학교급식후원회

학교급식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급식시설비 등 급식경비를 원활히 조달하여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여, 1993년 12월 학교급식후원회제도가 도입되었다.

■ 농협급식센터 급식

1993년 7월, 문교부의 학교급식 확대추진과 병행하여 농림부는 쌀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농협을 통해 밥공장, 도시락공장 등을 설치운영하고 학교급식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영중 초등학교를 농협시범 학교급식실시 협력학교로 지정하고, 1993년 10월 18일부터 농협급식센터를 이용한 학교급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영신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영등포초등학교에서도 실시하여 4개교 약 5,500명에게 농협급식을 실시하였다.



농협급식은 농협조리실에서 조리된 음식물을 학교까지 완전한 상태로 운반하여 배식할 수 있도록 농협측에서 급식운반 전용차량, 보온밥통, 보온국통을 갖추고, 학교에는 배식대, 식판꽃이, 세척시설 등을 갖춘 식당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배식인원을 확보하여 식당급식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문교부는 1994년에는 농협급식을 학교급식 확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농협급식센터와 연계한 학교급식 실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연구결과, 농협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급식시설비, 관리비, 인건비 등의 정부지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일반급식학교 급식비의 1.5배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요인이 되었으며, 급식의 질도 가정에서 먹는 음식의 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협급식센터를 이용한 학교급식은 정책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 국고 급식시설비 200억 원 지원

그동안의 초등학교 급식 시설·설비비는 지방교육재원으로 충당되었으나 1994년에는 국고보조금 200억 원이 특별교부 되었다. 이는 1992년 경제기획원의 예산제도개선과제로 채택된 학교급식제도의 확대방안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국고지원예산은 시·도별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재적 학생 100명 이상 급식 미실시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액 비율에 따라 10개 시·도에 분배되어 학교급식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급식시설비 지원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국민식생활 개선과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라는 목표를 갖고 실시되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 또한 대단히 컸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직장에 출근하는 주부들에게 자녀의 도시락 준비가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우리 가정이 적응하는 데 합리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급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학교급식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송석찬 구청장은 1995년 8월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내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1995년 11월 29일 5억 8,500만 원을 학교급식 시설비로 지



원하였다. 유성구청장의 급식시설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등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12월 29일,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시설비 지원 등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합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을 신설하였다. 1996년 4월 19일에는 하위규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 중 「'98년까지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 실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농어촌지역 중·고 급식 전면 실시」는 초등학교 급식의 우선 추진 정책에 밀려 예산형편상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중·고등학교 급식 조기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자율화”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책가방 무게를 경감시키며,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증진하기 위해 “1997년까지 초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급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중·고등학교는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자체조리급식을 하기에는 예산, 장소, 시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초등학교는 자체조리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조리 이외에 외부 운반급식 또는 민간인 등의 교내 급식시설을 설치·운영 등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1996년 12월 30일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5236호).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급식으로서의 사업확대를 위한 일부 도시락 판매업자들의 노력이 있었다한다.

■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시도

위탁급식제도가 도입 1년이 지난 1997년 말의 급식실시 학교 비율은 중학교 8.6%, 고등학교 9.8%정도에 불과하였고, 도시락을 2~3개씩 가지고 다니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고등학교 급식확대는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새정치국민회의)는 “중·고등학교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적으로 지원” 할 것을 공약하였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해 1998년 1월 21일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학기 중에 시·도 교육청별로 위탁급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급식 미실시 학교는 위탁급식, 공동조리 또는 자체조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방법을 선택, 전면급식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

교육부는 중등학교 급식확대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 교육조사통계과를 통해 1998년 2월 9일~14일에 지역별, 설립별, 계열별 학교수를 기준으로 비례표집하여 전국 80개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 2,400명, 학부모 2,400명, 교원 1,600명 총 6,400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회수율은 학생 86.2%, 학부모 81.8%, 교원 85.6%이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점심으로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은 도시락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였고(67.2%), 불만족을 나타내는 학생은 가방이 무거워짐을 제일 큰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점심에 교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급식을 하는 학생은 비교적 만족도가 낮으며(38%), 불만족 요인으로 비위생적이며 맛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위탁급식 실시에 관한 의견으로 대다수의 학부모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이유로 위탁급식을 찬성하였다. 위탁급식의 방식은 전문업자가 교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가격은 1식당 2,000원 이하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위탁급식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위생상태를 지적하였다.

■ 대통령의 고등학교 급식확대 지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탁급식으로 확대하려던 중에 1998년 5월 6일 제21회 국무회의시 대통령이 “신체발달 시기인 고등학생에 대해 따뜻하고 영양 있는 급식이 시급함. 금년 중 70%, '99년 전반기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마련을 적극 독려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6년 5월 27일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우선 고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추진 기본방향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급식비로 제공,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내식당 등 기존 급식시설의 개선 및 확충, 인근 학교의 급식시설을 활용한 공동조리급식 추진 또는 급식시설 신축, 민자유치를 통한 급식시설 공동투자 및 운영위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등 급식운영형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고교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교장의 소극적 추진, 교육재정 형편상 고교급식 시설비 지원여력 부족, IMF의 영향으로 민간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투자여력 감소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만 고등학교 급식확대 추진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급식확대 계획을 조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자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였다.

■ 고등학교 급식 확대계획 수립 및 지원

교육부는 1998년 8월 27일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별 급식확대 계획을 토대로 <표 V-5>과 같이 “고등학교 급식 확대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V-5> 고등학교 급식확대 유형 및 소요예산

구분	연도	1998년	1999년	합계	비고 (1998 운영유형)
		계	1,090	642	1,732
급식확대 유형(교)	기존시설운영위탁	7	6	13	위탁 7
	구내식당 등 활용	486	-	486	직영 196, 위탁 290
	인접시설 활용	104	-	104	직영 80, 위탁 24
	급식시설 신축	467	594	1,061	직영 154, 위탁 313
	외부운반 급식	26	42	68	위탁 26
소요예산 (억 원)	계	2,192	1,485	3,677	
	교육부(특별교부금)	1,109	472	1,58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472	742	1,214	
	지방자치단체	-	100	100	
	민자	611	171	782	

* 1교당 소요액 : 구내식당 등 활용 2억원, 인접시설 활용 0.5억 원, 급식시설신축 2.5억 원
기존시설운영위탁과 외부운반급식은 별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계상

* 기관별 부담액 : 1998년은 민자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부 70%, 시·도교육청이 30% 부담
1999년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으로 충당

* 교육부 내부자료



당시 전국 1,922개 고등학교 중 18.6%인 358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98년 말까지 1,090개교 '99년 전반기까지 642개교 급식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2개년 간 1,581억 원의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고등학교 급식 운영방법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교육감의 학교급식 철학에 따라 직영, 위탁의 비율에 차이 있었다. 1998년에 이미 고등학교 급식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제주도와 교육감이 고등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확대할 것을 일선 고등학교장을 설득한 대구시는 타 시·도보다 직영급식의 비율이 높았다.

■ 기초자치단체의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재원확보를 위해 종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었던 학교급식 시설·설비사업 경비를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998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5,89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199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 위탁급식 운영의 내실화

1998년과 1999년에 급식확대 예정이었던 총 1,732개의 고등학교 중 50.6%인 876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위탁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식품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어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예상되어 1999년 4월 30일, 법률 제5980호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 1999.7.1.)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의 경우도 직영급식과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1998년 10월 21일 “운영위탁급식 시행요령 및 유의사항”을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급식은 학교장과 계약에 의한 교내급식시설 운영위탁 형태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어서 운영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가운데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중학교 급식 확대

1999년 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이루어지자 중학교 학부모들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도시락을 싸지 않는데 중학생만 싸고 있다며 초-중-고 연계급식을 위한 중학교 급식 확대 요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고등학교 급식확대 이후 1999년 9월~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부터 전면급식이 이루어졌다. 2,478개교의 중학교 급식확대에 총 4,836억 원이 소요되었다.

중학교 급식 확대사업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급식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고등학교 급식 확대사업이 완료된 1999년 9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지역 중학교부터 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286개교분 618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였다. 2000년 214억원, 2001년 344억원, 2002년 114억원, 총 1,29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중학교급식 시설비로 지원하였다.

2002년 기준으로 중학교급식에는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의 형태가 더 많았다. 고등학교는 직영급식이 46.9%, 위탁급식이 53.1%인 반면에 중학교는 직영급식이 67.9%, 위탁급식이 32.1%이었다.

마. 학교급식 확대 우수 사례

제주도에서는 1974년 어도초등학교가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로 지정받아 처음 학교급식을 실시한 이후 1991년까지 전체학교의 42.7%인 47개교에서 학교급식을 하였다(당시 전국평균은 19.3%였음). 1992년 교육감 시책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1992~1994 초등학교 전면 급식 확대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1995년부터 초등학교 전면급식을 실시하였다(타 지역은 1998년부터 전면 실시함).

1995년에는 “1996~1998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지역 중학교부터 학교급식의 확대를 우선 추진하였다. 제주도의 학교급식 확대는 제주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주도, 교육청, 학부모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추진하였다. 추진 마지막 해인 1998년도에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급식확대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 3,255백만 원을 지원받아 고등학교급식 확대를 마무리 지었다. 1991년까지 초등학교 급식확대가 타 시·도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은 제일동포 등 독지가의 지원과 교육청의 지원이 컸기 때문이었다.



03 중식지원 제도화

가. 학교에서의 중식지원

1) 결식아동 구호급식

1953년부터 1972년까지는 외국이 전쟁재해아동 구호를 위해 지원한 양곡으로 전국 초등학교 120만 명의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분유급식, 옥수수죽·옥수수빵 급식, 밀가루 빵·건빵 급식 등을 무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원조가 종료되어 1973년부터 우리 정부의 재원으로만 급식을 하게 되자 국고 예산형편상 농어촌과 도시지역을 제외한 도서벽지 및 재해지역 학생 59만 명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1974년부터는 보호급식이란 이름으로 농어촌 및 도시지역 극빈가정 초등학생에 대해 주 2회 빵급식 지원이 재개되었다. 지원인원은 1974년에 30만 명, 1975년 17만 명, 1976년과 1977년에는 15만2천4백 명이었으나, 그마저도 1977년 9월 식중독사고로 일반 급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극빈아동 급식지원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결식 초등학생 무상급식 다시 시작

국가차원의 무상급식제도가 폐지되고 10년이 지난 1988년 7월 14일, 한국일보에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의 영세민, 결손가정 자녀들이 점심을 굶는 사례가 있음을 심층 취재하여 보도하면서 결식아동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그 결과 1988년 12월 국회에서 '89 초등학교 결식아동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 1989년부터 국고지원의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원방법은 비급식학교의 결식학생에게는 학교장이 주관하여 인근 식당, 가정 또는 간이급식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급식학교의 결식아동은 학교 급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식품비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비 면제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비급식학교의 점심식사 지원 방법은 지원받는 아동 등에게 낙인 효과 등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급식 실시가 결식아동 점심식사 지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보고 초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1년부터는 사업명칭을 “학생 중식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3) 중·고등학교 중식지원

초등학교 급식확대로 결식아동 중식지원 문제가 해결되어갈 무렵 중·고등학교의 결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1995년 1월, 교육부장관은 중식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국고보조사업의 종료(1998년부터 종료)를 앞두고 있던 1997년 1월부터는 학생중식지원사업 대상을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으로 확대하였다. 초등학생 중식지원사업은 국고에서 100% 지원하였으나, 중·고등학교 중식지원사업은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였다. 학교장이 인근 식당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식사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사업 역시 중·고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 방학, 토·공휴일의 급식지원

1) 방학기간의 중식지원

1998년 외환위기 사태(IMF)를 겪으면서 결식아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1997년 정부의 결식아동 국고 지원대상은 총 11,017명(초등학교 2,195명, 중학교 6,016명, 고등학교 2,806명)이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결식아동이 10만 명인데 이중 4만 4천여명은 국고나 지방비에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을 받거나 굶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는 아동의 수를 파악하여 결식아동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결식아동이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으로 점심이 해결되지만 방학 중의 식사해결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TV, 신문사 등에서는 ‘결식아동 모금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결식아동이 쉽게 드러나서 학교를 통해 결식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방학기간에는 결식아동을 선별



하는 문제도 급식을 지원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아동 급식지원체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우선 1998학년도 겨울방학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겨울방학기간 중 학교급식실 운영, 거주지 인근 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주·부식재료 가정배달, 농산물교환권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2) 토·공휴일 중식지원

2000년 2월 29일, 국무회의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소득층지원 확대방안으로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거나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토·일요일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2000년부터는 토·공휴일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연중 365일 지원이 시작되었다.

2000년 3월 23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의 극빈학생 급식지원 관련부처 업무조정회의 결과 교육부 중식지원(164,000명)과 보건복지부 석식지원(22,000명)은 별도로 운영하고, 2000년 학생 중식지원사업 지방비 부담분 예산 중 학기 중 및 방학기간분(270일)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토·공휴일분(95일)은 시·군·구청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전면 실시하였는데 지원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부식재료 가정배달, 농산물교환권 지원, 인근 음식점을 통한 지원으로 하고,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병행한 급식지원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 법제화

1998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1998년 12월 30일, 국회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구 의원)” 위원들이 겨울방학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난향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방학 중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12호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제11조 급식지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 내용은 시·도교육감은 극빈 가정 학생에 대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에 급식지원을 하되, 방학, 토·공휴일의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결식아동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이 확대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해결하고 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 또한, 수업일뿐 아니라 방학기간 등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중식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력

1) 중식지원관리 정책연구 실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에는 중식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컸다.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가정에서는 식사를 할 수는 있으나 현금이 부족하여 학교급식비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토·공휴일과 방학기간 중에 실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토·공휴일과 방학기간 중의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지원하는 것은 애로점이 많았으며 교육청과 시·군·구청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애로점들을 해소하고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0년도에는 교육정책연구과제로 “학생 중식지원 사업 관리 및 평가모델 개발연구”(책임연구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홍식교수)를 수행하였다.

2)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 워크숍 개최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은 정부의 어느 사업보다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1년 10월 10일부터 11일



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결식아동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시·도별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담당자 2명씩 총 4명씩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조홍식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제도의 벽을 넘어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중식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은 학기중 점심시간의 급식지원으로 출발하였으나 1998년 IMF를 겪으면서 방학,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확대되고, 조식과 석식지원까지도 확대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실행 주체는 학교 안과 밖을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2005년 1월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2005년부터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을 지방이양 대상으로 정하고, 지원방법과 지원예산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도 <표 V-6>과 같이 조정하였다.

<표 V-6> 저소득층 급식지원 사업 부담내역

구 분		예산부담주체	지원실행 주체
중식	학기중	평일(180일)	시·도교육청
		토·공휴일(95일)	자치단체
	방학중	평일, 토·공휴일	자치단체
조·석식	연중	365일	자치단체

중식지원사업 지방이양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 중식지원사업” 등 163개 이양사업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사업으로 규정(제4조제1항)하였다.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지원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중식지원사업인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마. 연도별 중식지원 현황

1988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학생 중식지원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기 전인 2004년까지의 학생 중식지원 사업의 현황은 <표 V-7>과 같다.

<표 V-7> 학생 중식지원사업 현황(1988~2004)

연도	지원인원(명)		지원단가(원)		지원일(일)		국고(백만원)	지방비 등(백만원)	비고	
	학기중	방학등	학기중	방학 등	학기중	방학등				
1988	3,131		600		50		94			
1989	8,546		600~800		180		1,126			
1990	10,182		800~1,000		180		1,355			
1991	10,689		1,000		180		1,748		초등학교 대상 국고에서 전액 지원	
1992	8,637		1,300		180		1,823			
1993	7,540		1,300		180		1,636			
1994	6,730		1,500		180		1,620			
1995	6,000		1,500		180		1,620			
1996	5,500		2,000		180		1,980	1,543		중고 지원시작(지방비)
1997	11,017 (초 2,195 중 6,016 고 2,806)		2,000		180		2,378	1,538		중고 국고지원 시작(50%) 초등지원종료
1998	131,333		급식 1,500 비급식 2,500	2,500	180	50	2,257	36,100	IMF, 지원확대 겨울방학 특별 지원(129,794명, 103억원)	
1999	151,375 (초 95,280 중 29,900 고 26,195)	151,375	초 1,500 중고 2,000 비급식 2,500	2,000	180	90	20,121	50,701	중식지원 법제화(학교급식법) 방학예산 추경	
2000	164,000 (초 86,000 중 34,000 고 44,000)	164,000	초 1,500 중고 2,000 비급식 2,500	2,000	180	185	56,945	38,278	방학 지원 (여름 40일, 겨울 50일)	
2001	164,000	164,000	상 동	2,000	180	185	56,945	56,200	방학, 토·공휴일 지원	
2002	197,703	108,648	상 동	2,500	180	185	56,945	55,109	365일:108,648명 180일: 89,055명	
2003	305,568	39,420	초 1,500 중고 2,000	2,500	180	185	56,945	70,758	365일: 39,420명 180일:266,148명	
2004	305,112 (초 181,484 중 134,273 고 143,326)		초 1,500 중고 2,000		180		47,802	88,589	방학, 토·공휴일: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 방학 등 : 방학, 토·공휴일

* 교육부 내부자료



04 학교급식 관리

가. 학교급식 관리지침

1980년대의 학교급식 관리지침은 목표, 기본방침, 학교급식운영(일반관리, 영양교육의 강화, 시설관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교급식 전담요원 확보 및 배치, 급식학교 신규지정 기준, 소규모 급식학교 통합운영, 학교급식 효과분석), 학교급식 운영평가, 운영연수회 개최, 급식학교 담당자 연수 등 비교적 세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1990년대 교육부의 급식관리 지침은 현안사항 등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고 학교현장의 급식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 시달하도록 하였다. 1993년, 1999년, 2002년의 교육부의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의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993년 학교급식 관리 기본방향

1993년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993년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

1. 학교급식 확대

학교급식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에 전면실시 해야 할 과제이며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서 기필코 달성하여야 하므로 '92~'96 회계년도 중기지방 교육 재정계획수립 지침(1992.7.16.) 및 '9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1992.8.31.)상의 '93 급식학교 신규지정 기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급식학교 공동관리 운영방안 연구

학교단위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학교 또는 공동관리 가능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조리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경기도 교육청은 1991년도에 15개교 예산으로 21개교의 급식학교를, 1992년도에는 18개교의 예산으로 29개교의 급식학교를 지정하였음. 이는 비조리 급식학교의 식단계획, 물품구입, 보관, 조리, 인력관리, 시설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시설 설비비 낭비요인 방지 가능



1993년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계속)

3. 학교급식 시설 철저

학교급식 시설의 설치에 있어 관련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바,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규모의 과대설정 및 불필요한 기구 구입 금지, 사후관리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선정, 지나친 고가품 또는 조잡한 기계기구류 구입금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시도별 연구학교 운영

학교급식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학교급식 연구학교를 시도별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5. 급식학교 지역별 식단 개발

학교급식 식단은 해당지역 특산물과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농산물 등을 이용한 식단을 작성하여 급식 학생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전통 한국요리개발 등에도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기본소양과 사례발표 및 정보교환을 위한 시도별 자체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교육부지원 '93년도 연수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급식학교장과 관계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6월경 실시할 계획임.

7. 학교급식 운영평가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실시해온 학교급식운영평가가 일부 시도의 무관심과 지나친 경쟁심 유발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임.

8. 초등학교 중식지원 사업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중식지원 사업은 학교장 책임하에 대상 학생을 선정하되, 국가보조금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결하기 바라며, 국고보조금을 과다신청하여 연말정산시 불용액을 발생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2) 1999년 학교급식 관리 기본방향

1999년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999년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효율적인 운영관리
 - 노후 급식시설의 적기교체, 식품조달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급식학교 평가”를 통하여 급식운영관리의 질 향상 유도
 - 효율적 급식운영관리 및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 우유급식 실시여부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관리 철저
-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
 -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위생 및 안전점검 철저
 - 표준위생관리제도 도입 등 급식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전염병예방방법령에 의거 정기적 소속 실시
 - 식중독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위생 및 안전교육 강화
 - 압력용기 및 가스기구 등 주방설비의 노후, 사용 부주의 및 점검미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급식서비스 강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교육, 식생활교육 실시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학생의 기호에 맞으며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식단 개발
 - 비만학생 식사관리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발표 등 실질적인 영양서비스 강화
 -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영양상담 서비스 실시
- 학교급식후원회 운영
 -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당해 학교에 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운영

2. 고등학교급식 확대실시

- 고등학교 급식확대 목표 달성
 - '98년 급식확대 추진학교는 늦어도 '99.3월 초에는 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지도·감독 철저
 -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급식 수혜율 증대



1999년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계속)

- '99년도 급식확대 예산지원
 - '99년도 급식확대 추진학교는 '99.9월에는 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
 - 시·군 및 자치구의 급식시설비 지원 적극 유도
 - 급식시설관련 학교급식후원금 모금 등 물의야기 방지
- 급식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감독 철저
 - 급식운영·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학교 사례 발굴 및 보급

3. 중식지원사업

- 국고지원 현황
 - 대상 학생수 : 46,600명(중 24,600명, 고 22,000명)
 - 지원 기준 : 1인 1식당 2,500원의 50%, 연 180일 지원
 - '99년도 예산 : 국고 8,010백만 원
- 중식지원 대상학생 적극 발굴 및 선정관련 자료 비치
 - 중식지원 대상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되 중복지원 배제
 - 가정환경상으로는 지원대상이 안되나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별도 의견 첨부
- 중식지원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
 - 비급식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지원예산 중 부족분과 급식학교의 결식학생 지원 급식비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
 - 급식학교는 결식학생수가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비 면제 유도
- 중식지원 방법 개선
 - 중식지원 대상학생이 지원 또는 면제 받는 사실이 알려져 친구들에게 놀림,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 배려
 - 방학기간 중의 지원은 지역별, 학교급별로 개인 가정형편에 맞게 지원
- 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유도
 -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식지원 대상학생의 가정환경 확인
 - 학교급식 등이 제공되지 않는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가급적 자치단체에서 지원(현물, 인근식당 이용, 예산지원 등) 적극 유도



3) 2002년 학교급식 관리 기본방향

2002년 학교급식관리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2002년 학교급식 관리 기본방향

1. 중학교 급식확대

- 2002년 말까지 중학교 급식시설 완료(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 2001년도 급식확대사업 추진 중인 학교는 2002. 3월부터 급식 실시
 - 나머지 학교는 금년내 급식시설 완료, 2003년부터 전면급식 실시
 - 기한내 목표 달성을 위해 매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 급식확대사업의 효율적 추진
 - 급식형태, 운영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 학부모 급식비 부담경감 등을 위해 가급적 직영급식으로 추진
 - ※ 전액 교육예산으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운영위탁하는 사례 지양

2.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급식운영 공개 및 학부모 참여 확대
 - 학기초 학운위 및 학부모회의 개최시 급식운영에 대한 설명회 등 실시
 - 업체 선정과정 및 급식경비 예·결산 등 급식운영 상황 공개
 - 「학교급식 모니터링제」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개선
 - 식재료 검수 및 급식감시활동에 학부모 참여확대
- 위탁급식의 질 향상 및 학교의 업체 지도·감독 강화
 - 시·도교육청은 위탁급식 지도·감독 요령을 구체적으로 학교에 시달
 - 효율적인 업체 지도·감독을 위해 교장, 행정실장,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직영급식학교의 식품위생직공무원이 인근 위탁급식학교 영양사와 연락하여 급식업무 정보교환 및 현장방문 지도하는 「학교급식자문제」운영

3.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 확대
 - 2002년은 영양사가 배치된 직영급식학교에 이어 교내 운영위탁급식 학교에도 HACCP 시스템 적용 확대
 - 올바른 적용과 시스템 정착을 위한 실무교육 및 전문가 합동 지도·점검 실시



2002년 학교급식 관리 기본방향(계속)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및 위생설비 기구 확충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기구 재배치 등 조리작업 환경위생 개선
 - 압력용기 가스기구 등 노후시설·설비·기구의 개선 및 교체 예산지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

4. 생활교육으로서의 정착

- 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 홍보
 - 교원연수 또는 회의시 학교급식의 중요성, 교육과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 또는 강좌 개설
- 생활교육으로의 학교급식 정착방안 추진
 - 관련 교과과정 운영과 연계한 식단작성 및 급식 제공
 -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편식교정지도 등 급식시간의 교육적 운영
 - ‘식생활 문화반’ 운영, ‘전통음식 체험의 날 행사’ 등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교 급식과 실생활 접목 추진
 - 급식과 생활교육을 연계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 학부모·가정과 연계교육 강화
 -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 등을 이용한 식생활관련 정보 제공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연수시 학교급식의 필요성 홍보 및 협조 요청
- 영양지도 및 상담 실시
 - 비만관리 프로그램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급식을 식생활교육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 강화 유도
 -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나. 학교급식 운영의 실제

이 시기의 초등학교 급식운영의 예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1997년 산본초등학교의 예를 정리하였다. 당시 산본초등학교는 3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급식을 하고 있었다. 급식인원 수는 학생 1,137명과 교직원 45명 총 1,182명이었으며 교실급식을 하였다.



1) 급식운영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음식의 영양기준량은 학년별, 성별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표 V-8>,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식단을 월단위로 작성하였다<표 V-9>. 식재료 납품업체는 농협, 축협, 부식업체 등으로 분리하여 구매하였으며, 업체는 연 3회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였다.

〈표 V-8〉 영양기준량 산정표(산본초등학교의 예)

학 년	성별	인원수 ①	열량 (kcal)		단 백 질 (g)		칼 슴(mg)		철분(mg)	
			기준량 ②	① × ②	기준량 ③	① × ③	기준량 ④	① × ④	기준량 ⑤	① × ⑤
3학년	남	148	600	88,800	16.7	2,472	234	34,632	4	592
	여	135	600	81,000	16.7	2,255	234	31,590	4	540
4학년	남	144	734	105,696	20.0	2,880	267	38,448	4	576
	여	141	634	89,394	20.0	2,820	267	37,647	6	846
5학년	남	154	734	113,036	20.0	3,080	267	41,118	4	616
	여	109	634	69,106	20.0	2,180	267	29,103	6	654
6학년	남	160	734	117,440	20.0	3,200	267	42,720	4	640
	여	145	634	92,564	20.0	2,920	267	38,982	6	876
교직원	남	9	833	7,497	25.0	225	233	2,079	4	36
	여	36	667	24,012	20.0	720	233	8,388	6	216
소 계		1,182	·	788,545	·	22,752	·	304,725	·	5,592
영양량합계/ 급식인원수			667		19		258		4.7	
학 교 실 정			+ 10 %		+ 10 %		+ 10 %		+ 10 %	
산본초 영양 기준량			734		21		284		5.2	

☞ 학교실정: 교실배식, 아동의 활동 정도, 아침결식 정도 등 참고



〈표 V-9〉 월 식단표(산본초등학교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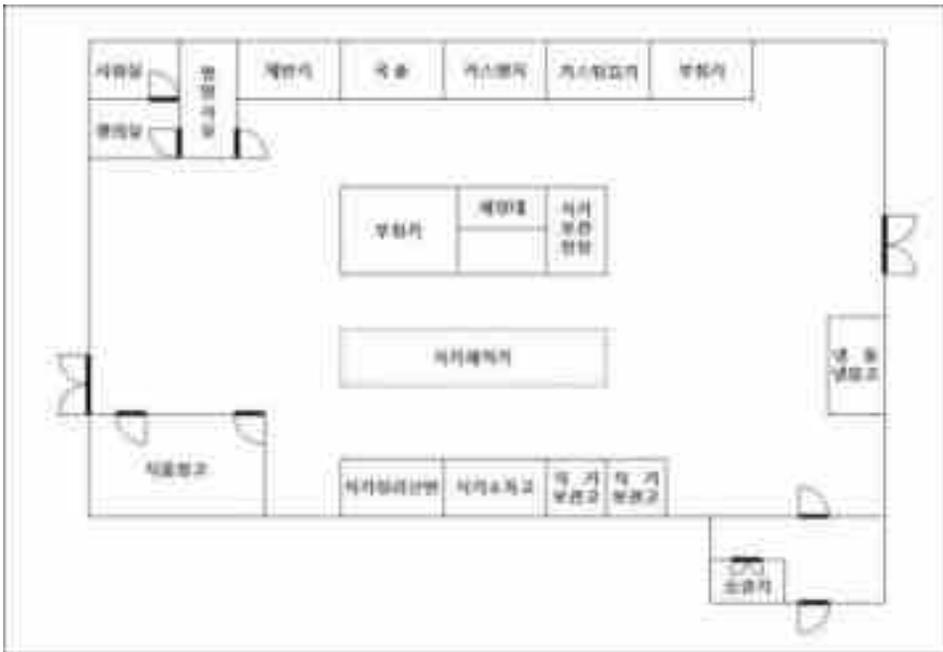
11월의 식단				
<p>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을 맞이하여 식탁이 풍요로워지는 계절입니다. 운동량이 적어져 과식해지기 쉬운 계절이며, 야채도 골고루 먹어서 비타민과 무기질도 부족하지 않게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 다구요. 식단에 대한 궁금함이나, 영양상담을 원하는 아동은 영양실로 연락하세요.</p>				
월	화	수	목	금
11.3	11.4	11.5	11.6	11.7
차조밥 떡만두국 오징어튀김 마늘통장아찌무침 배추김치 우유, 과일	현미밥 꽃게탕 계란찜 탕평채 백김치 우유	고구마밥 갈비탕 쇠고기우육음 김구이 쌀시루떡 깍두기, 우유	옥수수밥 팽이버섯국 연두부양념장 새우튀김 알타리김치 우유, 과일	닭죽 영계백숙 콩나물오색채 오이소박이 과일 우유
11.10	11.11	11.12	11.13	11.14
보리밥 대구매운탕 오이도라지무침 사과튀김 배추김치 우유	흑미밥 경단미역국 야채전 닭강정 열무김치 우유	울무밥 배추된장국 미역초무침 떡갈비찜 깍두기 우유, 과일	현미죽쌀밥 두부명란젓찌개 고구마줄기볶음 미트볼케첩조림 오이소박이, 우유	짜장밥 계란국 과일 깍두기 우유
11.17	11.18	11.19	11.20	11.21
차수수밥 감자다시마국 호박야채볶음 과일탕수육 포기김치 우유	오곡밥 야채된장찌개 가지피망볶음 생선완자볼튀김 열무김치 우유, 과일	현미밥 곰탕 모듬냉채 해물파전 깍두기 우유	쌀밥 아욱새우국 오징어야채불고기 달걀깨츄츄샐러드 백김치 우유, 과일	비빔밥 재치조개국 포기김치 궁중떡볶음 우유 과일
11.24	11.25	11.26	11.27	11.28
쌀밥 사골된장국 복어구이 베이컨감자조림 열무김치 우유, 과일	차조밥 부대찌개 녹두전 감자조림 백김치 우유	현미 짬뽕국 조개튀김 숙주무침 알타리김치 우유, 과일	보리밥 어묵무국 삼겹살 상치 된장양념장 오이무생채, 우유	잡채밥 무맑은장국 다시마튀각 열무김치 우유 과일
☞ 식단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식비는 1인 1식당 1,250원(식품비 1,200원, 운영비 50원)으로 스쿨뱅킹을 통해 수납하였다. 학교급식비 예·결산,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비 책정, 무상급식 대상자 선발 등 학교급식관련 중요사항은 학부모등 14인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2) 조리시설

당시 조리실 평면도와 조리실 시설의 사진을 각각 [그림 V-1]과 [사진 V-1]에 제시하였다.



[그림 V-1] 조리실 평면도(산본초등학교의 예)



조리기기



급식품 운반차

[사진 V-1] 조리시설(산본초등학교의 예)



3) 배식 및 식사

산본초등학교는 학교 조리실에서 만든 음식을 교실별로 운반하여 교실에서 배식을 하였다. 조리실에서 교실까지의 음식 운반은 매일 당번제로 급식봉사활동에 참여하는 11명의 학부모가 담당하였다. 영양사는 참여한 학부모 당번들에게 그날의 급식 조리법을 설명하고 가정에서의 식생활도 상담하였으며, 급식활동 후에는 교장선생님과 면담 등을 통해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하였으며, 학교 방송실에서는 아동들이 오늘의 급식식단과 영양상식 등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배식은 아동들이 직접하도록 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질서 있는 식습관을 배우도록 하였고, 앞뒤 아동들이 모듬으로 식사하였다[사진 V-2].



[사진 V-2] 배식 및 식사



4) 급식관련 행사 및 교육

학교급식에 대한 효과와 이해를 높이고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급식관련 표어·포스터 대회, 글짓기 행사를 하고 우수작을 게시하였다. 역할극을 통해 식품에 대한 이해도와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였다[사진 V-3]. 이 외에도 요리실습, 급식관련 가족신문 만들기, 식품 퍼즐게임 놀이, 식사예절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하였다.



[사진 V-3] 급식관련 행사

교실과 복도의 게시판에 급식코너를 만들고 영양교육 자료를 게시하였다[사진 V-4].



[사진 V-4] 교실의 급식코너

한편,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의 저학년 학급에서는 학부모들이 배식에 참여하고 자녀들과 함께 급식을 먹기도 했다. [사진 V-5]는 1995년도의 서울 교동초등학교의 급식장면을 담고 있다.



1995년 2학년 교실의 어머니 배식활동



1995년 2학년 교실의 급식 시간



1995년 고학년 교실의 배식당번 활동



2016년 8월, 교동초등학교의 급식실

[사진 V-5] 초등학교 급식활동(교동초등학교의 예)

* 서울 교동초등학교 제공

다. 위생관리

1) 교육청의 위생지도·감독

학교급식 확대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담당하였고, 위생지도·감독은 시·군·구청에서 담당하였다. 초등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1993년 일선 학교의 교장단 협의회에서 급식운영과 위생감독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원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1994년 국무총리직속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학교급식의 지원행정과 위생지도·감독의 일원화”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4508호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에 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 이로써 학교급식시설의 위생지도·감독은 급식 운영지원과 함께 교육청으로 일원화되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14508호, 1994.12.31.]

제42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 ⑫ (생략)

⑬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련업 무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 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4·12·31〉

이를 반영하여 1997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15361호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함을 규정하였다. 1997년 5월 13일 교육부령 제693호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개정,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매 급식시마다, 교육장은 관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 연 2회상, 교육감은 관할 고등학교의 급식시설과 필요시 초·중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도 위생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2)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도 증가하였다. 대구광역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1998년 3월 28일에서 4월 18일까지 783명이 구토, 설사 등의 증세로 진료를 받고 110명이 세균성이질로 확진(학생 106명, 교사 2명, 급식종사자 2명)을 받았으며, 2차 감염자 15명이 확진되어 총 125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고자 1998년 4월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1998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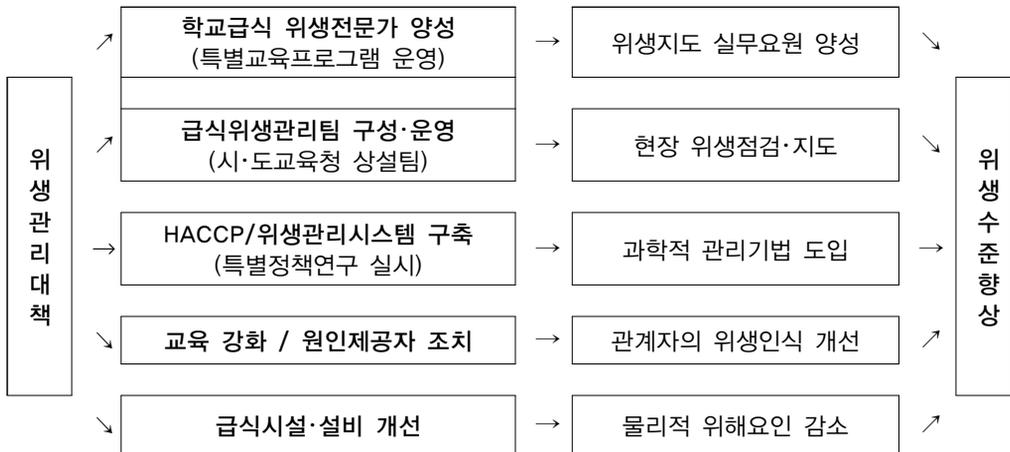


9일에서 1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담당 연구관과 합동으로 창원초등학교, 삼송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의 급식위생관리의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급식위생관리를 위한 「위생표준 작업절차」를 제시하였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특별대책 수립

1999년 5월, 충남 논산시의 초등학교에서 세균성이질에 의한 식중독이 또 발생하였다. 학교에서의 식중독 사건을 분석해 보면 학교급식은 주로 점심 한 끼만을 제공하며, 식재료는 당일 구입하여 조리 후 바로 급식하므로 사전에 주의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급식 위생관리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영양사와 조리종사자의 위생지식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위생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만 갖추어진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보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1999년 6월, “학교급식 위생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그림 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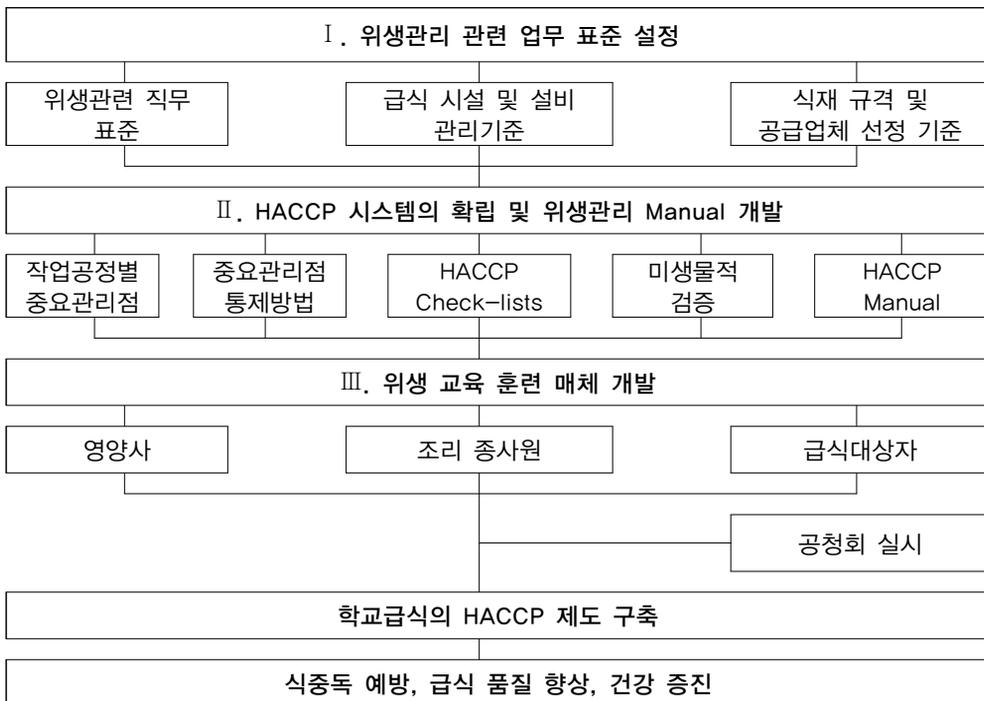
[그림 V-2] 학교급식 위생관리 특별대책



■ 학교급식의 HACCP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199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교급식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도입 및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연구를 정책연구과제비로 수행하였다[그림 V-3].

이 연구의 연구 책임자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광동경 교수였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아시아나항공 케이터링사업 담당 강영재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박선희 연구관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산·학·관의 협력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학교급식의 식단작성, 식재료 구입·검수, 보관, 세척·소독, 조리작업, 조리후 배식작업, 종사자 개인위생, 식기구 세척·소독 및 보관 등 급식과 관련한 전 작업의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급식 HACCP 일반모델과 위생교육훈련 자료가 개발되었다.



[그림 V-3] 학교급식의 HACCP 제도 도입 및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의 틀

* 출처 : 광동경, 학교급식의 HACCP 제도 도입 및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1999



■ 학교급식 위생 전문교육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준을 단기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9년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학교급식 위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교급식위생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후에는 시·도교육청 급식위생관리팀원으로 활동예정인 50명을 시·도별로 2~4명씩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5~7급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용욱 교수)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급식위생 지식과 실무, 미생물 검사방법, 작업개선 지도, HACCP 적용, 역학조사 기법 등이었다.

■ 시·도교육청 급식위생관리팀 구성·운영

1999년 9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급식위생 전문과정 이수자를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별 급식위생관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위생 및 안전 점검, 급식작업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지도·확인, 위생교육 및 조사연구 활동, 식중독 등 발생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 교육청 자체 원인 조사 및 대책마련, 유사사례 발생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

■ 학교급식 HACCP 일반모델 적용

1999년 학교급식 HACCP 일반모델을 개발한 이후 2000년도는 시·도교육청별로 3개교씩 시범 적용하였다. 2001년에는 영양사가 단독으로 배치된 직영급식학교를 위주로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1,700개교, 중학교 100개교, 고등학교 200개교 총 2,000개교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였다. 2002년에는 운영위탁 급식학교에 까지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2004년에는 전체 급식학교에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발간

200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의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시·도 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받음에 따라 위생 및 안전점검 기준 및 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01년 11월 말부터 1주일간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학교급식담당 우수 인력 8명을 차출



하여 곽동경 교수, 강영재 박사 등 위생전문가와 함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을 만드는 집중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물로 2001년 12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11,000부를 발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급식위생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1년 초판발행 이후 2003년 1차 개정, 2005년 2차 개정, 2010년 3차 개정, 2016년 4차 개정판을 발행·보급하였다.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2000년에는 HACCP 개념을 도입한 “학교급식 조리실 표준설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 급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급식실을 개보수할 때 참고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의 양적확대사업이 종료된 2003년에는 노후 급식시설의 획기적인 개·보수로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 향상을 선도하도록 교육부가 주관하여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 교육청별 초등학교 1개교 등 총 200개교를 선정하여 전처리실 설치, 조리실 냉방시설과 다기능 오븐기 등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조리기기 확충, 텀웨이터 설치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0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이 200억 원을 대응 투자하였다.



05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노력

가.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설립경영자가 시설·설비비 및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는 급식확대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경비조달방법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992년 2월, 교육부가 수립한 학교급식발전방안과 1992년 3월 경제기획원의 예산제도 개선과제 보고서(학교급식 제도의 확대방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학교급식 참여를 유도하고 급식시설 기금을 설치하자. 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유지, 동창회, 학부모 등의 후원금으로 조성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경제기획원은 급식시설비는 국고보다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급식시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기금 조성이 어려운 저소득지역의 시설비에 한해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992년 3월 시·도 학교보건계장회의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급식시설 재원 확보 등 학교급식 발전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992년 8월,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993년 2월 19일 정부발의 학급식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3년 5월 10일 제161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학교급식후원회 구성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제161회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유보되었다. 이후 1993년 11월 18일 제16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3호로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학교급식 후원회관련 조항은 학교급식법 제5조의 2로 신설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동조리 급식을 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당시에는 후원회가 부담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로 “학교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규정하였으나, 1995년 4월 6일 대통령령 제14569호로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설치비”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급식확대에 소요된 총 4,800억 원 중 약 20%인 1,000억 원이 학부모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초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이 목표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대전시 유성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학교급식 시설 등 교육경비 지원의 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일부 학부모로부터는 강제 징수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시에는 학부모로부터의 후원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았다. 위탁급식 제도 도입 등으로 급식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가 가능해졌고 급식확대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로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제31조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33조에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가 아니고도 학교급식을 위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확대사업이 완료되고 2003년부터 초·중·고교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어 급식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2007년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시 학교급식 후원회 제도는 폐지되었다.

나. 학교 자체조리급식 형태의 다양화

1978년부터 학교급식은 학교마다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학교장 책임하의 자체조리 급식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1986년부터는 도서·벽지지역은 200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300명 이상, 도시지역은 500명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학교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전면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까지 자체조리 형태로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등 비용과 효율성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 해결 방안으로 공동조리급식, 급식 공동관리 등의 급식 운영형태가 도입되었다.



1) 공동조리 급식

1990년대 초 신도시 건설로 인해 해마다 50개 이상, 많을 때는 100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해야 했던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급식 담당과장은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확보 및 예산절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조리급식을 시도하였다.

1992년 3월, 한 개의 중심학교에 조리실을 설치하여 인근 소규모 두세 학교분의 급식품을 일괄 조리하여 해당학교에 전용차량으로 운송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공동조리급식을 19개교(조리교 6개, 비조리교 13교) 3,879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급식운영방법은 소규모 개별학교에 급식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설비비 및 운영비 절감, 학교별 급식운영관리 업무부담 경감을 꾀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급식 모형이 되었다.

공동조리 급식을 위한 대상으로는 읍·면 이하의 농어촌지역의 가급적 동일방향의 도로로 연결된 소규모 학교로 학교간 차량 이동소요 시간이 15분 내외의 인접학교를 선정하였다. 한 개 공동조리실당 급식 수용 인원은 조리교와 비조리교를 합하여 1,000명 내외가 되도록 하였다. 공동조리실 설치 학교에는 다량의 조리를 원활히 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계화, 자동화하는 등 조리시설·설비를 확충하였다.

비조리교 급식품의 신속, 안전한 운송을 위해 자동승강장치와 보냉탑 등을 장치한 전용특수장비 차량과 운전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차량 적재함 규격을 감안하여 보온 식품용기 및 컨테이너를 설계·제작하였다[사진 V-6].



공동조리급식 운반차 외관



운반차 내부

[사진 V-6] 공동조리 운반차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담 종사인력도 적정하게 배치하였다(영양사 1~2명, 조리사 1~2명, 운전원 1명, 조리보조원 1~6명). 비조리교에는 온수 설비, 식기구 세척, 소독, 보관설비를 갖추었다. 비조리교에는 종사원을 배치하지 않고 배식, 식기세척 업무는 학부모가 지원하도록 하였다<표 V-10>.

이러한 공동조리 급식을 통해 각 학교마다 단독조리 급식을 하는 것에 비해 시설비는 36%정도, 운영관리비(인건비, 연료비 등)는 매년 30%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비조리교는 식단계획, 물품구입, 보관, 경리, 조리작업, 인력관리, 시설유지관리 등의 업무가 경감되었으며,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잉여 시설·설비의 발생을 방지하여 시설투자 활용의 적정성을 기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을 급식 학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공동조리급식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96년 10월 기준, 초등학교의 공동조리 현황은 <표 V-11>와 같다.



〈표 V-10〉 공동조리에 의한 급식과정

순서	공동조리실 설치교	비조리 급식 학교(3교 내외)
1	학교급식위원회 조직 운영 - 비조리교와 공동 조직 - 학부모 급식비 부담액 등 결정	학교급식위원회 참여 (학교장, 학부모 등)
2	학부모부담 급식비 수납(본교, 비조리교분)	급식비 수납 → 공동조리교로 송금
3	식단작성 - 영양사 배치	
4	식재료 구입	
5	조리작업 - 조리사, 보조원 배치(학보모 참여 권장)	
6	급식품 분배 - 본교 : 학급단위 - 비조리교 : 학교당 2~3단위 용기 ※ 보존가능, 상하차 용이한 규격 용기	
7	비조리교 급식품 운송 - 전용 차량·기사 배치 본교 → A → B → C → D ▲──────────────────▲	급식품 수령(2~3단위 용기) - 담당자 지정
8	급식장소로 식품 운반(본교)	급식장소로 운반 - 학부모 참여
9	개인별 배식	개인별 배식 - 학부모 참여
10	급식 - 식사, 영양교육(담임, 영양사)	급식 - 식사, 영양교육(담임, 영양사 순회)
11	뒤처리 - 식기구 세척실 운반	뒤처리 - 식기구 세척실 운반
12	식기구 세척·소독·보관(본교용) - 인력 : 전담직원	식기구 세척 - 세척·보관시설 설치(8~10평) - 인력 : 학부모 참여 - 개인용기 → 자체소독 보관 - 운반용기 → 반납 대기
13	비조리교 급식품 운반용기 회수 보관 - 전용 차량·기사 배치 본교 → A → B → C → D ▲──────────────────▲	운반용기 조리실 설치교에 반납

* 경기도교육청 제공



〈표 V-11〉 초등학교의 공동조리 현황(1996)

(단위 : 교, %)

시·도	전체 학교수	급식학교					비고		
		계	단독 조리	공동조리			위탁 급식	공동조 리비율	3교이상 공동조리
				계	조리교	비조리교			
계	5,732	4,968	3,805	1,156	507	649	7	23.3	146
서울	519	449	437	8	4	4	4	1.8	-
부산	250	209	145	63	27	36	1	30.1	5
대구	164	134	128	4	2	2	2	3.0	-
인천	164	122	105	17	5	12	-	13.9	3
광주	93	73	64	9	3	6	-	12.3	3
대전	99	96	63	33	14	19	-	34.4	3
경기	756	494	224	270	85	185	-	54.7	64
강원	428	421	386	35	18	17	-	8.3	-
충북	279	267	176	91	41	50	-	34.1	-
충남	476	476	328	148	76	72	-	31.1	2
전북	479	463	232	231	86	145	-	49.9	54
전남	626	604	447	157	90	67	-	26.0	4
경북	642	477	429	48	33	15	-	10.1	8
경남	651	558	520	38	21	17	-	6.8	-
제주	106	125	121	4	2	2	-	3.2	-

* 교육부 내부자료

2) 급식 공동관리

공동관리는 중심학교에 배치된 영양사 1인이 인근의 소규모 단독조리 학교 2~3개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때 영양사가 관리하는 급식학생수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400명 이내이어야 한다. 영양사는 본교와 공동관리 학교분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를 산출하며 주 1회는 공동관리교에서 근무를 하였다. 공동관리 영양사는 본교 이외에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급식관리를 해야 하므로 업무량도 많았고, 본교와 순회교의 식중독 발생방지 등 급식관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2001년 7월, 직영급식 학교 총 6,164개교에 5,088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었는데 이 중 18%인 933명이 공동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 중 80%는 2개교의 급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는 3개교 이상을 담당하였다.



다. 위탁급식

위탁급식제도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36호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도입되었다. 위탁급식은 교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맺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대다수의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위탁급식 실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위탁급식제도 도입 첫해인 1997년은 학교에 조리급식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외부 운반급식의 형태가 많았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개별포장보다는 학급단위 등 단체포장 형태로 학교에 운반하여 주로 교실에서 배식하는 형태이었다. 그러나 외부 운반급식은 조리하여 학생들이 급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경과되어 식은 음식이 제공되었고 메뉴가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일부학교는 구내식당을 케이터링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장과 계약을 한 업체가 기존 구내식당을 개보수하거나 교내에 조리시설과 식당 등의 시설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교내식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업체 측의 재정 부담이 뒤따르므로 이러한 운영위탁 형태의 급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5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고등학교급식 확대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급식시설비를 상당 부분 지원함에 따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반 이상의 학교가 운영위탁급식을 희망하였다. 위탁급식을 하고자하는 학교의 90%가 교내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되, 운영은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이었다.

고등학교급식은 학교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기보다는 학부모, 사회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단기간에 추진되기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실시에 미온적이었다.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양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학교에는 급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없어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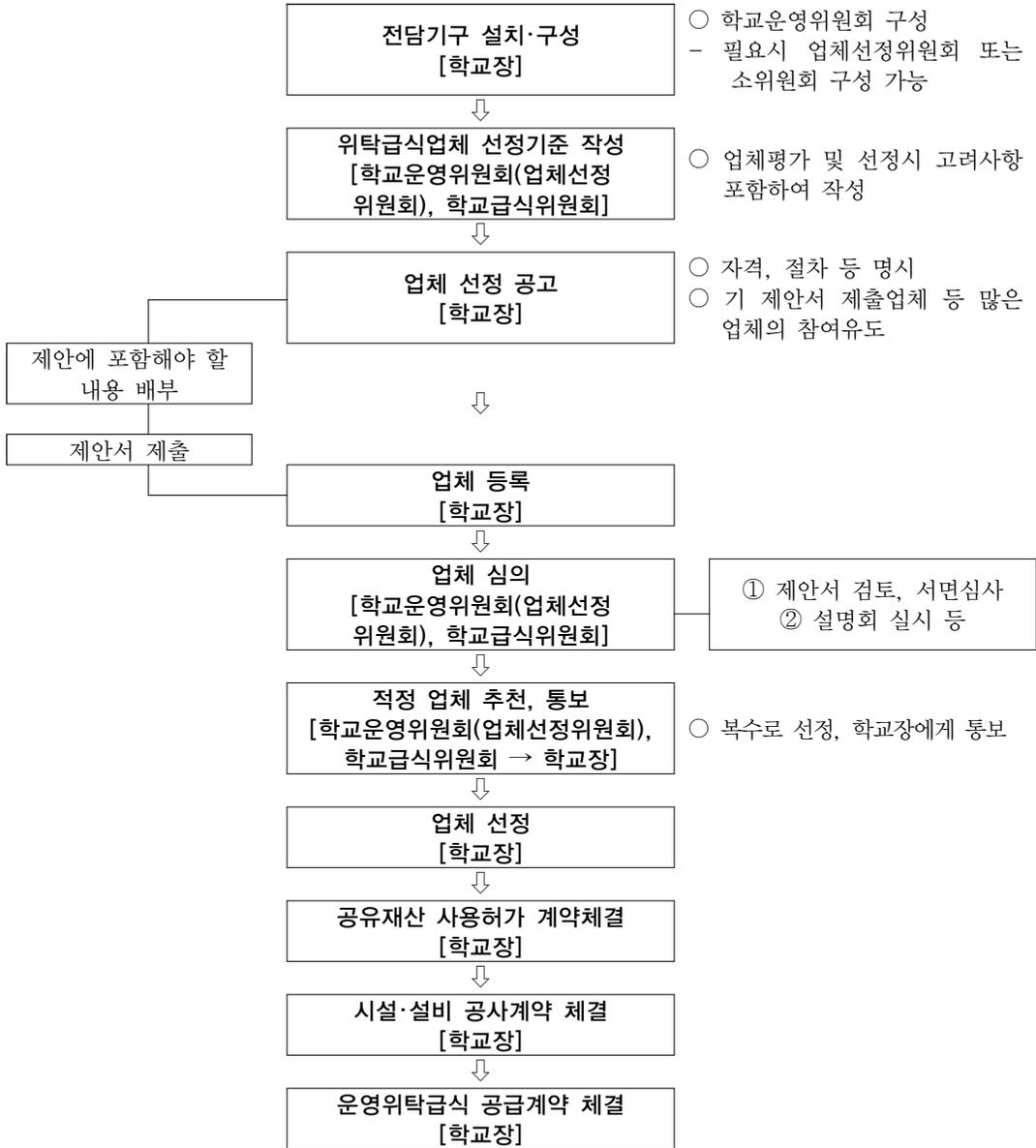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공급업자(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사용료로 경쟁 입찰에 부쳐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 위탁급식 운영의 내실화

1998년 10월, 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며 운영위탁급식의 위생, 안전, 질을 확보하고 급식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림 V-4]와 같이 시·도교육청에 “운영위탁급식 시행요령 및 유의사항”을 시달하였다. 급식운영위탁 절차뿐 아니라 학교의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시 유의사항,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시설관리, 인력관리, 위생관리, 급식가격관리, 급식의 질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는 급식담당 교직원을 지정하고 급식운영상황을 점검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다.

직영급식과 달리 위탁급식의 경우는 공유재산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되었다. 위탁급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1999년 1월, 운영위탁급식 사업자가 교육감에게 납부해야 할 공유재산사용료를 “5/1000 이상”에서 당시 최저율인 “1/1000 이상”으로 낮추도록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준칙을 시달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30일, 법률 제5980호로 위탁급식사업자가 부담하던 위탁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영급식의 경우와 같이 감면 되도록 “조세제한특례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림 V-4] 운영위탁급식 시행 절차

* 교육부 내부자료



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1995년, 대전광역시의 민선 유성구청장이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지원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된 후, 구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여 585백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의결하여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하여 초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규정위반이라며 구청 공무원이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사진 V-7].

<주요 내용>

대전 유성구청장은 구청관계자에게 급식시설비 5억원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규정위반이라며 집행을 거부하였다.

유성구의회는 1995년 추경예산중 학교급식 시설 지원비 8억8천만 원을 구청관계부서에서 1차분 5억여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다.

이에 구청장은 급식시설비 집행을 거부한 구청관계자를 직위해제할 것을 담당국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조치를 거부하였다.

[사진 V-7] 지자체 급식시설비 지원관련 기사<조선일보 1995.10.5>

1995년 8월 24일, 내무부장관은 당시 지방자치에 관한 법체계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는 학교급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무부의 입장과 학교급식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다며 법제처장에게 학교급식 경비부담에 관한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1995년 11월 21일, 법제처장은 내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내무부의 학교급식 경비부담에 관한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요지

1. 자치구가 학교급식시설·설비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립의 각급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시설·설비비의 부담주체로 급식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시·도로 보아야 한다.

2. 자치구가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시·도가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시·군 및 자치구는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급식학교의 학교급식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자치구가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는 그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학교급식법의 경비부담주체로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분장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행정자치부 내부문서(재정 13310-2000, 2003.10.18.)

이에 유성구청장은 학교급식후원회 회원의 자격으로 관내학교에 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 후 1995년 12월 29일,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등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이의 후속조치로 199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지원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1995.12.29., 법률 제5064호)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④ (생략)

⑤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5.12.29.>

■ 고등학교의 급식시설비 지원

1998년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 시설·설비사업 경비를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998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589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동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으로 개정되었다.

■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1996년 3월 21일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여 남동구청장에게 이송하였다. 그러나 남동구청장은 같은 해 4월 10일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붙여 남동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남동구의회는 같은 해 6월 14일 처음 의결된 내용 그대로 재의결을 하였다. 이에 남동구청장은 남동구의회를 상대로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에서 남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인천남동구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판결 요지

○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

학교급식의 조기실시를 권장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 급식시설·설비비(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교육청에 소요금액의 대여 또는 소요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 판결요지

- [1]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은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 [2]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 제5호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자치구는 위 규정 소정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외의 학교에 대하여도 급식시설·설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마. 학교급식법령 주요 개정 내용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학교급식법령 주요 개정배경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타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법령 개정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급식법령의 “교육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개정됨(법률 제 6400호, 대통령령 제 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정

(1993.8.10. 교육부령 제637호)

- 가)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사항을 새로이 교육부령으로 정함.
- 나) 체육부령과 교육부령의 차이점은 장관이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시달하던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이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시달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 다) 급식현황보고 서식 변경(제빵 기사 인원보고와 우유급식량 보고 삭제, 학교생산물 보고서식 간소화, 급식예산액은 항목별, 재원별로 세분화 보고)

3)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법 제5조의2 신설, 제8조 등 개정, 1993.12.10. 법률 제4593호)

- 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 나)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 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음.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조의2 신설).



- 다)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던 급식시설·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4)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10 신설 등, 1994.6.17. 대통령령 제 14283호)

- 가) 영양관리기준을 문교부령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기능, 임원, 이사회, 후원금 모집, 회계, 운영세칙 등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다)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등 학교설립경영자 부담경비를 후원회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급식경비중 학생전원의 7할 이상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과 같은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던 것을 교육감이 인정하도록 함.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 개정, 1994.6.17. 대통령령 제14283호)

- 가) 종래는 토요일 수업일은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일에서 제외하였으나, 요일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일에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 할 수 있는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를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로 부담범위를 확대함.

5) 위탁급식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법 제2조 등 개정, 제10조 신설, 1996.12.30. 법률 제5236호)

- 가)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학교안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며,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는 급식실시가 어려우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공동조리장 설치·운영 및 위탁급식제도의 도입 필요
- 나) 위탁급식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안에 학교 공동급식시설 설치 가능
- 라)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음. 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함. 위탁급식의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

6) 위탁급식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학교급식시행령 제3조의2 신설, 제7조 및 제8조 개정, 제8조의2 신설, 1997.4.29. 대통령령 제15361호)

- 가)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나)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인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학부모도 일부 부담 가능
- 다)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자로 함.
- 라) 위탁급식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교육부령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학교장과의 위탁급식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함.

(학교급식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1997.5.13. 교육부령 제693호)

- 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생 및 안전점검은 별표 5와 같음.
- 나)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의 조리·가공, 포장·운반 등 급식을 위한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할 것, 영양기준을 지킬 것,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 것, 적온급식을 할 것, 72시간 이상 보존식을 냉장보관 할 것 등 준수사항 신설



- 다) 급식현황 보고서식 변경(중고등학교 급식확대와 위탁급식제도의 도입, 학교급식 후원회의 부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관련 사항 보고)

7)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 법제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법 제11조 신설, 1999.8.31. 법률 제6012호)

- 가) 수업일 및 방학기간에 결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반드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함.
- 나) 시·도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중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의 급식지원 대상학생의 실태 파악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
- 다) 이들 학생의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바. WFP의 학교급식 실태조사

2001년 5월 외교통상부는 UN 산하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에서 세계 각국의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응하겠냐는 공문을 교육부로 보내왔다. 이후 같은 해 9월 WFP는 학교급식조사단 2명(Natalia Caldes, Bai Mankay Sankoh)을 2주간 파견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학교급식 실시 배경 및 과정, 현재의 학교급식 운영시스템, 영양공급, 재정관리, 위생관리, 학교수 및 학생수 등 통계,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성적, 정량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 현장 방문, 급식체험, 관계자 면담(식품영양학과 교수, UNICEF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내 한국국제협력단)이 있었다. 학교급식 현장으로 경북 경주의 용항초등학교, 경주여고와 특수학교인 경희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한국이 1953년부터 UNICEF 수혜국이었는데 1994년부터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으며, 2000년 말 기준 초등학교의 99.9%, 중학교는 56.6%, 고등학교는 94.7%, 특수학교는 95.3%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87.1%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



놀라워했다. 실제 학교현장은 대규모 밥솥, 국솥, 식기세척기 등 위생적이고 편리한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더욱 감탄하였다. 학생들은 남기는 음식도 거의 없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과 급식에 대한 대화도 하였다. 경주여고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급식의 질과 맛에 대해 만족해 하였다.

WFP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2002년 3월, 세계아동영양포럼은 한국의 학교급식 우수 사례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교육부에 보내왔다. 이에 2002년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세계아동영양포럼과 미국 학교급식 연차 대회의 '세계의 학교급식'이란 세션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하였다.



0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가. 실적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초·중·고등학교 급식확대 실적은 <표 V-12>, <표 V-13>, <표 V-14>와 같다.

<표 V-12> 초등학교 급식확대 실적(1991~2002)

연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비고
	전체	급식	비율 ¹⁾	전체	급식	비율 ²⁾	
1991	6,245	1,203	19.3	4,759,066	372,066	7.8	
1992	6,122	1,513	24.7	4,561,078	465,823	10.2	
1993	6,057	2,188	36.1	4,099,358	983,738	24.0	
1994	5,900	3,314	56.2	4,099,358	912,870	22.3	
1995	5,772	4,140	71.7	3,904,979	1,967,425	50.4	
1996	5,732	5,067	88.4	3,800,513	2,579,353	67.9	
1997	5,721	5,566	97.3	3,784,027	3,015,000	79.7	
1998	5,688	5,640	99.2	3,834,561	3,315,511	86.5	
1999	5,301	5,257	99.5	3,935,537	3,468,757	88.1	
2000	5,292	5,286	99.9	4,019,991	3,555,000	88.4	
2001	5,346	5,343	99.9	4,089,429	3,679,221	90.0	
2002	5,422	5,417	99.9	4,138,366	3,739,221	90.4	

1) 전체학교수 대비 급식학교수 비율(%)

2) 전체학생수 대비 급식학생수 비율(%)

* 1991~1994년 통계 : 1995년이후 통계와 일관성 위해 당해년도 급식확대 학교수 포함

* 1999년 급식학교 통계 감소 :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급식학교수 감소

* 1999년 전체학교수는 교육부 내부자료(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표 V-13〉 중학교 급식확대 실적(1995~2002)

연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비고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1995	2,683	4	0.1				
1996	2,705	27	1.0				
1997	2,720	235	8.6	2,180,283	107,000	4.9	
1998	2,736	828	30.3	2,011,468	232,626	11.6	
1999	2,722	1,078	39.6	1,896,956	378,539	20.0	
2000	2,731	1,545	56.6	1,860,539	778,000	41.8	
2001	2,774	2,010	72.5	1,831,152	1,082,426	59.1	
2002	2,810	2,492	88.7	1,841,030	1,498,185	81.4	

- * 1995년, 1996년은 교육부 내부자료(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 * 1997년부터는 교육통계연보 자료
- * 1999년 급식학교수는 교육부 내부자료(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표 V-14〉 고등학교 급식확대 실적(1995~2002)

연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비고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1995	1,830	1	0.1				
1996	1,856	5	0.3				
1997	1,892	185	9.8	2,336,725	60,000	2.6	
1998	1,921	673	35.0	2,326,880	212,455	9.1	
1999	1,943	1,599	82.3	2,251,140	893,963	39.7	
2000	1,957	1,853	94.7	2,071,468	1,179,000	56.9	
2001	1,969	1,915	97.3	1,911,173	1,227,108	64.2	
2002	1,995	1,951	97.8	1,795,509	1,285,641	71.6	

- * 1995년, 1996년은 교육부 내부자료(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 * 1997년부터는 교육통계연보 자료
- * 1999년, 2001년 급식학교수는 교육부 내부자료(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1990년 문교부에서 학교급식업무 다시 맡은 이후 2002년까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8,254개교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1조 3,069억 원이 소요되었다. 급식 시설비의 84.7%를 정부가 부담하였다(표 V-15).



〈표 V-15〉 1991년~2002년 학교급식 시설비 자원별 현황

구분	신규확대 학교수 (교)	총소요액 (억 원)	급식시설비 자원별(억 원)					비고
			교육부 (국고, 특교)	교육청	자치단체 지원금	학부모 후원금	민자 등	
초등학교	4,053	4,800	200	3,600	-	1,000	-	1993~1997
중 학교	2,478	4,836	1,290	3,079	264	-	203	1999~2002
고등학교	1,623	3,375	1,539	799	244	-	793	1998~1999
특수학교	100	58	58	-	-	-	-	1991
계	8,254	13,069	3,087	7,478	508	1,000	996	

* 고등학교 민자 등 : 민자 592억 원, 학교부담 등 201억 원

* 출처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2004)

나. 평가

1990년 전체 초등학교수 대비 12.1%, 전체 초등학생수 대비 6.0%에게만 급식을 실시하였는데 1997년까지 초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을 완료하고 1998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급식은 1999년 전반기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하고, 중학교 급식은 2002년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하여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였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1991년부터 학교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초-중-고 학교급식 확대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이렇게 학교급식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에 외형적인 급식확대의 실적은 저조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빵급식을 밥급식으로 전환하는 등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다져왔고, 학교급식의 효과분석, 홍보 등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경제적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경제·사회의 발달도 큰 몫을 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확대와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열정을 바쳤던 시·도 교육청의 급식 담당직원과,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 대통령 지시사항, 국정과제 등 목표달성에 쫓겨 급식 운영의 내실화보다는 급식확대에만 매진 해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확대는 교육제도에 끼친 영향도 컸다. 1993년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는 1998년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후원회를 통한 급식시설비 지원은 시·군 및 자치구청장의 선거시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이의 실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시·군 및 자치구에서 급식시설비 등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칙의 제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VI 학교급식 선진화기(2003년~)

이 개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 2003년부터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이 운영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학교급식이 대통령 선거공약 등 정치적인 영향으로 단기간에 확대된 만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정부 지원확대에 대한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도 컸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개선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급식운영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의 협력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식재료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서울시내 위탁급식 학교 등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제도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2007년 제2차 학교급식개선 5개년 종합대책이 수립·추진되었다.

1981년 제정된 후 중·고등학교 급식의 전면실시까지 수차례 일부 개정되었던 학교급식법령은 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체계에 맞추어 25년 만인 2006년에 전부 개정되었다. 학교급식후원회제도 폐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실효성 있는 영양·식품·위생기준 설정, 급식경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 등을 법령에 반영하여 학교급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201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중 14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10개 시·도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17개 시·도 모두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66%인 415만 명에게 연 2조 5,195억 원의 무상급식 경비가 지원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학교급식관련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표 VI-1>과 같다.



〈표 VI-1〉 학교급식 주요 연혁(2003~2015)

2003.	3	서울시 위탁급식 9개교 식중독 발생
	6	영양교사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
	8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 공청회 개최
	10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계획 수립(2003~2007)
	12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근거 신설
2004.	1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급식개선 5개년 종합대책 계획 수립, 시·도과장회의 개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식품접객업 마호에 위탁급식영업 신설
	5	학교급식법 전문개정 계획 수립
	10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국회 제출
2005.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반 전문교육 실시(고려대 의대, 2주간)
	4	국회교육위,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9	전북교육청 대법원 제소건 선고 2004추 10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2006.	10	국무조정실회의, 식재료지원 표준조례는 그대로 간다
	6	서울시 식중독 사고 발생
	7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7962호)
	9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2007.	10	영양교사 선발공고
	1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학교급식법령 해설서 발간 및 개정 학교급식법 설명회 개최
	4	학교 식중독 사고 대응 실무메뉴얼 제작·보급
2008.	5	시·도교육청별 위탁급식 직영전환 계획 수립
	5	위탁급식 직영전환 매뉴얼 발간, 교육청·학교에 보급
2009	2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등급 심의 의무화 제도 도입
	6	위탁급식 직영전환 276개교에 117억원 지원(특별교부금)
2010.	1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3차 개정판 발간
	6	교육감 및 지자체장 무상급식 선거공약
2011.	7	학교급식용 축산물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농식품부 공동)
2012.	9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2013.	8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 마련(식약처 협업)
2014.	2	학교급식 나트륨 줄이기 가이드북 발간·배부
	9	학교급식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2015.	4	학교급식 모범사례 공모 및 심사(4월~5월)
	6	학교급식 식재료 규격 표준화(aT 협업)



02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가. 학교급식법 개정 배경 및 경과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당시 의무교육이었던 초등학교의 급식확대 실시에 중점을 두고 입법된 법률로서 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이루어지기까지 4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타법에 따른 개정은 제외).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확대가 완료되어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자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운영의 내실화 등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2002~2003년에 권오을 의원 등이 <표 VI-2>와 같이 총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표 VI-2> 2003년 국회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대표발의 의원	주요 내용
권오을 의원	국내산 농산물 사용 및 보조금 지원, 급식경비 지원 확대
정장선 의원	국내산 농산물 사용 및 보조금 지원, 급식경비 지원 확대
현승일 의원	국내산 잉여농산물 지원
최영희 의원	직영급식 실시, 영양교사 배치
최재승 의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급식지원센터 운영
이미경 의원	직영급식, 국내산 농산물 사용 및 보조금 지원, 무상급식 실시
이주영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규정(시·도, 시·군·구)

제244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들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합하여 2004년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동 법률안들은 제16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과 2004년 1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하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전의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급식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을



보다 안정적인 교육복지 시책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04년 5월 학교급식법의 전문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2004년 10월 19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10월 27일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표 VI-3>과 같다.

2004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발의 개정법률안은 2004년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의원발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김영숙·강혜숙·정장선·최순영·복기왕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공청회 이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었다. 2006년 6월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학교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여러 개의 학교급식법안을 통합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률은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2호로 공포되었으며, 하위 법령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후인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었다(부록 2의 나 참조).



〈표 VI-3〉 2004년 정부발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구분	현행법률(2004년)	개정법률안(정부안)	사유
1. 급식경비부담 ○ 급식시설·설비, 운영비 ○ 정부의 급식비 지원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 학교급식후원회와 학교급식공급업자 부담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자 지원(총 305천명) 식품비는 도서벽지, 농어촌 초등학교만 지원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이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총 770천명) 식품비는 도서벽지, 농어촌 초·중·고등학생까지 지원	급식후원회제도 폐지, 학부모부담 경감, 급식공급업자 부담 경감 학부모 부담경감 및 정부의 지원 확대
2. 관리기준 ○ 식재료품질 안전관리기준 ○ 영양관리기준 ○ 위생·안전관리 기준 ○ 준수사항	〈신 설〉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 위생·안전 철저를 선언적으로 규정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하여만 준수사항 있음 (미준수시 벌칙 없음)	학교급식법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규정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규정 (식품위생법일반기준보다 강화) 학교와 급식업자 공통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미 준수시 벌칙 있음)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한국인영양관리기준에 따라 신속한 대응가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위생·안전기준 필요 학교와 급식공급업자의 책무성 제고
3. 지도·점검 ○ 식생활지도 ○ 위생·안전 ○ 식재료품질 ○ 학교급식 운영평가	학교급식전담직원 직무로 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 〈신 설〉 〈신 설〉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명문화 학교급식법에 출입·검사·수거 등 규정. 대상·방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 식재료 품질점검도 규정 급식 운영평가 실시, 평가방법·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식생활지도 강화 식재료 품질, 위생·안전 등 관리철저 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4. 책무성제고 ○ 징계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식중독 사고시 문책(경고, 주의 등) 〈신 설〉 〈신 설〉 〈신 설〉	고의, 중대한 과실고 식중독 사고 유발자 등(직영급식) 원산지표시, 축산물등급표시 허위기재 식재료 공급업자 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부과 벌칙 범한 행위자와 그 소속법인, 개인에게 벌금형 위생·안전기준 등 위반 급식공급업자에게 과태료부과	관계자의 책무성 제고,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나. 개정법률 주요내용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종전의 11개 조문의 법률보다 대폭 확장되고 체계화된 법률로서, 직영급식 원칙 등 급식운영 방식을 개선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 설정 등 급식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정부안과 크게 다른 점은 직영급식 원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도입이었다.

2003년부터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말 기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는 24.8%, 고등학교는 43.9%로 감소추세에 있었다. 그러던 2006년, 위탁급식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여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영급식 원칙이 법제화되었다. 법 개정 당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직영급식을 하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003년 12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되었었는데, 학교급식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동 근거도 법(제8조 제4항)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직영급식 원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의 도입에는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 하위법령 정비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1983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도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20일에 맞추어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식품·영양·위생·운영관리기준, 학교급식관련시설 출입·검사·수거 및 과태료관련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법령개정으로 가지번호가 많아 시행령은 10개조 가지번호 11개조인 것을 18개조로, 시행규칙은 9개조 가지번호 3개조인 것을 14개조로 전부 개정하였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급식운영체계 확립, 학교급식관리의 과학화, 보호자의 급식비 부담 경감,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라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었다.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식품위생직공무원 각 1명씩 총 2명을 파견 받아 학교급식담당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2006년 9월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의뢰,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개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령안을 수정·보완하여 2006년 12월 법제처에 법령심사를 요청하였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국조리사회중앙회와 학교 근무 조리사들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조리사의 직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단체로 제출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장·영양사·조리사간 직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조리사회는 조리사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인데 다른 자격증 소지자인 영양사의 조리지도를 받은 것은 불합리하며 교직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영양사가 조리사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장은 학교급식소에는 책임을 질 한명의 통솔자가 필요하므로 조리종사자들은 영양사의 지휘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식품위생법령에 영양사의 직무만 명시되어 있고 조리사 직무는 따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조리사 직무를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조리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학교급식전담직원인인 영양사의 업무에서 조리지도는 삭제하였다. 그러나 영양교사의 업무로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업무는 존치하고, 안전·작업관리업무를 추가하여 지휘·통제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이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등이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시행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7년 1월, “학교급식법령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해설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법령해설, 제2장은 기준해설, 제3장은 서식해설, 제4장은 참고자료, 제5장은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이 수록되었다. 법령해설과 기준해설은 각 조항 내용, 개정배경과 달라진 점, 보충설명과 학교현장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전문가의견 등을 함께 담았다. 2007년 2월에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라. 2003년 이후의 학교급식법 주요 개정 내용

2003년 이후 2015년까지의 학교급식법과 그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배경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양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법 제7조 개정, 2003.7.25. 법률 제6935호)

- 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초·중등교육법상의 영양교사로 배치하기 위함.
- 나)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둬.
- 다) 부칙에 동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2)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식재료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신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88호)

-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원활히 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2006년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가)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이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식재료·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처벌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주요 골자

- (1)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2)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과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지역, 모·부자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확대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 (3)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품질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밖에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을 도입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4)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
-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에 필요한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6)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한 자,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 (7)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에 관한 표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 (8)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함(안 부칙 제4조).

이전의 학교급식법과 달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의 식품비 지원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다.

학교급식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식재료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학교와 급식업자 공통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해 징계,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도 마련하였다.

4) 타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법령 개정

- 가) 2007.4.11., 축산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관련 인용법률 조항 개정(법률 제8354호)
- 나) 2007.10.17.,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관련 인용법률의 명칭 개정(법률 8655호)
- 다) 2008.2.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학교급식법령의 “교육인적자원부령”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개정됨(법률 제8852호, 대통령령 제 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라) 2008.3.21.,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23조관련 조항 개정(법률 제8914호)
- 마) 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관련 근거조항 개정(법률 제9432호, 대통령령 제21676호)



- 바) 2009.2.25.,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별표 2를 개정하여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도 변경, 전통식품 근거규정 변경을 반영(교육과학기술부령 제29호)
- 사) 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제4호의 농산물품질인증관련 근거조항 삭제(법률 제9759호)
- 아) 2010.10.25.,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명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명 변경(법률 제10310호)
- 자) 2101.7.23.,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법률 제10386호, 대통령령 제22625호)
- 차) 2011.7.21.,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관련 근거조항 개정(법률 제10885호)
- 카) 2012.3.21.,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4조제1호관련 근거조항 변경 (법률 제11384호)
- 파) 2013.3.23.,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제10조제2항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변경(법률 제11690호, 대통령령 24423호, 교육부령 제1호)
- 하) 2014.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교육부령 제51호)

5) 급식운영 효율화를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개정, 2009.2.25., 대통령령 제21328호)

- 가) 학부모의 식재료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우유급식 저변 확대를 위해, 영 제2조제2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사항 제3호의 식재료 품질기준을 원산지, 품질등급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8호의 학교우유급식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영 제18조 중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관련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와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제18조 전문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개정, 2010.6.29., 대통령령 제22233호)

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지금까지는 고등학교는 본청,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이 담당)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6) 알레르기식품 사용 고지를 위한 학교급식법령 개정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2013.5.22., 법률 제11771호, 대통령령 제24876호, 교육부령 제14호)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법 제19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개정)

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고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시행령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다”항 신설

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고지 의무화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고지방법 및 표시방법을 시행규칙에 정함(제7조제2항 신설)



03 무상급식 확대

가. 확대 배경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전쟁재해아동 구호를 위한 외국의 분유 지원에 의한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었다. 1972년에 외국의 원조가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도서·벽지지역의 초등학생과 극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시 보호자부담이 원칙인 식품비에 대하여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전액, 농어촌의 경우는 1/3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은 계속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5년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 병설유치원, 2007년에는 농·산·어촌 중학교, 2008년에는 농·산·어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다.

도시지역의 무상급식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작되었다. 과천시는 1999년 1월, 급식비와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 3월 동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4개 초등학교 3~6학년생 4,734명에게 1,500원씩 총 12억 7,81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5,026명에게 2,000원씩 19억 4,676만 원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총 15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5월,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2010년도 소요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달랐던 경기도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결과, 당초 경기도 교육청은 도서벽지, 농·산·어촌 전체 초등학교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에는 도시지역 학생분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무상급식이 정치권과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범위에 급식이 포함되고, 선별적 급식비 면제는 수혜 학생들에게 수치감을 준다는 이유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



다고 공약하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한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논리로 보호자의 소득이 하위 30%인 학생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약 101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 전원인 96만 명, 총 197만 명(전체 학생의 26.4%)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확대 실적

무상급식의 지원 학생수와 예산규모는 2011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의 무상급식 확대 현황은 <표 VI-4>와 같다.

<표 VI-4> 무상급식 확대 현황(2011~2016)

(단위: 천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초중고 학생 수	6,987	6,721	6,482	6,436	6,286	6,023
지원인원 (%)	3,273(46.8)	3,972(56.8)	4,369(67.4)	4,450(69.1)	4,150(66.0)	4,244(70.5)

* 교육부 내부자료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생수 대비 70.5%인 424만 명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으며, 연간 2조 7,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은 <표 VI-5>와 같이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다. 10개 시·도(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3개 시(부산, 인천, 대전)는 초등학교만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또 다른 3개 시·도(대구, 울산, 경북)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경남의 경우는 특이하게 읍·면지역은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동 지역은 초등학교만 모든



학생에게, 중·고등학생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시·도별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52%~230%의 범위로 상이하다.

〈표 VI-5〉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대상(2016)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초	전체	전체	중위소득 136%이하	전체	전체	전체	중위소득 230%이하	전체	
중									
고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 소득104% 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 소득135% 이하	중위소득 52%이하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¹⁾	제주
초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중위소득 56%이하	전체	전체
중								중위소득 56%이하	
고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56%이하	중위소득 60%이하

1)경남의 경우 읍·면 지역은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동 지역은 초등학교만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교고등학교 민자 등 : 민자 592억 원, 학교부담 등 201억 원

* 교육부 내부자료

2016년의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 및 재원부담 현황은 〈표 VI-6〉과 같다. 지원 학생의 비율은 43%~에서 87%로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재원은 지방비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이 평균 약 6 : 4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나 분담 비율도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VI-6〉 시·도별 무상급식 학생수 및 재원부담 현황(2016)

시도	초중고 전체 학생수 (천명)	무상급식		교육청	재원부담(억원)			계
		학생수 (천명)	비율 (%)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계	
서울	1,022	725	70.9	3,222	1,377	887	2,264	5,486
부산	349	268	76.8	900	308	27	335	1,235
대구	292	135	46.1	481	137	0	137	618
인천	348	190	54.6	633	238	188	426	1,059
광주	206	152	73.8	741	351	48	399	1,140
대전	198	110	55.5	325	198	80	278	603
울산	146	63	43.2	256	25	23	48	281
세종	34	28	82.3	110	105	0	105	215
경기	1,587	1,229	77.4	3,880	237	2,816	3,053	6,933
강원	183	150	82.0	819	183	183	366	1,185
충북	186	141	75.7	679	152	228	380	1,059
충남	250	189	75.6	755	286	430	716	1,471
전북	224	187	83.4	614	164	204	368	982
전남	215	187	87.3	999	272	287	559	1,558
경북	298	158	54.0	456	47	244	291	747
경남	403	267	66.3	1,953	88	352	440	2,393
제주	82	65	80.2	241	161	0	161	402
합계	6,023	4,244	70.5	17,064	4,329	5,997	10,326	27,390
비율(%)				62.3			37.7	100

* 무상급식 재원분담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임. 시설설비비는 미포함

* 교육부 내부자료



시·도별 학교급별 무상급식비 지원단가와 지원예산은 <표 VI-7>과 같다.

<표 VI-7> 시·도별 학교급별 무상급식 단가 및 지원 예산(2015)

시도	무상급식단가(원)			무상급식 지원예산(억원)			계 ²⁾
	초	중	고	식품비	운영비		
					연료비, 유지비 등 ¹⁾	인건비	
서울	3,150	4,170	-	4,001	320	1,267	5,588
부산	2,390	2,959	3,082	815	205	102	1,122
대구	2,100	3,180	3,200	631	-	-	631
인천	2,600	3,600	3,600	833	62	146	1,041
광주	2,486	2,905	3,196	650	77	373	1,100
대전	2,470	3,005	3,210	377	23	110	510
울산	2,470	2,960	3,130	270	-	-	270
세종	3,740	4,230	4,330	155	13	60	228
경기	2,892	3,499	3,723	4,883	710	1,408	7,001
강원	3,920	4,120	4,160	569	88	461	1,118
충북	3,421	4,016	3,000	590	71	329	990
충남	4,006	4,528	4,360	813	106	495	1,414
전북	2,200	2,900	2,900	816	117	112	1,045
전남	3,884	4,054	4,595	759	99	634	1,492
경북	2,300	2,700	2,900	589	93	93	775
경남	3,760	3,980	4,260	419	25	61	505
제주	2,910	3,089	3,053	252	18	95	365
합 계	-	-	-	17,422	2,027	5,746	25,195

1) 인건비 제외

2) 저소득층자녀 급식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급식비(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한 인원과 예산은 제외

* 대구와 울산은 식품비, 인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여 식품비에 총 금액 작성

* 교육부 내부자료, 본예산 기준



04

학교급식 관리

가. 2003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학교 비율로는 98.4%인 10,343교에서, 학생수 비율로는 90.0%인 7,035천 명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되었으며 당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 2조 8,531억 원이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종료되자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개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졌다. 이는 학부모, 교사, 농민·사회단체 연대운동으로 확산되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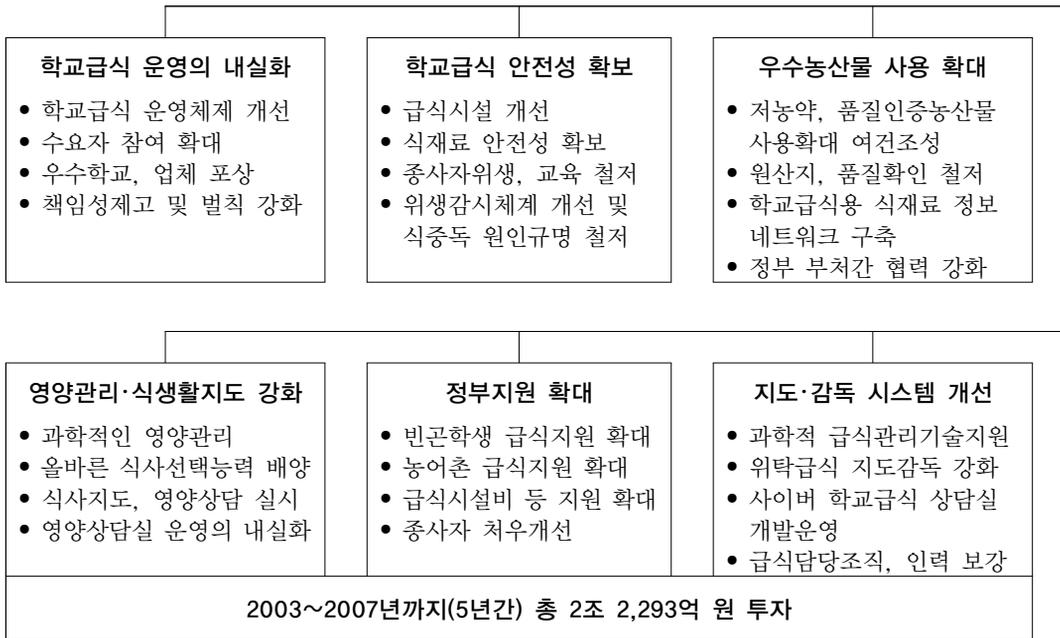
교육부는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정책으로 정착되고, 우리 식생활 문화와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교급식 정책을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2003년 8월 29일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에 대한 국민 공청회를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에서 [그림 VI-1]과 같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등 6개 분야에 대한 현황, 문제점,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소요예산, 향후 추진계획이 소개되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 교육청, 시민단체 등의 토론이 있었다. 농림부,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민주노동당,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법개정 및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급식관리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등 16개 단체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추진전략

- 건강한 삶·국민건강 증진
- 학교급식을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 축으로 정착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 올바른 자기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



* 출처: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2004)

[그림 VI-1] 2003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이와 같은 학교급식의 개선대책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관계부처의 협력을 요구하는 바, 국무조정실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국무조정실 개선과제로 채택하여 2003년 11월 18일 국무총리가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교육부, 복지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개선대책 수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12월 9일, 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추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3년 도의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의 개선사항은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의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적극 반영되어 2006년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HACCP 시설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 등의 성과도 컸다. 미흡한 부분은 “식재료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급식상담실, 급식관리기술 지원”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운영하려 하였으나 입법예고와 법안심사과정에서 반대에 부딪쳐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과 학교급식 조직, 인력보강 등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개선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개선과제를 추진하던 중 2006년 6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학교 46개교에서 연쇄 식중독 사고(3,613명)가 발생함에 따라, 당시 국회에 계류중이던 여섯 건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교육위원회 대체안으로 학교급식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과제이었던 직영급식 원칙, 학교급식 공급업자 별칭 도입,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기준, 영양관리기준, 급식운영평가,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안전관리제도와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실적은 <표 VI-8>과 같다.



〈표 VI-8〉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세부 추진실적

분야	과제	추진 실적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① 위탁급식 직영전환	'03년 107교, '04년 178교, '05년 190교, '06년 206교 ⇒ 총681교 (당초목표 715교), 1,495억 원 지원(특교 252억 원, 교특 1,243억 원)
	② 학교급식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활성화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운영, 전국 9,269개교에서 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③ 학교급식 운영평가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04.10.27, 정부안 국회제출)에 반영
	④ 책임성 제고 등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에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 부정당 업체 처벌, 식중독 사고 발생시 관련자 징계등 반영
2.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⑤ 급식시설 현대화	'03년 218교, '04년 102교, '05년 153교, '06년 154교 ⇒ 총627교 (당초목표 II,100교), 1,443억 원 지원(특교 450억 원, 교특 993억 원)
	⑥ 식재료안전기준 설정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에 반영
	⑦ 위생·안전교육 강화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강화(연 1회→연 2회, 세균성이질검사 포함)
	⑧ HACCP 시설개선	'04년 2,626교, '05년 2,290교 ⇒ 총 4,916교 개선(당초 목표 3,421교), 1,828억 원 지원(교특)
3.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	⑨ 식중독 역학조사	'05.2월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반 전문교육 실시(고려대 의대)
	⑩ 식재료 품질기준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에 반영
	⑪ 우수농산물 사용	교육부, 농림부, 농특위 합동으로 우리농산물공급 '06년 시범 사업 실시(부산, 나주, 거창 약 2만 명), 지자체 식품비지원 유도
	⑫ 원산지 등 확인	'05.1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2차 개정판에 반영
	⑬ 식재료 정보네트웍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후 검토
⑭ 부처간 협력 강화	우유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서 '05년 중학생까지 확대	
4. 영양관리·식생활 지도강화	⑮ 과학적인 영양관리	'04년 학교급식 영양관리 지침서 개발 연구 추진
	⑯ 식사선택 능력 배양	식단선택제·식사에절실 시범운영, 급식지도 특별활동 강화
	⑰ 영양상담실 운영	초등 341교, 중 72교, 고 28교 총 441교 운영
	⑱ 영양상담 전문가	'05년 영양교사 양성과정 운영(63개 교육대학원 2,214명)
5. 정부의 지원확대	⑳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03년 305천명 1,278억 원, '04년 408천명, 1,364억 원, '05년 468천명 1,448억 원, '06년 526천명 1,775억 원 지원,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에 반영(차상위계층까지 확대)
	㉑ 농어촌 급식비지원 확대	'05년 797천명 675억 원 지원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에 반영(중·고등학교까지 지원 확대)
	㉒ 급식시설비 지원확대	급식시설 현대화, 직영전환사업비 등 지원(총 973교 2,054억 원)
	㉓ 학교급식후원회 폐지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에 반영
	㉔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개선
6. 지도감독 시스템 개선	㉕ 급식관리 기술 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후 검토
	㉖ 위탁급식 지도감독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에 반영
	㉗ 사이버 급식상담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후 검토
	㉘ 급식조직, 인력보강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개선



나. 2007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006년 6월, 식중독이 발생하자 국무총리실은 학교급식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2003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되,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2006년 12월 20일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5개년계획(2007~2011년)을 발표하였다. 2003년 개선대책과의 차이점, 그 추진 결과는 <표 VI-9>와 같다.

<표 VI-9> 2007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분야	과제	추진 계획 및 실적
1.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2006, 목표는 1,100교이었으나 627개교 추진 • 2007~2011년에 1,200개교 추진, 소요예산 2,400억 원 지원 (재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교특예산 각 1,200억 원) ⇒ 2012년 6,144교 완료(61.5%)
	② 조리실 냉방기 확충 및 급식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7월, 특별점검결과, 고온다습한 조리실 환경개선 시급 • 2007~2010년에 6,932개교에 조리실 냉방기 확충비 347억 원 지원(교당 500만원씩, 교육부와 교육청이 50%씩 지원) ⇒ 조리실설치 10,004교중 9,883교 냉방기 설치(98.8%)
	③ 식재료공급 전문업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공급업은 자유업으로 위생관리의 사각지대 •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식재료전문공급업' 신설
2.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④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물류기능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단체별 거점지역에 설치·운영
	⑤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품질을 위해 공동구매제도 운영 등 구매방법 다양화 • 수의계약의 단점 보완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적극 추진 ⇒ 비대면전자계약 8,612교, 공동구매 3,816교, 급식지원센터 이요 2,331교, 생산자단체 직거래 1,164교
3. 정부의 지원확대	⑥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까지 10%지원 목표이었으나, 2006년, 전체학생의 6.8%인 526천명에게 1,775억 원 지원 • 2011까지 전체학생의 10%인 770천명으로 지원 확대 ⇒ 2010년도부터 일부지역 무상급식 실시로 초과달성
4. 급식운영의 내실화	⑦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2006, 목표는 715교이었으나 681교 추진 • 2007~2009년까지 1,166개교 직영 전환(교내위탁 1,105교, 외부위탁 61교), 소요예산 1,067억 원중 교육부가 503억 원 지원) ⇒ 2006년 위탁급식 1,655교(15.4%)→2012년 260교(2.3%)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2007~2011)



다. 학교급식 관리지침

이 시기의 학교급식 관리지침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2005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중요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제시하였다.

1) 2005년도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200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
 - 식재료 선정과 조달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유도
 - 식재료 검수 철저 및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
 - 검수시 신선도,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원 등 확인 철저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급식소위’ 운영 의무화
 - 학부모 급식 모니터 활동 적극 유도 및 지원
- 급식운영 공개 및 의견수렴 반영
 - 학기초 학교장 주관 하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의시 급식운영 설명회 등 실시
 -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게시판’ 개설·운영
- 급식의 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대책 강구
 - ‘학교급식 운영 평가제’ 및 ‘식단개발 대회’ 등 운영
 - ‘학교급식의 날 운영’ 등 학교급식 홍보 강화

2.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철저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
 - 학교급식법령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철저
 - 직영급식 학교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점검
 - 교내 운영위탁 급식소 : 식약청, 시·군·구청과 합동점검 실시
 - 운반급식업체, 식재료공급업체 : 시·군·구 등에 위생점검 철저 요청
- 학교에 납품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 강화
-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 실시('03. 4월 도입)
-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구성·운영



200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계속)

3.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과학적이며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
- 비만관리 프로그램 등 식사지도관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지도 및 학부모 상담 활성화

4. 위탁급식 지도·감독 강화

- 위탁급식 지도·감독 체제 확립 및 감독 강화
 - 교육청별 '위탁급식 지도·감독요령'을 구체적이고 실천적 지침으로 보완하여, 학교의 위탁급식 지도·감독에 관한 책무성 강화
 - 위탁급식 계약기간 종료시점의 적정화(학기중 종료시점 설정금지)
- 위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학교장, 행정실장,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탁급식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교육 강화
 - 위탁업주와 영양사에 대한 급식관련 직무교육 강화
- 학교와 학부모의 위탁급식 개선활동 적극 지원
 - 위탁급식 개선 우수학교의 사례 적극 발굴·홍보

5. 생활교육으로의 정착

- 학교장과 교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
 - 학교장, 교감 등 관리자 연수시 '학교급식경영'에 대한 강좌 개설
- 학교급식이 생활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제시
 - 관련 교과과정 운영과 연계한 식단 작성 및 급식 제공
 - 교과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식생활관련 교육자료 개발·제공
 - '식생활 문화반' 운영, '전통음식 체험의 날'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으로 학교급식과 실생활 접목 추진
- 학부모·가정·지역사회와 연계교육 강화
 -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 등을 이용한 식생활관련 정보 제공
 - 자기고장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애향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는 급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



2) 2006년~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주요 변경사항

2006년~200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① 2006년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시 학교영양사 등이 간사로 참여
- 학교 납품 다소비식품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조하여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 강화

② 2007년

- 학교급식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탁급식 직영전환(2007년 목표 : 333개교)을 추진
- 급식업무 부분위탁, 학교급식 운영평가 등 실시

③ 2008년

- 위탁급식 직영전환(2008년 목표 : 252개교) 추진
-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07.12월)되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가 업종 신설됨에 이들 업소도 구매대상 업체에 포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존식 냉장보관을 -18°C 3일간 보관으로 개선
-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관리 및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조리실 냉방기확충사업('07.7.4,국무총리 지시)은 2008년에 완료

④ 2009년

- '09. 7월부터는 144시간(6일) 보관체제로 강화됨에 따라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
 - 기존 냉장고의 냉동실 활용이 곤란한 학교는 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 지원 요청 또는 교육청 지원 등으로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 및 철저히 관리.
- 식재료 원산지 심의·확인 및 표시제 시행
 -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
 -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방지대책 강화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및 방학 등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 2009년도는 저소득층 대상학생의 83% 수준인 660천명, 농산어촌 대상학생의 77% 수준인 900천명에게 학교급식비 지원(2008년 목표 : 전체학생의 8.2% 수준인 634천명)
 - 학교(담임교사)가 기본 조사한 방학 등에 급식지원 필요학생 명단을 수합하여, 4/30(상반기) 및 9/30 (하반기)까지 자치단체 '새울행정(복지)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자치단체(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가 확인 및 선정토록 함



2010년~2012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⑤ 2010년

-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유예기간('10.1.19) 이후에도 직영전환을 희망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급식시설 개선비 등을 적극 지원
- 보존식은 -18°C 에서 144시간(6일) 보관하고 사고발생시 소독 처리 등 훼손 금지
- 우유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우유급식 저변확대 노력
- 급식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학생 : 대상학생(소득 130%)의 81% 수준인 82만 명에게 지원
 - 농산어촌지역 : 대상학생의 90% 수준인 86만 명에게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⑥ 2011년

- 식재료 원산지 표시 품목에 오리고기 추가(중전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 및 그 가공품,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
-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품 등 사용 권장
-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 및 수의계약 억제(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등 활용 권장)
 -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구매단위 축소 및 분할발주 근절
 - 인근학교간 공동구매(2~5개교 통합구매 및 통합식단) 확산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개선('11.3월 시행 예정)
 - ※ 개선절차(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보호자가 주민센터(읍면동)에 교육지원 신청 →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재산·소득·건강보험료 조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학교에 통보 →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무료급식 제공

⑦ 2012년

- 원산지 표시품목에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추가, 김치를 배추김치로 구체화
- 식기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실시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세척제 사용 및 용법준수
 -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행굼 철저, 월 1회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 및 기록(CP8A) 유지, 잔류시 근본적인 대책 강구 등
- 나트륨·트랜스지방 제한 및 유해식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 및 대체식품 제공방안 강구



2013년~201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⑧ 2013년

- 2015년까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100% 목표 추진. 특히, 급식실 종사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시설기준” 반영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운영 철저
 - 식중독 확산 조기차단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변동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스템에 입력
- 학교급식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내실화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운영 방안 및 매뉴얼 통보('12. 9월)
 - 교육청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여부 확인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 매년 초 “학교교육(운영)계획” 수립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반영
- 전자조달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준수 의무화('12.9월~)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 접수업무 개선
 - 신청 접수업무를 학교 → 읍면동 주민센터로 위임
 -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NEIS-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 구축('13.2월~)

⑨ 2014년

-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 제도 도입 및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응급대책 마련
 - ※ 학교급식법('13.5월), 시행규칙 개정(11월)
-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
 - 수산화나트륨(NaOH) 5%미만 제품 사용, 잔류여부 검사
- 학교급식 시설 위생·안전 점검체계 개선
 - (현행) 교육청 공무원 1명 → (개선) 급식점검단 민간인 1명 포함, 2명이 점검
-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 추진
 - 2식 이상 급식 학교에 영양사 추가배치, 교대근무 체제 마련,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실시
-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
 -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이용 권장
- 학교급식 나트륨 섭취 저감화
 - 1끼당 나트륨 저감화 정책목표 설정 : 2017년까지 초 900mg, 중 1,000mg, 고 1,300mg
 - 「나트륨 줄이기 가이드 북」 발간·보급, 염도계 비치, ‘국 자율의 날’ 운영



2015년~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⑩ 2015년

-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에 ⑬아황산류 권장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 및 점검체계 개선
 - 정기점검 시 연1회는 지방식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 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시 식품관련 전문가 참여 협조
-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조사 방식 개선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급식에 공급하기 전 산지 출하단계 또는 유통단계에서 사전적 검사방식으로 개선

⑪ 2016년

- 학교급식 업무위탁 등 운영방법의 내실화
 - ※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 적용
-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 5종 추가
 - ※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 및 점검체계 개선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정(제4차, '16.1월 예정) : 점검항목 일부 통합 및 변경, 시정명령 미이행 학교 감점제 도입 등 점검항목 개선
-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 교육부 내부자료



05 학교급식 선진화를 위한 노력

가. 우수식재료 지원제도 도입

학교급식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자 농업계에서는 농산물 소비부진과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농가경제 침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2001년 권오을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급식 식재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1) 농협의 학교급식 개선방향 제시

농협중앙회는 2001년, 미국과 일본의 학교급식제도를 소개하면서 학교급식을 통해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 전체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구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급식재료의 질 개선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림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교육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등 우리나라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은 2002년에 학교급식의 식재료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위탁급식의 경우 식재료비 비율이 급식단가의 39%로 직영급식의 6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직영급식보다 수입농산물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학교급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중 하나가 저급·수입농산물 사용에 있다며, 자녀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자는 학부모들의 상생인식이 확산되었다. 2002년에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어 “직영급식, 무상급식,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2) 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2003년 4월, 전라남도민 49,549명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현물 또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였다. 2003년 9월, 전라남도의회는 동 조례안 중에서 WTO 협정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즉, 우수 농산물의 정의, 도지사와 교육감의 학교급식 업무권한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운영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단체를 의미하므로, 도지사가 소관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이라며 전라남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2003년 10월,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지사의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교육 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농림부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며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가결 처리됨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2003년 10월 20일자로 제정·공포되었다.

동 조례는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촉진하였다. 동 조례의 제정 과정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벽을 넘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안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효과가 있기에 가능했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지자체의 우수 식재료 지원근거 마련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공포되자 2003년 11월,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위입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으로 동 조례가 무효라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라남도 농민단체 등은 상경하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별척사항이 아닌 조례는 법률의 위입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이견,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해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을 주관하고 있던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88호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식재료 지원조례와 관련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04년 7월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시·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시·군·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다.

■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국내산 농산물 명시 요구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국내산 농산물 또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명시화하려는 농민·시민사회단체와 WTO 협정 등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우수 농산물로 바꾸어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2003년 10월 30일, 전라북도의회는 학교급식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우선 사용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 교육감은 동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GATT) 제3조 제1항, 제4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전라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원안대로 재의결되어 조례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라북도 의회를 피고로 하여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의 소(2004추10)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5년 9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GATT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도의회 조례는 학교급식시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토록하고 있어 GATT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학교급식의 의미를 외면하고 법리해석만으로 무효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학교급식 식재료관련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해 2006년 1월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을 위한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1년 개정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우선 구매 등 내외국산 차별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2003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1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94%인 215개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2004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79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위한 예산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30%와 70%의 비율로 분담하였다.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현황은 <표 VI-10>과 같다.



〈표 VI-10〉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2006~2010)

(단위 : 교, 백만 원)

구분 시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합계	3,549	60,638	4,750	89,000	6,768	123,253	7,533	180,722	8,389	254,481
서울	-	-	-	-	-	-	25	1,000	382	11,394
부산	37	604	43	1,214	684	1,619	82	2,275	157	2,426
대구	-	-	9	316	9	847	72	1,255	75	1,262
인천	92	2,716	253	3,326	3,061	5,660	282	5,102	284	5,465
광주	-	-	34	964	34	964	116	2,939	144	3,372
대전	-	-	31	500	31	2,229	146	2,737	145	4,036
울산	25	402	36	627	463	581	50	819	66	800
경기	423	4,676	785	15,659	5,884	34,603	1,690	51,830	1,844	92,202
강원	47	240	93	677	380	1,632	390	2,969	501	4,236
충북	3	65	62	410	130	1,117	387	4,113	441	6,068
충남	737	11,851	731	10,523	13,319	11,634	742	14,238	738	17,902
전북	332	7,414	541	10,005	8,287	14,039	8,287	30,613	751	20,262
전남	844	22,724	855	28,434	24,423	27,728	837	29,396	834	29,827
경북	614	5,421	603	4,063	6,638	5,230	967	10,447	972	16,019
경남	332	2,549	545	8,782	3,426	11,612	886	28,654	877	33,934
제주	63	1,976	129	3,500	2,168	3,758	166	4,645	178	5,276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2006년의 3,549교 606억 원에서 2010년의 8,389개교 2,54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우수 식재료비는 주로 현금 또는 현물로 공급되었으며, 구입 품목은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 우수 축산물 등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현금지원은 자치단체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의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이며, 현물지원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등을 일반농산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등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을 보조하는 형태이다.



5) 친환경농산물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이 있기 전에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지원 후에는 <표 VI-11><표 VI-12>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되었다. 전국 최초로 우수 식재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한 전라남도과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이 단연 높다.

<표 VI-11> 2012년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 및 학교 사용 현황

구 분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톤)				학교사용 현황(톤)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친환경	비율(%)
곡류	54,025	269,280	20,075	343,380	48,295	14.1
과실류	9,116	26,850	305,088	341,054	8,908	2.6
채소류	74,750	351,340	158,914	585,004	36,418	6.2

- * 2012년 우리나라 인구수 : 5,000만 명, 급식학생수 : 671만 명
- * 전국민 1일 3식 가정 : 학교급식(연 180회)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2.2%
1일 2일 가정 : 학교급식(연 180회)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3.3%
- * 출처 : 2012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중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율을 2012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와 급식학생수, 급식회수를 고려하여 볼 때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은 일반 국민들의 사용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VI-12〉 2012년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사용 실적

(단위 : 톤, %)

구분 시도	곡류			채소류			과일류		
	친환경농 산물	일반 농산물	친환경 비율	친환경농 산물	일반 농산물	친환경 비율	친환경농 산물	일반 농산물	친환경 비율
서울	11,269	6,273	64.2	9,658	12,306	44.0	1,650	3,353	33.0
부산	551	5,977	8.4	1,672	10,880	13.3	242	996	19.5
대구	236	4,896	4.6	562	6,669	7.8	154	813	15.9
인천	4,000	2,917	57.8	219	7,280	2.9	199	1,058	15.8
광주	2,025	1,584	56.1	911	4,692	16.3	218	1,111	16.4
대전	311	3,662	7.8	407	4,806	7.8	211	379	35.8
울산	750	1,551	32.6	458	2,650	14.7	83	261	24.1
세종	33	82	28.7	28	182	13.3	8	28	22.2
경기	5,968	16,927	26.1	10,017	22,289	31.0	2,827	4,388	39.2
강원	2,869	1,261	69.5	451	5,215	8.0	15	831	1.8
충북	2,026	2,098	49.1	932	4,901	16.0	313	1,476	17.5
충남	2,233	2,477	47.4	1,186	4,459	21.0	226	552	29.0
전북	4,162	779	84.2	1,022	5,187	16.5	131	865	13.2
전남	3,847	464	89.2	4,410	3,292	57.3	1,259	481	72.4
경북	2,501	3,170	44.1	609	14,836	3.9	326	1,311	19.9
경남	4,252	4,187	50.4	2,277	9,792	18.9	705	1,770	28.5
제주	1,262	14	98.9	1,599	429	78.8	341	246	58.1
합계	48,295	58,319	45.3	36,418	119,865	23.3	8,908	19,919	30.9

* 교육부 내부자료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감 및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표 VI-13〉과 같이 2005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2005년 학교급별 전체학교의 10%에서 시작하여 30%, 70%, 75%, 90%로 매년 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전 학교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였다.



〈표 VI-13〉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현황(2005~2016)

연도별	지원 학교수 (교)	지원 학생수 (명)	연간지원액 (백만원)	1인 1식당 지원 단가(원)	재원 부담
2005	29교 (10%) (유 10, 초 11, 중 4, 고 4)	11,295 (11.5%)	1,000	유·초·중·고 500원	도 50%, 시·군 50%
2006	97교 (30%)	32,142 (31.9%)	2,000	유·초 340원 중 390원, 고 430원	"
2007	197교 (70%)	71,002 (69.4%)	3,500	유·초 250원 중·특수 310원, 고 350원	도청 85%, 교육청 15%
2008	225교 (75%)	75,876 (74.6%)	3,758	2007년과 동일	"
2009	252교 (90%)	90,336 (90.1%)	4,650	2007년과 동일	"
2010	267교 (100%)	94,476 (100%)	5,280	유·초 270원 중, 특수 330원, 고 370원	"
2011	292교 (100%)	96,259 (100%)	5,640	유·초 300원 중, 특수 350원, 고 400원	"
2012	296교 (100%)	93,762 (100%)	5,750	유·초 300원 중 350원, 고·특수 400원	"
2013	296교 (100%)	91,762 (100%)	5,680	유·초 330원 중 380원, 고·특수 430원	도청 50%, 교육청 50%
2014	299교 (100%)	90,644 (100%)	6,040	2013년과 동일	"
2015	305교 (100%)	88,550 (100%)	7,150	유·초 400원 중 450원, 고·특수 510원	"
2016	305교 (100%)	87,793 (100%)	7,140	2015년과 동일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자료



6)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라남도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부터 순천지역은 순천농협, 나주지역은 나주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관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면서 식재료 공급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의 수행 및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학·농이 상생하는 모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되 그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 되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조달하고, 유통은 농·수·축협, 학교급식 유통업체 등 기존의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하던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2004년 정부발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 중 학교급식 영양·위생·조리·경영관리, 관계자 교육·훈련 등 급식관리기술 지원 위주의 기구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획적인 생산 및 조달과 공급, 위생 등 품질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동 기능을 식재료의 생산·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였다.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여섯 건이 국회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기능은 제외되고 식재료 공급 기능만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정된 법에 포함되었다. 또한 센터의 설치·운영권자도 교육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관련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여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정의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모형(안)을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보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또한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학교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제주도나 경주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도 있지만, 일부 센터는 광역단위의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종전에 개인사업자가 하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센터도 있었다.

이에 2003년 9월, 감사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해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2014년 9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편람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발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다.

2013년 9월, 교육부가 파악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은 <표 VI-14>와 같다. 급식학교의 30%인 3,412개교가 이들 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표 VI-1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운영형태	학교급식지원센터		비고
	수량	센터명	
직영공급	2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황성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포함)가 식재료 공급·배송 직접관리
민간위탁	21	경기농림진흥재단, 기장군·고양시·시흥시·화성시·정선군·홍천군·청원군·당진시·아산시·익산시·목포시·순천시·나주시·영주시·포항시·안동시·김천시·통영시·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삼계농협유통센터	급식센터의 업무위탁을 받은 영리법인이 식재료 공급·배송 관리
재단위탁	1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급식센터의 업무위탁을 받은 재단법인이 식재료 공급·배송 관리
공급지원	11	노원구·동대문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광주남구·울산북구·하남시·광명시·수원시·부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	급식센터가 식재료 공급업체 지정 또는 추천
행정지원	1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이외의 행정만 지원하는 경우
총계	36		

*출처 : 교육부,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2014



나. 영양교사제도 도입

학교 영양사는 1977년 학교급식용 빵 식중독 사고로 일괄제빵급식제도가 폐지되고, 1978년 3월 학교별 자체조리급식으로 개선되면서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으로 학교에 배치되었다. 이들의 배치근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978년 11월 23일 문교부령 제432호로 개정된 학교급식규칙 제6조에 영양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별표에 영양기준을 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56호로 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제7조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1981.9.8. 제정 대통령령 제10460호)에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급식학교에의 영양사 배치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였다.

학교급식에서 영양사 배치하도록 한 것은 자체조리급식으로 학교급식정책이 전환된 1978년이지만 그 이전에 도시형 시범급식과 자활급식학교에서 급식관리 전담인력 지원 요청에 따라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바 있다.

1978년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상용잡급직원의 신분으로 배치되었으나, 1981년 말 또는 1982년 초에 지방보건의직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전환 임용되었다. 대체로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의 승진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기회가 주어지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영양사들이 8급 이상으로의 승진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영양사들은 학교방송을 통해 오늘의 식단에 대한 영양교육을 하거나 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 영양에 관한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간접적인 영양교육을 하고, 일부 영양사는 실과시간에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식품과 영양 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장 경험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과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서는 식품위생직 공무원보다는 영양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초등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영양사들을 중심으로 영양교사제도 도입이 주장되었다.

1993년에는 대한영양사협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영양사 영양교사화를 위한 건의”를 교육부 등에 하였고, 1996년부터 1999년 8월까지 서울교육대학교 등 9개 교육대학에 학교영양사 교직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국 학교영양사의 35%인 1,465명이 동 과정을



수료하는 등 영양교사화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2002년 3월에는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식품위생직(영양사)의 영양교사화 요구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대한영양사협회는 2002년 7월 13일, 15개 단체 공동명의로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당시 여당이었던 이재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2년 10월 19일, 영양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인 이재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급식학교에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영양사를 배치하는 대신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중 개정법률안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인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34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제21조 제2항에 의거 영양교사(1급·2급)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법률 제6935호로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7조에 급식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두도록 되었다(2006년 3월 1일 시행).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으로는 현재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는 양양교사로 전환될 수가 없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현직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이 2003년 11월 11일 김경천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68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2005년과 2006년 2개년 동안 전국 63개 교육대학원에 1년 비학위과정(2005년 2,190명, 2006년 2,280명), 8개 대학에 2년 비학위과정(2005년과 2006년 각 240명)의 영양교사 양성 특례과정을 신설하여 3년 이상 경력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영양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2006년 11월 시·도교육청 별로 공립학교(초등, 중등, 특수)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제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영양교사를 선발하여 2007년 3월 1일자로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1,700명을 배치하였다.

연도별 영양교사 배치현황은 <표 VI-15>와 같다. 영양교사는 식품위생직공무원에서 전환된 것이므로 영양교사 정원은 표준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교사로 전환되는 수만큼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하였다.



〈표 VI-15〉 영양교사 정원확보 현황(국·공립학교)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립	12	14	1	-	-	-	-	-	-	-	-
공립	1,700	2,408	252	-	52	31	26	50	64	52	58
계	1,712	2,422	253	-	52	31	26	50	64	52	58

- * 사립학교 영양교사는 제외된 현황임
- * 영양교사 배치는 정원을 확보한 다음 해에 이루어짐
- * 교육부 내부자료

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초등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996년 위탁급식제도 도입이후 본격적으로 급식이 확대된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2003년 기준으로 52.1%, 31.2%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식중독 발생률도 높다보니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많아, 2003년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03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후 학교가 자율적으로 직영전환을 추진하되,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개선 및 급식기구 교체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81개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였다(표 VI-16).

〈표 VI-16〉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실적(2003~2006)

구분	학교수(교) (교육부지원)	예산지원액(백만원)			교당 평균 지원액(백만원) (외부위탁포함)
		교육부	교육청	계	
2003년	107(92)	5,580	18,085	23,665	221
2004년	178(174)	5,105	35,909	41,014	230
2005년	190(183)	8,481	39,910	48,391	255
2006년	206(126)	6,040	30,385	36,425	190
계	681(575)	25,206	124,289	149,495	220

- * 교육부 내부자료



그러던 중 2006년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학교 식중독사건이 발생되어 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만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개정법률 시행일(2007.1.19)로부터 3년 안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166개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698개교 중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1%인 242개교(초 1교, 중 26교, 고 213교, 특수 2교)이다. 이중 교내조리가 208개교, 외부운반급식이 34개교이다. 교내조리 학교의 경우 일부위탁이 188개교(90.4%), 전부위탁이 20개교(9.6%)이다. 2003년과 현재의 급식운영형태를 비교하면 <표 VI-17>과 같다.

<표 VI-17> 학교급식 운영형태 비교(2003, 2015)

(단위 : 교, %)

학교	구분	2003년 급식운영형태				2015년 급식운영형태			
		급식학교	직영급식	위탁급식	직영급식비율	급식학교	직영급식	위탁급식	직영급식비율
초등학교		5,479	5,446	33	99.4	5,978	5,977	1	99.9
중 학교		2,736	1,883	853	68.8	3,208	3,182	26	99.2
고등학교		1,998	957	1,041	47.9	2,344	2,131	213	90.9
특수학교		130	127	3	97.7	168	166	2	98.8
계		10,343	8,413	1,930	63.1	11,698	11,456	242	97.9

한편 2005년, 학교시설 신축은 BTL 사업(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급식시설을 BTL 사업으로 설치하면 위탁급식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BTL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어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였다.



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1) 급식시설 개선

초등학교 급식은 예산부족 등으로 최소한의 기본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였다. 일찍 급식을 시작한 학교의 급식시설은 노후화되고, 현대적인 조리기구 부족 등으로 위생·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상존하여 급식시설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급식확대사업이 완료된 2003년부터 우선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 내용은 조리실의 작업공간을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으로 구분하고 조리실에 냉·난방시설을 갖추어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다기능오븐조리기, 보온배식대 등 능률적인 조리·배식설비를 확충하도록 하며, 교실 급식의 경우는 덤웨이터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동 사업은 2003~2007년의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627개교에 1,443억 원을 투입하여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에 학교급식시설 개선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이후 2006년 6월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 후 수립된 2007~2011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서는 노후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1,200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에 2,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7월 국무총리 지시로 ‘학교급식시설 특별점검’ 결과, 조리실의 급식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7~2010년에 6,932개교의 조리실 냉방기 확충에 347억 원을 지원하여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관리 및 조리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학교 9,994개교의 61.5%인 6,144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883개교에 조리실 냉방기가 설치되었다. 2014년도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추진현황은 <표 VI-18>과 같다.



〈표 VI-18〉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2014)

(단위 : 교, %)

오염·비오염 작업공간 구분			다기능 오븐기			보온·보냉 배식대		
조리실 설치학교	설치 교수	비율	300명 이상교	설치 교수	비율	식당배식 학교	설치 교수	비율
10,129	8,159	80.6	7,406	6,692	90.4	9,779	5,592	57.2

* 오염·비오염 작업공간 구분 : 검수·전처리시설 / 조리실 / 세척실 등 작업공간이 구획된 경우를 말함. 단,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벽으로 작업공간 구획 대신 조리실 여건에 맞게 교차오염 방지대책(낮은 벽 또는 표지판, 바닥표시 등)을 갖추도록 함
* 출처: 교육부,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결과, 2014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의견과 시설·설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절차와 체크리스트, 각 실별 건축, 설비, 기구 등에 대한 사진자료와 설명, 사례를 제시한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을 2011년에 발간하였다[사진 VI-1].



좌 :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 표지
우 : 동 매뉴얼 목차

[사진 VI-1]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시설개선 자료집 표지와 목차

* 경기도교육청 제공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2006년 7월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18조에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종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침으로 학교급식 우수교를 평가하고 급식 우수학교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해왔으나 모든 급식학교에 대해 급식의 운영평가를 하도록 된 것이다.

급식의 운영평가 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에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급식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수학교와 유공자 표창시행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하고 미흡한 분야는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2014년 2월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세부요령”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였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총 20개 항목의 법적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표 VI-19>”에 의해 2학기에 1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생·안전점검은 학기별 1회씩 2회 실시하되, 1학기에는 22개 항목의 학교급식 위생·안전기준 사항과 21개의 지도 및 권장사항 총 43개 항목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표 VI-20>”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40개 항목의 “식품위생법령 준수사항 점검표”에 의한 점검과 1학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의 확인을 하도록 했다. 2학기에는 위생·안전점검과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표 VI-19〉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구분	평가 항목	점검 내용
학교급식법령 준수사항	식재료품질관리	1.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영양관리	2.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급식운영원칙	3. 학교급식관련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서 결정하였는가?
	급식관리·운영	4.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가?
	품질 및 안전을 위한준수사항	5.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급식운영지도 및 권장사항	NEIS를 이용한 급식관리	6. NEIS를 활용하여 급식관련 보고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식중독 비상 대책반 운영	7. 식중독비상대책반은 구성되어 있는가?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풀 운영	8. 학교단위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풀’ 예산확보 및 계획수립·운영여부?
	식단관리	9. 식단 작성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화학조미료 또는 튀김류 사용을 제한하는가?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량 표시제 시행	10. 식단에 대한 주요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량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가?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11. 급식 및 식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12.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는가? 1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교육활동 및 정보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는가? 14.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수요자 참여 유도	15.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은 적절한가? 16. 학부모 검수참여 및 학교급식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17. 학교 홈페이지의 급식게시판 운영 등 의견 수렴으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가? 18. 학교급식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가?
	수익자부담 급식경비 관리	19. 급식비 징수 및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0. 학교 공동운영비에 학교 급식시설·설비의 유지 및 개선비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 출처 : 교육부,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세부요령, 2014



〈표 VI-20〉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	
1.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점검항목(배점 : 22개 항목 × 3점 = 66점)	
평가항목	점검 내용
시설관리	1.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2. 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급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관리하는지 여부? 3. 조리용수로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개인위생	4.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지 여부?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검사가능) 5. 올바른 손 씻기,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식재료 관리	6.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여부를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공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여부? 7. 식재료 검수 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는지 여부?
작업위생	8. 식재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를 용도별 및 조리 전·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적절히 세척·소독하는지 여부? 9. 식품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의 오염이 방지되는지 여부? 10.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배식기구·용기 등은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또는 식재료 등과 접촉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11.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하는지 여부? 12.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는지 여부? 13. 생으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를 충분히 세척·소독하는지 여부? 14.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부가 75℃(폐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 적정여부를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15. 조리가 완료된 식품의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하여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지 여부?
배식 및 검식	16. 조리된 음식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운반 및 배식기구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야 하며, 배식중에 운반 및 배식기구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17.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실시하는지 여부?
세척 및 소독	18. 식기구를 세척·소독 후 배식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는지 여부?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 방역을 실시하고 소독증명서를 비치하는지 여부?



〈표 VI-20〉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계속)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	
안전관리	20. 관계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소방·전기안전, 보일러·덤웨이터검사 등)를 실시하는지 여부? 21.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동방법 게시 및 교육실시, 관리책임자를 지정, 그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는지 여부? 22.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는지 여부?
2. 학교급식 지도 및 권장사항 점검항목(배점 : 21개 항목 × (1~2점) = 34점)	
평가항목	점검 내용
시설관리	23. 조리장이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 구역으로 구분되거나, 작업대·세정대 등을 분리 사용하여 식품취급 작업의 흐름이 교차되지 않는가? 24. 조리장의 바닥·벽·천장 등의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25. 검수장소 및 조리 작업 장소(작업대·가스대·국솥 등)의 조도는 충분한가? 26. 조리장의 후드는 열 및 증기 발생시 즉시 배출되고, 응축수가 식품에 직접 떨어지지 않는 구조인가? 27. 조리장에는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냉·난방시설 또는 공기조화시설 등을 갖추었는가? 28. 식품보관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소모품보관실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29. 조리원 전용 화장실이 있으며, 청소와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출입문이 조리실에 바로 면하지 않고, 화장실내 환풍기 또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가? 30. 조리장내 수세시설과 신발소독시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는가? 31. 조리장내 썩크대 등은 배수관이 배수로와 직접 연결되어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32. 조리장, 식품보관실, 식당 등의 방충·방서설비 및 관리 상태는 적정한가? 33. 급수설비의 적정성 및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수도전 위치, 수량 등) 하고 있는가? 34. 냉동·냉장시설의 적정용량 확보 및 온도유지, 급식품 외 보관하는 것은 없는가? 35. 고장난 설비·기구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개인위생	36. 종사자의 개인위생 준수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적절한 조치가 되었는가? 37. 종사자와 식재료 공급업자(운반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 및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배식	38. 배식 시 위생복장을 적정하게 착용 하는가?
환경위생 관리	39. 세제·소독제·살충제는 표식을 부착하고, 식품과 분리 보관하여 오염·혼입의 우려가 없는가? 40. 조리실 내·외부의 쓰레기는 적정 처리하고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HACCP	41. HACCP 적용에 대한 자체분석 후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42. CCP확인표를 전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담당자가 적절한 시기에 현장기록을 실시하고 있는가?
안전관리	43. 학교자체에서 일일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출처 : 교육부,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세부요령, 2014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교육부는 2006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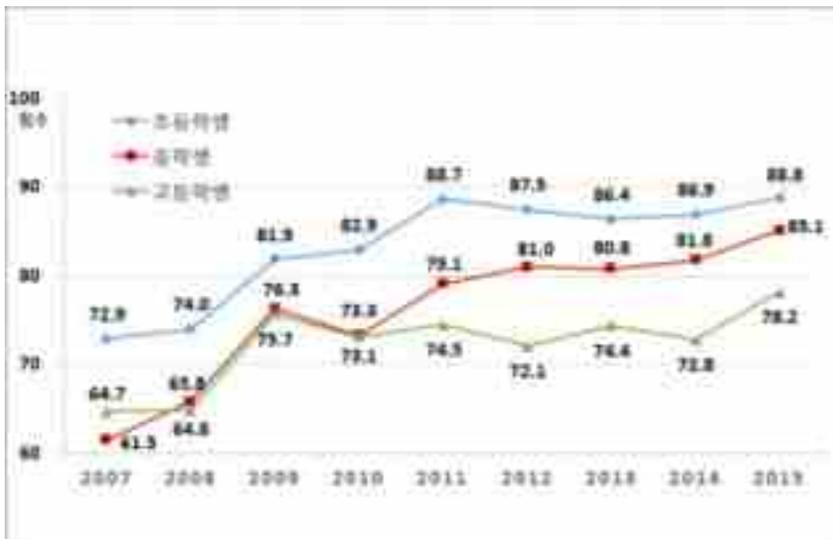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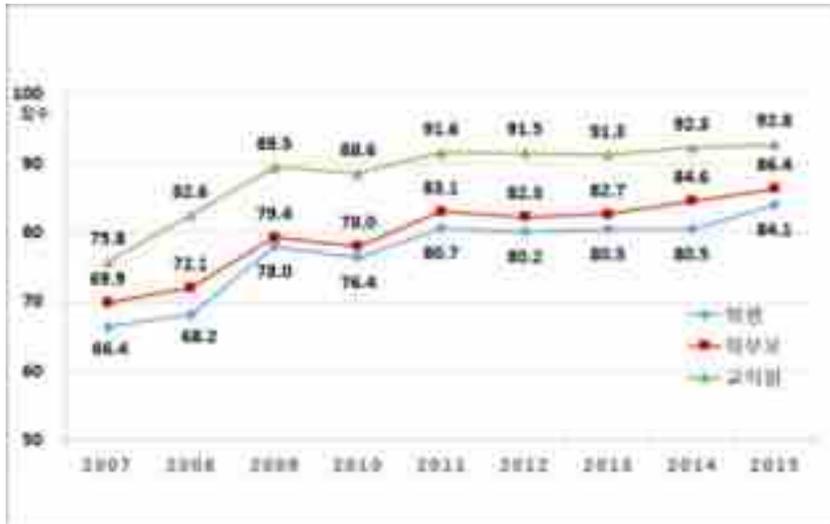
만족도 조사는 당해 년도 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전년도 급식운영평가 결과 각각 평균점수±2점대의 초·중·고 중 무작위로 선정한 각 4개교의 초등학교 5학년과 중·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항목은 <표 VI-21>과 같다. 그동안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림 VI-2]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높아지다가 2010년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1년 상승후 2014년까지 유지되다 2015년에는 상승하였다.

<표 VI-21>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 항목

평가 분야	급식의 질	급식운영	급식환경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의 맛 - 음식의 적정온도 - 음식의 제공량 - 메뉴의 다양성 - 급식의 영양 - 급식 위생 - 식재료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및 배식 질서지도 - 급식 의견 수렴 - 급식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배식 - 식사장소의 편안함 - 배식원 친절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그림 VI-2] 연도별 학교급식 만족도(2007~2015)

* 출처 : 박문경,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방안, 2016 교육부 학교급식연수회 자료집



06 학교급식 실적 및 평가

가. 실적

1)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급식학교와 학생수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표 VI-22>.

<표 VI-22>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시 현황(2003, 2010, 2015)

연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식	비율 ¹⁾	전체	급식	비율 ²⁾	
초등학교	2003	5,488	5,479	99.8	4,175,626	3,856,840	92.4
	2010	5,859	5,859	100	3,299,094	3,280,919	99.4
	2015	5,978	5,978	100	2,731	2,731,022	99.9
중학교	2003	2,853	2,736	95.9	1,854,641	1,719,640	92.7
	2010	3,131	3,130	99.9	1,974,798	1,957,192	99.1
	2015	3,028	3,208	100.0	1,589,000	1,587,613	99.9
고등학교	2003	2,030	1,998	98.4	1,766,529	1,435,562	81.3
	2010	2,256	2,253	99.9	1,962,356	1,918,197	97.7
	2015	2,344	2,344	100.0	1,806,000	1,799,093	99.6

1) 전체학교수 대비 급식학교수 비율(%)

2) 전체학생수 대비 급식학생수 비율(%)

2)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실적

2003년에는 초·중·고 전체 급식학교 10,343개교 중 위탁급식이 1,930개교로 18.7%를 차지하였으나,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꾸준히 추진하여 2015년에는 242개교, 2.1%로 감소하였다<표 VI-23>.



〈표 VI-23〉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별 현황(2003~2015)

연도	급식 학교수	직영급식(교)			위탁급식(교)					위탁 비율 (%)
		단독 조리	공동 조리	계	교내조리			외부 운반	계	
					일부 위탁	전부 위탁	계			
2003	10,343	6,276	2,137	8,413	0	1,643	1,643	287	1,930	18.7
2004	10,586	6,578	2,215	8,793	0	1,531	1,531	262	1,793	16.9
2005	10,780	6,809	2,316	9,125	0	1,434	1,434	221	1,655	15.4
2006	10,986	7,184	2,312	9,496	0	1,296	1,296	194	1,490	13.6
2007	11,106	7,312	2,469	9,781	0	1,212	1,212	113	1,325	11.9
2008	11,225	7,573	2,430	10,003	0	1,130	1,130	92	1,222	10.9
2009	11,303	7,816	2,446	10,262	0	954	954	87	1,041	9.2
2010	11,389	8,247	2,523	10,770	0	546	546	73	619	5.4
2011	11,476	8,471	2,686	11,157	157	96	253	66	319	2.8
2012	11,520	8,636	2,610	11,246	164	55	219	55	274	2.8
2013	11,575	8,686	2,627	11,313	172	37	209	53	262	2.6
2014	11,619	8,761	2,624	11,385	173	26	199	35	234	2.0
2015	11,698	8,828	2,628	11,456	188	20	208	34	242	2.1

* 교육부 내부자료(연도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 급식학교수에 특수학교도 포함

3) 무상급식 지원 실적

2010년 19%에 불과하던 학생수 기준의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약 47%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 받았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부터는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약 2/3에 해당하는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되었다.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와 예산의 연도별 현황은 〈표 VI-24〉와 같다.



〈표 VI-24〉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 및 예산 현황(2010~2015)

연도	구분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천명)			재원분담(억 원)			재원분담비(%)	
		전체 학생수	지원 학생수	지원 비율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교육청	지자체
2010		7,236	1,377	19.0	4,845	785	5,630	86.0	14.0
2011		6,987	3,273	46.8	9,351	4,546 (1,356)	13,879	67.3	32.7
2012		6,719	3,972	59.1	11,527	7,923 (3,229)	19,450	59.3	40.7
2013		6,482	4,369	67.4	14,497	9,877 (3,876)	24,374	59.6	40.4
2014		6,436	4,394	68.3	15,666	10,902 (4,414)	26,568	59.0	41.0
2015		6,286	4,150	66.0	14,949	10,246 (4,354)	25,195	59.3	40.7

* 재원분담은 본 예산 기준

* 교육부 내부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식재료비 지원실적은 〈표 VI-25〉와 같다.

〈표 VI-25〉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현황(2006~2010)

연도	구분	지원학교수				지원예산(백만 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06		2,406	730	413	3,549	38,297	11,903	10,438	60,638
2007		3,197	1,058	495	4,750	55,958	19,248	13,794	89,000
2008		4,390	1,692	686	6,768	73,970	28,211	21,072	123,253
2009		4,512	1,940	1,081	7,533	105,618	42,144	32,960	180,722
2010		5,038	2,121	1,230	8,389	144,718	63,098	46,665	254,481

* 교육부 내부자료



나. 평가

이 시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 시기로 그동안 급식 확대에 매진하느라 소홀하였던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급식시설 개선, 급식의 질 향상,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결코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잦은 식중독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강화되었으며, 학부모단체와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의 활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식재료비를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 발생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었다.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어 급식운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그동안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의 원활한 급식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학교급식후원회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직영급식만을 허용하고 위탁급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우수 식재료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는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시·도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수 식재료비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의 실효성, 우수 식재료비 지원의 지역농산물 구입으로의 연결,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대에 의한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교육재정의 결핍 등은 아직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영양사들이 영양교사로 전환된 이후 교육과 급식관리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 식재료 구매와 관련된 잡음,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배치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소통 및 업무 지도·감독의 한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VII 현재의 학교급식

01 학교급식 제도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내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자체조리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급식도 가능하다. 학교급식 운영방식은 학교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위탁급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는 시·도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학교급식 시설·설비비와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 전담인력으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과 관련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의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평가,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하고 있다.

02 학교급식 실시현황

가.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2015년 12월 기준 전국 11,698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급식 학생수는 1일 평균 615만 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99.9%이다<표 VII-1>.

<표 VII-1> 2015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단위 : 교, 천명, %)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운영형태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직영		위탁	
							학교	비율	학교	비율
초등학교	5,978	5,978	100	2,731	2,731	99.9	5,977	99.9	1	0.1
중 학교	3,208	3,208	100	1,589	1,588	99.9	3,182	99.2	26	0.8
고등학교	2,344	2,344	100	1,806	1,799	99.6	2,131	90.9	213	9.1
특수학교	168	168	100	25	24	99.2	166	98.8	2	1.2
합 계	11,698	11,698	100	6,151	6,142	99.9	11,456	97.9	242	2.1

* 출처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실시현황

학교급별 전국 평균 급식 학생수는 교당 초등학교가 457명, 중학교 495명, 고등학교가 768명, 특수학교가 149명이다. 그러나 시·도에 따라 평균 급식 학생수의 차이가 크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은 1교당 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220명, 강원 223명으로 적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이 9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462명, 강원 468명으로 적었다<표 VII-2>.



〈표 Ⅶ-2〉 2015년도 시·도별 급식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시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 식					%	전체	급 식					%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1,329	598	384	318	29	1,329	100	1,015,753	451,026	262,525	297,817	4,385	1,015,753	100		
부산	635	305	171	144	15	635	100	377,491	153,899	94,992	126,772	1,828	377,491	100		
대구	445	220	124	92	9	445	100	307,023	129,727	80,325	91,791	1,424	303,267	98.8		
인천	510	246	134	123	7	510	100	346,738	157,335	89,123	95,569	1,306	343,333	99.0		
광주	314	152	90	67	5	314	100	213,329	91,355	57,007	63,960	1,007	213,329	100		
대전	302	146	88	63	5	302	100	206,070	91,150	51,964	61,457	963	205,534	99.7		
울산	241	119	62	56	4	241	100	152,173	66,204	39,045	45,372	664	151,285	99.4		
세종	67	36	17	13	1	67	100	26,637	15,039	6,360	5,209	29	26,637	100		
경기	2,324	1,216	616	460	32	2,324	100	1,613,308	741,828	412,835	454,430	4,215	1,613,308	100		
강원	637	351	162	117	7	637	100	182,241	78,410	48,065	54,836	930	182,241	100		
충북	480	260	128	83	9	480	100	192,613	85,426	50,745	55,200	1,242	192,613	100		
충남	713	404	186	117	6	713	100	255,816	115,762	65,327	73,825	902	255,816	100		
전북	766	414	209	132	11	766	100	235,344	100,819	62,588	70,644	1,293	235,344	100		
전남	829	426	250	145	8	829	100	222,355	93,831	58,937	68,563	1,011	222,342	100		
경북	952	476	275	193	8	952	100	298,512	130,626	77,212	89,201	1,473	298,512	100		
경남	964	497	267	191	9	964	100	421,933	190,424	108,512	121,493	1,504	421,933	100		
제주	190	112	45	30	3	190	100	83,546	38,161	22,051	22,954	380	83,546	100		
계	11,698	5,978	3,208	2,344	165	11,698	100	6,150,882	2,731,022	1,587,613	1,799,093	24,556	6,142,284	99.9		

* 출처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실시현황

나. 운영형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인 직영급식이 11,456교(97.9%),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급식이 242교(2.1%)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중학교는 0.8%인 26개교, 고등학교는 9.1%인 213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표 Ⅶ-1〉.

직영급식 11,456교 중 본교 학생만을 위한 단독조리 학교가 8,828교(77.1%)이며, 인근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조리하여 급식하는 공동조리급식 학교가 2,628교(22.9%)이다. 위탁급식을 하는 242개교 중 학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조리업무 등 일부업무만 위탁하는 일부 위탁급식 학교가 188교(90.4%)이며 급식식단 계획, 조리 등 급식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전부위탁급식 학교가 20교(9.6%)이다. 34개교는 도시락업체 등과 계약하여 학교 밖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학교로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급식 학교수는 2003년 1,930교(18.7%)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1,655교(15.4%), 2007년 1,325교(11.9%)로 감소하였다. 2007년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위탁급식 학교는 크게 감소하여 2015년도에는 242교(2.1%)만이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다. 급식경비

2015년도 학교급식에 소요된 식품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경비는 총 5조 6,341억 원이었다. 이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총 소요액의 56.7%인 3조 1,917억 원이었다. 그 다음이 운영비로 39.4%인 2조 2,208억 원, 시설비는 3.9%인 2,217억 원이었다. 운영비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아 운영비의 83%, 전체 경비대비 32.7%인 1조 8,433억 원이었다<표 VII-3>.

<표 VII-3> 2015년도 지출항목별 학교급식 경비

	식품비	3조 1,917억 원	(56.7%)
운영비	인건비	1조 8,433억 원	(32.7%)
	연료비 기타	3,314억 원	(5.9%)
	시설 유지비	461억 원	(0.8%)
	소 계	2조 2,208억 원	(39.4%)
	시설 설비비	2,217억 원	(3.9%)
계	5조 6,341억 원	(100%)	



* 출처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실시현황

부담주체별 학교급식 경비 구성을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가 총 경비의 48%인 2조 7,085억 원, 보호자부담금이 30.8%인 1조 7,318억 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18.6%인 1조 495억 원이다. 그 외 발전기금 등이 1,443억 원이었다<표 VII-4>.



〈표 VII-4〉 2015년도 부담주체별 학교급식 경비

교육비특별회계	2조 7,085억 원	(48.1%)
자치단체지원금	1조 495억 원	(18.6%)
보호자부담금	1조 7,318억 원	(30.7%)
발전기금/기타	1,443억 원	(2.6%)
계	5조 6,341억 원	(100%)



* 출처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실시현황

학교급식 경비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제주도로 59.7%, 낮은 곳은 대전시교육청으로 31.4%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으로 33.7%, 낮은 곳은 경상남도로 1.4%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지원의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84.2% 그다음으로 제주도가 81.6%이다.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51.4%이다〈표 VII-5〉.



〈표 VII-5〉 2015년도 시·도별, 부담주체별 급식비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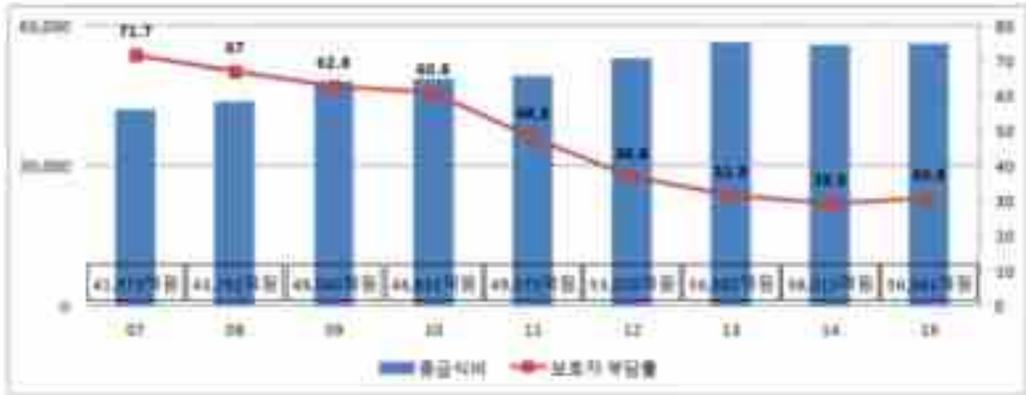
시도	부담액					부담 비율		
	교육청	지자체	보호자	발전 기금등	합계	교육청 ¹⁾	지자체	합계 ²⁾
서울	406,345	231,442	212,914	1,191	851,892	47.7	27.2	74.9
부산	158,807	11,557	132,540	624	303,528	52.3	3.8	56.1
대구	125,225	15,995	96,674	12,868	250,762	49.9	6.4	56.3
인천	119,847	43,397	131,339	754	295,337	40.6	14.7	55.3
광주	93,280	43,802	59,657	8,443	205,182	45.5	21.3	66.8
대전	56,122	35,800	86,108	431	178,461	31.4	20.0	51.4
울산	62,905	5,765	59,334	887	128,891	48.8	4.5	53.3
세종	18,391	7,957	5,620	2,212	34,180	53.8	23.3	77.1
경기	646,613	287,988	355,761	54,820	1,345,182	48.1	21.4	69.5
강원	108,025	41,697	39,593	108	189,423	57.0	22.0	79.0
충북	107,021	47,084	67,661	509	222,275	48.1	21.2	69.3
충남	135,994	84,699	72,366	16,526	309,585	43.9	27.4	71.3
전북	133,678	45,967	50,047	14,604	244,296	54.7	18.8	73.5
전남	121,510	81,085	17,027	21,014	240,636	50.5	33.7	84.2
경북	146,329	41,162	162,256	3,239	352,986	41.5	11.7	53.2
경남	217,672	5,438	172,611	779	396,500	54.9	1.4	56.3
제주	50,768	18,641	10,276	5,390	85,075	59.7	21.9	81.6
합계	2,708,532	1,049,476	1,731,784	144,399	5,634,191	48.1	18.6	66.7

* 교육청¹⁾ : 총 부담액중 교육청부담액의 비율

합 계²⁾ : 총 부담액중 교육청과 지자체부담액 합계의 비율로, 높을수록 보호자 부담비율은 낮음

* 교육부 내부자료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무상급식 확대로 학부모 부담금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VII-1].



[그림 VII-1] 연도별 급식예산 및 보호자 부담 비율(2007~2015)

* 출처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실시현황

2015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에 소요된 1식당 평균 비용은 <표 VII-6>과 같다. 이 초등학교는 평균 4,803원, 중학교는 평균 4,634원이다.

<표 VII-6> 2015년도 1식당 학교급식 평균 비용

(단위 : 원)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서울	4,717	4,433	경기	4,236	4,148
부산	4,388	4,180	강원	5,596	4,850
대구	4,559	4,240	충북	6,343	5,746
인천	4,274	4,448	충남	6,132	5,681
광주	4,356	4,475	전북	5,268	4,699
대전	4,062	4,272	전남	5,994	6,110
울산	4,809	4,629	경북	5,625	5,583
세종	5,768	6,521	경남	5,217	5,010
전국	4,803	4,634	제주	5,805	5,571

* 교육부의 2015 학교급식 예산부담액 자료로부터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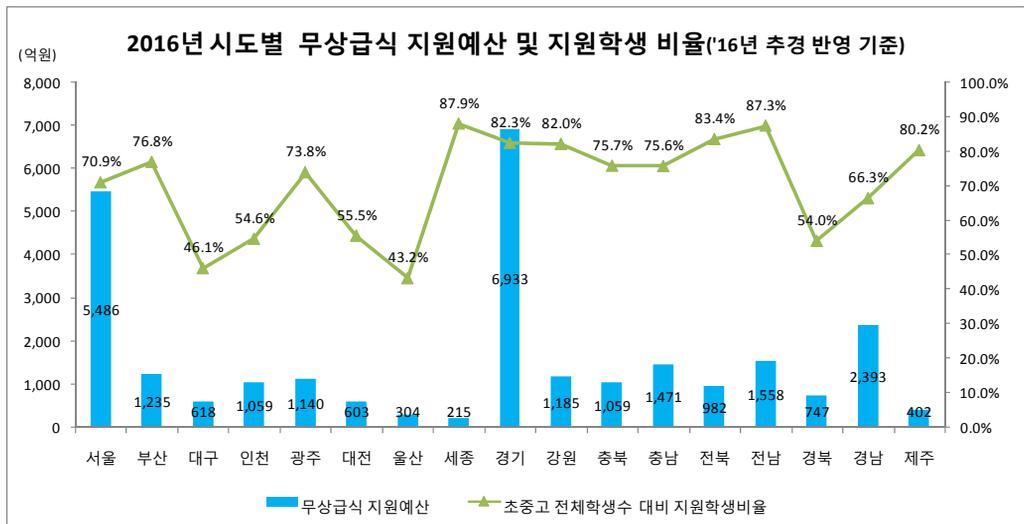
* 시도별 학교급별 예산부담 총액을 급식인원수가 180일 급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크게 확대하여 2016년, 전국 17개 시·도중 10개 시·도는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4개 시·도는 초등학생에게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급 학생들(고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기타 모든 시·도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초·중·고 모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지원학생 비율은 시·도에 따라 상이하다[그림 VII-2].

2016년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70.5%인 423만 명에게 총 2조 7,2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소요재원은 지방비로 교육청이 1조 7,064억 원(62.3%), 지자체가 1조 326억 원(37.7%)을 분담하고 있다. 2015년도의 시·도별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표 VII-7>과 같다.



[그림 VII-2] 2016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지원학생 비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표 VII-7> 2015년도 1식당 무상급식 지원 단가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3,150	4,170		경기	2,892	3,499	3,723
부산	2,390	2,959	3,082	강원	3,920	4,120	4,160
대구	2,100	3,180	3,200	충북	3,421	4,016	3,000
인천	2,600	3,600	3,600	충남	4,006	4,528	4,360
광주	2,486	2,905	3,196	전북	2,200	2,900	2,900
대전	2,470	3,005	3,210	전남	3,884	4,054	4,595
울산	2,470	2,960	3,130	경북	2,300	2,700	2,900
세종	3,740	4,230	4,330	경남	3,760	3,980	4,260
				제주	2,910	3,089	3,053

* 교육부 내부자료



라. 급식인력

학교급식인력은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10,261개교)에 <표 Ⅶ-8>와 같이 영양(교)사·조리사·조리원 등 총 72,827명이 배치되어 있다(교당 평균 6명). 이중 영양(교)사는 9,975명으로 영양교사 등 정규직이 4,978명(49.9%), 학교회계직 등이 4,997명(50.1%)이다. 정규직 4,978명중 영양교사가 4,825명이다(직영 국립 31명, 공립 4,633명, 사립 154명 / 일부위탁 7명). 조리사는 10,22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신분별로는 정규직이 2,186명(21.4%), 학교회계직 등이 8,042명(78.6%)이다. 조리원은 교당 평균 4.5명으로 52,624명 배치되어 있다.

<표 Ⅶ-8> 2015년도 직종별 급식인력 배치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급식 학교수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계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계
초등학교	5,978	3,618	1,396	1,753	3,707	34	23,553	5,405	28,656	34,061
중 학교	3,208	601	1,754	75	2,176	10	12,368	686	16,298	16,984
고등학교	2,344	637	1,824	243	2,101	139	16,168	1,019	20,093	21,112
특수학교	165	122	23	115	58	41	311	278	392	670
합계	11,695	4,978	4,997	2,186	8,042	224	52,400	7,388	65,439	72,827

* 출처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실시현황



마. 급식시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HACCP 기준에 맞는 공간구획과 급식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2013년 3월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한 효성초등학교의 급식실 사진과 조리실 평면도 및 시설·설비 일람표이다[사진 VII-1], [사진 VII-2], <표 VII-9>.



좌 : 급식실 전경
우 : 식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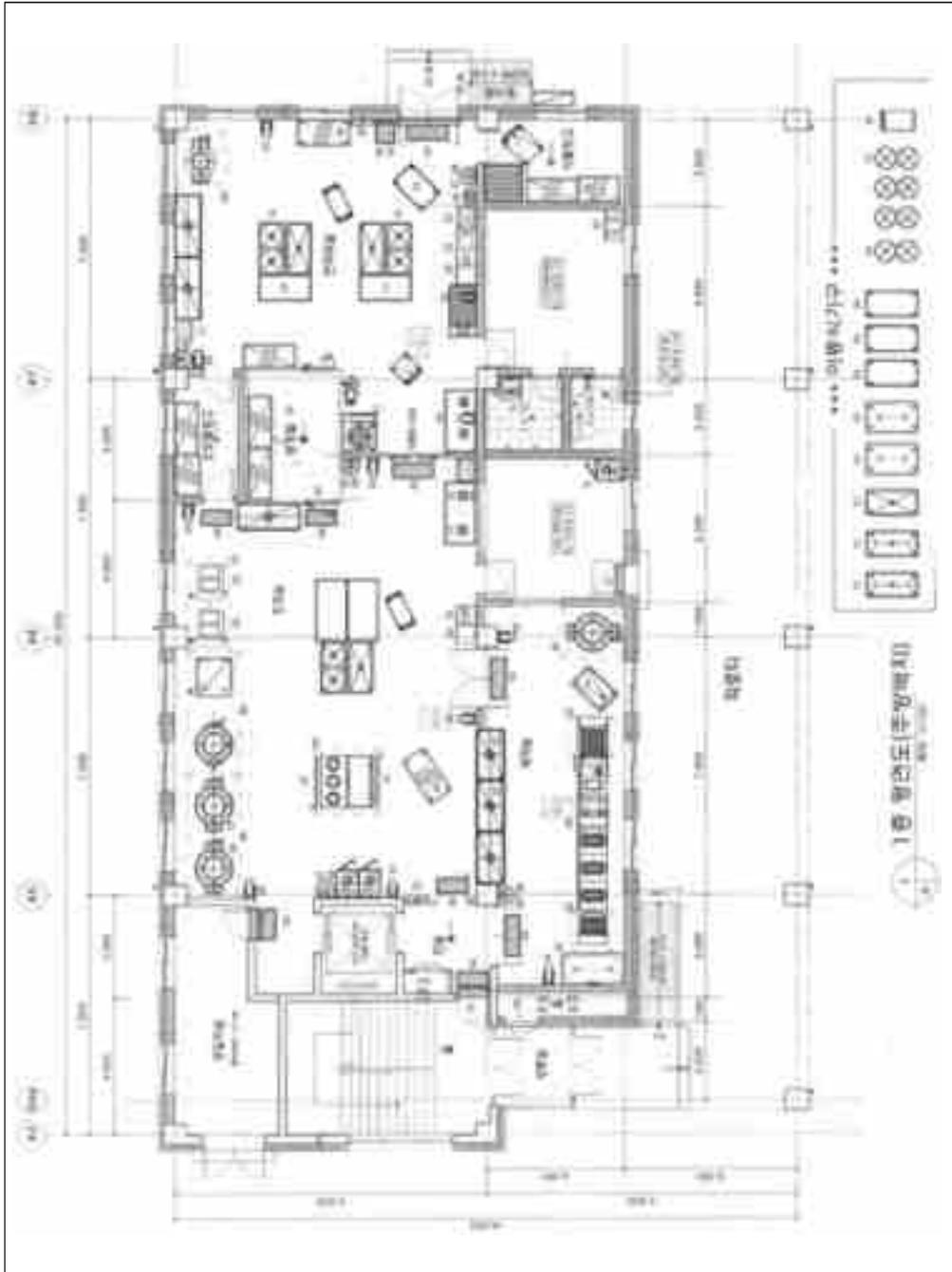
좌 : 전처리실
우 : 조리실



좌 : 조리실
우 : 세척실

[사진 VII-1] 급식실 사진(효성초등학교의 예)

* 경기도교육청 제공



[사진 VII-2] 조리실 평면도(효성초등학교의 예)

* 경기도교육청 제공



〈표 VII-9〉 급식기기 일람표(효성초등학교의 예)

번호	품명	규격(m/m)			수량	급.배수 사양			가스 열량		스팀 사양		전기 용량		비고	번호
		가로*세로*높이				C.W	H.W	DR.	INLET	Kcal/hr	INLET	kg/hr	1P 220V	3/4N 380V		
01	에어커튼	900MM			2								0.16*2			01
02	유인살충등	포충기			3								0.5*3			02
03	소독발판	1200	450	20	4											03
04	소독발판	900	450	20	5											04
05	전자저울	80KG			1								0.1			05
06	저울받침대	700	500	760	1											06
07	손세정대	페달식			5	15A*5	15A*5	50A*5								07
08	손소독기	자동분사식			6								1*6			08
09	자동워터릴	15M/스텐			11	15A*1115A*11										09
10	열형운반카	900	700	850	1										재사용	10
11	곡물받침대	1100	1100	140	1											11
12	다단식선반	1200	750	1900	2											12
13	다단식선반	1500	680	1780	5										재사용	13
14	냉장냉동고	ARFSD74-R1F1			2								1*2		재사용	14
15	1조세정대/이동실	1500	750	800	3	15A*3	15A*3	75A*3							재사용	15
16	2조세정대	1500	750	850	2	15A*4	15A*4	75A*4								16
17	작업대	1500	750	850	2											17
18	야채절단기	HVM-200			1								0.5			18
19	다믹서	DA-635			1								1.1			19
20	작업대	1800	900	780	4										재사용	20
21	세미기	80KG/회			1	15A		75A					1			21
22	위생복소독고	900	600	1900	1								1.5			22
23	앞치마소독고	700	600	1900	1								1.5			23
24	칼도마소독고	1000	600	1350	1								0.6			24
25	칼도마소독고	550	600	1350	1								0.6			25
26	고무장갑소독고	550	600	1350	2								1.5*2			26
27	행주소독고	600	520	1100	1								1.5			27
28	장화건조기	12결레			1								1			28
29	냉장실/10m ²	3900	2800	2400	1			50A						4		29
30	오버랩도어	SOD-800S			1											30
31	에어커튼	900MM			6								0.16*6		재사용	31
32	가스회전식데침,소독솔	300인용			2	15A*2			20A*2	32000*2						32
33	가스높은렌지	1500	750	850	1				25A	28540						33
34	가스부침기	1500	750	850	1				25A	28500						34
35	무압취사기		600 인용		2	15A*2		50A*2	20A*2	65000*2			1.3*2			35
36	오븐/가스식	40단(리치오날)			1	15A		50A	20A	77400			1.8		재사용	36
37	가스회전식튀김,볶음솔	500인용			1	15A			20A	32000					재사용	37
38	가스회전식국솔	500인용			2	15A*2			20A*2	32000*2						38
39	담금세정대	1800	900	850	1	15A	15A	75A*2								39
40	식기자동세척기/가스식	3탱크	건조형		1	20A		75A	20A	63700				40		40
41	이동식기건조대	1200	750	850	1											41
42	전기식기소독고/양문형	1500	800	2050	2								6.2*2			42
43	전기식기소독고	1800	750	1950	3								6.2*3		재사용	43



〈표 Ⅶ-9〉 급식기기 일람표(효성초등학교의 예)(계속)

번호	품명	규격(m/m)			수량	급.배수 사양			가스 열량		스팀 사양		전기 용량		비고	번호
		가로*세로*높이				C.W	H.W	DR.	INLET	Kcal/hr	INLET	kg/hr	1P 220V	3/4N 380V		
44	다단식선반/이동식	1500	750	1900	2											44
45	이중배기후드/등(데침, 소독술)	1800	1500	600	2								0.1*2			45
46	이중배기후드/필터/등(가스기기)	1900	1900	600	1								0.1			46
47	이중배기후드(밥솥)	2700	1200	600	1											47
48	이중배기후드/필터/등(튀김솥)	3600	1500	600	1								0.1			48
49	이중배기후드/등(국솥)	3600	1500	600	1								0.1			49
50	이중배기후드(세척기)	1200	1200	600	2											50
51	이동무침기	1500	750	850	2											51
52	1조세정대/이동식	1500	750	850	1											52
53	담금세정대/이동식	1800	900	850	2											53
54	작업대/이동식	1500	750	850	3											54
55	공란				0											55
56	소쿠리운반카		ø670	800	2											56
57	튀김운반카		ø670	800	2											57
58	양념운반카	900	600	850	1											58
59	보냉고	1260	800	1830	1								1			59
60	보온고	1260	800	1830	1								1			60
61	수저식판배분대	900	600	900	3											61
62	자율배식대	3900	900	800	3								2.2*3			62
63	국보온운반차	600	600	800	3								2*3			63
64	잔받처리대	1200	750	850	2											64
65	잔받통		ø490	550	4											65
66	수저회수차	800	600	850	2											66
67	식기회수차	900	600	850	2											67
68	대용량정수기	1200	600	1700	2	15A*2		50A*2					2.2*2			68
69	4인식탁/일체형	1200	750	730	17											69
70	6인식탁/일체형	1800	750	730	60											70
71	세탁기		12KG		1	15A	15A	75A					1			71
72	보존식냉동고	640	800	1830	1								1			72
73	이동검수대	1200	750	850	1											73
74	전기식기소독고/양문형	1500	750	1950	1									6.2	재사용	74
75	공기압울세정대(야채)	1500	800	1430	1	15A		75A					1		재사용	75
76	2조세정대/이동식	1500	750	800	1										재사용	76
77	다믹서		635SP		1								1.1		재사용	77
78	야채절단기		HMV-335		1								1		재사용	78
79	과일분할기		HFC-130FC		1										재사용	79
80	튀김운반카	ø640	700		2										재사용	80
81	열형운반차	610	610	820	1										재사용	81
82	소쿠리운반카	ø600	800		2										재사용	82
83	도마소독조	1050	500	850	2										재사용	83
84	앞치마소독고	600	600	1800	1								1.5		재사용	84
85	신발장	1200	400	1200	1										재사용	85

* 경기도교육청 제공

03 학교급식 관리

가. 영양관리

1) 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맞게 영양(교)사가 식단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에서 조리·급식 한다. 영양관리기준은 <표 VII-10>과 같다.

<표 VII-10>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구분	학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남 자	초등 1~3학년	534	8.4	97	134	0.20	0.24	0.24	0.30	13.4	22.0	184	234	2.4	3.0
	초등 4~6학년	634	11.7	127	184	0.27	0.30	0.30	0.37	18.4	23.4	184	267	3.0	4.0
	중학생	800	16.7	167	234	0.34	0.40	0.44	0.50	25.0	33.4	267	334	3.0	4.0
	고등학생	900	20.0	200	284	0.37	0.47	0.50	0.60	28.4	36.7	267	334	4.0	5.4
여 자	초등 1~3학년	500	8.4	90	134	0.17	0.20	0.20	0.24	13.4	20.0	184	234	2.4	3.0
	초등 4~6학년	567	11.7	117	167	0.24	0.27	0.27	0.30	18.4	23.4	184	267	3.0	4.0
	중학생	667	15.0	154	217	0.27	0.34	0.34	0.40	23.4	30.0	250	300	3.0	4.0
	고등학생	667	15.0	167	234	0.27	0.34	0.34	0.40	25.0	33.4	250	300	4.0	5.4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출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 영양관리의 실제

급식학교는 학년별 학생수, 남녀 구성비, 활동정도, 지역적 식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영양관리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학생들의 기호 등을 고려한 식단을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기르고 우리 전통 식문화와 세계의 식문화 등을 배우며, 지역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VII-11>은 서울 상일초등학교의 식단 운영의 예이다.

■ 영양표시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학생들이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을 기르도록 2006년부터 식당 배식구 옆 또는 각 교실에 식단별 주요 영양량을 표시하여 게시하고 있다. 또한 월간 식단표와 영양량을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학교급식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 <고춧가루 포함>,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이다.

■ 나트륨 저감화

교육부는 학생들이 장차 나트륨 과잉섭취와 관련성이 높은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 학교급식 나트륨 섭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후 2014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2014년, 「학교급식 나트륨 줄이기 가이드북」을 발간·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까지 초등학교는 한 끼당 나트륨 섭취량을 초등학교 900mg, 중학교 1,000mg, 고등학교 1,300mg, 평균 1,067mg 수준으로 저감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서는 저염식을 생활화하여 가정에 확산 및 학생들 스스로 자기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과 병행하여 월 1~2회 국 없는 날 또는 누룽지탕 주는 날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VII-11〉 레인보우 7가지 테마 영양식단(상일초등학교의 예)

시기	급식 테마	관련 사진	추진 배경
매월 첫날	생일상 차리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대다수 이므로 생일상을 못 받는 아동들이 많다. 학교에서 매월 초 다양한 생일상을 차려서 축하해 주면 자존감을 세워준다.
둘째주 수요일	세계음식 체험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다른 나라의 음식을 체험하여 올바른 식문화를 배우고 익힌다.
셋째주 수요일	향토음식 체험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로 가공한 우리 향토의 먹거리를 배우고 소중함을 인식한다.
넷째주 금요일	건강채식 체험		육식만 선호하는 아동들에게 채식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른다.
매 절기	절기음식 체험		매 절기마다 고유의 풍습을 배우고, 조상들의 소중한 절기 음식을 체험한다.
세상과 소통하는 식단	창의적 식단 체험		재미있고 즐겁게 먹는 급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베이직	일반건강 식단		평소에 기초 대사량에 따른 올바른 영양 공급 식단 제공

* 교육부 제공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2년 1학기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범실시하고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안타깝게도 2013년 4월,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이 학교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2013년 5월 22일 학교급식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 11월 23일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고지가 의무화되었다. 미 준수시에는 벌칙도 따른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알레르기 유발 고지 의무화 식품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18가지(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계,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이다.

또한, 학교는 신입생이나 전입생에 대해 알레르기 식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여, 대체식을 신청한 학생의 학부모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알레르기 상태 정도를 확인하고 급식에서의 대체식 또는 제거식의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적용한다. 다음은 학교급식에서의 식품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표 VII-12>는 대구 서촌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관리 방안 사례이다.



〈표 VII-12〉 아토피, 식품 알레르기 질환 학생 중식 관리 방안(서촌초등학교의 예)

아토피, 식품 알레르기 질환 학생 중식 관리 방안					
연번	학년	반	이름	알레르기 유발 식품명	대체방안
1	1	1	김○○	호두	호두 대신 다른 견과류 제공함. (땅콩이나 해바라기씨, 밤 등)
2	1	1	임○○	토마토	토마토가 급식에 있는 날은 사과나 배, 딸기 등 대체과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기로 함 (계절별로 수급가능한 과일 선택)
3	1	1	마○○	복어, 계란	요리에서 복어나 계란을 제거해서 제공하거나 다른 대체요리를 제공함.
4	1	1	김○○	조개, 계란, 키위	요리에서 조개, 계란을 제거해서 제공하거나 다른 대체요리를 제공함. 키위 대신에 다른 대체과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함.
5	1	1	차○○	메밀, 도토리	메밀, 도토리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요리를 준비해 제공함.
6	2	1	조○○	조기, 굴비	조기, 굴비를 대체할 생선을 준비해 제공함.
7	2	1	정○○	오이	요리에서 오이를 제거해서 제공하거나 다른 채소나 과일을 제공함.
8	3	2	최○○	키위, 파인애플, 바나나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이 급식에 있는 날은 사과나 배, 딸기 등 대체 과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기로 함 (계절별로 수급가능한 과일 선택)
9	3	2	정○○	복숭아	복숭아가 급식에 있는 날은 사과나 배, 딸기 등 대체과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기로 함 (계절별로 수급가능한 과일 선택)
10	3	2	임○○	망고	망고가 급식에 있는 날은 사과나 배, 딸기 등 대체과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기로 함 (계절별로 수급가능한 과일 선택)
11	3	1	강○○	토마토	토마토가 급식에 있는 날은 사과나 배, 딸기 등 대체과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기로 함 (계절별로 수급가능한 과일 선택)
12	4	1	마○○	토마토	토마토가 급식에 있는 날은 사과나 배, 딸기 등 대체과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기로 함 (계절별로 수급가능한 과일 선택)
13	4	1	박○○	닭고기	닭고기 대신에 양질의 단백질로 섭취 가능한 대체식품을 마련하여 조리 후 제공함.
14	4	1	조○○	인스턴트음식 열대과일	현재 인스턴트음식은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음.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이 급식에 있는 날은 사과나 배, 딸기 등 대체 과일을 제공하기로 함 (계절별로 수급가능한 과일 선택)
15	5	1	정○○	밀가루	밀가루 대신 찹쌀가루를 입혀서 조리하거나 무농약우리밀밀가루를 사용함.
16	5	1	서○○	과자, 초콜릿, 캔디류	현재 본교 급식에서 과자, 초콜릿, 캔디류 등은 제공하지 않음.
17	5	1	윤○○	호두, 키위, 파인애플	호두 대신 다른 견과류 제공함. (땅콩이나 해바라기씨, 밤 등) 키위 대신에 다른 과일이나 음료를 제공함.
18	6	1	백○○	땅콩, 아몬드, 메밀, 오이, 토마토	땅콩, 아몬드 대신 다른 견과류 제공함. 메밀 대신 다른 식재료를 제공함. 오이, 토마토 대신 다른 채소나 과일을 제공함.

* 교육부 제공



나. 식재료관리

1)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2006년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이전에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학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학교급식법령을 전부 개정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품질 및 생산·유통과정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및 기타 식품에 대한 최저 품질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품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역적 특성이나 기호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 학교에서의 적용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과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반드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영양(교)사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를 실시하고 있다.

2) 우수 식재료 사용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자 우수 식재료 지원 방법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학교급식의 질, 안전성 확보와 직결된 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표 VII-13>, 2016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만 포함되고 저농약농산물이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에서 GAP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춘 지역의 학교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시간과 운반거리를 단축시키고, 유통비용을 최소화하여 학교와 지역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VII-13>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2012~2015)

구분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톤)			
		유기	무기	저농약	계
곡류	2012	54,025	269,280	20,075	343,380
	2013	48,512	223,108	6,935	278,555
	2014	38,932	113,809	4,553	157,294
	2015	43,538	126,191	493	170,223
과실류	2012	9,116	26,850	305,088	341,054
	2013	9,644	59,933	259,894	329,471
	2014	7,202	22,047	178,367	207,615
	2015	7,874	15,361	92,786	116,021
채소류	2012	74,750	351,340	158,914	585,004
	2013	40,623	199,210	102,563	342,396
	2014	35,219	148,656	66,060	249,936
	2015	31,278	95,082	23,523	149,882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연보(2012-2015)

3) 식재료 구매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학교별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형태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공급받아 왔으나 식재료의 질, 가격, 구매 관련 비리 등의 문제가 빈번히 일어났다. 따라서 2007년 제2차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서는 식재료의 구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자유업으로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재료 공급업을 식품위생



법령을 개정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재료의 품질 향상과 구매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 공동구매 제도 운영, 비대면 전자계약 확대, 수의계약의 단점 보완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등을 권장하였다. 2014년도 직영급식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은 <표 VII-14>과 같다.

<표 VII-14> 직영급식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2014)

(단위 : 교, %)

직영급식 조리실 설치교	비대면 전자계약		급식지원센터 이용			생산자단체 직거래		공동구매		
	시행 학교수	비율	센터수	이용 학교수	비율	시행 학교수	비율	구매단 의 수	시행 학교수	비율
10,006	9,608	96.0	34	2,928	29.3	1,258	12.6	913	4,055	40.5

※ 비대면 전자계약 시행학교수 : 식재료 구매금액 50%이상 적용 학교

※ 급식지원센터 :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업체 알선 등 행정기능의 센터 14개소 제외

※ 생산자단체 직거래 학교수 : 농산물 구매금액 50%이상 적용 학교

* 교육부 내부자료

■ 식재료 구매시 관계법령 준수

식재료 구매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을 한 적격업체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한다. 공동구매 또는 분기단위 입찰 등으로 추정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식재료 구매계약을 추진한다.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을 의무화하여 2천만 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천~5천만 원 이하는 87.745% 이상으로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식재료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을 실시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한다.



■ 공동구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한 구매 권장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로 경쟁입찰이 가능해져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공동 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담당으로 행정업무가 경감된다. 또한 학교급식지원 센터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 위생관리

학교에서의 급식위생관리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급식 위생관리의 선행요건으로 급식시설·설비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작업 위생관리, 급식기구 세척과 소독, 환경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학교 급식 HACCP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 HACCP 시스템 적용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은 학교급식작업의 전 공정(식단작성, 식재료 검수·보관·세척 및 소독, 조리작업, 조리후 배식준비, 종사자 개인위생, 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 이에 따른 중요관리점을 결정하고, 중요관리점에 대한 통제방법을 결정하여, 이러한 일련의 작업 확인을 위한 점검표 일반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의 급식과정을 5개의 중요관리점(CCP: 식단검토,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관리가 필요한 식단의 공정관리, 검수, 식품취급 및 조리과정, 운반 및 배식과정)과 2개의 일반 관리점(CP: 냉장·냉동고(실) 온도관리, 식품 접촉표면 세척과 소독)으로 관리한다.

■ 위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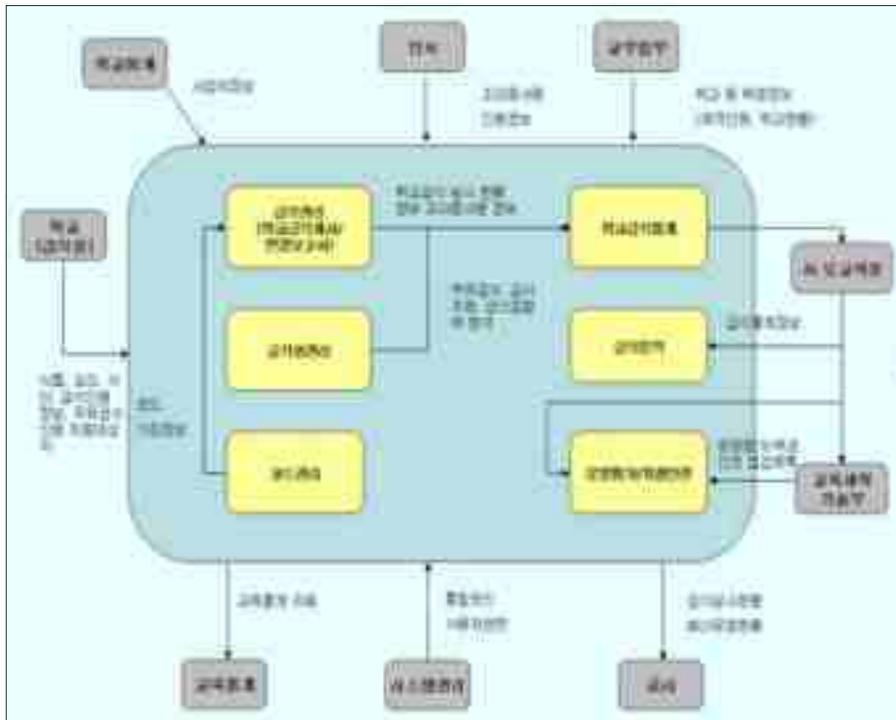
학교에서의 위생교육은 영양(교)사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리종사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 지원청,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과정에 반영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학교장,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 식재료납품업자 등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생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라. 사무관리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교무, 학사, 급식,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27개 업무가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급식의 행정업무도 교무, 학사와 연계되는 부문이 있어 2003년 3월부터 NEI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급식업무와 타 업무와의 연계는 [그림 VII-3]과 같으며, 학교급식시스템에서는 [그림 VII-4]와 같은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림 VII-5]와 같이 식재료 구매 관리를 NEIS와 e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의 연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림 VII-3] NEIS에서의 급식과 타 업무의 연계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그림 VII-4] NEIS에서의 학교급식업무 시스템



[그림 VII-5] NEIS과 eaT와의 연계

* 경기도교육청 제공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해 연 1회의 급식운영평가와 연 2회의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 총 20개 항목의 법적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에 의해 실시한다.

위생·안전점검은 1학기에는 총 43개 항목의 학교급식 위생·안전기준 사항과 지도 및 권장사항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40개 항목의 “식품위생법령 준수사항 점검표”에 의한 점검과 1학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확인을 한다. 2학기에는 위생·안전점검과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을 병행한다.

위생·안전점검은 교육청 단위로 ‘학교급식점검단’을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교육청 공무원 한 명과 점검단원 한 명이 함께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학교밖 급식관련 시설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점검시는 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04 영양·식생활 교육

가. 급식연구 시범학교 및 영양·식생활 교육

2014년에는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표 VII-15>와 같이 연구 시범학교를 200개교 운영하였으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2/3인 3,087개교에서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표 VII-15> 학교 영양교육 실적 현황(2014)

영양교사 배치학교수	'14 연구시범 학교수	학교단위 영양교육 실적(학교수)*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	미실시	합계
4,754	200	440 (9.3%)	1,889 (39.7%)	758 (15.9%)	1,667 (35.1%)	4,754 (100.0%)

*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에 평균 월 2회 이상 실시

* 교육부 내부자료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표 VII-16>과 같이 영양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상담은 학교내 영양상담실 또는 단위학교 홈페이지 영양상담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상담실과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표 VII-16>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운영현황(2014)

전체 학교수	영양상담실 설치·운영				미운영 학교수	합계
	홈피 상담실	현장 상담실	홈피+ 현장상담실	계		
11,605	4,663 (40.2%)	1,238 (10.7%)	5,558 (47.9%)	11,459 (98.8%)	146 (1.2%)	11,605 (100.0%)

* 교육부 내부자료



나.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1)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실시(경기 구미초등학교)

‘쌀사랑 농촌사랑’, ‘채소야 친구하자’를 주제로 총 2회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통합교과(쌀의 우수성, 우리 농촌의 위기, 쌀 주식문화의 우수성 등) 수업으로 학부모 재능기부(떡 강사)와 학예행사가 통합된 교육활동이었다[사진 VII-3].



떡꼬치체험(1,2학년)



송편만들기(3,4학년)



절편만들기(6학년)



쌀로 만든 음식(1학년)



쌀사랑 요리대회



예술행사 전시회

[사진 VII-3] 쌀사랑 농촌사랑 프로젝트 수업

*교육부 제공

2) 교과와 연계한 영양교육(충남 배방초등학교)

1학년 즐거운 생활 ‘차레상 음식 만들기’ 수업시간에 송편만들기, 2학년 통합교과 봄 ‘봄나들이’시간에 봄 떡 만들기, 3학년과 4학년 체육 ‘바르게 먹으면 건강해요’시간에 채소 먹기 오감 교육, 5학년과 6학년 실과 ‘나의 균형잡힌 식생활’건강한 식생활 실천’시간에 감자·계란삶기 수업을 진행하였다[사진 VII-4]



진달래로 화전만들기
(1,2학년)



야채오감으로 느낀점
써보기(3,4학년)



계란 삶기(5, 6학년)

[사진 VII-4] 교과와 연계한 영양교육

*교육부 제공

3) 전통식생활문화부 운영(전북 전주동신초등학교)

우리 음식문화와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 및 조리실습을 통해 우리 음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4~6학년 학생 중 편식, 아토피, 다문화가정 아동 등 희망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전통식생활문화부를 운영하고 있다[사진 VII-5]. 다른 학교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동아리활동을 영양교육과 연계하여 연중 5~6학년 대상 토요일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참쌀복떡 만들기



단호박경단 만들기



전주비빔밥 체험

[사진 VII-5] 전통식생활문화부 활동

*교육부 제공



4) 푸드아트를 활용한 영양교육(전북 전주동신초등학교)

학년별 영양교육시 식재료나 요리로 창작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치유하는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음식을 직접 맛보고, 만져보고, 만들어 보는 등 오감을 활용하여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였다[사진 VII-6].



“나의꿈”이야기
3학년



“내가 사랑하는
사람?” 1학년



나에게 주는
“칭찬컵밥” 6학년

[사진 VII-6] 푸드아트 활용 영양교육

*교육부 제공

5) 다문화가정 학부모 요리교실 운영(경북 흥무초등학교)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며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다.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양교사가 진행하는 한국 전통음식 및 요리 체험행사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도우며 교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사진 VII-7].



송편만들기 실습



김밥 만들기 실습

[사진 VII-7] 다문화가정 학부모 요리교실

* 흥무초등학교 제공



6) 어린이 대상 튼튼이 캠프 운영(학교보건진흥원, 서울영양교사회)

서울시 학교영양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식습관을 인식시키고 체험 위주의 영양교육과 식사지도를 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튼튼이 캠프’는 1998년에 시작되어 올 여름방학에 [사진 VII-8]와 같이 제26회(2016.8.9.~11) 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4~5학년 비만 학생 130여명이 참가하였다.

5가지 식품군별 체험위주의 영양교육과 채소를 이용한 건강 간식을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캠프 후에는 신체계측,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에게는 아동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용 책자를 배부하여 가정과 연계한 올바른 식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식사시간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식생활교육



모듬별 영양교육

[사진 VII-8] 튼튼이캠프 행사

*서울시교육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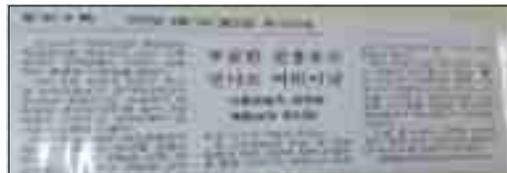


7) 지역사회 영양체험 행사

초등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영양(교)사들이 전문인으로서 학부모와 지역민들에게 학교급식과 영양에 대해 알려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영양체험 행사가 시작되었다. 1994년 경기도 교육청이 최초로 성포초등학교에서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경기학교영양사회와 경기도교육청 공동으로 수원 만석공원에서 “전통음식 체험교육 한마당”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타 시·도의 지역사회 영양체험 행사로 확대되어 2016년 현재는 거의 전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사진 Ⅶ-9].



1994년도 성포초등학교 행사



2000년 만석공원 행사



2002년 행사 안내도



2002년 행사 전경

[사진 Ⅶ-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 영양체험 행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올해 8회째로 2016년 10월 22일 전남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전라남도교육청 주최의 “안전한 먹을거리! 영양체험” 행사에서는 ‘건강·영양체험, 전통음식체험, 바른 식생활체험, 건강·영양정보’를 주제로 31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사진 VII-10].



영양체험 행사장 입구



건강 쓱쓱 창의 쓱쓱 푸드예술 놀이



소금을 이용한 매실 슬러시 만들기



우리김치 내손으로 만들어요

[사진 VII-10]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사회 영양체험 행사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VIII 결론 및 제언

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 올 해로 63년이 되었다. 전쟁 직후인 1953년 전쟁재해아동의 구호를 위한 외국 원조로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이 두 세대를 지난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문헌조사와 관련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 재구성하여 지난 63년간의 학교급식 발전 과정을 총 다섯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학교 구호급식기’는 1953년부터 총 20년 동안의 시기로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원조 식품을 이용한 분유급식, 옥수수죽 급식, 빵급식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73년부터 8년간의 ‘학교 자립급식 실험기’는 외국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 우리 정부의 재원으로 우리 식문화에 맞는 학교급식을 실험,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학자들과 관계 공무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시기이다. ‘학교급식 제도화기’는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의 10년간으로 학교급식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나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국가경제의 어려움, 학교급식 업무의 이원화 등으로 학교급식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이다. 1991년부터의 ‘학교급식 확대기’는 1993년, 「1996년까지 초등학교 급식확대」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채택·실현된 이후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된 12년 동안의 시기이다.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학교급식 선진화기’로 명명하였다.

〈표 VIII-1〉에 이러한 다섯 시기별 급식의 내용과 운영형태, 재원과 주요 정책을 요약하였다.



〈표 VIII-1〉 학교급식 발전 과정 요약표

단계	연도	급식 내용	급식(운영)형태	급식 자원	제도, 특색사업
구호급식기	1953	분유분배, 물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분유 분배 • 학교 조리(물우유) 	캐나다정부(1953) UNICEF(1953~1956)	학교에 우유 급식시설비 등 지원(1955)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옥수수죽, 옥수수빵, 물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조리 • 제빵 	CARE(1957~1965) • 분유(전기간) • 옥수수가루(1961~) • 밀가루(1965)	제빵 가공수수료 지원(1962) 급식연구학교 운영(1962) 부산 일괄제빵급식(1963)
	1960				
	1961				
	1962				
	1963	밀가루빵, 수제비, 건빵, 물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제빵 (도시 : 빵, 도서벽지 : 건빵) • 자체조리(수제비 급식, 시범학교) 	USAID(1966~1972) • 분유(전기간) • 옥수수가루(~1968) • 밀가루, 식유(전기간)	급식 시범학교 운영(1968) 서울자부담급식시작(1968) 일괄제빵 : 제빵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1971) 농촌자활실험학교지정(1972)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빵 : 도시, 자부담 • 건빵 : 도서벽지 • 주식, 부식, 물우유: 시범, 자활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제빵 • 자체조리(도시시범 급식, 농어촌자활 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극빈자: 국고 • 시범, 자활: 국고+자담+(생산활동) • 도시등 제빵: 자담 	자활급식 확대(1976년, 55교) 학교급식규칙 제정(1977) 식중독사고 및 일괄제빵급식 제도 폐지(1977)	
1970					
1971					
1972					
자립급식실험기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급식 • 주식: 빵(국수, 밥) • 부식: 국, 수프, 달걀, 김치 • 기타: 과일, 물우유 	학교 자체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국고 • 농어촌: 국고+자담+생산 • 도시 시범: 자담 	학교급식규칙 개정(1978) 학교영양사 배치(1978) 급식위생관리지침시달(1979)
	1974				
급식제도화기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의 다양화 • 주식: 빵(국수, 밥) • 국(수프) • 부식 • 우유 	학교 자체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국고 • 농어촌: 국고 1/3+자담 2/3+(생산) • 도시 : 자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정(1981) 급식업무 체육부로 이관(1982)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정(1983) 표준식단책자 발행(1986) 학교급식 효과 측정(1986) 급식업무 문교부로 이관(1990)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표 Ⅷ-1〉 학교급식 발전 과정 요약표(계속)

단계	연도	급식 내용	급식(운영)형태	급식 재원	제도, 특색사업
급식 확대기	1991	* 식단의 다양화 • 주식: 밥(기타) • 국 • 부식 • 우유	학교 자체조리 (단독조리, 공동조리, 공동관리)	• 도서벽지: 국고 • 농어촌: 국고 1/3+ 자담 2/3+(생산) • 도시: 자담	학교급식확대완료(1991~2002) (특수: 1991, 초: 1992~1997 중:2000~2002, 고: 1998~1999) 학교급식후원회 도입(1993) 위탁급식제도 도입(1996) 지자체 급식시설비지원(1996) 학생 중식지원 법제화(1999) 위생관리지침서 개발(2001) 급식 HACCP제도 도입(200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급식 선진화기	2001	* 식단의 다양화, 친환경 식재료 사용 • 주식: 밥 • 국 • 부식 • 우유	• 직영급식: 단독 조리, 공동조리, 공동관리 • 위탁급식 : 운영 위탁, 외부운반급식	• 도서벽지: 국고 • 농어촌: 국고 1/3+ 자담 2/3+(생산) • 도시: 자담 * 지자체에서 우수 식재료비 지원 가능	지자체 우수식재료비 지원(2003)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추진 (2003~2006, 2007~2011, 급식시설 현대화,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등) 중식지원사업 지방이양(2005) 영양교사 배치(2007) 학교급식법 전부개정(2007) 학교급식 운영평가(2007)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201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물우유 :탈지분유를 끓인 물에 타서 만든 우유로 환원우유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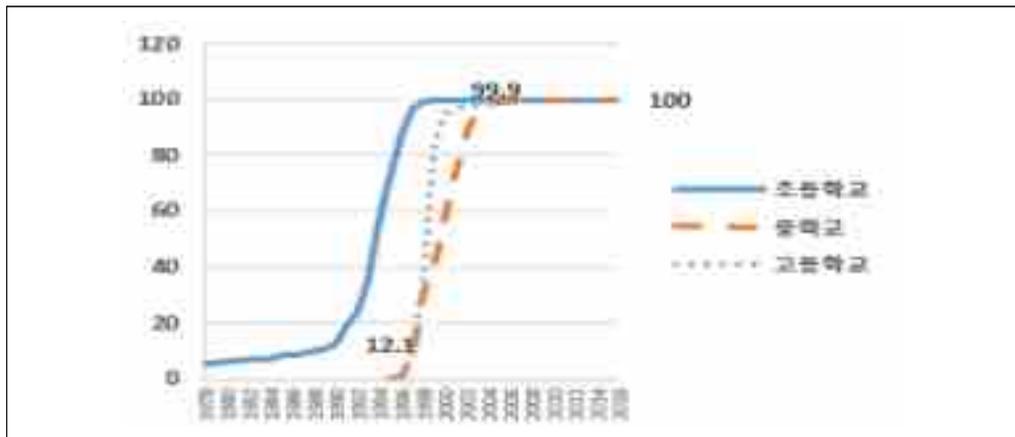
* 시범 : 도시 급식시범학교, 자활 : 농어촌 자활급식 실험학교

* 자담 : 학부모 부담

1953년부터의 자세한 학교급식 연혁을 부록 3에 실었다. 또한 연도별 학교급별 급식 실시현황(부록 4), 외국원조 및 급식비지원 현황(부록 5), 학교급식 형태 및 정부의 지원(부록 6), 학교급식 연구 및 시범·연구학교 현황(부록 7) 및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부록 8)과 교육부 정책용역연구 과제 목록(부록 9), 중앙정부의 학교급식정책 담당부서 및 담당자(부록 10)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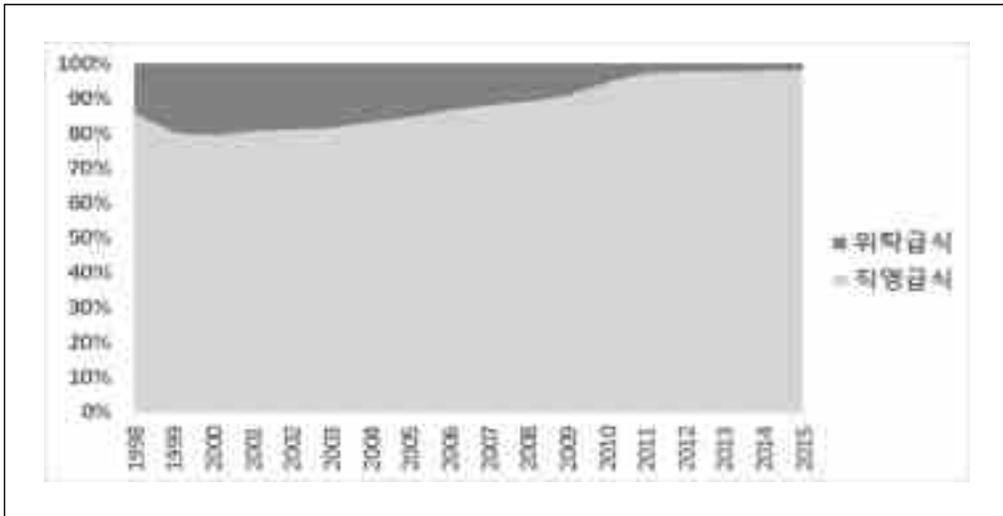
지난 63년간의 학교급식 관련 통계자료 중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72년까지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급식은 전국 초등학교의 극빈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후 1977년까지는 급식학교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연도별 학교급식 실시율(전국의 학교수 대비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수의 비율) 변화를 1978년부터 [그림 VIII-1]에 제시하였다.



[그림 VIII-1] 연도별 학교급별 학교급식 실시율(197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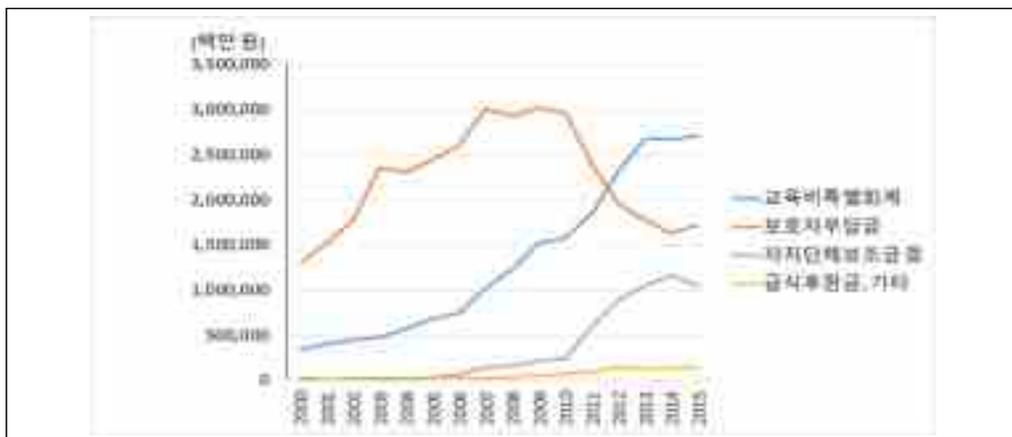
1990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했으나 이러한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2000년, 2003년부터 거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초등학교는 2006년, 중학교는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1978년부터 학교 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부터 위탁급식이 허용되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다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7년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직영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었다. 학교급식 위탁률(전체 급식학교수 대비 위탁급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수의 비율)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VIII-2]와 같다.



[그림 Ⅷ-2] 연도별 학교급식 위탁률(199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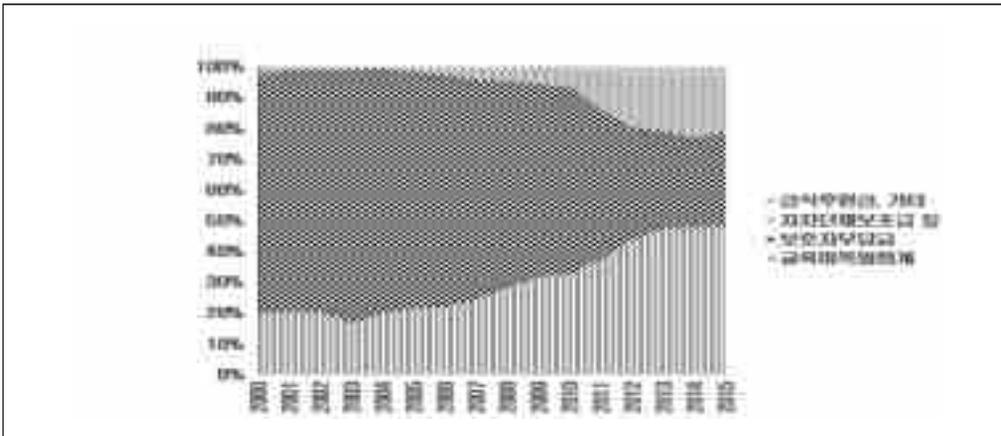
학교급식비 중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운영비는 학교설립 경영자 부담원칙이나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부담이 원칙이다. 이외에 시설·설비비와 우수식재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0년부터는 무상급식의 확대로 [그림 Ⅷ-3]과 같이 보호자의 부담금은 크게 감소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Ⅷ-3] 연도별 부담주체별 급식비(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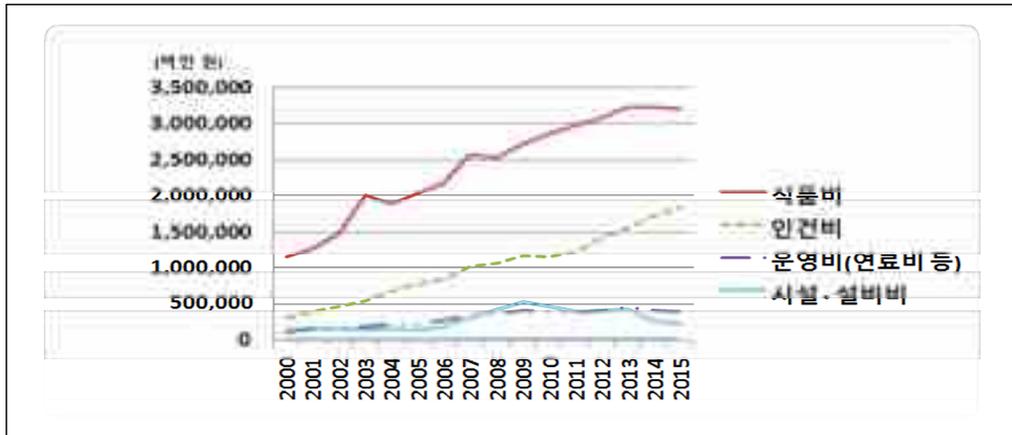


연 총 급식비는 2000년에 1조 6,750억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5조 6,341억 원으로 3.4배가 증가하였다. 재원부담 비율은 2000년에는 보호자 부담이 77.6%, 교육청이 20.0%였는데, 2015년에는 교육청이 48.1%, 지자체가 18.6%, 보호자가 30.7% 부담하였다[그림 V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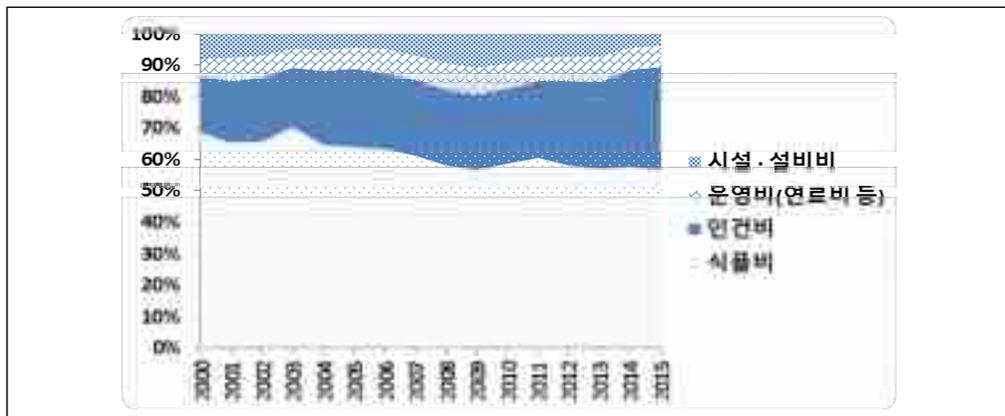
[그림 VIII-4] 연도별 부담주체별 급식비 부담률(2000~2015)

급식비를 구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식품비가 1조 1,440억 원, 인건비가 2,997억 원, 연료비 등 운영비가 956억 원, 시설비가 1,357억 원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식품비가 3조 1,917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1조 8,433억 원으로 약 6배가 증가하였다[그림 VIII-5].



[그림 Ⅷ-5] 연도별 항목별 급식비(2000~2015)

항목별 비율은 [그림 Ⅷ-6]과 같이 2000년에는 식품비가 전체 비용의 68.3%, 인건비가 17.9%를 차지하였지만, 2015년에는 식품비가 56.6%로 낮아지고 인건비는 32.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Ⅷ-6] 연도별 급식비 구성(2000~2015)



02 제언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황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을 기술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 특히 학교급식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에 수록된 과거의 비슷한 예들은 앞으로의 학교급식 발전의 방향성 정립을 도와줄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물을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발전사에 대한 완성본이라 말하기가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1978년까지의 발전사는 ‘학교급식백서’를 기본으로 기타 관련 자료와 인터뷰 결과를 이용하여 보충, 정리하였기에 그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과제의 공동 연구원인 조혜영 박사가 교육부의 학교급식 담당자였던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발전사도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 자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학교급식의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학교급식의 발전과정 조사를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 통계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러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조사, 정리,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 통계는 다소 일관성 없이 정리되어온 바, 역사적 관점에서 자료를 비교, 평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교육통계연보의 학교급식 관련 기본적인 통계 조항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이 연 5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합당한 수준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산출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둘 째, 앞에서 언급한 기본 통계를 포함한 학교급식 현황 자료를 매년 정리, 발표하여 연구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1976년부터 1989년까지 발간되었던 ‘학교급식현황’ 책자가 이 후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급식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이러한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현황자료를 매년 축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황자료의 요약본을 영어, 일어 등으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우리나라 학교급식을 제외국에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 째, 학교급식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식 사업 예산의 일정 부분을 평가 예산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제도는 주로 식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단편적 처방 차원에서 개선되어 왔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가 학교급식을 먹는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사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정부가 수행하되, 자료 자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 째, 학교급식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개발, 수행 단계뿐 아니라 평가 단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했던 과거의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급식 정책은 그 때 그 때의 현안에 따라 단기적 대응책으로 입안된 경향이 있어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지 못했음이 학교급식 선진화의 걸림돌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섯 째, 학교급식 역사박물관을 설립하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나마 남아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사진, 문서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연대기별로 정리한 후 학교급식 역사박물관에 전시, 보관한다면 학교급식의 대국민 홍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의 발전과정을 담은 본 연구보고서가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널리 보급할 수 있는 형태의 책자로 출판하는 것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감병호, 남철현, 신중규 (1992). 學校給食이 學生 體格과 體力 및 體質에 미치는 影響. 한국 학교보건학회지, 5(1), 111-119.
- 경기도교육위원회. 1984년도 학교급식 관리 지침.
- 경기도교육청 (2011).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2012). 대한민국 최초 자활급식학교 산실 보도자료. 2012년 3월 16일자
- 곽동경 외 (1999). 학교급식의 HACCP 제도 도입 및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보고서.
- 교육부 (1991). 1991년도 학교급식 관리지침.
- 교육부 (1991). 특수학교 전면급식 실시 계획, 내부자료.
- 교육부 (2007). 연도별 학교급식 확대현황(1992-2006), 내부자료.
- 교육부 (2014).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세부요령.
- 교육부 (2014).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모범사례집.
- 교육부 (2016). 학교급식 기본방향(1993-2016), 내부자료.
- 교육부 (2016).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방안
-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통계연보(1991-2015).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학교급식 정책방향, 2001 학교급식 연수회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 공청회.
- 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2007~2011).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법령 해설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3). '12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김명호, 백완기, 김영옥, 진행미 (1978). 學校給食의 制度化 研究. 최신의학, 21(3), 86-106.
- 김명호, 이원덕, 김영옥, 김문제 (1976). 한국에 있어서의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연구:자활급식 2년간의 관찰. 예방의학회지, 9(1), 95-108.



- 김창제 (1988). 都市型 學校給食 運營事例.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 47-49.
- 김홍배 (2004). 전남 나주시 학교급식 추진계획. 농협조사연구소(편),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성과와 과제. 서울: 농협조사부.
- 농촌영양개선연수원 (1997). 식생활 및 영양개선 교육평가보고서.
- 농협중앙회조사부 (2001).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1996).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모수미 외 (1975). 학교급식 표준식단 설정에 관한 연구. 문교부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문교부 (1973).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자료.
- 문교부 (1973). 학교급식의 개념,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자료.
- 문교부 (1975). 학교급식 시행지침.
- 문교부 (1978). 학교급식 식단작성 자료.
- 문교부 (1978). 학교급식실시 학교관계자회의 지시사항, 내부자료.
- 문교부. 학교급식현황(1977, 1979, 1980).
- 문교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문교통계연보(1970-1990).
- 박준교 (1987).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박준교 (1990). 學校給食 現況과 改善方向, 한국영양학회지 23(3), 213-218.
- 박희용 (1988). 學校給食效果와 制度改善에 關한 研究.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 86-117.
- 법제처 (1995). 학교급식의 경비부담에 관한 질의 회신, 내부분서.
- 서울교동국민학교동창회 (1994). 교동백년사(1894-1994). 서울교동초등학교.
- 성기항 (1972). 지난날의 학교급식과 오늘의 자세. 한국영양학회지, 5(2), 47-51.
- 성기항 (편저) (1970). 학교급식 요람. 교단사.
- 성기항 (편저) (1980). 사랑과 진실의 현장. 한국학교보건협회
- 윤덕진 (1979). 학교급식의 실태조사 및 급식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과학회, 22(3), 15-46.
- 이계임, 김성용 (2002). 학교급식의 식재료 사용실태 분석. 농촌경제, 25(1), 81-92.
- 이용욱 (1980). 學校給食制度 改善에 關한 研究. 보건학논집, 30, 43-56
- 장수경, 송순자 (1972). 學校給食改善에 對한 研究. 고려의기대잡지, 3(1), 53-71.



- 전라남도의회 (2003).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견. 전라남도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호 본회의 회의록.
- 제15대 국회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200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조혜영 (2014).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 만족도와 센터운영 사례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흥식 (2000). 학생중식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모델 개발연구. 교육정책연구.
- 지순 (1975). 문교부에서 연구되어 시행되는 식단에 준한 시설설비 및 조리공간의 넓이와 설계. 문교부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체육부 (1982). 학교급식협의회자료.
- 체육부 (1983). 학교급식 지도편람.
- 체육부 (1983). 학교급식현황.
- 체육부 (1986). 학교급식효과 분석, 내부자료.
- 체육부 (1989). 연도별 학교급식 실시현황(1982-1989), 내부자료.
- 체육부 (1989). 학교급식 관리지침(1983-1989).
- 체육부 (1990). 학교급식현황, 내부자료.
- 최영선 (2010). 학교급식비 지원실태분석 및 급식비 지원확대 방안. 경기도교육청 정책과제.
- 편집부 (1968). 學校給食의 現況과 그 全貌. 식품과학과 산업, 1(2), 2-5.
- 學校給食白書編纂委員會. (1978). 學校給食白書. 서울: 동 협회.
- 한국학교급식진흥회 (1988). 개포국민학교를 찾아서. 학교급식, 3(1), 84-86.
- 황보영숙 (1997). 학교급식 영양사과정, 식생활 및 영양개선 교육평가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
- 황윤구 (1982). 학교급식운영 사례 발표, 학교급식협의회자료. 체육부.



부 록

부록 1 학교급식관련 주요 문서

가. 1952년 제95회 국무회의 보고안건



단기 4285년(1952년)

문교부

1. 초등학교결식아동급식대책에 관한 건

총경비

3,705,684,000원(요예산조치)

내역

부식비 2,470,456,000원

(1인당 4,000원)

연료비 1,235,228,000원

(1인당 2,000원)

소요양곡수량 61,762석

* 1952. 11. 7(금), 제95회 국무회의 보고안건(경상남도청내 임시 국무회의실에서 개최)

* 국가기록원 자료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학교급식 발전과정조사(1952년)지역별자료

구분	4285년도재적학생수	4285년도4월현재결식아동수	한해풍수해로 인한결식아동 증가수	결식아동 총수	비고
서울	219,390	12,349	-	12,349	
경기	258,885	31,118	19,873	50,991	
충북	153,372	17,638	8,659	26,297	
충남	248,319	30,563	12,492	43,055	
전북	227,565	59,224	15,899	75,143	
전남	390,592	108,094	16,041	124,135	
경북	398,993	112,317	39,037	151,354	
경남	407,426	80,263	26,545	106,808	
강원	156,754	21,215	3,407	24,622	
제주	38,130	2,860	-	2,860	
계	2,339,626	475,661	141,953	617,614	
비고					

단기 4285년도(1952년) 초등학교 결식아동조사

구분 시도별	4285년도재적학생수	4285년도4월 현재결식아동수	한해풍수해로 인한결식아동 증가수	결식아동 총수	비고
서울	119,390	12,349		12,349	
경기	258,885	31,118	19,873	50,991	
충북	153,372	17,638	8,659	26,297	
충남	248,319	30,563	12,492	43,055	
전북	227,565	59,224	15,899	75,143	
전남	390,592	108,094	16,041	124,135	
경북	398,993	112,317	39,037	151,354	
경남	407,426	80,263	26,545	106,808	
강원	156,754	21,215	3,407	24,622	
제주	38,130	2,860	-	2,860	
계	2,339,626	475,661	141,953	617,614	
비고					



國民學校供食所需穀類及畜產物消費量表

道 別	道 民 總 數	1인당 1일 급식량	급식일수	1인당 급식양곡량	급식양곡 소요총수	비 고
서울	12,349	1 홉	100일	1 말	1,234.9 석	
경기	50,991				5,009.1 석	
충북	26,297				2,629.7 석	
충남	43,055				4,305.5 석	
전북	75,143				7,514.3 석	
전남	124,135				12,413.5 석	
경북	151,354				15,135.4 석	
경남	106,808				10,680.8 석	
강원	24,622				2,462.2 석	
제주	2,860				286.0 석	
계	617,614				61,761.4 석	
비고		1홉=180cc		1말=8kg	1석=80kg	

國民學校 結食아동 급식양곡 所需조사

시도별	구분	결식아동 총수	1인당 1일 급식량	급식일수	1인당 급식양곡량	급식양곡 소요총수	비 고
서울		12,349	1 홉	100일	1 말	1,234.9 석	
경기		50,991				5,009.1 석	
충북		26,297				2,629.7 석	
충남		43,055				4,305.5 석	
전북		75,143				7,514.3 석	
전남		124,135				12,413.5 석	
경북		151,354				15,135.4 석	
경남		106,808				10,680.8 석	
강원		24,622				2,462.2 석	
제주		2,860				286.0 석	
계		617,614				61,761.4 석	
비고			1홉=180cc		1말=8kg	1석=80kg	



나. 1956년 UNICEF 문건

급식프로그램을 위한 탈지분유

1956년 10월 17일

UNICEF에서 1953년10월부터 지원한 우유급식프로그램을 'Title II of PL 480' 아래의 OEC 프로그램에서 계속할 것을 제안한다. 해마다 18,000톤의 탈지분유의 NFDS 우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UNICEF 측에서는 1957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할 것이므로 한국 지원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Title II' 프로그램의 지원 품은 FY57의 마지막 분기 중에 도착해야 할 것이다.

UNICEF에서 아사아에서의 예산을 한국프로그램에 불균형적으로 큰 비율로 사용하고 있고 또 1953년에 한국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지원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다.

그동안 지원되었던 탈지분유는 USDA에서 UNICEF에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지원품의 해상운임은 UNICEF에서 해마다 800,000달러의 예산으로 지불하였다.

한국내에서 본 프로그램은 KCAC와 OEC에서 U.S aid programs을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ROK 정부채널을 통해 운영되어왔다. 현재 KCAC의 사회부에 소속되었던 UNICEF의 두 직원(한분은 국가대표, 다른 한분은 행정보조원)은 OEC의 지역개발부문으로 전보하였다.

현재 우유급식 프로그램은 150만 명에게 매일 40g의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우유급식 수령자는 어린이와 임신수유부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프로그램의 75%는 초등학교를 통해 실행되고 있고 나머지 25%는 도시권 중심지의 급식소와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본 프로그램의 장점을 수용하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유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음식이고 프로그램 초기에 많은 저항을 받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우유를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그들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아주 빨리 좋아하게 되었고 성인들의 저항도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많은 한국인들의 영양적인 수요, 특히 식이로부터의 단백질 추가섭취가 필요한 상황을 비춰볼 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확한 보건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급식을 실시한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개선된 건강생태가 여러 관찰보고서에서 보고되어왔다. UNICEF의 공직자들도 이 프로그램이 갖는 긍정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계속 진행될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급된 우유는 한국에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자원봉사기관을 통해 공 된 우유는 주로 병원, 진료소, 그리고 UNICEF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다른 급식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단체 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는 것을 꺼려한다.

OEC는 한국에서 우유급식을 ‘Title II of PL 480’ 프로그램하에 계속 진행하고 해상운임도 ‘Title II’ 예산으로 지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상운임은 한국프로그램 기금에서 FY57 사분기에는 200,000달러, FY58에는 800,000달러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프로그램 기금에서 이 부분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더 잘 활용되게 할 수 있게 ‘Title II’ 예산으로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바이다. 한국에서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유급식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FY57 사분기부터 우유지원품이 도착할 수 있는지를 빠른 시일 내로 확인 바란다.



* 국가기록원 자료



다. 1978년 문교부예규 제2호

문교부예규 제2호

1978. 8.31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학교급식관리

1. 종래의 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하게 된 학교급식은 당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학부모의 호응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은 학교급식발전을 위하여 밝은 전망임.
2.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학교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각 학교의 여건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가. 학교급식 하면 우선적으로 빵을 연상하고 있으나, 빵급식은 배식에는 편리하지만 취반(炊飯)에 비하여 그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시설비도 몇 배나 소요되나 제조에 간편하고 아동들의 기호도가 높은 밥으로 급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나. 교통사정으로 신선한 우유공급이 불가능하여 분유나 또는 우유(두유)를 급식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제조 급식케 할 것.

구분	분유	두유
품명 및 수량	① 전지분유 ② 1인1식당 20g	① 대두 ② 1인1식당 30g
제조방법	① 물소요량(1인당 180cc)을 솥에 끓인다. ② 그 중에서 1/5~1/7에 해당하는 양의 끓인 물을 다른 용기에 덜어내어 50℃ 정도로 식히고 밀봉을 끈다. ③ 물을 거품기로 저으면서 전지분유를 조금씩 넣는다. ④ 전지분유 전량을 넣어서 묽은 물과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흔들여 낸다. ⑤ 완전히 갠후 체로 거르면서 솥의 나머지 물과 함께 섞는다. ⑥ 아동의 기호에 따라 설탕, 소금을 조금 넣어도 좋다.	① 썩은 콩을 고른다. ② 고른 콩을 씻어 물에 불린다. 이때 온수인 경우에는 3~4시간, 냉수인 경우 6~8시간 담가둔다. ③ 불린콩은 1~1.5시간 정도 삶는다. ④ 콩이 뜨거울 때 설탕과 물, 볶은깨를 넣고 입자가 없어질 때까지 믹사로 간다. 이 때 물은 반드시 끓여서 사용토록 한다. 만약 맷돌로 갈 경우에는 되도록 곱게 갈도록 하고 조리된 후에 다시 한번 끓이는 것이 좋다. ⑤ 콩, 설탕, 물의 비율은 콩 25~30에 물 1컵과 설탕 큰술갈로 1~2술갈이다. 이때 소금을 약간 넣어서 맛이 좋아지게 한다.

- ① 두유를 급식하는 경우에는 분식에 있어서 두유 또는 그 제품을 제외함.
- ② 전지분유는 시중 상회를 통해 구입하느니 보다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서울중구 정동8)과 연락하여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품질 보장면에서 유리할 것임.

다. 부득이 빵을 급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배합 비율로 제조 급식할 것.

소맥분	이스트(생)	식염	쇼트닝	설탕	탈지분유
100%	2%	2%	4%	5%	3%

- ① 탈지분유의 구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첨가하지 않아도 무방함.
- ② 소맥분 품질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위해가 없는 개량제(이스트 우드)를 사용해도 무방함.



- ③ 원료유출의 방지와 배합비율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정배합 비율로 가공된 빵가루(식품 위생법상 허가된 가공품)을 사용해도 무방함.
- 라. 식품 구성의 응용은 기 배부한 식단작성 자료 부록을 참고하여 지역 생산품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며 식단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여러 가지 식품을 선택 교환토록 할 것.

끝.

문교부장관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차관 장 인 숙 전결

수신처 : 다 1-11

* 출처 : 학교급식 현황(문교부, 1980), 일부 오타를 국가기록원 자료를 확인하여 수정



라. 1979년 문교부예규 제3호

문교부예규 제3호

1979. 3.10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학교급식 실시상의 식중독사고예방 강화

1.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실시에 있어 제방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줄 사료되오나 특히 식중독 예방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별첨과 같이 세부사항을 시달하니 유루(遺漏)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 이러한 사고의 미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조속한 영양사 임용을 촉구하며, 영양사로 하여금 제 반사항을 책임 점검토록 하고, 영양사 임용이 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양호교사 또는 학교급식업무 담당하는 교직원 중에서 책임 점검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3. 별첨 지시사항의 이행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는 참고서적 등을 구득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식중독 예방에 임할 수 있도록 적의조치하시기 바람.

첨 부 : 학교급식실시상의 위생관리 지침. 끝.

문교부장관

수신처 : 다1-11

학교급식실시상의 위생관리 지침

단체급식 실시에서 음식물에 의한 사고로서 소화기 전염병이나 식중독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사람과 식품, 장소, 시설 등의 위생상의 주의가 소홀한데 기인하므로 학교급식실시에서 각별히 주의해야할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달함.

1. 급식용식품 구입관리상의 주의

- 가. 급식용식품 구입에 있어서는 가격, 수량과 아울러 신선도(제조일자 확인), 품질규격등의 감별과 산지 또는 제조업자등 선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포장의 파손, 용기의 위생적 관리를 확인하고 식품의 감별능력을 숙지 함양토록 한다.
- 나. 급식품 선정시 급식시설, 관리인원을 감안하여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 다. 생선 등 어육류, 달걀 등은 특히 신선도가 높은 것을 택하되 위생적으로 다루고 신용있는 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되 구입한 것은 가급적이면 당일 급식토록 하고, 부득이 보관을 요할 시에는 냉장고등에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라. 우유급식에 있어 시유(市乳)를 급식할 때에는 제조일자와 유효보존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 보다 신선한 것을 구입하되, 우유는 외기온도와 포장상태에 따라 보관에 유의해야 뒀을 감안 반입도중 관리과정을 반드시 점검하고 검식후에 급식토록 한다.
- 마. 분유를 학교에서 가공 급식할때에는 우선 분유구입에 있어서 그 상태의 이상우유를 확인토록 하고, 일단 구입후에도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특히 잔량이 남은 포대는 공기와 접촉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토록 한다.
- 바. 식품선택에 있어 부패되기 쉽게 가공된것 또는 독성이 나타나 인체에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종류는 제외하도록 하고, 가공포장된 것은 식품위생법규에 제시한 표시기준(별첨)의 제항목을 검토하여 구입토록 한다.
- 사. 부득이 날것으로 급식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제외하고는 당일 학교에서 가열 조리한 급식물을 급식하되 부득이 가공조리된 것(예 빵종류 등)을 구입할 시에는 구입업자의 신용도는 물론 제조시설 및 가공공정에 전문요원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한 후에 품질이 우수한 것을 구입토록 하고 반드시 검식한 후에 급식토록 한다.
- 아.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존 검식으로서의 급식한 식품 1인분을 매일 급식할 때 마다 완전한 기능을 가진 냉장시설(섭씨 5℃이하)에서 48시간이상 보존하여 사고 발생시의 원인 규명의 자료로 한다.

2. 급식품조리상의 위생관리

- 가. 구입한 식품은 깨끗하게 다루어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보관온도의 관리를 적절히 해야하며(우유, 육류, 계란등) 가급적이면 보관이나 저장을 오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조리중의 식품이나 반조리품 등 조리가 된 음식물은 상온상태에서 오랜시간 방치하여 부패 또는 변질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다음날까지 가는일이 없도록 한다.
- 나. 원재료를 취급할 때 오염된 손이나 도마 등 용기를 씻지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조리된 음식물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예로써 생선류 취급시에 표피, 아가미, 내장 부위가 주요 오염된 곳이므로 이를 먼저 제거한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먼저 사용한 도마와 칼, 손을 잘 씻은 다음에 사용토록 한다.
- 다. 식중독원인이 되기쉬운 식품은 육어류 및 그 가공품과 우유 및 유제품등이나 이를 원료로한 음식물들이므로 특별히 보관관리 취급에 유의토록 한다.
- 라.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식품취급을 하도록 한다.
- 마. 날 달걀을 사용할때는 껍질이 균에 오염되었을 경우가 많으니 이를 잘 씻은다음 사용토록 한다.
- 바. 분유를 급식하는 학교에서는 가공조리할 때 급식시간에 가까워지면 조리하도록 하고, 청결한 용기를 사용토록하고 조작할 때 손이 우유에 닿지 않도록 하고 물과 혼합후에는 뚜껑을 덮어 이물질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사. 식품을 조리할때나 조리된 음식물을 취급할때는 가능한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젓가락이나 집게등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손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손을 철저히 깨끗이 하도록 한다.
- 아. 조리된 음식물을 부득이 두었다가 급식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냉각시켜서(넓고 큰 용기에 담아 신선한 곳에서 식히거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식힌다) 보관토록 하고 급식할 때에는 반드시 가열하여 급식토록 한다.



- 자. 신선한 식품을 그대로 급식할 경우에는 조리할 식품에 사용한 기구(칼, 도마등)를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이들 기구들은 사용전에 뜨거운 물이나 소독액으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 차. 야채과일류는 농약, 기생충알 미생물들이 붙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토록 먼저 물로 씻은 다음 중성세제나 염소액으로 씻은 다음 약 10분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세제나 염소액의 잔량이 없도록 깨끗이 헹구도록 한다.

3. 급식품의 보관관리

- 가. 식품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을 장기저장식품(곡류, 통조림류, 건어물등)과 단기 또는 일시 보관 식품(서류(著類), 채소류, 김치류, 조리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되 식품종류에 따라 통풍, 환기, 채광, 온도, 습도조절에 유의하여 변질을 방지토록 한다.
- 나. 식품창고에 보관된 물자는 항상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장을 비치하고, 반드시 잠을쇠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 다. 식품은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않게 깔판이나 벽과 사이를 둘 수 있는 선반에 보관하고 식품 종류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을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라. 보관창고에도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충망등을 설치토록 한다.
- 마. 식품보관창고에 식품이 아닌 소독제, 세제, 살충제 살서제(쥐약)등이 같이 보관되지 않도록 한다.
- 바. 식품보관창고도 항상 정리, 정돈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4.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관리

- 가. 조리장의 환경위생은 항상 정리정돈 청결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리장은 채광, 환기, 통풍이 잘되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하수구덮개등을 설치하고 쓰레기통은 내수성자재로 된 것을 택하고 뚜껑이 있는 것을 비치하도록 한다.
- 나. 조리시설 내외의 배수구와 조리장에 쥐, 파리, 바퀴벌레등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창문과 출입구에 방서, 방충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한다. 특히 변소와 조리장이 인접한 곳에는 변소의 출입구에도 방서 방충 설비를 하도록 한다.
- 다. 조리대, 배식기구등의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후에 살균과 소독을 하여 보관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철저히 한다.
- 라. 대형용기 및 조리기계류는 열탕소독이 어려우므로 뜨거운물(80℃이상)과 세제로 씻어낸 다음 염소액(100ppm)으로 소독하고, 엮어서 건조시킨다. 합지, 소쿠리 등의 용기도 재료와 모양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세척을 하도록 한다.
- 마. 행주는 비누나 세제로 빨다음 가열 살균하고 건조시켜서 사용토록 하고 도마, 칼도 세제로 씻은 다음 60℃이상 열탕속에서 살균 또는 염소액에서 15분이상 소독한 다음 건조시켜서 사용하도록 한다.
- 바. 음식물을 취급하는 싱크대와 후처리를 하는 싱크대를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후에는 살균소독을 하도록 한다.
- 사. 냉장고구입시에 반드시 그 성능(냉장고의 용량과 위치별 적정온도 유지등)을 점검하여 구입토록 하고 냉장고내 식품 반입후 온도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비치 활용하고 냉



장고 보관식품일지라도 48시간(10℃이하에서) 경과후에는 오염된 식중독균등이 증식하므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여러종류의 식품을 보관할 경우 야채류, 육류등의 냉장고내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물의 보관에도 상호 오염방지를 위하여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고 야채류도 반드시 비닐에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아. 시설,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 설비의 전력이 학교의 인입전압과 상응하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연료를 택하되, 보다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도가 높은 것을 택하도록 한다.(저장창고 또는 비치장소의 사용전·후의 확인 철저)

5.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상의 주의

- 가. 단체급식에 있어서 위생관리중 종사원의 개인위생으로부터 오염되는 경향이 크므로 종사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나. 조리종업원(참여 학부모포함)은 소화기 전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보균자를 가려내도록 하고 만성설사병등 질환을 가진자는 조리, 배식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제하는 질병의 종류

- (1)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제1종전염병중 소화기전염병(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이질등)
- (2)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제3종전염병중 결핵
-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 다. 조리종사원 및 배식당번 아동은 손이나 피부의 상처 또는 화농부위의 유무, 손 및 손톱의 청결상태 및 개인위생 준수습관등을 점검토록 한다.

- 라. 상용 조리종사원에 대하여는 검변 기생충 구제를 위시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 마. 조리종사원이 식품검수, 식품원료다듬기 후와 용변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에 참여하도록 항상 지도하고 더러운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바. 조리종사자 및 배식당번 아동들에게 조리활동 또는 배식할때에 위생복 또는 작업복을 착용할 것이며 화장실출입등 작업을 중단하고 외출할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항상 청결여부를 점검토록 한다.

- 사. 급식시설을 비롯하여 종업원의 건강상태, 기구와 용기의 세척 및 살균상태, 상하수도의 관리상태, 오물처리상태등 위생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 아. 조리종사원의 위생지식을 넓혀주고 아동들의 위생관념을 익혀줄 수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한편,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자. 식품오염물의 매개등의 역할을 하는 쥐, 파리, 바퀴벌레등은 직접 간접적으로 식중독이나 소화기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발생원을 없애고 구충, 구서 및 정기소독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6. 음료수의 위생관리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공공시험기관의 검사받아 음료수의 적합여부를 검사 받은후 사용토록 하고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끓인물을 음료수로서 공급하도록 한다.

7. 유관기관 및 요원의 협조강화

보건소 관계관 및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케하여 평소 학교급식실시에 관한 자문과 협조를 얻도록 하고, 유사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식기류 살균과 소독에 관한 참고사항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모든 조리기구 및 급식용기는 반드시 살균된 안전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살균방법에는 열탕과 증기에 의한 살균방법과 염소액의 소독제에 의한 살균방법과 자외선 살균방법등이 있다. 우리 실정에서는 열탕으로 살균하는 방법이 제일 적합하나, 기구에 따라서는 열탕소독이 불가능하므로 염소소독 방법등이 손쉽다.

가. 일반적으로 식기류 조리기구의 살균방법으로 열탕이 적합하다. 살균온도는 물의 온도가 80℃ 정도에서 2분간 또는 끓는물(100℃) 속에서 30초정도면 적당하다. 그러나 물에 용기를 집어넣었을 때 온도가 떨어지므로 온도계로 온도를 확인 가열이 지속되도록 주의 한다.

염소제에 의한 살균은 보통 100ppm 염소소독액을 만들어 물속에다 식기를 5분이상 담가두었다가 깨끗이 세척한다.

○ 염소액 1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50%액을 물에 약 500배로 희석한다.

○ 염소액 2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50%액을 물에 약 250배로 희석한다.

나. 행주등은 좀더 강력한 소독을 할 경우는 염소액 200ppm을 쓰도록 한다.

다. 살균소독이 끝난 기구 및 용기는 물행주로 닦지 말고 그대로 건조시켜 깨끗한 곳에 보관토록 하되, 기구와 용기의 광택을 위하여 행주를 사용할 때에는 살균처리한 행주를 사용한다.

라. 기구와 용기의 보관시에는 먼지가 앉지 않도록 공기가 통하는 상자에 넣어 보관(특히 수저류와 식기류)하여 되도록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마. 식판등 급식기구를 보관하는데 여러개를 포개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물기가 증발되지 않아 도리어 냄새가 나고 살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균의 배양을 돕게 되므로 물기를 없앤 후에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 출처 : 학교급식 현황(문교부, 1980),



마. 1979년 문교부예규 제4호

문교부예규 제4호

1979. 5.11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시범급식학교 근무교원 가산점 부과

1. 급식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본 사업을 일반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학교급식 실시 학교를 유형별로 시범급식 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제5항을 적용토록 하였음.
2. 동 가산점 부과는 시범 급식학교 지정의 목적달성에 직접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우수시책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의 주관에 따라 대상자선정에 공명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그 대상범위를 시달하니 시행에 유루없도록 조치바람.
 - 가. 시범급식학교 교감
 - 나. 학교급식 실시 학급 담임교원 전원
 - 다.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인 교원. 끝.

문교부장관

수신처 : 다1-11

* 출처 : 학교급식 현황(문교부, 1980),

※ 문교부 예규 제4호(시범급식학교 근무교원 가산점 부과)는 1982년 2월 12일 폐지됨



부록 2 학교급식법령

가. 1981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 1981.1.29.] [법률 제3356호, 1981.1.29. 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1981.9.8.] [대통령령 제10460호, 1981.9.8., 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1983.2.25.] [체육부령 제2호, 1983.2.25., 제정]
<p>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또는 학급의 재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p>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의무교육대상학교 2. 교육법 제103조의4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3.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p>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①학교급식대상학교는 법 제4조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되, 미리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문교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범위를 확대지정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학교급식 실시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조 (급식학교의 지정) ① 체육부장관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 각호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중에서 학교급식 실시학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급식학교 지정신청에 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제5조 (급식시설·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시설·설비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리실: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내부벽과 	<p>제4조 (급식시설·설비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리실·식품보관실 면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리실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조리 및 급식설비·기구의 기준은



<p>학교급식법 [시행 1981.1.29.] [법률 제3356호, 1981.1.29. 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1981.9.8.] [대통령령 제10460호, 1981.9.8., 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1983.2.25.] [체육부령 제2호, 1983.2.25., 제정]</p>
	<p>바닥은 타일 또는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식품의 세척과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식품보관실:환기·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방충 및 방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갹의실:조리실과 인접한 곳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을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p>	<p>별표 3과 같다.</p> <p>4. 식품보관실 설비·기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6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①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p> <p>②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③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 (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학교급식은 토요일을 제외한 수업일의 주시시간(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석식시간)에 별표의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부제 수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학교의 장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시간과 영양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양기준은 별표의 영양기준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p> <p>③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 조리실(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조리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우유 청과류 등 학교조리실에서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으로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식품인 경우에는 완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p> <p>④급식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 (전담직원의 배치) ①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p>	<p>제5조 (전담직원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p>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학교급식법 [시행 1981.1.29.] [법률 제3356호, 1981.1.29. 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1981.9.8.] [대통령령 제10460호, 1981.9.8., 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1983.2.25.] [체육부령 제2호, 1983.2.25., 제정]
<p>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및 시·군의 교육장(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학교급식 전담직원은 급식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p>③제1항의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8조 (경비부담)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이를 부담한다.</p> <p>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당해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p>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비 2.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감독청이 인정한 경비 <p>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국민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군지역중 도서벽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에 있는 국민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문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p>제3조 (급식학교의 유형구분)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급식학교의 유형을 도서벽지형 급식학교·농어촌형 급식학교 및 도시형 급식학교로 구분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형 급식학교”는 영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의 급식학교를, “농어촌형 급식학교”는 동 조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급식학교를, “도시형 급식학교”는 동 조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및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의 급식학교를 말한다.</p>
<p>제9조 (생산품의 직접사용등) ①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기타 각종 생활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p> <p>②지방재정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식품비에 한한다)는 이를 도급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p>	<p>제8조 (도급경비집행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를 도급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 2.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24학급 미만의 초등학교 	



<p>학교급식법 [시행 1981.1.29.] [법률 제3356호, 1981.1.29. 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1981.9.8.] [대통령령 제10460호, 1981.9.8., 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1983.2.25.] [체육부령 제2호, 1983.2.25., 제정]</p>
	<p>제6조 (영양교육)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초등학교원 양성기관 및 초등학교원 연수기관은 교육과정에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9조 (급식시범학교 및 급식연구학교의 지정·운영)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은 학교급식 시범학교 또는 학교급식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 (학교급식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 및 학교급식 실시학교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교육위원회, 시·군교육장 및 급식학교에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당해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된다.</p> <p>③서울특별시·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시·군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급식업무 관련공무원, 식품영양학계인사 및 급식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급식학교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급식업무 관련 교직원, 학부모, 급식분야의 전문가 기타 지역 유지 중에서 각각 당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직할시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운영방침의 설정 2. 급식학교의 지정신청 3.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p>학교급식법 [시행 1981.1.29.] [법률 제3356호, 1981.1.29. 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1981.9.8.] [대통령령 제10460호, 1981.9.8., 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1983.2.25.] [체육부령 제2호, 1983.2.25., 제정]</p>
		<p>5. 학교급식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6.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②급식학교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2. 영 제3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3.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 결정 4. 급식활동이나 생산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5.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해당 급식비 총당방안 6.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 실시 대상자의 결정 7. 관련기관과의 협조 8. 기타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중요사항</p>
		<p>제5조 (급식실시지침) ① 체육부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12월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지침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부시행지침을 작성하여 1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교육구청장(교육구청이 없는 직할시의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급식학교의 장)에게, 도의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각각 시달하여야 하며, 교육구청장 및 교육장은 1월말일까지 이를 급식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① 교육감은 매년 12월말일 현재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다음 해 1월말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학년도의 학부모 부담경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과 전학년도의 학부모 부담경비의 내역 및 사용실적을 3월말일까지 당해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작물재배등 당해학년도의 생산활동 계획 및 생산품의 사용계획과 전학년도의 생산활동 실적 및 그 생산품의 사용실적을 3월말일까지 당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급식학교의 감독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 급식학교의 학교급식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p>



나. 2006년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p>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p>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p> <p>3.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p> <p>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p> <p>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p> <p>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p>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p> <p>③위원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시·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6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기준 등</p>		
<p>제6조 (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장 : 교실과 떨어져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p>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기계·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p>



<p>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p>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2. 식품보관실 : 환기·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방서(防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p> <p>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p> <p>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p> <p>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 상담</p> <p>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p> <p>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p>	
<p>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 (급식운영비 부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p> <p>2. 종사자의 인건비</p> <p>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p> <p>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③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p>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p>	<p>제10조 (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2호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산어촌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p>	
<p>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p>		
<p>제10조 (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p>제11조 (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p>



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
		<p>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p> <p>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p> <p>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p> <p>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p>
<p>제12조 (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p> <p>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p>
<p>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p>		
<p>제14조 (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p>		
<p>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p>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p>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p>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 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p>	
<p>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3. 「축산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p>		<p>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조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p>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
<p>품질인증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p> <p>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p>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p>		
<p>제4장 보칙</p>		
<p>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 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p>	<p>제14조 (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 	<p>제8조 (출입·검사 등) ① 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p>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p>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공무원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7조 (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p>		<p>제10조 (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p>



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
<p>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p>		<p>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2조 (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p>제5장 벌칙</p>		
<p>제23조 (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p>학교급식법 [시행 2007.1.20.] [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7.1.20.]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p>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25조 (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5조 (관계공무원의 교육)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6조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다. 학교급식법령 제·개정 주요사항(1981~2015)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법률 제3356호, 1981.1.29.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 -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 ○ 학교급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 기타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 급식시설·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인접학교와 시설 공동 가능 ○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함 -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 -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한 급식관리 ○ 전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을 실시 학교에 학교급식전담직원 배치 - 교육청에 학교급식업무 전담위해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배치가능 ○ 경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시설·설비비와 운영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 - 그외의 급식경비는 학부모 부담 원칙이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 생산품의 직접사용 가능 	<p>〈대통령령 제10460호, 1981.9.8.,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실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의견을 들어 문교부장관이 지정 - 문교부장관은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확대 - 급식학교 지정시 시·도간 균형 유지 ○ 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영양기준 설정 - 학교급식은 수업일(토요일 제외) 점심에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제공 - 학교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 - 학교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청의 승인 얻어 완제품 제공 가능. ○ 학교급식소의 시설·설비 기준 설정 ○ 전담직원으로 영양사면허 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 보조직원 배치 가능 ○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초등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 교육과정에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 급식경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설립경영자 부담 :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 학부모 부담 : 식품비와 감독청이 인정한 학교설립경영자 부담 이외의 운영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지역 국민학교의 학부모부담 경비 • 농어촌지역 국민학교의 학부모부담 식품비의 3분의1과 그 외 경비 • 빈곤가정 학생의 급식비 ○ 급식시범학교 및 급식연구학교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 ○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직할시 교육위원회, 시·군교육장 및 학교급식 실시 학교에 설치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법률 제3540호, 1982.3.20.,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 문교부 기능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체육부로 이관 ○ 학교급식법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개정 	<p>〈대통령령 제10767호, 1982.3.20.,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법의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개정 ○ 제7조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으로 개정 	<p>〈체육부령 제2호, 1983.2.25.,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학교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의 급식학교 지정 신청에 의해 체육부장관이 지정 ○ 급식학교의 유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형 급식학교·농어촌형 급식학교 및 도시형 급식학교로 구분 ○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세부기준 설정 ○ 체육부장관은 매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당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부시행지침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시달, 각급 학교에 통보(1월 20일까지) ○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 - 위원장은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 -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운영방침의 설정 • 급식학교의 지정신청 •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 급식학교 급식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 급식운영관련 감독청의 승인 사항 •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 결정 • 급식활동이나 생산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해당 급식비 충당방안 •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 실시 대상자의 결정 ○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매년말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다음해 1월 말일까지) - 급식학교의 장은 당해학년도의 학부모 부담경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과 전학년도의 학부모 부담경비의 내역 및 사용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3월말일까지) - 급식학교의 장은 당해학년도의 생산활동 계획 및 생산품의 사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용계획과 전학년도의 생산활동 실적 및 그 생산품의 사용실적을 감독청에 보고(3월말일까지)
	<p><대통령령 제11362호, 1984.2.25.,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지원 기준이 획일적으로 구분되고 있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기위함 ○ 제7조 제3항 경비지원기준 중 “도서벽지지역 초등학교”를 “도서벽지지역 초등학교 및 학생전원의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같은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초등학교”로 확대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학생전원의 7할 이상 ---”으로 확대 	<p><체육부령 제7호, 1984.3.5.,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급식학교 유형 조문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7조제3항제1호 급식학교 : 도서벽지형급식학교 - 동조동항제2호 급식학교 : 농어촌형급식학교 -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급식학교 : 도시형급식학교
<p><법률 제4183호, 1989.12.30.,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이관 ○ 학교급식법 제4조제3호중 “체육부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개정 	<p><대통령령 제12927호, 1990.2.12.,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의 “체육부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체육부령”을 “문교부령”으로 개정 ○ 제5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를 “식품위생법 제37조의”로 개정 	
	<p><대통령령 제13186호, 1990.12.22.,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실시학교 지정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문교부장관이 지정 ⇒ 시·군·구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교육장이 지정하도록 변경 ○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것을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급식전담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면허 받은자 ⇒ 1회 급식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인 학교 : 영양사 • 50인 미만인 학교 : 영양사 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자격 있는 자 • 400인 이내에서 2개교이상 공동관리 가능 •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직원 배치 가능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법률 제4268호, 1990.12.27.,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교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됨 ○ 학교급식법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 	<p><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의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개정 	
		<p><문화체육부령 제6호, 1993.8.10.,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부에서 관장하던 학교급식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법시행규칙 폐지
		<p><교육부령 제637호, 1993.8.10.,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부령에서 달라진 점 ○ 학교급식 실시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지침 시달 ⇒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지침 시달 - 교육감은 시달한 지침을 1.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이 시행령에 규정 ⇒ 시행규칙으로 규정 ○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당연직 ⇒ 위원 중에서 호선 ○ 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 연간보고 ⇒ 반기보고
<p><법률 제4593호, 1993.12.10.,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 ○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학교급식 시설·설비 등 학교설립 경영자 부담 경비를 학교급식후원회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p><대통령령 제14283호, 1994.6.17.,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급식실시학교 지정시 시·도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시·군·구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명칭 변경 ○ 영양관리기준을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다시 대통령령에서 정함.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학교의 장이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급식시간과 영양기준을 따로 정할 때 그 영양기준은 별표의 영양기준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기능, 임원등, 임원의 선임과 임기, 이사회, 전체회의, 후원금 모집등, 회계등, 운영세칙 규정(제4조의2 내지 제4조의10 신설) ○ 학교급식전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자질향상 등 필요한 경우 교육부령에 따라 연수 가능(신설) 	<p><교육부령 제658호, 1995.2.6.,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됨(1994.6.17. 대통령령 제14283호)에 따라 관련규정 제8조를 삭제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후원회의 급식경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 경비(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급식경비 중 학생전원의 7할이상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과 같은 생활여건에 처하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던 초등학교를 교육감이 인정하도록 함 	
	<p><대통령령 제14569호, 1995.4.6.,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요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업일에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종래 토요 수업일은 제외) ○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급식시설·설비 설치비 부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를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로 개정 	
	<p><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명칭 변경 	
<p><법률 제5236호, 1996.12.30.,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고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는 급식의 실시가 어려우므로 현행 법령 개정 필요 ○ 학교외의 장소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 설치·운영 가능 ○ 위탁급식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해 급식시설을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 실시 가능 - 위탁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미구성된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 단, 초등학교는 위탁급식 실시하고자 	<p><대통령령 제15361호, 1997.4.29.,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이 급식실시학교 지정시 미리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을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의 급식시간과 영양기준 등은 종전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영양기준, 급식횟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위생 및 안전점검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실시 해야함 ○ 위탁급식시 학교급식공급업자도 1회 총 급식학생 50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두고, 50인미만인 경우 영양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자를 	<p><교육부령 제693호, 1997.5.13.,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갖추어야할 급식시설·설비 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위탁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시설 - 운영위탁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시설 ○ 위생 및 안전점검 점검자 및 시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 교육장, 교육감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 대통령령에서 교육부령에 위임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연수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연수 -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계획한 연수 ○ 급식현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하는 급식현황 보고만 존치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하는 경우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 ○ 학교급식전담직원은 급식학교에 두도록 한 것을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두도록 함 ○ 설립경영자 부담원칙인 경비중 일부를 학부모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p>두도록 함. 이들은 학교의 학교급식전담직원 업무중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업무는 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경영자 부담원칙인 경비중 일부를 학부모도 부담할 수 있는 경비는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로 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위탁급식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지역 : 학부모 부담경비 - 농어촌지역 : 학부모 부담경비의 1/3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위탁급식의 계약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급식제도 도입에 따라 급식현황 보고 별표서식 개정
<p>〈법률 제5438호, 1997.12.13.,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로 바뀐 것 반영 		
<p>〈법률 제6012호, 1999.8.31.,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학교급식대상의 근거조항이 교육법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바뀐 것 반영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학교급식법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은 급식대상 학교의 학생중 수업일 결식아동(급식지원대상학생)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 - 방학기간등의 급식지원대상학생의 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 요청 가능 - 이들의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 		
<p>〈법률 제6400호, 2001.1.29.,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제4조의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개정 	<p>〈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개정 	<p>〈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대통령령 제17971호, 2003.4.22., 타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의 근거 조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관련조항으로 바꿈 	
<p>〈법률 제6935호, 2003.7.25.,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 제7조 “전담직원의 배치”를 “영양교사 등의 배치”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 배치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2006.3.1. - 종전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 가능 	<p>〈대통령령 제18188호, 2003.12.30.,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제5항 신설) 	
<p>〈법률 제7962호, 2006.7.19., 전부개정〉</p>	<p>〈대통령령 제19837호, 2007.1.19., 전부개정〉</p>	<p>〈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1.19., 전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을 제5장제25조로 규정 (종전 11개 조항) ○ 학교급식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추가 ○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치·운영하는 공동급식 배제 - 위탁급식에 대한 용어의 정도의 삭제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해야함 ○ 학교급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특수학교 통합 규정 ○ 학교급식관련 위원회 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의무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종전의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조항 삭제 : 초·중·고 전면급식 실시로 확대지정 등 필요성 없어짐 ○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 제공 원칙 -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 ※ 학교급식은 전부위탁급식제도는 폐지되고 직영급식 원칙이 되었는데,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조항 (종전 제3조제3항은 삭제) ○ 종전 제3조의2 (위생 및 안전점검)은 개정법률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출입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개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변경보고 기일 규정(신설) -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 보고(학교장 → 교육감(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보고받은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기준을 정함 - 냉장·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기계·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함 ※ 종전의 조리실·식품보관실의 면적기준은 규정하지 않음 ※ 위탁급식제도 폐지로 종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규정 삭제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 별표 2 -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가능 <p>○ 급식시설·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공동급식 시설과 설비 설치관련 근거 삭제 <p>○ 학교급식후원회제도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발전기금 <p>○ 영양교사의 배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학교에 영양교사 이외에 조리사 배치근거 마련 <p>○ 급식경비부담을 구체화(중전, 령에 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시설·설비비 :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 급식운영비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 원칙,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자 부담 가능 - 식품비 : 보호자 부담 원칙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 경비 지원 가능 ※ 학교급식후원회 부담 근거 삭제 <p>○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의 학생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p>〈학교급식 관리·운영조항으로 식재료,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 규정(중전, 영양과 위생에 대해서만 규정)〉</p> <p>○ 식재료(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에 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함을 명시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p>○ 영양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뿐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함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도 보고 <p>○ 교육감 소속하의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 임기 : 위촉위원은 2년 ※ 중전의 교육감 소속하의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의 위원회는 삭제(학교의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하도록 일원화함) <p>○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장에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갖출 것 추가 - 급식관리실 갖출 것 규정 ※ 학교급식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전 영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10 조항 삭제 <p>○ 영양교사의 직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업무에 안전·작업관리업무 명문화 ※ 중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의 영양사 배치기준 삭제(1회 50인 이상학교 배치, 2개학교 이상 공동관리 등) ※ 중전 제5조제6항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 학교급식전담 직원의 연수관련 사항은 영 제15조 관계공무원의 교육 조항으로 규정 <p>○ 급식운영비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전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모품비 등은 학부모부담 경비였으나, 개정규정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인 급식운영비로 규정 - 학교설립·경영자는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함을 명시 <p>○ 급식비 지원기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p>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활용 가능</p> <p>○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 별표 3 - 식단작성시 고려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 • 곡류,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등 다양한 식품 사용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 사용 지양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 •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p>○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 별표 4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음 <p>○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p>○ 출입·검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위생·안전관리기준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 가능 -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 가능 <p>○ 수거 및 검사의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검사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p>○ 행정처분의 요청 등</p> <p>○ 과태료의 징수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전의 교육감 소속하의 학교급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종전 대통령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전과정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은 시행규칙에 ○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 강화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업무의 전부위탁 배제. 일부업무 위탁은 학공운영위원회 심의거처 가능 -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은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교장, 급식관계직원, 학교급식공급업자의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과 급식관계직원은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급표시, 품질인증표시,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사용 금지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 그 외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규칙 준수 ○ 학교급식 운영평가(신설) ○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등의 권한 규정 ○ 출입·검사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요청 가능 ○ 학교장,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징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 양벌규정 ○ 학교급식공급업자체 대한 과태료 규정 	<p>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은 종전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확대, 지원액 명시하지 않음 ※ 위탁급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탁급식의 지원기준도 삭제 ○ 업무위탁 범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하게 전부위탁급식을 할 경우 규정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 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이외에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도 대상으로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관계공무원의 교육 ○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제6조 (영양교육)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초등학교원 양성기관 및 초등학교원 연수기관은 교육과정에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 	<p>식위원회관련 규정은 영에서 규정하고, 교육장과 학교장 소속하의 위원회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p>
<p>〈법률 제8354호, 2007.4.11.,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제16조 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법률 제8655호, 2007.10.17.,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관련 인용 법률의 명칭 개정 		
<p>〈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이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개정 	<p>〈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개정 	<p>〈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개정
<p>〈법률 제8914호, 2008.3.21.,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제23조관련 조항 개정 		
	<p>〈대통령령 제21328호, 2009.2.25.,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2조제2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사항 제3호의 식재료 품질기준을 원산지, 품질등급 등 구체화하고, 제8호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식재료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우유급식 저변확대를 위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12.21. 공포, 2008.6.22.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제18조 중 과태료 부과수절차관련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와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제18조 전문개정 	<p>〈교육과학기술부령 제29호, 2009.2.25.,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별표 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도 변경으로 C 등급이상 ⇒ 2등급 이상으로 조정 - 전통식품 근거 규정 : 농산물가공육성법 폐지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법률 제8796호, 2007.12.27. 공포, 2008. 6.28. 시행)
<p>〈법률 제9432호, 2009.2.6.,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에서 조리사를 두는 식품위생법상의 근거조항 변경 	<p>〈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제11조 식품위생법시행령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 	
<p>〈법률 제9759호, 2009.6.9.,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 폐지됨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농산물 품질인증관련 근거조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전 단계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p>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p>		
<p><법률 제10070호, 2010.3.17., 일부개정> ○ 법 제24조 단서를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p> <p>○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절차와 강제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p>	<p><대통령령 제22233호, 2010.6.29., 일부개정> ○ 제17조의 초·중학교의 지도·감독권 한만 교육장에게 위임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 ※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급식시설 위생관리업무는 분청이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획일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각 시도가 실정에 맞게 분청과 지역교육청의 권한 배분을 조례로 달리할 수 있도록 함</p>	
<p><법률 제10310호, 2010.5.25., 타법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명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명 변경</p>		
<p><법률 제10386호, 2010.7.23., 타법개정>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법 제9조제2항제3호)</p>	<p><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타법개정>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법 제10조제2항)</p>	
<p><법률 제10885호, 2011.7.21., 타법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관련 근거조항 개정</p>	<p><대통령령 제22843호, 2011.4.5., 일부개정> ○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를 전문개정 ※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p>	
<p><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4조제1호 관련 근거조항 변경(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p>		
<p><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제10조2항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변경</p>	<p><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p>	<p><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p>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변경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
<p>〈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법 제19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개정) 	<p>〈대통령령 제24876호, 2013.11.22.,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식품 고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다”항 신설 	<p>〈교육부령 제14호, 2013.11.22.,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식품 고지 의무화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고지방법 및 표시방법을 정함(제7조제2항 신설)
		<p>〈교육부령 제61호, 2014.12.31.,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신설 : 제3조 및 별표 1의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해야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p>〈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으로 별지 제4호 서식(학교급식감시원증), 별지 제5호 서식(수거증) 및 제7호 서식(확인서)을 각각 별지 127부터 129까지로 함



부록 3 학교급식 주요 연혁(1953~2015)

1953.	3	캐나다정부 원조의 탈지분유를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용으로 배정
	6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에서 전재아동의 구호를 위해 탈지분유 지원 시작 (1953.10~1957.6)
	12	정부는 외국원조기관과 제휴하여 장기 학교급식계획 수립
1955.	2	문교부에서 학교급식비 책정(학교급식 운영개선업무는 교육부가 담당, 외원양곡 관리 및 조작은 보건부에서 담당)
1957.	7	UNICEF 사업 종료 및 CARE(미국세계민간구호협회)가 학교급식 지원시작(1957.7~1966.6)
1961.	7	CARE에서 학교급식용 옥수수가루 지원 시작
	10	급식연구학교 10개교 지정(시·도별 1개교)
1962.	1	급식사업을 문교부 주요사업으로 채택 추진. 급식비 증액 급식연구학교 10개교 지정(시·도별 1개교)
1962.	2	서울시 우유조합에서 일부학교대상 우유급식 시작
1963.	5	부산에서 일괄 제빵(옥수수빵) 급식 실시
1964.	4	서울 등 20개 도시에서 일괄 제빵 급식
1964.		국고보조 중단으로 우유급식 중단
	11	CARE 본부장(Harold S. Miner) 및 사무총장(Frank L. Goffio) 내한
	12	제1차 전국 급식 담당 실무자 회의 개최(서울)
1965.	6	제2차 전국 급식 담당 실무자 회의 개최(부산)
1965.	7	제4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CARE 식유(미공법 480호 Ⅲ관) 물자도입 결정. CARE에서 학교 급식용 밀가루 지원 시작
1966.	4	제빵급식 실시요령 시달
1966.	7	CARE 지원 종료 및 USAID(미국 국제개발처)에 의한 지원시작(1966.7~1972.6), 정부사업으로 실시. 학교급식용 식용유 지원시작
	12	전국 학교급식 담당 실무자 회의 및 세미나 개최(서울)
1967.	3,30	학교보건법 제정·공포(법률 1928호) - 제12조에 초등학교 아동에게 급식실시 규정
	7	전국 학교급식 담당자(과장) 회의(대전)
	11	시범학교 설치 운영 시달
1968.	3	전국 학교급식 담당 실무자 회의 개최(광주)
1968.	4	각 시·도에 17개 시범학교(급식) 설치
	10	서울에서 수익자부담의 학교급식 시작
1969.	4	미공법 480호 제Ⅱ관 학교급식 계획 수정
	5	전국 체육 보건 급식 담당 주무자 회의(서울)
1969.	7	학교급식과 신설(대통령령 3990호) 초대 과장 송복주
1970.	1	학교급식담당관실로 개편(대통령령 4535호, 1970.1.26.) 초대담당관 최동열
	3	학교급식양곡 관리 및 조작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문교부로 완전 인수



		전국 급식 실무자 교육 실시
	9	국고보조없이 자부담으로 우유급식 재개
1971.	3	학교급식시범학교 증설(4개교) ⇒ 총 21개교
1972.	2	학교급식 고문관실 신설(고문관 M.H.Doss) 부임
	7	외원급식양곡 지원종료(승인된 급식기간 : 1973.6.30.)
	10	자활급식실험학교(2개교) 설치(경기, 전남)
1973.	3	학교급식과로 개편(체육국) (대통령령 6531호)
	5	자활급식실험학교(9개교) 증설(추가 설치) ⇒ 총 11개교
	5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 개최(1973.5.9~5.11)
1974.	3	각도에 자활급식실험학교(11개교) 증설 ⇒ 총 22개교
	3	자활급식 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회 개최(1974.3.26~3.30)
	11	학교급식 고문관(M.H.Doss) 이임
1975.	4	자활급식실험학교(11개교) 증설(신설) ⇒ 총 33개교
	7	학교급식 양곡관급제도 폐지
1976.	3	자활급식실험학교(22개교) 증설 ⇒ 총 55개교
	9	도서벽지학교 조리급식 시작(700개분교-시설비 30만원)
1977.	1,14	학교급식규칙 공포(문교부령 제401호)
	1	도서벽지 자체조리급식교 증설(212개교-시설비 100만원)
	5	도시·시범급식 학교장 연수회, 부교육감회의시 급식영화 상영
	5,27	UNICEF 물자(탕비기, 대형믹서)를 도시시범학교에 배정
	6. 3	경기남곡초등학교 자활급식학교 급식영화 상영(T.B.C-TV)
	9. 6	학교급식, 공동조달되는 가공식품의 명세와 가격기준 개정
	9,16	서울시 급식학교 식중독사고 발생(이환자 53개교 5,575명)
	9,21	학교보건위원회 개최
	9,22	일반급식(유상급식)제도 폐지, 우유급식 중단
	9,27	자활급식실험학교장 협의회(협천군교육청)
	9,28	경남 송산국민학교 자활실험학교 연구발표
	11. 8	학교급식에 대한 심포지움(한국과학기술연구소 주최)
	11,10	도서벽지 자체조리급식학교장 연수회
	11,11	남곡국민학교 자활실험학교 연구발표
	11,15	학교급식에 대한 공청회(기·장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1978.	1,12	학교보건위원 및 전문가회의(학교급식개선)
	3. 1	학교급식제도 개선(자체조리원칙)
	3,21	TBC-TV 남곡초등학교 학교급식현황 방영(인간만세- 도시락없는 학교)
	3,27	자체조리급식학교 실무자 연수회(제1차) 3,27-3,30
	4,17	자체조리급식학교 실무자 연수회(제2차) 4,17-4,20
	4,26	학교보건업무 인수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5.10	50개 보호급식학교에 UNICEF에서 조리기구, 농기구 지원
	5.16	사립국민학교 학교급식에 참여(이화여대부국)
	6. 5	학교보건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제정안 심의
	6.12	학교급식백서 발간
	6.16	학교급식법 문교부안 확정하고 관계부서에 의견 조회
	7.24	학교급식 제빵기술교육 실시(7.23-8.3)
	8. 1	급식학교의 영양사를 상용잡급으로 책정(3종)
	7-8	11개 시·도교육위원회 주관 관내 급식학교장 연수회 개최
	8.25	학교급식법안 국회상정보류 결정
	8.31	학교급식관리(문교부예규 제2호) 시달 : 밥급식 방안 강구
	10.24	서울교동국민학교 급식 연구발표(서울시 지정)
	10.31	전북정남국민학교 급식 연구발표(문교부 지정) 학교급식실시학교관계자 회의(1978.10.31.-11.3)
	11. 3	충남반포국민학교 급식 연구발표(문교부 지정)
	11.23	학교급식규칙개정 공포(문교부령 제432호)
	11.29	'79년도 신설 급식학교장회의(이화여대, 2일간)
	12.26	학교급식, 학교보건관리지침 시달
1979.	3.10	학교급식 실시상의 식중독사고 예방 강화(문교예규 제3호) - 학교급식 실시상의 위생관리지침 시달 -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냉장고 설치비 배정(교당 36만원)
	3.19	학교급식과가 학교보건과로 개편(대통령령 9380호)
	3.28	학교급식운영자 연구협의회(시범급식학교 실무자, 3.28-30)
	4.24	학교영양사 실무협의회(4.24-27)
	5.11	시범급식학교 근무교원 가산점 부과(문교부예규 제4호)
	5.23	보건직 지방조직강화(행관 151-100)
	6. 5	영양정책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AID, 1979.6.5.-6.8)
	6.21	KBS-TV 충남공주반포초등학교 급식현황 소개(어린이시간 카메라출동)
	7. 7	MBC-TV 전남보성울어초등학교 급식현황 소개(" ")
	9. 8	충북영동 용화국민학교의 급식소 농약살포 사고발생
	12.1	우수시범급식학교 16교(시상금 10,500천원) 및 학교급식유공교직원(45명) 문교부장관 표창 장 수여
	12.5	교대 및 국립사대부국 학교장 학교급식운영연구협의회(12.5-12.8)
	12.21	학교보건위원회 개최
1980.	1	교대 및 국립사대부국 시범급식학교 증설(16교)
	2~8	시범급식학교 증설(15교)
	4.30	학교급식운영자 연구협의회(4.30-5.2)
	7. 1	교육대학 학교급식 세미나(7.1-7.3)
	7.21	학교급식담당교사 연수(서울대 가정대, 7.21-7.30)
	7.28	급식학교 보건직(영양사) 교육훈련(농촌영양개선연수원, 7.28-8.2)
	7.30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축산진흥기금 보조지원 결정(농수산부에서 문교부와 협의, 대통령 재가)



	12.16	우수시범급식학교 18교(시상금 11,600천원) 및 학교급식유공교직원(45명), 지역사회인사(35명) 문교부장관 표창장, 감사장 수여
1981.	1	일반국민학교에도 보조지원(우유급식 지정학교와 급식단가 차등적용)
	1.29	학교급식법 제정공포(법률 제 3356호)
	6.14	시·도보건계장 외국의 급식학교 시찰(일본, 대만, 6.14-6.22)
	7.20	학교급식 담당교사 연수(서울대 가정대, 7.20-7.29)
	7.27	급식학교 보건직(영양사) 교육훈련(농촌영양개선연수원, 7.27-8.1)
	8.10	급식학교 보건직(영양사) 교육훈련(농촌영양개선연수원, 8.10-8.15)
	9. 8	학교급식법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0460호)
	10.12	학교급식운영자 연구협의회(10.12-10.15)
	11. 2	학교보건과가 학교체육과로 개편
	11. 5	영양교육 지도서 발간
	11.18	우수시범급식학교 12교(시상금 12,500천원) 및 학교급식유공교직원(51명), 지역사회인사(46명) 문교부장관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1982.	1.1	급식학교 영양사를 보건직(7급)으로 배치(서울)
	1.2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관계관 간담회
	2.12	문교예규 제4호 폐지로 시범급식학교를 급식학교로 운영
	3. 9	급식학교 증설(2교)
		체육부 신설
	3.20	학교급식업무를 체육부 학교체육과에서 관장(우유급식 포함)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3540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0767호)
	4.26	급식학교 증설(5교) 서울시 연희, 백산, 공릉, 청구, 당곡국교
	5.20	급식학교 증설(1교) 서울시 경북국교
	6.17	영양교육자문위원회 개최(시범영양사업회)
	6.17	급식학교 운영실태 파악(충남 화곡교외 5개교 조사, 6.17-6.21)
	7.26	학교급식 보건반 연수(농촌영양개선연수원, 7.26-8.21)
	8.10	학교급식 담당교사 연수(공주교대, 8.10-8.20)
	9.28	급식 연구학교 발표(전남대촌중앙국교, 문교부지정)
	11. 4	급식학교 증설(1교) 제주도 서광국교
		' 82년도 학교급식운영연구협의회(12.7-12.10)
	12. 7	참석인원 : 180명(급식학교 교장)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가정대학)
	11.24	학교급식 홍보영화제작(즐거운 점심시간)
	12.10	우수급식학교 12교(시상금 1,250만원) 및 학교급식유공교직원(46명), 지역사회인사(44명) 체육부장관 표창 및 체육부장관 감사장 수여
	12.23	학교급식 영양과도 심의
	12.24	' 83 학교급식관리지침 시달
	12.31	급식학교 증설(3교) 경북(풍북·산동·유가국교)
1983.	2.24	급식학교 증설(1교) 전남(금산중앙국교)
	2.25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공포, 학교급식규칙 폐지(체육부훈령 제2호)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2.29	급식학교 증설(1교) 전북(중성국교)
	3. 8	' 82년 서울시 학교급식 효과분석 결과발표
	3.16	학교급식 확대실시 5개년 계획 발표
	3.30	급식학교 증설(5교) 서울(녹번국교·대동·석관·반포, 잠원국교)
	5. 9	급식학교 증설(2교) 강원도(덕두원국교), 전북(완주고남국교)
	5.27	급식학교 증설(1교) 서울(성동국민학교)
	8	학교급식현황 발간
	9. 5	급식학교 증설(3교) 서울(잠전·남사국교), 경북(축산향국교)
	9. 9	급식학교 증설(1교) 제주도(신례국교)
	10.10	급식학교 증설(1교) 경남(칠원국교)
	10.12	급식학교 증설(4개교) 전북(석교·상월·내월국교), 경기(관인국교)
	11. 1	우수급식학교 6개교(시상금 1,260만원) 및 학교급식 유공교직원(55명), 지역사회교사(41명), 체육부장관 표창 및 체육부장관 감사장 수여
		' 83년도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11.1~11.4)
	11. 1	참석인원 : 213명(급식학교 교장 및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 장소 : 체육부(교통연수원 대회의장)
	11.24	KBS스튜디오 830, 학교급식 방영(학교급식, 체력이 좋아졌다!)
	12. 1	' 84년도 학교급식관리지침 시달
	12.30	학교급식 지도편람 발간
1984.	2.21	학교급식확대 실시방안 수립·협의(5개년(' 85~' 89) 추진계획)
	2.25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362호)
	3.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체육부령 제7호)
1985.	8.28	학교우유급식 용량증량 및 단가인상(180ml→200ml, 113원→122원)
1986.	12.29	학교급식 표준식단 책자 발행
1987.	9.26	학교급식 표준식단 개발 유공자 표창(7명)
	12. 1	' 87년도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12.1~12.3)
		학교급식 확대를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
1988.	12	학교급식확대(19-09-04): 2000년까지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학교 70%, 도시지역학교 50%이상 실시
	12. 7	' 88년도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12.7~12.9)
1989.	10	학교급식을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주요업무로 심사분석 실시
	11.22	' 89년도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11.22~11.24)
	12.30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4183호), 체육부 폐지로 학교급식업무를 문교부로 이관(1990.2.13.)
1990.	1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사업 시작(농림수산식품부)
	2.12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2927호) 체육부장관 → 문교부장관
		국민학생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우유급식 전액보조(일반학생 보조 존속)
	9	대통령지시에 의하여 학교우유 보조급식지원 확대: 극빈아동 보조인원 (당초) 76천명→ (조정) 250천명
	12.22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3186호)
	12.27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변경(정부조직법 개정 제4268호)
1991.	2. 1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3282호)



	2. 5	경기도교육청, 소규모학교에 영양사 공동배치(1인 2교→18명, 36교)
	2.19	특수학교 전면급식 실시계획 수립
		학교급식용 정부미 공급확대(양조 27330-308)
	3.14	대상: 유치원 90g, 국교 120g, 중·고교 220g, 특수학교 200g 시기: 1991.3.15부터
	5.25	공동조리 급식학교를 최초로 지정(경기도, 공동조리교 6교, 비조리교 13교, 1991.12월 시설 설치 완료, 1992.3월 급식 개시)
	1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에 학교급식 확대계획 반영
	12. 2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12.2-12.4)
1992.	2.19	학교급식 발전방안 수립(' 92~' 96)
	3	공동조리 급식 전국 최초 시행 : 소규모 학교가 인접된 농어촌지역 4-5개교의 1,000명 내 외로 실시
	3. 9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제도개선과제로 "학교급식 제도의 확대방안" 보고
	3.17	학교급식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주최)
	7. 1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
1993.	1	학교급식 확대를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 : 초등학교는 ' 96년까지, 농어촌 중고등학교는 ' 98년까지 연차적 확대
	2.12	시도보건관계관 회의 : 제14대 대통령선거공약사항 이행, 예산절감을 위한 공동조리방식 등 강구
	6.10	신설국민 급식시설 설치 의무화(의무 81490-20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정·공포(교육부령 제637호)
	8.1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폐지(문화체육부령 제6호)
	10.18	서울 영중국민학교 농협급식 시범실시
	10.28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
	12.10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5236호) : 학교급식후원회제도 도입,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12.17	급식학교 병설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
		' 94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의무 81490-189)
1994.	5.11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874개교분 200억원 지원(경기도교육청에 전체의 27%인 5,411백만원)
	6. 2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
	6. 3	보건관계관회의 : 학교급식후원회 운영지침,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급식실시, 농협급식센터 연계 학교급식 확대
	6.16	시도 시설과장회의 : 초중고등학교 신설시 급식시설 설치 의무화
	6.17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283호) : 후원회운영관련
	8. 5	도시지역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실시방안 시달(학보 81490-259)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한 도시지역 중고등학교 급식 시범적 실시가능
	11.24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
1995.	2. 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교육부령 제658호)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식품위생법의 출입·검사 및 수거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됨(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 제42조제13항 개정(대통령령 제14532호))
	2.24	
	4. 6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569호)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10.9	급식학교 영양사 직렬변경(보건직을 식품위생직으로)
	11.28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
	12.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 제5064호) : 시·군 및 자치구청장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일부 부담 가능 규정
1996.	1.18	도시지역 중·고등학교를 학교급식 실시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 학교급식후원회 부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 등이 가능한 경우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22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교육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920호)
	3	학교급식 자율화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신한국당공약으로 채택 - '97년까지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급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4.19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정(대통령령 14981호) : 시·군 및 자치구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사업 보조 가능
	4.25	학교급식 전반기 연수회 실시(설악교육문화회관, 4.25-4.26)
	7. 2	학교급식 후반기 연수회 실시(경주교육문화회관, 7.2-7.3)
	10. 1	청담고등학교는 신세계(주)푸드시스템에 구내식당 위탁운영 위탁 상기업체가 학교부지에 식당 시설설비 갖추고 기부채납, 4년
	12.30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5236호) : 위탁급식 가능(의원입법)
1997.	3	중식지원사업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까지 확대 '97 초등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경기지역 특별지원(재정 81455-70)
	3.10	경기도 자체계획에 의거 '98년에 추진될 96개교분 교당 1억5천만원씩 144억원 특별교부금 지원
	3	중대부고, 엘지유통 위탁급식(업태:음식소매, 종목:집단급식)
	4.29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361호) :위탁급식 등관련
	4.17	학교급식 전반기 연수회 실시(충청남도 임해수련원, 4.17-4.18)
	5.1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교육부령 제693호) :위탁급식 등
	7.14	학교급식 후반기 연수회 실시(전라북도 학생수련원, 7.14-7.15)
	9	학교우유급식 방법조정 -초등학교: 195원/200ml(195원 이하 공급가능) -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유업체와 협의하여 자율 결정
	1997.	학교급식 운영평가
	12.3	시도관리국장 회의: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 학교가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계획 수립, 고3 도시락문제 해결방안에 역점
	12.27	학교급식 유공자 표창
1998.	1.21	시·도 보건관계관 회의 개최: 고3 급식 확대를 위해 '98년 1학기중 위탁급식 시범실시
	2. 4	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전국 80개 중·고교)
	3	초등학교급식 전면실시
	3.27	대구 신매초등학교 집단환자(세균성 이질) 발생
	4.21	민자유치를 위한 위탁급식 전문업체 협의회 개최 - 대생기업, 신세계푸드, LG유통, 제일제당, 완산케터링 참여
	4.22	「고등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시·도보건관계관회의 개최
	4.30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교육행정연수원)



5. 6	제21회 국무회의시 학교급식 확대(계획수립) 대통령지시 :고등학교 급식을 금년중 70%, 내년 전반기까지 전면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을 적극 독려할 것
5.14	기초자치단체에서 고교급식시설 경비를 지원 가능토록 행정자치부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합의 의뢰
5.19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급식시설 실태조사(5.19~5.21) - 자체조리급식, 공동조리급식, 위탁운영 등 형태별 조사
5.20	위탁급식 전문업체 방문 협의(5.29~5.21) - 교육환경개선국장의 2명, 제일제당, 대생기업, 신세계푸드, LG유통
5.27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고등학교급식 전면실시 방안 시달
6.10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6.23	교육환경개선국장, 관악구청장, 동작구청장 면담
6.24	교육부장관, 교육환경개선국장, 부천시장 면담
6.25	교육부장관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축하 및 급식경비 지원 협조서신 발송
6.26	교육부장관, 교육환경개선국장, 제주도지사 면담
7. 4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21	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시·도 보건·행정·시설과장 회의 개최(제주도)
8	학교급식위생 전문교육 실시(2주간, 시도교육청직원 50명)
8.27	고등학교 급식 확대계획 수립(교육부장관 기본결재) 및 예산지원
9.17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5,891호)
10.21	“운영위탁급식 시행요령 및 유의사항” 장관결재 및 시달
10	고교급식확대 추진실적 점검(16개 시도교육청 각 2개교)
10.24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나눔 바자회 개최(10.24-10.25)
10.31	시·도 보건과장회의 개최
12.30	국회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결식아동 실태파악을 위해 서울남향초등학교 방문
1999. 1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준칙 시달(지방재정과) - 조례개정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 관재계장 협의회 개최(' 98.10.20) 후속 조치
1.28	결식아동 중식지원 사업 실태조사(1.28-2.10)
4.30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학교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감면(법률 제5980호)
5.	학교급식 연수회(국가전문행정연수원)
6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 수립(장관보고)
6.22	시·도관계관 회의 개최(위생대책관련)
8.16	학교급식 위생 전문교육(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8.16-8.27)
8.31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6012호) : 중식지원 제도화
9	중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저소득층 지역 286교분 특별교부금 618억원)
2000. 3.29	시·도관계관 회의 개최(토·공휴일 중식지원대책관련)
3.31	문용린 교육부장관, 서울돈암초등학교 급식현장 방문
5.26	학교급식 연수회(경기도 수원 송원초등학교)
12.29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발, 인쇄 및 배포(전 급식학교)
2001. 6. 1	학교급식 연수회 개최(경남 덕유교육원 의령분원, 6.1-6.2)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9	WFP 학교급식 조사단 2명 내한, 학교급식 실태 파악
	10,10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합동 중식지원 워크숍 개최
2002	3,12	식품안전대책 협의회(국무조정실)
	5	세계아동영양포럼 참석(한국의 학교급식 소개) - 미국 미네아폴리스, 3명 참석(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5,23	학교급식 연수회 실시(전라남도 교육연수원, 5,23-5,24)
2003.	3,27	서울 위탁급식 9개교 식중독 발생 권오을 의원이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개정안 발의
	4.	식품안전대책 협의회(국무조정실)
	4,22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위탁급식영업 업종 신설(교육부 요구에 의해)
	5,22	학교급식 연수회(부산학생교육수련원, 5,22-5,23)
	6	영양교사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
	7. 2	시·도교육청 담당관회의(학교급식 위생·안전관련)
	8,29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 공청회 개최
	10	학교급식 해외연수(일본 자산지소관련, 영국 학교급식)
	10,30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계획 수립(2003~2007)
	11. 7	지자체 우수 식재료 지원 근거를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두기로 함(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주재, 행자부·농림부·법제처·교육부 국장 합의)
	12,17	영부인 혜화초등학교 학교급식 방문
2004.	1,20	초중등교육법 개정(학교급식전담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
	1,30	학교급식개선 5개년 종합대책 계획 수립
	1,30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시·도과장회의 개최
	1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제7조제8호 식품접객업 마호에 위탁급식영업 신설)
	5,14	학교급식법 전문개정 계획 수립
	5,20	학교급식 연수회(대전 호텔스파피아, 5,20-5,21)
	5,25	시·도교육청 담당과장회의(학교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련)
	7. 9	농특위 회의: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시범사업 실시
	7,15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 학교급식 현장체험
	9. 3	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교사임용후보자 명부작성규칙·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
	9,17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10,19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10,27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11,11	시·도관계관 회의 개최(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확대방안관련)
2005.	1,18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결식아동 지원관련 회의
	1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1차 개정판 발간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반 전문교육 실시(고려대 의대, 2주간)
	3,16	농특위 우리농산물 사용 시범사업 실시결과 보고
	4,28	국회교육위,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5,25	학교급식연수회(충남 안면도 롯데오션캐슬리조트, 5,25-5,26)



	7,21	BTL사업에서 식당 제외요청
	8,18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학교 식중독예방 관련)
	9. 9	전북교육청 대법원 제소건 선고 2004주 10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9,16	제37회 차관회의 의안번호 1029(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14	BH농림비서실 회의, 농협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실시
	10,18	국무조정실회의, 식재료지원 표준조례는 그대로 간다
	11,30	국무조정실 아동대책회의: 아동급식위원회 구성할 것
2006	5. 1	학교급식 연수회(전남 나주 KT행동혁신학교, 5,1-5,2)
	6,16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46개교(3,613명) 식중독 사고 발생(6.16-7.4)
	6,27	학교급식시설 특별 전수점검(6.27-7,10)
	7,12	감사원 특별감사(7,12-8,8)
	7,19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7962호)
	7	학교급식 개선 특별대책위원회 운영(7월-12월)
	9,18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10,27	영양교사 선발공고
	12,20	관계부처 합동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5개년 계획(2007-2011) 발표
2007.	1,19	학교급식법 시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1,31	학교급식법령 해설서 발간
	2	개정 학교급식법 설명회 개최
	4	학교 식중독 사고 대응 실무매뉴얼 제작·보급
	5	시·도교육청별 위탁급식 직영전환 계획 수립
	5,17	학교급식 연수회(농협 안성교육원, 5,17-5,18)
	6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점검회의
2008.	4	학교 식중독 예방 대책회의
	5	위탁급식 직영전환 매뉴얼 발간, 교육청·학교에 보급
	11	축산물 등급 및 확인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농식품부 공동)
	12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2009	2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등급 심의 의무화 제도 도입
	3	학교급식 환경개선 회의
	4,10	학교급식 연수회(정부중앙청사 별관)
	6	위탁급식 직영전환 276개교에 117억원 지원(특별교부금)
2010.	1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3차 개정판 발간
	5,19	학교급식 연수회(국립중앙청소년연수원, 5,19-5,20)
	6	교육감 및 지자체장 무상급식 선거공약
2011.	4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6. 7	학교급식 연수회(서울 교육문화회관, 6,7-6,8)
	7	학교급식용 축산물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농식품부 공동)
2012	2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4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6, 7	학교급식 연수회(경주 교육문화회관, 6.7-6.8)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8	학교급식 개선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
	9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2013.	4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5,30	학교급식 연수회(농협 안성교육원, 5.30-5.31)
	8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8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 마련(식약처 협업)
	11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의무화(학교급식법 개정)
2014.	2	학교급식 나트륨 줄이기 가이드북 발간·배부
	4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6, 2	학교급식 연수회(농협안성교육원, 6.2-6.3)
	6	학교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식약처 협업)
	8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9	학교급식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학교급식 구매관리 매뉴얼, 공동구매 매뉴얼,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10	학교급식 안전보건 관리대책 마련
	12, 5	학교급식 안전관리 평가대회(대전평생학습관)
2015.	4,28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회의
	4	학교급식 모범사례 공모 및 심사(4월-5월)
	4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편연구 추진
	5	식품알레르기 원인별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 추진
	5,28	학교급식 연수회(농협안성교육원, 5.28-5.29)
	6	학교급식 식재료 규격 표준화(at 협업)
	8,25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회의


부록 4 연도별 학교급별 급식 실시현황
가. 초등학교 급식 실시현황

(단위 : 교, 명, %)

연도	학교수	재적아동수	급식인원수	비율1)	비고
1954	4,024	2,870,992	1,250,000	44	
1955	4,171	2,920,748	1,250,000	43	
1956	4,334	3,188,188	1,250,000	39	
1957	4,350	3,261,680	1,100,000	34	
1958	4,425	3,295,599	1,200,000	36	
1959	4,500	3,708,468	1,236,468	33	
1960	4,509	3,824,586	1,238,904	32	
1961	4,552	3,854,779	1,276,496	33	
1962	4,648	4,069,734	1,357,896	33	
1963	4,762	4,184,285	1,778,546	42	
1964	4,897	4,398,390	1,812,259	38	
1965	5,215	4,772,619	1,860,581	38	
1966	5,552	5,115,000	1,912,290	37	
1967	5,892	5,341,700	2,000,000	37	
1968	5,495	5,494,000	2,000,000	36	
1969	5,705	5,552,700	2,000,000	36	
1970	5,717	5,671,200	2,164,000	38	외원 1,860,000 / 자부담 304,000
1971	5,983	5,726,800	1,771,000	31	1,650,000 / 121,000
1972	6,097	5,733,200	2,184,000	38	1,200,000 / 984,000
1973	5,820	5,692,290	1,476,000	26	국고 무상 511,000 / 자담 965,000
1974	6,208	5,618,700	1,402,100	25	552,100 / 850,000
1975	5,980	5,599,074	1,384,100	25	698,200 / 685,900
1976	6,010	5,503,737	1,216,000	22	479,100 / 736,900
1977	6,265	5,514,417	1,322,300	24	535,700 / 786,600

1) 전체학생수 대비 급식학생수 비율(%)

* 1954~1977년 통계는 학교급식백서(학교급식백서편찬위원회, 1978) 자료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연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비고
	전체	급식	비율 ¹⁾	전체	급식	비율 ²⁾	
1978	6,426	382	5.9	5,604,365	141,611	2.5	
1979	6,450	387	6.0	5,640,712	131,004	2.3	
1980	6,479	425	6.6	5,658,002	159,619	2.8	
1981	6,517	439	6.7	5,586,494	165,401	3.0	
1982	6,501	441	6.8	5,465,248	169,216	3.1	
1983	6,500	439	6.8	5,257,164	161,681	3.1	
1984	6,528	464	7.1	5,040,958	171,174	3.4	
1985	6,519	541	8.3	4,856,752	199,518	4.1	
1986	6,535	569	8.7	4,798,323	213,101	4.4	
1987	6,531	616	9.4	4,771,722	236,960	5.0	
1988	6,463	660	10.2	4,819,857	253,636	5.3	
1989	6,396	701	11.0	4,894,261	264,247	5.4	
1990	6,335	765	12.1	4,868,713	291,075	6.0	
1991	6,245	1,203	19.3	4,759,066	372,066	7.8	
1992	6,122	1,513	24.7	4,561,078	465,823	10.2	
1993	6,057	2,188	36.1	4,099,358	983,738	24.0	
1994	5,900	3,314	56.2	4,099,358	912,870	22.3	
1995	5,772	4,140	71.7	3,904,979	1,967,425	50.4	
1996	5,732	5,067	88.4	3,800,513	2,579,353	67.9	
1997	5,721	5,566	97.3	3,784,027	3,015,000	79.7	
1998	5,688	5,640	99.2	3,834,561	3,315,511	86.5	
1999	5,301	5,257	99.5	3,935,537	3,468,757	88.1	
2000	5,292	5,286	99.9	4,019,991	3,555,000	88.4	
2001	5,346	5,343	99.9	4,089,429	3,679,221	90.0	
2002	5,422	5,417	99.9	4,138,366	3,739,221	90.4	
2003	5,488	5,479	99.8	4,175,626	3,856,840	92.4	
2004	5,580	5,572	99.9	4,116,195	3,871,862	94.1	
2005	5,673	5,665	99.9	4,022,801	3,842,673	95.5	
2006	5,744	5,744	100	3,925,043	3,794,888	96.7	
2007	5,791	5,791	100	3,829,998	3,737,758	97.6	
2008	5,823	5,823	100	3,672,207	3,609,226	98.3	
2009	5,830	5,830	100	3,474,395	3,446,274	99.2	
2010	5,859	5,859	100	3,299,094	3,280,919	99.4	
2011	5,888	5,887	100	3,132,477	3,126,619	99.8	
2012	5,897	5,897	100	2,958,000	2,954,865	99.9	
2013	5,917	5,917	100	2,793,000	2,788,440	99.9	
2014	5,940	5,940	100	2,745,000	2,744,533	99.9	
2015	5,978	5,978	100	2,731,000	2,731,022	99.9	

1) 전체 학교수 대비 급식학교수 비율(%)

2) 전체 학생수 대비 급식학생수 비율(%)

* 1978년 이후 통계 : 문교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우선으로 정리

* 1991~1994년 통계 : 1995년 이후 통계와 일관성 위해 당해년도 급식확대 학교수 포함* 1999년 급식학교 통계 감소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급식학교수 감소

* 1999년 전체학교수는 교육부 내부자료(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 인용

* 2002년 전체 학교수 :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현황(2002)

* 2015년 통계 :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현황(2015)



나. 중학교 급식 실시현황

연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비고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1995	2,683	4	0.1				
1996	2,705	27	1.0				
1997	2,720	235	8.6	2,180,283	107,000	4.9	
1998	2,736	828	30.3	2,011,468	232,626	11.6	
1999	2,722	1,078	39.6	1,896,956	378,539	20.0	
2000	2,731	1,545	56.6	1,860,539	778,000	41.8	
2001	2,774	2,010	72.5	1,831,152	1,082,426	59.1	
2002	2,810	2,492	88.7	1,841,030	1,498,185	81.4	
2003	2,853	2,736	95.9	1,854,641	1,719,640	92.7	
2004	2,890	2,829	97.9	1,933,543	1,838,215	95.1	
2005	2,936	2,906	99.0	2,010,704	1,941,350	96.6	
2006	3,001	2,979	99.3	2,075,311	1,999,336	96.3	
2007	3,035	3,021	99.5	2,063,159	2,049,065	99.3	
2008	3,080	3,076	99.9	2,038,611	2,014,874	98.8	
2009	3,106	3,104	99.9	2,006,972	1,970,561	98.2	
2010	3,131	3,130	99.9	1,974,798	1,957,192	99.1	
2011	3,155	3,154	100.0	1,910,572	1,896,418	99.3	
2012	3,162	3,162	100.0	1,849,094	1,844,444	99.7	
2013	3,172	3,172	100.0	1,804,189	1,798,863	99.7	
2014	3,185	3,185	100.0	1,726,000	1,724,903	99.9	
2015	3,028	3,208	100.0	1,589,000	1,587,613	99.9	

* 1995년, 1996년은 교육부 내부자료

* 1997년부터는 교육통계연보 자료

* 1999년 급식학교수는 교육부 내부자료에 맞추어 조정

* 2015년 통계 :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현황(2015)



다. 고등학교 급식 실시현황

연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비고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1995	1,830	1	0.1				
1996	1,856	5	0.3				
1997	1,892	185	9.8	2,336,725	60,000	2.6	
1998	1,921	673	35.0	2,326,880	212,455	9.1	
1999	1,943	1,599	82.3	2,251,140	893,963	39.7	
2000	1,957	1,853	94.7	2,071,468	1,179,000	56.9	
2001	1,969	1,915	97.3	1,911,173	1,227,108	64.2	
2002	1,995	1,951	97.8	1,795,509	1,285,641	71.6	
2003	2,030	1,998	98.4	1,766,529	1,435,562	81.3	
2004	2,078	2,052	98.7	1,819,301	1,495,754	82.2	
2005	2,094	2,074	99.0	1,762,896	1,545,906	87.7	
2006	2,142	2,127	99.3	1,775,857	1,619,772	91.2	
2007	2,166	2,155	99.5	1,841,374	1,793,346	97.4	
2008	2,191	2,181	99.5	1,906,978	1,810,064	94.9	
2009	2,226	2,222	99.8	1,965,792	1,900,329	96.7	
2010	2,256	2,253	99.9	1,962,356	1,918,197	97.7	
2011	2,285	2,283	99.9	1,943,798	1,920,917	98.8	
2012	2,305	2,305	100.0	1,920,087	1,887,206	98.3	
2013	2,323	2,323	100.0	1,893,303	1,880,032	99.3	
2014	2,327	2,327	100.0	1,839,372	1,825,023	99.2	
2015	2,344	2,344	100.0	1,806,000	1,799,093	99.6	

* 1995년, 1996년은 교육부 내부자료

* 1997년부터는 교육통계연보 자료

* 1999년, 2001년 급식학교수는 교육부 내부자료에 맞추어 조정

* 2015년 통계 :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현황(2015)



라. 학교급식 운영형태별 현황

연도	급식 학교수	직영급식			위탁급식				
		단독 조리	공동 조리	계	교내조리			외부 운반	계
					일부 위탁	전부 위탁	계		
1997	6,100	4,379	1,359	5,738		33	33	329	362
1998	7,256	4,652	1,583	6,235		217	217	804	1,021
1999	8,069	5,033	1,422	6,455		1,022	1,022	592	1,614
2000	8,807	5,296	1,692	6,988		1,363	1,363	456	1,819
2001	9,394	5,708	1,837	7,545		1,432	1,432	417	1,849
2002	9,989	6,124	1,991	8,115		1,531	1,531	343	1,874
2003	10,343	6,276	2,137	8,413		1,643	1,643	287	1,930
2004	10,586	6,578	2,215	8,793		1,531	1,531	262	1,793
2005	10,780	6,809	2,316	9,125		1,434	1,434	221	1,655
2006	10,986	7,184	2,312	9,496		1,296	1,296	194	1,490
2007	11,106	7,312	2,469	9,781		1,212	1,212	113	1,325
2008	11,225	7,573	2,430	10,003		1,130	1,130	92	1,222
2009	11,303	7,816	2,446	10,262		954	954	87	1,041
2010	11,389	8,247	2,523	10,770		546	546	73	619
2011	11,476	8,471	2,686	11,157	157	96	253	66	319
2012	11,520	8,636	2,610	11,246	164	55	219	55	274
2013	11,575	8,686	2,627	11,313	172	37	209	53	262
2014	11,619	8,761	2,624	11,385	173	26	199	35	234
2015	11,698	8,828	2,628	11,456	188	20	208	34	242

* 급식 학교수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 학교수

* 1999 현황 : 교육부 1999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특수학교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특수학교는 1998과 동일한 것으로 추산

* 종사자 수에는 위탁급식의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포함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연도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마. 연도별 학교급식 확대 현황(1992~2006)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6,122	6,057	5,900	5,772	5,732	5,721	5,688	5,301	5,292	5,346	5,422	5,488	5,580	5,673	5,744	
	급식 학교수	실시	1,203	1,513	2,188	3,314	4,140	5,067	5,566	5,277	5,277	5,286	5,343	5,417	5,479	5,572	5,665
		확대	310	675	1,126	826	927	499	74	△363	9	57	74	62	93	93	79
		계	1,513	2,188	3,314	4,140	5,067	5,566	5,640	5,277	5,286	5,343	5,417	5,479	5,572	5,665	5,744
중학교	전체 학교수	2,539	2,590	2,645	2,683	2,705	2,720	2,736	2,722	2,731	2,774	2,810	2,853	2,890	2,936	3,001	
	급식 학교수	실시	-	-	-	-	4	27	235	828	1,078	1,545	2,010	2,492	2,736	2,829	2,906
		확대	-	-	-	4	23	208	593	250	467	465	482	244	93	77	73
		계	-	-	-	4	27	235	828	1,078	1,545	2,010	2,492	2,736	2,829	2,906	2,979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1,735	1,757	1,784	1,830	1,856	1,892	1,921	1,943	1,957	1,969	1,995	2,030	2,078	2,094	2,142	
	급식 학교수	실시	-	-	-	-	1	5	185	673	1,599	1,853	1,915	1,951	1,998	2,052	2,074
		확대	-	-	-	1	4	180	488	926	254	62	36	47	54	22	53
		계	-	-	-	1	5	185	673	1,599	1,853	1,915	1,951	1,998	2,052	2,074	2,127
특수학교	전체 학교수	103	106	106	108	109	114	119	123	129	134	136	138	141	142	143	
	급식 학교수	실시	103	106	106	108	109	114	115	115	117	124	126	129	130	133	135
		확대			2	1	5	1	0	2	7	2	3	1	3	2	1
		계	103	106	108	109	114	115	115	117	124	126	129	130	133	135	136
합계	전체 학교수	10,499	10,510	10,435	10,393	10,402	10,447	10,464	10,089	10,109	10,223	10,363	10,509	10,689	10,845	11,030	
	급식 학교수	실시	1,306	1,619	2,294	3,422	4,254	5,213	6,101	7,256	8,071	8,808	9,394	9,989	10,343	10,586	10,780
		확대	313	675	1,128	832	959	888	1,155	815	737	586	595	354	243	194	206
		계	1,619	2,294	3,422	4,254	5,213	6,101	7,256	8,071	8,808	9,394	9,989	10,343	10,586	10,780	10,986

* 1999년 △363개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급식학교수도 감소됨,* 교육부 내부자료

* 실시학교수는 전년도부터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임, 확대는 당해연도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신규로 급식을 시작한 학교임

가. 연도별 학교급식 외국원조 및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

연도별	외원양곡(톤)					지원단체	급식비 예산(국고, 지방비, 천원)						학부모 기타 급식비
	분유	옥분	소맥분	식유	계		양곡 조작비	제조공급 수수료	양곡대 (식품비)	운영비	시설비	계	
1953	63.5				63.5	캐나다정부							
1954	18,000				18,000	UNICEF							
1955	18,000				18,000	UNICEF							
1956	18,000				18,000	UNICEF							
1957	3,552				3,552	UNICEF, CARE							
1958	3,502				3,502	CARE							
1959	10,194				10,194	CARE							
1960	3,409				3,409	CARE							
1961		9,374			9,374	CARE							
1962	2,071	7,882			9,953	CARE		0.25 ¹⁾ 34,855				34,855	
1963	2,257	12,607			14,864	CARE		0.25 44,424				44,424	

1) 1인1식당 제빵 공급 수수료임(0.25원), 34,855천원은 제빵공급 수수료 총액임

* 외원 양곡 수량은 승인된 중 실제 입하량임

* 1953-1956 외원양곡 통계 : 부록 1. 나 자료에 의거 추정

* 문교부는 1955년부터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였으나 미파악됨





연도별	외원양곡(톤)						급식비 예산(국고, 지방비, 천원)						학부모 기타 급식비
	분유	옥분	소맥분	식유	계	지원단체	양곡 조작비	제조공급 수수료	양곡대 (식품비)	운영비	시설비	계	
1964	2,260	9,971			12,231	CARE		0.25 47,095				47,095	
1965	4,957	11,952	1,804		18,713	CARE		0.375 126,671				126,671	
1966	8,139	11,608	11,043	331	31,121	CARE, USAID		0.50 161,554				161,554	
1967	10,081	12,417	11,662	474	34,634	USAID		0.76 343,170				343,170	
1968	7,479	7,319	28,219	808	43,825	USAID		0.978 365,300				365,300	
1969	7,128		28,614	933	36,675	USAID	58,343	1.12 448,000				506,343	
1970	7,837		35,906	945	44,688	USAID	245,527	1.50 613,600				859,127	91,200 ¹⁾
1971	9,812		32,121	1,295	43,228	USAID	197,816	2.00 580,996				778,812	48,400
1972 ³⁾	6,156		24,624	820	31,600	USAID	387,568	2.50 500,000	1,014,000			1,901,568	650,000
1973							179,000	4.30 330,000	630,483 ²⁾		27,000	1,166,483	1,366,152
1974								6.00 595,732	1,143,537		30,328	1,769,597	1,022,151

1) 학부모가 자부담한 급식비 총액

2) 우유급식비 포함

3) 1972~1974년까지 급식비는 양곡을 관급으로 조달함(1인당 기준 : 소맥분 120g, 분유 24g, 식유 5g을 조달함), 1975년 양곡관급제 폐지

국내양곡 사용 : 1973년 소맥분 10,523톤, 분유(NFDH) 2,887톤, 식유 391톤 / 1974년 소맥분 13,885톤, 분유(NFDH) 862톤, 식유 346톤, 대두 189톤, 설탕 104톤

* 출처 : 학교급식백서(학교급식백서편찬위원회, 1978)

나. 연도별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

연도별	국고 및 지방재정 급식비 합계(천원) 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천원) ²⁾				학부모 기타 급식비
	식품비	운영비	시설비	계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계	
1975	2,808,704	9,712	34,870	2,853,286					1,986,022
1976	2,958,154	82,600	291,000	3,131,754					18,721
1977	3,321,147		212,000	3,533,147					2,651,720 ³⁾
1978	1,956,288	384,253	220,859	2,561,400					934,418
1979	2,245,400	626,190	273,214	3,144,804					1,717,607
1980	2,316,783	1,240,569	446,544	4,003,896(320,566) ⁴⁾					2,560,122 ³⁾
1981	2,935,800	1,316,711	255,456	4,507,967(315,728)					4,004,151 ³⁾
1982	4,792,194	1,325,718	174,906	6,292,818(254,165)	4,505,715	828,401	704,537	6,038,653	
1983	4,468,288	1,900,944	42,000	6,411,232(153,408)	4,468,288	800,575	988,961	6,257,824	
1984				6,710,671	4,582,224	810,101	1,159,076	6,551,401	
1985				7,625,678	5,354,148	1,094,276	707,273	7,155,697	
1986				7,845,652	5,025,459	1,363,699	1,236,520	7,625,678	
1987				7,835,355	5,301,734	1,357,757	966,187	7,625,678	
1988				8,715,498	5,950,391	1,748,600	1,016,507	8,715,498	
1989				9,908,364	6,675,271	2,138,662	824,453	9,638,386	

* 1984~1989년의 1)과 2)의 차이 : 2)에는 급식시설비(지방비) 및 국립학교 급식비(국고) 미포함, 국고 등 자료 계는 문교통계연보 자료, 지방비는 체육부 내부자료³⁾ 학교생산 포함⁴⁾
 ()는 1980년도에 신설한 교대·국립대 부속초등학교의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국고)로 전체 예산에 포함됨





다. 부담주체별 지출항목별 학교급식 예산 집행 현황

연도	급식 학교수	부담주체별(백만원)					지출항목별(백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자치단체 보조금등	보호자 부담금	급식후원금, 기타 ¹⁾	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연료비등)	시설· 설비비	계
1990		16,345		21,165	215						
1991		24,197		31,366	537						
1992											
1993	2,252	96,003	-	69,193	2,509	167,705	82,635	25,592	5,849	53,629	167,705
1994	3,315	143,230		113,343	17,366	273,939	128,118	37,326	7,677	100,818	273,939
1995	4,428	169,095		220,725	30,191	420,011	237,029	68,329	18,483	96,170	420,011
1996	5,571	261,937		302,121	31,101	595,159	324,754	99,811	22,202	148,392	595,159
1997	6,100	308,754	15,372	474,026	48,688	846,840	472,296	171,828	34,667	168,049	846,840
1998	7,256	299,314	25,749	768,924	17,637	1,111,624	714,726	206,465	60,220	130,213	1,111,624
1999	8,069	356,595	-	1,060,268	8,391	1,425,254	904,440	230,143	90,505	200,163	1,425,254
2000	8,807	335,400	36,600	1,300,000	3,000	1,675,000	1,144,000	299,700	95,600	135,700	1,675,000

¹⁾ 학교 생산품 및 학부모 기증 포함

* 1990년 부터는 예산 단위를 백만원으로 함.

* 급식학교수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학교수

* 출처 : 1975-1977 학교급식 백서(문교부, 1978), 1978-1983 학교급식현황(체육부, 1983), 1984-1989 문교통계연보, 1990 이후는 교육부 내부자료(연도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연도	급식 학교수	부담주체별(백만원)					지출항목별(백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자치단체 보조금등	보호자 부담금	급식후원금, 기타	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연료비등)	시설· 설비비	계
2001	9,394	397,000	16,000	1,523,700	2,300	1,939,000	1,263,500	383,300	142,300	149,900	1,939,000
2002	9,989	458,300	21,900	1,777,700	1,400	2,259,300	1,480,600	463,400	158,900	156,400	2,259,300
2003	10,343	474,600	21,800	2,353,300	3,400	2,853,100	2,004,300	541,000	169,900	137,900	2,853,100
2004	10,586	576,800	20,600	2,307,500	300	2,905,200	1,882,700	672,500	195,200	154,800	2,905,200
2005	10,780	676,800	27,800	2,444,200	22,200	3,171,000	2,027,100	784,300	220,000	139,600	3,171,000
2006	10,986	754,300	60,600	2,607,000	35,800	3,457,700	2,183,000	844,400	256,800	173,500	3,457,700
2007	11,106	1,016,400	144,500	3,010,100	26,300	4,197,300	2,560,565	1,023,900	323,200	289,574	4,197,300
2008	11,225	1,238,500	170,300	2,931,200	35,100	4,375,100	2,529,300	1,065,400	360,700	419,700	4,375,100
2009	11,303	1,517,000	220,200	3,018,700	48,100	4,804,000	2,714,300	1,172,400	402,200	515,100	4,804,000
2010	11,389	1,582,900	251,200	2,956,500	72,500	4,863,100	2,858,200	1,159,000	383,000	462,900	4,863,100
2011	11,476	1,856,000	609,300	2,383,100	88,900	4,937,300	2,975,600	1,221,500	362,000	378,200	4,937,300
2012	11,520	2,318,900	886,900	1,951,100	145,600	5,302,500	3,077,300	1,428,600	404,600	392,000	5,302,500
2013	11,575	2,682,800	1,063,600	1,781,800	122,000	5,650,200	3,222,800	1,564,000	444,900	418,500	5,650,200
2014	11,619	2,666,600	1,158,300	1,638,900	137,400	5,601,300	3,225,700	1,725,800	396,400	253,400	5,601,300
2015	11,698	2,708,500	1,049,500	1,731,800	144,300	5,634,100	3,191,700	1,843,300	377,500	221,700	5,634,100
비고											





부록 6 연도별 학교급식 형태 및 정부의 지원

가. 연도별 학교급식 형태 및 정부의 지원(1972~1983)

년도별 급식별		1972		1973	1974	1975
무상급식	1,200,000명		589,941명	552,016명	528,200명	
	도서벽지 및 농어촌		도서벽지 및 재해지	좌동	좌동	
	주 5회(식빵·건빵)		주 5회(식빵·건빵)	좌동	좌동(국고 31원)	
보호급식	-		-	300,000명	170,000명	
	-		-	식량보조, 6원 자담, 주 2회	국고 33원, 주 2회	
자담 급식	식 빵	19만명 (도시)	65만명 (농어촌)	740,444명	438,203명	554,600명
		12~15원 자담, 주 5회	식량보조, 5원자담, 주 5회	식량보조, 12원 자담, 주 5회	25원자담, 주 2회 이상	33원 자담, 주 2회 이상
	우 유	130,000명		125,051명	84,749명	97,500명
		5원 보조, 15원 자담, 주 5회		좌동	30원 자담, 주 5회	32~40원 자담, 주 5회
시범급식 (도시)	21교 13,000명		21교 13,856명	21교 14,721명	21교 16,600명	
	분유보조, 35~40원 자담		좌동	분유보조, 50원 자담,	좌동	
	주 5회 (주식, 부식, 물우유),		좌동	좌동	좌동	
자활급식 (농촌)	2교 1,250명		11교 6,961명	22교 12,353명	33교 17,200명	
	식량(양곡)보조, 5원 자담		식량보조, 학교생산물, 5원 자담	식량보조, 학교생산물, 10원 자담	식량보조, 학교생산물, 학부모부담	
	주 5회 (주식, 물우유)		주 5회 (주식, 부식, 물우유)	좌동	주 5회 (주식, 부식, 기타)	
급식시설비 1,055천원 생산시설비 2,713천원		급식시설비 10,329천원 생산시설비 14,130천원	급식시설비 19,161천원 생산시설비 10,634천원	급식비 43,236천원 시설비 34,870천원		
급식인원 합계	2,184,250명		1,476,253명	1,402,042명	1,384,100명	
국고지원합 계	1,901,568천원		1,166,483천원	1,769,597천원	2,853,286천원	
비고	* 최초 자활급식 : - 경기용인남곡국교, 전남고흥운대국교 - 양곡보조(관급조달) 1인분(소맥분 120g, 분유 24g, 식유 5g)		자활급식실험학교 9교 증설	자활급식실험학교 11교 증설	자활급식실험학교 11교 증설 75.7 양곡관급제 폐지	



급식별		년도	1976	
자활급식 (생산+조리+급식)	급식학생수	55교 31,000명		
	급식 대상	농어촌 초등 전학년		
	회수(내용)	주 5회(주·부식)		
	급식 단가	70~85원		
	식비 부담	학부모 및 생산품		
	국고지원	시설비	교당 3,300,000원	
		급식비	급식학생당 25원(기설 180회, 신설 75회)	
	국고지원액	시설비 72,600천원, 급식비 108,640천원		
급식방법	학교자체조리			
준자활급식 (조리+급식)	급식학생수	700교 159,000명 (도서벽지, 전체교의 반)	21교 21,000명 (도시)	
	급식 대상	3학년이상	3학년이상 희망자	
	회수(내용)	주 3회(주·부식)	주 3회(주·부식)	
	급식 단가	55원	70~85원	
	식비 부담	국고 지원	학부모 부담	
	국고지원	시설비	교당 300,000원	교당 400,000원
		급식비	55원 110회	-
		운영비	교당 100,000원	교당 600,000원
	국고지원액	시설·운영·급식비 1,241,950천원	시설비 210,000천원	
급식방법	학교자체조리(단, 주식은 공동조달 가능)	학교자체조리		
일반급식 (급식)	급식학생수	159,000명 (도서벽지비준자활교)	650,000명+극빈아 152,400명 (농촌, 도시전교)	
	급식 대상	3학년이상	3학년이상 희망자	
	회수(내용)	주 5회, 주식(식빵, 건빵),	주 2회(주·부식)	
	급식 단가	35원	35~60원(주식 35원, 부식 25원)	
	식비 부담	35원 180회 국고지원	학부모, 극빈아 152,400명은 60원, 75회 국고지원	
	국고지원액	1,001,764천원	극빈아 급식비 685,800천원	
	급식방법	공동조달	공동조달 또는 각자지참	
급식인원 합계		1,172,400명		
국고지원액		3,131,754천원		
비고	* 급식회수 주 5회 : 연 180일 * 시설비지원 : 자활 22교, 준자활도서벽지 700교, 준자활도시 21교 * 76학교급식비 재원 : 2612 지방교육재정경상교부금, 322 교부금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급식별		년도별		1977		1978		
보호 급식	급식종류	도서벽지형		일반지역극빈아		도서벽지형		
	급식학생수	212교, 318,000명 (도서벽지형)		152,400명		273교, 71,743명		
	급식 대상	3학년이상		좌동		전교생		
	회수(내용)	주 2회(연 75회)		좌동		주 5회(연 180회)		
	식비 부담	국고지원		국고지원		국고지원		
	국고지 원	시설비	교당 100만원		-		-	
		급식비	급식학생당 90원		좌동		급식학생당 140원	
운영비						급식학생당 20원		
국고지원액	시설비 212,000천원, 급식비 2,146,647천원		급식비 1,028,700천원		2,197,919천원			
실험 학교 급식	급식종류	농어촌형		도시형		농어촌형 도시형		
	급식학생수	55교, 28,000명		21교, 15,000명		56교, 27,277명 31교29,631명		
	급식 대상	초등 전교생		초등 희망자		전교생 희망자		
	회수(내용)	주 5회(연 180회)		좌동		좌동 좌동		
	식비 부담	학부모 및 생산품		학부모전액부담		학부모 및 생산품 학부모전액부담		
	국고지 원	급식비	30원		-		45원 -	
		운영비	-		-		15원 15원	
국고지원액	급식비 145,800천원				300,627천원(급식비 220,106천원, 운영비 73,371천원, 시설비 7,150천원) 62,584천원			
일반 급식	급식학생수	786,600명		폐지				
	급식 대상	희망자						
	회수(내용)	주 2회(연 75회)						
	식비 부담	학부모 전액부담						
급식인원 합계	1,300,000명		360교, 128,651명					
국고지원액	3,533,147천원		2,561,400천원					
비고			* 일반급식은 1977.9.16. 식중독 사고이후 폐지 * 도서벽지형 : 자체조리		* 운영비지원			



급식별		년도별		1979	1980	1981
도서 벽지형	급식학생수	277교 70,770명		285교 68,300명	297교 65,661명	
	급식 대상	전교생				
	회수(내용)	주 5회(연 180회), 주식과 부식		좌동	좌동	
	국 고 지 원	시설비	냉장고 교당 360천원			
		인건비	교당 1,294천원			2,586천원
		급식비	150원		식품비 160원	210원
		운영비	8원		12원	17원
국고지원액	2,528,743천원		2,930,359천원 (시설비 101,900천원)	3,319,638천원		
농어촌형	급식학생수	66교 33,500명		67교 32,700명	69교 31,897명	
	급식 대상	전교생				
	회수(내용)	주 5회(연 180회), 주식과 부식		좌동	좌동	
	국 고 지 원	시설비	기설 냉장고 교당 360천원 신설 교당 490만원			
		인건비	교당 1,294천원			2,586천원
		급식비	기설 50원, 신설 100원		기설 60원, 신설 100원	70원
		운영비	5원		10원	15원
국고지원액	509,942천원		599,493천원 (시설비 20,478천원)	653,474천원		
도시형	급식학생수	39교 38,400명		60교 54,000명	59교(16교) 45,924명(16,137명)	
	급식 대상	희망자				
	회수(내용)	주 5회(연 180회), 주식과 부식		좌동	좌동	
	국 고 지 원	시설비	기설 냉장고 교당(360천원) 신설 교당 676만9천원			3,767천원(16교국립학교)
		인건비	교당 1,294천원			2,954천원
		운영비	2원		운영비: 7원	12원
	국고지원액	106,119천원		474,004천원 (시설비 324,566원)	534,855천원 (315,728천원)	
급식인원 합계	382교, 142,670명		412교, 155,000명	425교(16), 159,619명(16,137명)		
국고지원액	3,144,804천원		4,003,896천원 (320,566천원)	4,507,967천원 (315,728천원)		
비고	* 급식내용: 주식과 부식(가 능하면 우유급식 포함)		* 도시형 국고지원 시설비중 (320,566천원)은 1980년 신설하는 교육대학 및 국립사대부속초등학교에 산으로 포함	* ()은 교육대학 및 국립사 대부속초등학교 학생 및 예산을 포함함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급식별		년도별	1982	1983	
도서 벽지형	급식학생수		301교 62,510명	304교 57,559명	
	회수(내용)		주 5회(연 180회)	좌동	
	국고 지원	시설비			
		인건비		교당 3,034천원	3,000천원
		식품비		314원	336원
		운영비		36원	37원
국고지원액		4,825,794천원	4,706,995천원		
농어촌형	급식학생수		69교 30,290명	74교 30,192명	
	회수(내용)		주 5회(연 180회)	좌동	
	국고 지원	시설비			
		인건비		교당 3,794천원	3,672천원
		식품비		110원	112원
		운영비		36원	37원
국고지원액		914,872천원	980,884천원		
도시형	급식학생수		69교(16교), 62,332명(12,027명)	78교(16교) 73,930명(12,476명)	
	회수(내용)		주 5회(연 180회)	좌동	
	국고 지원	시설비		교대부국 10,753천원 사대부국 12,182천원	교대부국 2,250천원 사대부국 5,250천원
		인건비		공립 교당 5,644천원 교대부국 2,742천원 사대부국 3,843천원	공립 5,554천원 교대부국 3,412천원 사대부국 5,654천원
		운영비		국·공립 12원	공립 37원, 국립 19원
		국고지원액		552,152천원 (254,165천원)	569,945천원 (153,408천원)
급식인원 합계		439교(16), 155,132명(12,027명)	456교(16), 161,681명(12,476명)		
국고지원액		6,292,818천원 (254,165천원)	6,411,232천원 (153,408천원)		
비고		<p>* 1978년부터 급식대상은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는 초등 전교생, 도시는 규모상 희망자만 급식</p> <p>* 급식일은 주 5회 연 180일, 급식내용은 주식과 부식(가능하면 우유급식 포함)이므로 1982년부터 표기생략</p> <p>* ()은 교육대학 및 국립사대부속초등학교 학생 및 예산을 포함함</p>			

*출처 : 학교급식 백서, 학교급식 현황(1976, 1977, 1979, 1980, 1983)



나. 정부의 급식비 지원(1984 ~2004)

정부의 1인1식당 지원단가 및 종사자 직종별 1일 인건비

(단위 : 원)

급식별		년도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도서 벽지형	식품비	360	367	386	407	428	448	471
	연료비	18	20	25	26	26	20	20
농어촌형	식품비	122	122	129	136	143	149	157
	연료비	20	20	25	26	26	20	20
도시형	연료비			25	26	26	20	20
직종별 인건비	영양사	6,090	6,210	6,490	6,640	8,120	8,770	9,600
	조리사	4,880	4,990	5,230	5,510	6,490	7,010	7,910
	제빵기사			5,190	5,270	6,120	6,610	
	조리원	2,670	3,180	3,390	3,890	4,450	6,270	6,910
비고	* 식품비, 연료비는 연 180일 지원, 인건비는 연 270일 지원							

* 경기도교육청 제공

정부의 1인1식당 지원단가 및 종사자 직종별 1일 인건비

(단위 : 원)

급식별		년도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도서 벽지형	식품비	528	547	547	547	550	600	600
	연료비	25	25	30	30	30	30	30
	운영비	20	20	25	25	25	25	25
농어촌형	식품비	176	182	182	182	180	200	200
	연료비	25	25	30	30	30	30	30
	운영비	20	20	25	25	25	25	25
도시형	연료비	20	20	25	25	25	25	25
직종별 인건비	영양사	12,700	14,600					
	조리사	10,600	13,700	15,200				
	제빵기사	10,600	13,700					
	조리원	9,800	11,800	13,800	13,800	15,200	19,860	24,000
비고	* 1991년에 급식시설 유지비 지원(도서벽지 '72~'85년 지정학교 : 150만원, 농어촌 '72~'85년 지정학교 : 150만원, '86~'89년 지정학교 : 100만원, 도시형 '72~'85년 지정학교 : 200만원, '86~'89년 지정학교 : 100만원) 도서벽지와 농어촌 급식학교 운영비 지원 * 1991년에 급식시설 유지비 지원(도서벽지 : 150만원, 농어촌 : 570만원, 도시형 : 300만원) * 1992년 급식시설 유지비 지원(도서벽지 : 400만원, 농어촌 : 570만원, 도시형 : 300만원) * '93년~'97년 급식시설 유지비 지원(도서벽지 : 200만원, 농어촌 : 300만원, 도시형 : 500만원) * 1993년부터 공동조리교의 급식차량경비 지원(2,135천원 -'97년 2,452천원)							

* 경기도교육청 제공



정부의 1인1식당 지원단가 및 종사자 직종별 1일 인건비

(단위 : 원)

급식별		년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시 벽지형	식품비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연료비		30	30	30	30	30	30	100
	운영비		25	25	25	30	30	30	
농어촌형	식품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연료비		30	30	30	30	30	30	100
	운영비		25	25	25	30	30	30	
도시형	연료비		25	25	25	30	30	30	50
직종별 인건비	영양사			27,900	28,300	29,000	30,600	33,360	33,360
	조리사				24,900	26,400	28,400	30,300	30,300
	조리원				24,900	26,400	28,400	30,300	30,300
비고	* 2003년 공동조리교 급식차량경비 계약차량, 전용차량 구분지원(계약 540만원, 전용 360만원) * 2000~2006년까지 승강기 유지비 교당 1,000천원 * 2004년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시행이후 조리사 자격증수당 5%가산 지원 2004년 6월이후 단가변동내역(영양사 36,060원, 조리사 33,950원, 조리원 32,330원)								

* 경기도교육청 제공



부록 7 연도별 학교급식 연수 및 시범·연구학교 현황

가. 학교급식 관계연수 및 협의회 개최

연도	과정명	기간 / 장소	참가자
1973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40명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6일간	36명
1974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5일간 1회	40명
	• 도시형 실험학교 운영 개선 협의회	3일간	56명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6일간	48명
1975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42명
	• 자활급식실험학교 생산관리 담당교사 연수회	9일간	33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교사 연수회	10일간	55명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75명
1976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72명
	• 자활급식실험학교 생산관리 담당교사 연수회	10일간	40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교사 연수회	10일간	60명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116명
1977	• 도시형 실험학교 운영개선 연구협의회	3일간	51명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137명
	• 도서벽지 자체조리 급식학교 운영연구협의회	3일간	222명
	• 학교급식관계자 협의회(제빵업자, 시·도·군 관계자)	2일간	263명

* 1976-1977년도는 UNICEF에서 일부 자금 지원

* 1977년도부터 국고재원으로 실시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연도	과정명	기간 / 장소	참가자
1978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2일간 1회	39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 교사 연수회	4일간 2회	352명
1979	• 신규지정 실험급식학교(자활, 도시형)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32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 교사 연수회	4일간 1회	189명(영양사)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3일간	155명
1980	• 자활급식실험학교 생산관리 담당교사 연수회	4일간 1회	61명(영양사)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 교사 연수회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6일간 2회	79명(영양사)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115명
	• 교육대학 관계교수 세미나	1회	20명
1981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 교사 연수회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6일간 2회	120명(영양사)
	• 자활급식실험학교 운영자 연수회 및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215명
1982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180명(급식학교장 173명, 교감·교사 7명)
	• 자활급식, 준자활, 자체조리급식 담당 교사 연수회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4주간 1회	40명(영양사)
1983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4일간 1회	213명(급식학교장 163명, 급식담당공무원 50명)
	• 급식학교 영양사 연수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3주간 1회	59명(영양사)
1984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201명(급식학교장 196명, 급식담당공무원 5명)
	• 급식학교 영양사 연수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2주간 2회	78명(영양사)
1985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201명(교장 167명, 교감 및 교사 8명, 급식담당공무원 26명)
	• 급식학교 영양사 연수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3주간 3회	120명(영양사)

* 1978년도 개최 협의회는 농촌, 도시, 도서벽지 통합연수임

* 1978년부터 학교급식 담당교사 연수(일반연수)는 교직국으로 이관됨



연도	과정명	기간 / 장소	참가자
1986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211명(학교장 193명, 교감 및 교사 3명, 담당공무원 15명)
	• 급식학교 영양사 연수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3주간 2회	73명(영양사)
1987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211명(학교장 195명, 급식담당공무원 16명)
	• 급식학교 영양사 연수 (농촌영양개선원 주관)	3주간 2회	80명(영양사)
1988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1989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208명(급식학교장 등)
1991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221명(학교장 202명, 관계 공무원 19명)
1992	• 학교급식운영 연구협의회	3일간 1회	200명(급식학교장 등)
1993	• 학교급식연수회	2일간 1회	300명(급식학교장 250명, 관계 공무원 50명)
1994	• 학교급식연수회	2일간 1회	300명(급식학교장 270명, 관계 공무원 30명)
1995	• 학교급식연수회	2일간 1회	60명(학교장 15명, 교감 15명, 영양사 15명, 관계공무원 15명)
1996	• 학교급식연수회(전반기)	2일간 / 설악교육문화회관	60명(학교장 15명, 영양사 30명, 관계 공무원 15명)
	• 학교급식연수회(후반기)	2일간 / 경주교육문화회관	60명(학교장 15명, 영양사 30명, 관계 공무원 15명)
1997	• 학교급식연수회(전반기)	2일간 /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60명(학교장 15명, 영양사 30명, 관계 공무원 15명)
	• 학교급식연수회(후반기)	2일간 / 전라북도학생교육원	60명(학교장 15명, 영양사 30명, 관계 공무원 15명)
1998	• 학교급식연수회	1일간 1회/교육행정연수원	96명(학교장 32명, 영양사 32명, 관계 공무원 32명)
1999	• 학교급식연수회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대책)	1일간 1회/국가전문행정연수원	96명(교육청담당자 16명, 교직원 30명, 학교급식업자 50명)
	• 학교급식위생 전문교육	2주간 1회/서울대보건대학원	50명(교육청담당자)
2000	• 학교급식연수회 (학교급식 HACCP 시범적용방안)	1일간 1회/수원 송원초등학교	81명(교육청담당자 32명, 시범학교 영양사 49명)
2001	• 학교급식연수회 (생활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 정착방안)	2일간 1회/경남덕유교육원의령분원	120명(교장/교감 19명, 교사 27명, 교육청담당자 38명, 영양사 36명)
2002	• 학교급식연수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방안)	2일간 1회/전남교육연수원	120명(교장/교감 18명, 교사 29명, 교육청담당자 32명, 영양사 41명)

* 1990년 학교급식연수회 미 실시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연도	과정명	기간 / 장소	참가자
2003	• 학교급식연수회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 방안)	2일간 1회/부산 학생 교육수련원	116명(교장 33명, 교육청담당자 33명, 행정실장 16명, 영양사 34명)
2004	• 학교급식연수회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방안)	2일간 1회 / 대전(호텔스파피아)	128명(학교장 32명, 교육청담당자 48명, 학교행정실장 16명, 학교영양사 32명)
2005	• 학교급식연수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운영 방안)	2일간 1회 / 충남(롯데오션캐슬리 조트)	128명(학교장 32명, 교육청담당자 48명, 학교행정실장 16명, 학교영양사 32명)
2006	• 학교급식연수회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2일간 1회 /KT 나주 연수원	137명(학교장 17명, 교육청담당자 52명, 행정실장·영양사 33명, 자치단체공무원 27명, 농림부등관계기관 8명)
2007	• 학교급식연수회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방안)	2일간 1회 / 농협 안성교육원	140명(학교장 33명, 교육청담당자 58명, 행정실장·영양(교)사 49명)
2009	• 학교급식연수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운영 방안)	1일간 1회 / 정부중앙청사 별관	228명(시·도교육청 급식담당자 41명, 지역교육청 담당자 187명)
2010	• 학교급식연수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방안)	2일간 1회 / 국립중앙청소년 수련 원	155명(학교장 48명, 교육청담당자 42명, 행정실장 32명, 영양(교)사 33명)
2011	• 학교급식연수회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방안)	2일간 1회/서울교육문 화회관	159명(학교장 49명, 교육청담당자 45명, 행정실장 32명, 영양(교)사 33명)
2012	• 학교급식연수회 (식재료 안전성 확보방안)	2일간 1회/경주교육문 화회관	158명(학교장 46명, 교육청담당자 46명, 행정실장 30명, 영양(교)사 36명)
2013	• 학교급식연수회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방안)	2일간 1회 /농협안성 교육원	176명(학교장 51명, 교육청담당자 40명, 행정실장 35명, 영양(교)사 36명, 시·도 관계자 14명)
2014	• 학교급식연수회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방안)	2일간 1회 /농협안성 교육원	174명(학교장 50명, 교육청담당자 36명, 행정실장 34명, 영양(교)사 54명)
2015	• 학교급식연수회 (기후변화와 학교급식 안전관리)	2일간 1회 /농협안성 교육원	175명(학교장 53명, 교육청담당자 37명, 행정실장 36명, 영양(교)사 49명)

* 2008년 학교급식연수회 미 실시



나. 연도별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현황

연도	시도	학교명	연구주제
1988	강원	용대국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자립급식 기반조성
	충남	의량국	학교급식의 활성화-지역사회 협력과 식생활 개선
	제주	태흥국	학교급식 관리개선-시설·식단관리 및 식생활 개선
1989	경남	함양국	학교급식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급식운영의 성과거양
	서울	선린국	도시아동의 식생활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한 운영방안
	전남	사평국	학교급식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1990			미지정
1991	부산	온천국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의 합리적 확보방안
	경북	용암국	지역사회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급식운영의 효율화 방안
1992	충북	창신국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를 통한 도시어린이의 식생활 개선방안
	전북	왕궁국	편식교정을 통한 바른 식생활 개선방안
1993	대전	서대전국	도시지역 다인수학교의 효율적인 공동조리 급식방안
	경기	오성국	농촌지역 학교의 효율적인 공동조리 급식방안
1994	서울	영중국 (시범)	농협급식센터와 연계한 학교급식실시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원	신철원국	급식학교 아동들의 학교급식 효과에 관한 연구
1995	인천	용현국	학교급식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충남	연기금남국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사의 역할
1996	대전	유성초등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전남	순천성남초	학교급식 질 향상 방안
1997	경북	풍기초	학교급식시 전산화 부문 개발
	제주	중앙여고	고등학생의 효율적인 점심, 저녁 해결 방안
1998	대구	달성초	학교급식 운영관리의 평가제도 개발
	경남	안의초	전통식단을 이용한 학교급식
1999	울산	덕신초	생활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의 정착방안

※ 1988, 1989년은 시범학교 운영, 1991년부터는 연구학교로 운영



부록 8 연도별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

가. 직종별 현황

연도	급식학교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제빵기사	조리원	계
1978							
1979	382		182				
1980	389		244				
1981							
1982							
1983	456		444				
1984							
1985							
1986	569		567	567	94	792	2,020
1987							
1988							
1989							
1990	854		689	247	72	1,143	2,151
1991	998		882	445	68	1,322	2,717
1992	1,284		1,188				
1993	2,252		1,480	878		2,954	5,312
1994	3,315		1,771	1,537		4,444	7,752
1995	4,428		2,573	2,178		7,206	11,957
1996	5,571		3,111	2,935		9,586	15,632
1997	6,100		3,924	3,810		15,840	23,574
1998	7,256						
1999	8,069		4,796	5,306		27,547	37,649
2000	8,807		6,016	6,154		39,079	51,249
2001	9,394		6,584	6,657		43,168	56,409
2002	9,989		7,196	7,833		48,116	63,145
2003	10,343		7,669	8,671		51,431	67,771
2004	10,586		7,930	7,933		55,039	70,902
2005	10,780		8,243	8,172		54,288	70,703
2006	10,986		8,571	8,826		55,215	72,612
2007	11,106	4,120	4,678	9,098		57,372	75,268
2008	11,225	4,435	4,527	9,030		57,069	75,061
2009	11,303	4,450	4,663	9,312		56,030	74,455
2010	11,389	4,531	4,742	9,488		55,318	74,079
2011	11,476	4,588	4,858	9,498		53,583	72,527
2012	11,520	4,659	5,031	9,748		52,492	71,930
2013	11,575	4,704	5,108	9,943		53,168	72,923
2014	11,619	4,767	5,093	10,008		52,238	72,106
2015	11,698	4,825	5,150	10,228		52,624	72,827

* 급식학교수 : 특수학교 포함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연도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나. 신분별 현황

연도	총 종사자수	영양.(교)사		조리사		제빵기사		조리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978									
1979		182				28			
1980		244							
1981									
1982									
1983		402	42	1	111	51	5	33	700
1984									
1985									
1986	2,020	414	153	567		48	46		792
1987									
1988									
1989									
1990	2,151	639	50						
1991	2,717	801	81						
1992		1,079	109						
1993	5,312	1,391	89	681	197	-	-	192	2,762
1994	7,752	1,729	42	1,138	399	-	-	157	4,287
1995	11,957	2,524	49	1,751	427	-	-	573	6,633
1996	15,632	3,025	86	2,368	567	-	-	589	8,997
1997	23,574	3,838	86	2,973	837	-	-	160	15,680
1998						-	-		
1999	37,649	4,296	500	3,584	1,722	-	-	856	26,691
2000	51,249	4,959	1,057	4,016	2,138	-	-	1,369	37,710
2001	56,409	4,946	1,638	3,834	2,823	-	-	1,930	41,238
2002	63,145	5,207	1,989	4,117	3,716	-	-	2,438	45,633
2003	67,771	5,233	2,436	4,005	4,666	-	-	2,274	49,157
2004	70,902	5,158	2,772	3,743	4,190	-	-	2,322	52,717
2005	70,703	5,202	3,041	3,662	4,510	-	-	2,673	51,615
2006	72,612	5,139	3,432	3,773	5,053	-	-	2,146	53,069
2007	75,268	5,208	3,590	3,502	5,596	-	-	4,820	52,552
2008	75,061	5,391	3,571	3,137	5,893	-	-	2,962	54,107
2009	74,455	5,718	3,395	3,013	6,299	-	-	8,957	47,073
2010	74,079	5,514	3,759	2,680	6,808	-	-	7,738	47,580
2011	72,527	5,429	4,017	2,449	7,049	-	-	8,201	45,382
2012	71,930	4,811	4,879	2,392	7,356	-	-	161	54,331
2013	72,923	4,869	4,943	2,334	7,609	-	-	212	52,956
2014	72,106	4,928	4,932	2,314	7,694	-	-	216	52,022
2015	72,827	4,978	4,997	2,186	8,042	-	-	224	52,400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연도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부록 9 연도별 학교급식 운영평가 우수 급식학교 명단

연도	최우수교	우수교	장려교
1979 (16교)		서울 용두국교(도시형), 경기 남곡국교(농촌형) 전북 영동국교(도시벽), 경북 화덕국교(농촌형) 경남 물건국교(도시벽)	11개교
1980 (16교)		경기 상품국교(도시벽), 강원장춘국경천분교(벽) 전북 남양국교(농촌형), 충북 원당국교(농촌형) 경남 명례국교(농촌형)	11개교
1981 (12교)	경기고색국교(농촌형)	경기 강남국교(도시벽), 충북 학생국교(농촌형) 전북 송광국교(농촌형), 전남대촌중앙국(농촌형) 경북 효자국교(농촌형), 경남 오부국교(도시벽) 제주 가시국교(도시벽), 제주 저청국교(도시벽) 부산 대평국교(도시형)	2개교
1982 (12교)	경남도산국교(농촌형)	경기 고량포국(도시벽), 전북 괴목국교(도시벽) 강원 정금국교(농촌형), 서울 흥연국교(도시형) 경북 금릉국교(농촌형), 전남 보길국교(도시벽) 충북 흥광국교(농촌형), 충남 삼동국교(도시벽) 제주 수산국교(농촌형)	2개교
1983 (6교)	경남계룡국교(농어촌)	전북 일대국교(도시벽), 경기 삼성국교(농어촌)	3개교
1984 (6교)	경남 정촌국	경북 패릉국, 충북 유리국	3개교
1985 (6교)	경남 신안국	충북 칠갑국, 경북 유가국	3개교
1986 (9교)	경남 김해장유국	전북 완주안덕국, 서울 대방국	6개교
1988	경북울진 평해국	경남 장목국, 경기 강남국 전남 신광서국,	
1989	경남의령 남산국	경기 용인남곡국, 충남 상곡국 강원 인제국	
1991	경남김해 활천국	경북영천 청통국, 경기안산 중앙국	
1992	경남함안 아라국	강원태백 함태국, 제주 서귀포 효동국	
1993	충남아산 탕정국	부산 온천국, 제주 김녕국	
1994	경남통영 광도국	부산대사국, 경북울진 후포국	
1995	경기평택 오성국	인천강화 삼성국, 전북익산 왕궁국	
1996 (12교)	충남조치원 명동초	대전 유성초, 경북 경주 연안초	9개교
1997 (11교)	경남거제 신현초	충남공주 봉황초	9개교



부록 10

교육부 정책용역연구 과제 목록

연도	연구보고서명	연구 책임자	소속기관
1999	학교급식의 HACCP제도 도입 및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곽동경	연세대학교
1999	학교급식전담직원 배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일선	연세대학교
2000	학교급식 조리실 표준설계안 연구	오덕성	충남대학교
2001	학교급식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숙희	이화여자대학교
2002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2002	학교급식 영양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임경숙	수원대학교
2004	학교급식 식재료 및 급식시설 안전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관리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곽동경	연세대학교
200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영양관리 지침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2004	학교급식 경영관리지침서 개발 연구	양일선	연세대학교
2004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도도입 및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보숙	한양여자대학
2005	학교급식 냉장·냉동고의 용량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허종화	경성대학교
2007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2007,2008,2010,2013)	양일선	연세대학교
2007	학교급식 통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박효정 강성국	한국교육개발원
2007	학교급식 경영진단 및 지원기능 수행체계 개발	박효정 양일선	한국교육개발원 연세대학교
2007	학교급식 위생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박효정 곽동경	한국교육개발원 연세대학교
2007	위탁급식 직영전환 성과분석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2007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방안연구	김혜영	상지대학교
2007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방안 연구	김판욱	충남대학교
2008	학교급식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비용 및 효과 실태 분석 연구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학교급식 홈페이지 구축 연구	박효정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2009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정안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2009	학교급식 위생 관리 지침서 개편 연구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2010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조사 연구	양수경	한국교육개발원
2014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양일선	연세대학교
2014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	최은옥	인하대학교
2014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매뉴얼	최정옥	국민대학교



부록 11

중앙정부의 학교급식정책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부처	국	과	과장	서기관·사무관	담당자
1955.2~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1961.10.2~	문교부	체육국	학교체육과			
1963.12.14~	문교부	문예체육국	체육과			
1968.7.24~	문교부	사회체육국	사회체육과			
1969.7.22~	문교부	사회체육국	학교급식과	송복주	성기항	
1970.1.26~	문교부	보통교육국	학교급식담당관	최동열	성기항	
1973.3.9~	문교부	체육국	학교급식과		성기항 박준교	김기철 김상욱
1979.3.19~	문교부	체육국	학교보건과	성기항	박준교	김상욱
1981.11.2~	문교부	체육국제국	학교체육과	현명덕	박준교	이희창
1982.3.20~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체육과	현명덕 유광규	장병선 권희래 한덕기 강경배 김윤화	이희창 변화봉 최광석
1990.2.12~	문교부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정오근 송세화	조한상 김상욱	변화봉 최광석 이윤균
1994.5.16~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학교보건체육과	정현웅 황낙현 김상욱	김상욱 조혜영	이윤균 조명연
1998.2.28~	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	학교보건환경과	노일숙 김홍진	조혜영	조명연
1999.5.24~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시설환경과	김기남	조혜영	박진욱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특수교육보건과	윤점룡 이효자 이유훈	조혜영	박진욱 정희권
2005.8.3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신영재 박희근	조혜영 박진욱	정희권 박진욱 김동로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이경희 주명현	박진욱	김동로
2012.8.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반통계국	학생건강총괄과	김도완	박진욱	김동로
2013.3.23~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지원과	장우삼	박진욱	김동로
2013.9.17~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안전과	장우삼	박진욱 김동로	김동로 강행화
2015.1.7~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생건강정책과	장우삼 조명연	김동로	강행화

연구자료 CRM 2017-14

학교급식 발전과정 조사

발 행 2017년 2월
발 행 인 김재춘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전화 : 043-5309-114
팩스 : 043-5309-819
<http://www.kedi.re.kr>
등 록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알래스카인디고(주) 02-2277-555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